2025.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 Ⅴ)

보 건 복 지 위 원 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보건복지부

Ⅰ. 개 관 ····· 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6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2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3

Ⅱ. 사업별 검토 ····· 14

【일반회계】

<세 출> ····· 14

1. 기초연금급여 사업: 지속적인 이·전용 및 불용액 발생 문제 ····· 14
2.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사업: 저조한 실집행률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 필요 등 ····· 18
3.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돌봄종사자 인원 증가 및 집행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24

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보험료 지원의 법적 기준과 예산편성 기준 간 불일치 문제 ····· 29
5.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사업(신규): 사업 대상 기준 및 지원 절차 개선 검토 필요 ····· 32
6.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사업(신규):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 ····· 36
7.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복지)(신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보건)(신규):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 ····· 41
8.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신규):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등 ····· 48
9. 화장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신규), 임상 3상 특화 펀드 사업(신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려한 사업계획 필요 등 ····· 51
10.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바이오)(R&D) 사업(신규): 중장기적 성과달성을 위한 체계적·전략적 사업관리 필요 ····· 59
11.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사업(신규): 제도의 실효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면밀한 설계 필요 ····· 6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 66

12. 경로당 지원(자율)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한 부식비 지원 문제 ····· 66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지 출> ····· 70

13.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사업(신규):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등 ····· 70

14. 난임 극복 지원 사업: 사업대상자가 유사한 지방이양 사업과의 통합 방안 검토 필요 등 ····· 75
15.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차등지원 필요 ····· 81

【응급의료기금】

<지 출> ····· 85
16.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신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마련 필요 ····· 85
17.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협진 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방안 마련 필요 등 ····· 89

【국민연금기금】

<지 출> ····· 94
18.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편성 검토 필요 ····· 94

❖ 식품의약품안전처

Ⅰ. 개 관 ····· 98

1. 예산안 개요 ····· 9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01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04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05

Ⅱ. 사업별 검토 ····· 106

【일반회계】

<세 입> ····· 106

1.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 계상 필요 ····· 106

<세 출> ····· 108

2.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활성화방안에 따른 현지실사 예산의 적정 규모 산정 필요 ····· 108
3. 수출허가지원 거점 구축 사업(신규): 공모사업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13
4.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사업: 교육과정 본격 운영 전 '안전성 평가자' 자격기준 마련 필요 ····· 116
5.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 사업: 수수료의 국고 세입 계상 검토 필요 ···· 120
6. HACCP제도 활성화 사업: HACCP인증 수수료 세입 계상 필요 등 ····· 124
7.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기술지원 및 기능성원료 재평가 사업: 스마트 GMP 구축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29
8.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식품·의료기기)(신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 환수 검토 등 ····· 132

❖ 질병관리청

Ⅰ. 개 관 ····· 138

1. 예산안 개요 ····· 13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41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43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44

Ⅱ. 사업별 검토 ····· 145

【일반회계】

<세 입> ····· 145

1.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편성 기준 변경을 통한 세입예산 정확성 제고 검토 필요 ····· 145

<세 출> ····· 149

2.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센터 설립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149
3.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 인체자원 분양수수료를 고려한 국고보조율 조정 등 검토 필요 ····· 153
4. 시험연구 인력지원 사업(신규): 신규과제 수행기간을 고려한 시험연구인력 인건비 조정 검토 필요 ····· 157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 출> ····· 160

5. 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 사업: 수입대체경비 세입 대비 세출 과소 편성지양 필요 ····· 160

【국민건강증진기금】

<지 출> ····· 163

6.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 사업 실적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 검토 필요 ····· 163

7. 암역학조사 사업: 사업 개편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168

8.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면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적정 예산편성 검토 필요 ····· 17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Ⅰ. 개 관 ····· 179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7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82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88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89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 190

Ⅱ. 사업별 검토 ····· 200

【총 괄】

1.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 전출 규모 과다에 대한 검토 필요 ····· 200

【일반회계】

<세 입> ····· 205

2.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실적 및 수입 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조정 검토 필요 ····· 205

<세 출> ····· 209

3.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지역 반대 등을 해소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 209

4. 물순환촉진지원 사업(신규): 조속히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지연 방지 필요 ····· 213

【환경개선특별회계】

<세 입> ····· 216

5. 면허 및 수수료: 수납실적 및 수입 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검토 필요 ····· 216

<세 출> ····· 219

6.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신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 219

7. 조류 충돌 예방 및 유해조류 관리 연구사업(신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필요 등 ····· 223

8.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한 사업 실적 제고 필요 ····· 227

9.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 기술개발(R&D)사업(신규): 정확한 규제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231

10. 유기성 폐자원 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R&D)사업(신규): 국제항공유 인증 및 활용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 방안 마련 필요 ····· 234

11.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지방비 매칭 가능성 검토 필요 ····· 238

1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4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세 출> ····· 245

13. 전기차 보급사업: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한 사업실적 제고 필요 ····· 245

14. 중속충전기 구축 지원사업(신규): 중속충전기 편성 대수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49
15.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신규): 투자수요의 면밀한 검토 필요 ····· 252
16.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지원기반구축 사업: 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256
17.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신규): 보조율 차등적용 검토 필요 ··· 26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계정)】

<세 출> ····· 264

18. 하수관로 정비사업: 연내 집행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64
19.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269
20. ce100프로젝트 추진 사업(신규): 수요 책정의 적절성 검토 필요 ····· 273

【전력산업기반기금】

<지 출> ····· 277

21. 가파도 RE100 사업(신규): 철저한 사전계획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 ····· 277
22.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구축 사업: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장비구축 예산 조정 필요 ····· 280
23.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신규): 하향된 ESS 평균 단가를 반영한 예산 편성 검토 필요 ····· 285

【기후대응기금】

<지 출> ····· 289

24.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89

❖ 기 상 청

Ⅰ. 개 관 ····· 292

1. 예산안 개요 ····· 292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94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295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96

Ⅱ. 사업별 검토 ····· 297

【일반회계】

<세 입> ····· 297

1. 기타잡수입: 수납실적 및 수입 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 조정 필요 ····· 297

<세 출> ····· 301

2.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운영사업(신규): 운영 규정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 등 ····· 301
3.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사업: 기술이전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305
4.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R&D) 사업(신규): 선행 사업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관리 필요 등 ····· 310
5.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운영사업(신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적시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필요 ····· 316
6.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사업(R&D): 연구 성과 관리 강화 필요 ····· 319

❖ 고용노동부

Ⅰ. 개 관 ····· 32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2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27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330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32
5.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 333

Ⅱ. 사업별 검토 ····· 334

【총 괄】

1. 고용보험기금(총괄): 「고용보험법」 제82조의 계정 간 구분 관리 취지를 고려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예탁 필요 ····· 334

【일반회계】

<세 출> ····· 338

2.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사업: 근로감독관의 양적 확대와 함께 업무체계 개선 필요 ····· 338
3. 근로감독혁신운영 사업(신규):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권한 위임의 ILO협약 부합 여부 검토 필요 등 ····· 342
4.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2유형(청년) 지원 목표인원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349
5.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사업(신규): 구직단념 청년의 고립·은둔 특성을 고려한 사업대상자 발굴 방안 마련 필요 ····· 354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필요 시 차등 지원 기준 보완 필요 ····· 358

7.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사업: 자부담 신규 설정을 고려한 사업물량 조정 검토 필요 등 ····· 365
8.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등 ····· 37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 373
9.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신규): 사회적가치 평가 등급 요건 설정 필요 ····· 373

【고용보험기금】

<지 출> ····· 377
10. 구직급여 사업: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 377
11. 단기 육아휴직 도입 사업: 법률안 개정의 논의 경과를 고려한 지출계획 반영 여부 결정 필요 ····· 380
12. 업무분담 지원금 사업: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 ····· 383

【임금채권보장기금】

<지 출> ····· 386
13. 대지급금 지급 사업: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한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 설정 검토 필요 등 ····· 38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 출> ····· 390
14.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사업: 산재예방 효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390
15.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신규): 향후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한 사업성과 관리 필요 등 ····· 393

16.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신규):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없는 지역 특화 산재예방 사업 추진 필요 ····· 398
17.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사업(신규):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한 포상금 지급 방안 검토 필요 등 ····· 4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 출> ····· 405

18.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신규): 고용개선장려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등 ····· 405

국 토 교 통 위 원 회

❖ 국토교통부 ·····413

Ⅰ. 개 관 ····· 41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41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416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425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27

Ⅱ. 사업별 검토 ····· 428

【총 괄】

1.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철도 건설 사업: 일부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428
2.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공항 건설 사업: 사업 경과를 고려한 현실적 추진 방안 마련 필요 ····· 431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 지역자율계정 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을 위한 집행 관리 필요 ····· 437
4. 주택도시기금 공적주택 공급(분양·임대)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주택공급 실적 집계방식 검토 필요 ····· 449
5. 국토교통부 소관 신규 연구개발 사업: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기획 기한 준수 필요 ····· 454
6. 국토교통부 소관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신규, 2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 458

【일반회계】

<세 출> ····· 464

7. 청년월세 지원 사업: 계속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 협의 실시 필요 ····· 464

8. 액체수소 저장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 기술개발(R&D) 사업(신규): 기술의 효과성과 독자적 활용성을 고려한 개발 필요 ····· 468

9. 초연결 지능도시 핵심 기반기술 개발(R&D) 사업(신규): 종전 스마트시티 R&D사업과의 연계방안 고려 필요 ····· 473

10. 200m급 목구조 대공간 건축물 건설기술 개발사업(R&D) 사업(신규): 기술의 상업화·상용화 등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477

11. 리츠시장 건전성 강화 사업: 제경비성 경비인 회의비 예산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481

12.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 사업(신규): 민간정비-공공정비 사업간 비용 차이에 대한 주민(조합) 인식 분석 필요 등 ····· 485

13. AI 시티 조성확산 사업(신규):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업 기본계획 수립 필요 ····· 491

14. 청년인턴 운영 사업: 실제 채용실적과 청년인턴 실근무일수를 고려한 예산액 조정 필요 ····· 495

【교통시설특별회계】

<세 출> ····· 499

15. 김포공항 시설개선 사업(신규): 규정과 지침에 부합하는 감리비 산정 및 편성 필요 ····· 499

16. 일반공항시설관리 사업: 연내 조류탐지 레이더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종료를 위한 사업일정 관리 필요 ····· 504

17. 드론 산업 성장 기반 조성 사업(신규): 설립 취지에 맞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 508
18. 초고속하이퍼튜브아진공핵심기술개발(R&D) 사업(신규): 기존 하이퍼튜브 R&D 사업과 연계를 고려한 사업이관 검토 필요 ····· 513
19.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예산 추계 시 면밀한 검토 필요 ····· 51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 523

20.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523

【주택도시기금】

<지 출> ····· 528

21.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사업,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사업: 추계 정확성 제고를 통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 528
22.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공실률 관리 필요 등 ····· 532
23. 주택정비사업(융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검토 필요 ····· 538
24. 이차보전지원 사업: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차보전율 조정 및 계획액 감액 검토 필요 ····· 54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Ⅰ. 개 관 ····· 543

1. 예산안 개요 ····· 54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545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547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48

Ⅱ. 사업별 검토 ····· 54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 출> ····· 549

1.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사업: 국가상징구역 조성 진행 상황을 고려한 사업추진 검토 필요 ····· 549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실시설계 조속 착수를 위한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552
3.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사업: 낙찰차액을 반영한 감리비 감액 조정 검토 필요 등 ····· 554
4.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 사업일정을 고려한 공사비 편성 여부 검토 필요 ····· 561
5.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사업의 조속 추진 필요 등 ····· 564

❖ 새만금개발청

Ⅰ. 개 관 ····· 569

1. 예산안 개요 ····· 56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571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572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73

Ⅱ. 사업별 검토 ····· 574

【일반회계】

<세 입> ····· 574

1. 면허료 및 수수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세입 증액 조정 검토 필요 ····· 574

<세 출> ····· 581

2. 새만금 도로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비 비목 변경 필요 ····· 581

3.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사업 공정 관리 필요 ····· 583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 성평등가족부

Ⅰ. 개 관 ····· 589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58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592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594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95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 596

Ⅱ. 사업별 검토 ····· 597

【총 괄】

1. 기타경상이전수입: 전년도 국고보조금 규모 등을 고려한 세입예산안 증액 필요 ····· 597

【일반회계】

<세 출> ····· 602

2. 서비스 지원 사업: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아이돌보미 확보방안 마련 필요 등 ····· 602
3.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의 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611
4. 생리용품 지원 사업: 바우처 실제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615

5.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6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622

6. 새일센터지정·운영 사업: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시 취업률 등 사업 성과 제고 필요 등 ····· 62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 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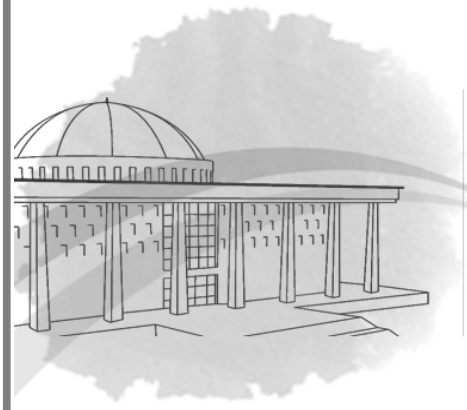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7. 가족센터 건립 사업: 사전행정절차 및 이월액 규모를 고려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626

【청소년육성기금】

<지 출> ····· 630

8.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청소년기 이후의 지원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63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은 110조 9,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1,774억원(10.1%) 증가함.

예산은 1조 4,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3억원(2.5%) 증가하고, 기금은 109조 5,0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1,421억원(10.2%) 증가함.[1)]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3,957	13,957	14,311	353	2.5
기 금	993,621	993,621	1,095,042	101,421	10.2
총수입	1,007,578	1,007,578	1,109,352	101,774	10.1

문의 : 민승환 예산결산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137조 6,4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 1,571억원(9.7%) 증가함.

예산은 78조 1,1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7,502억원(7.9%) 증가하고, 기금은 59조 5,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4,069억원(12.1%) 증가함.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723,680	720,347	781,182	57,502	7.9
기 금	531,229	531,739	595,298	64,069	12.1
총지출	1,254,909	1,252,087	1,376,480	121,571	9.7

주) 2025년도 본예산 금액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예산(77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나. 예산안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4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조 5,921억원으로 전년 대비 377억원(2.4%) 증가함.

[2026년도 보건복지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2,798	12,798	12,947	149	1.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8	8	8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32	732	899	167	22.8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007	2,007	2,067	60	3.0
합 계	15,544	15,544	15,921	377	2.4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8조 5,941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7,652억원(7.9%) 증가함.

[2026년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710,048	706,612	739,253	29,205	4.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6,234	16,337	44,620	28,386	174.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007	2,007	2,067	60	3.0
합 계	728,289	724,956	785,941	57,652	7.9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본예산 금액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예산(77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3개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91조 7,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 4,107억원(4.0%) 증가함.

[2026년도 보건복지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국민건강증진기금	45,405	45,485	48,624	3,219	7.1
응급의료기금	6,401	6,401	4,950	△1,451	△22.7
국민연금기금	1,775,695	1,775,695	1,847,657	71,962	4.1
합 계	1,843,045	1,843,124	1,917,152	74,107	4.0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9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21개(1,322억 4,5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AI 복지·돌봄 혁신 사업은 AI 기술을 복지·돌봄 분야에 적용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8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사업은 일시보호기간에 조기 검진 등을 통해 일시보호기간 단축 및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AI 복지·돌봄 혁신	5,870
2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231
3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산업지원	1,520
4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30,000
5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20,000
6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9,800
7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1,064
8	환자안전기술개발사업(R&D)	2,250
9	항노화및역노화재생의료중개임상연구(R&D)	3,150
10	AI기반수술로봇이노베이션랩구축및활용사업(R&D)	3,200
11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19,980
12	구조기반 AI신약개발지원(R&D)	2,400
13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 사업(R&D)	1,985
14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기반 스케일업 지원(R&D)	4,000
15	치매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R&D)	1,650
16	K-MediST 지원(R&D)	7,800
17	보건의료R&D핵심기술EarlyBoost사업(R&D)	1,80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18	첨단바이오융합인재양성(R&D)	5,625
19	최고급해외인재유치(바이오)(R&D)	1,800
20	자살관련사회문제해결기술개발(R&D)	3,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R&D)	5,120
총지출		132,245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료급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등 총 101개임.[3)]

[2026년도 보건복지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생계급여	8,489,981	9,172,676	682,695	8.0
2	의료급여	8,688,201	9,839,997	1,151,796	13.3
3	긴급복지	350,109	405,254	55,145	15.8
4	자활사업	820,578	840,897	20,319	2.5
5	장애수당(기초)	156,715	170,368	13,653	8.7
6	장애인연금	884,658	907,129	22,471	2.5
7	장애인활동지원	2,532,343	2,810,159	277,816	11.0
8	장애인의료비지원	35,868	57,357	21,489	59.9
9	장애인지원관리	850	1,902	1,052	123.8
10	장애아동가족지원	232,654	250,254	17,600	7.6
11	발달장애인 지원	402,962	481,049	78,087	19.4
12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1,547	2,277	730	47.2
1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90,308	735,123	44,815	6.5
14	장애인일자리지원	234,510	254,638	20,128	8.6
15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10,442	13,789	3,347	32.1
16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51,912	82,367	30,455	58.7
17	첨단재생의료사무국 기본경비(총액)	14	21	7	50.0
18	망향의동산 전산운영경비	3	5	2	66.7
19	복지급여 사후관리	663	930	267	40.3
2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978	15,040	11,062	278.1
21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2,405	3,434	1,029	42.8
22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734	1,948	1,214	165.4
23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	7,655	12,216	4,561	59.6
24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7,130	77,748	70,618	990.4
25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운영	15,936	22,778	6,842	42.9
26	아동수당 지급	1,958,823	2,482,169	523,346	26.7
27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135,263	2,372,567	237,304	11.1
28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	3,570	4,720	1,150	32.2
29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1,602	3,567	1,965	122.7
30	첫만남 이용권 지원	359,296	411,120	51,824	14.4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31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848	2,892	2,044	241.0
32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261	5,909	1,648	38.7
33	기초연금지급	21,814,577	23,362,715	1,548,138	7.1
34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523,049	2,584,914	61,865	2.5
35	망향의동산 관리원 운영지원	454	890	436	96.0
36	소록도병원관리	5,301	7,323	2,022	38.1
37	유전자,RNA 및 후성유전체 편집기술 기반의 유전자치료제 개발사업(R&D)	2,250	4,500	2,250	100.0
38	해외환자 유치 지원	4,385	5,911	1,526	34.8
39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	67,872	241,435	173,563	255.7
40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정보화)	231	1,136	905	391.8
41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2,757	5,166	2,409	87.4
42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43	14,957	10,714	252.5
43	연구중심병원육성(R&D)	81,825	94,700	12,875	15.7
44	글로벌의사과학자양성(R&D)	76,800	101,384	24,584	32.0
45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R&D)	7,612	11,482	3,870	50.8
46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33,397	52,123	18,726	56.1
47	임상현장수요연계형중개연구(R&D)	8,081	13,214	5,133	63.5
48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63,180	110,770	47,590	75.3
49	소아질환 극복 연구개발사업(R&D)	5,250	9,250	4,000	76.2
50	저출산 극복 기술개발사업(R&D)	5,550	9,200	3,650	65.8
51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R&D)	4,050	6,975	2,925	72.2
52	다기관-멀티모달 연합학습 기반 의료 인공지능 기술 시범모델 개발(R&D)	6,750	9,000	2,250	33.3
53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R&D)	5,700	7,600	1,900	33.3
54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지원(R&D)	4,500	7,500	3,000	66.7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55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비임상시험 플랫폼 산업 고도화 사업(R&D)	2,850	3,800	950	33.3
56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R&D)	7,947	14,924	6,977	87.8
57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11,000	20,250	9,250	84.1
58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R&D)	4,500	6,000	1,500	33.3
59	지역의료혁신 연구개발사업(R&D)	1,800	4,800	3,000	166.7
6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38,621	50,897	12,276	31.8
61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480	1,816	1,336	278.3
62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	6,806	8,966	2,160	31.7
63	첨단의료산업 선도 기반 실증지원 사업(R&D)	7,125	9,500	2,375	33.3
64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6,374	9,390	3,016	47.3
65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18	19,963	10,545	112.0
66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12,670	19,205	6,535	51.6
67	국가시험원운영	6,430	9,000	2,570	40.0
68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1,174	2,121	947	80.7
69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5,025	8,239	3,214	64.0
70	국가보건의료표준화	2,162	2,912	750	34.7
71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10,621,136	10,782,011	160,875	1.5
72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1,019,350	1,074,030	54,680	5.4
73	차상위계층 지원	479,115	508,235	29,120	6.1
74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3,614	4,992	1,378	38.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5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63,953	77,534	13,581	21.2
76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5,448	7,843	2,395	44.0
7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39,422	589,381	49,959	9.3
78	장사시설설치	25,271	49,096	23,825	94.3
79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76,363	328,868	252,505	330.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0	공주병원 전산주요사업(정보화,자본)	67	121	54	80.6
81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수입대체경비)	226	1,584	1,358	600.9
82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입대체경비	62	137	75	121.0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83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화사업(정보화,자본)	346	683	337	97.4
[국민건강증진기금]					
84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7,701	10,919	3,218	41.8
85	국가암관리	83,570	126,640	43,070	51.5
86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8,978	12,235	3,257	36.3
8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56,184	70,797	14,613	26.0
88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2,129	2,813	684	32.1
89	국가예방접종실시	601,831	639,246	37,415	6.2
90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원	66,371	78,852	12,481	18.8
91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7,299	32,057	24,758	339.2
[응급의료기금]					
92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정보화)	1,800	8,833	7,033	390.7
93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62,927	176,476	113,549	180.4
94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2,810	42,446	19,636	86.1
95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66,370	78,100	11,730	17.7
96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11,471	16,371	4,900	42.7
[국민연금기금]					
97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448,790	476,058	27,268	6.1
98	기금관리운영비	584	1,160	576	98.6
99	국민연금급여지급	48,413,256	54,508,464	6,095,208	12.6
100	기금운용직 단기숙소 지원	815	1,543	728	89.3
101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융자)	38,000	54,000	16,000	42.1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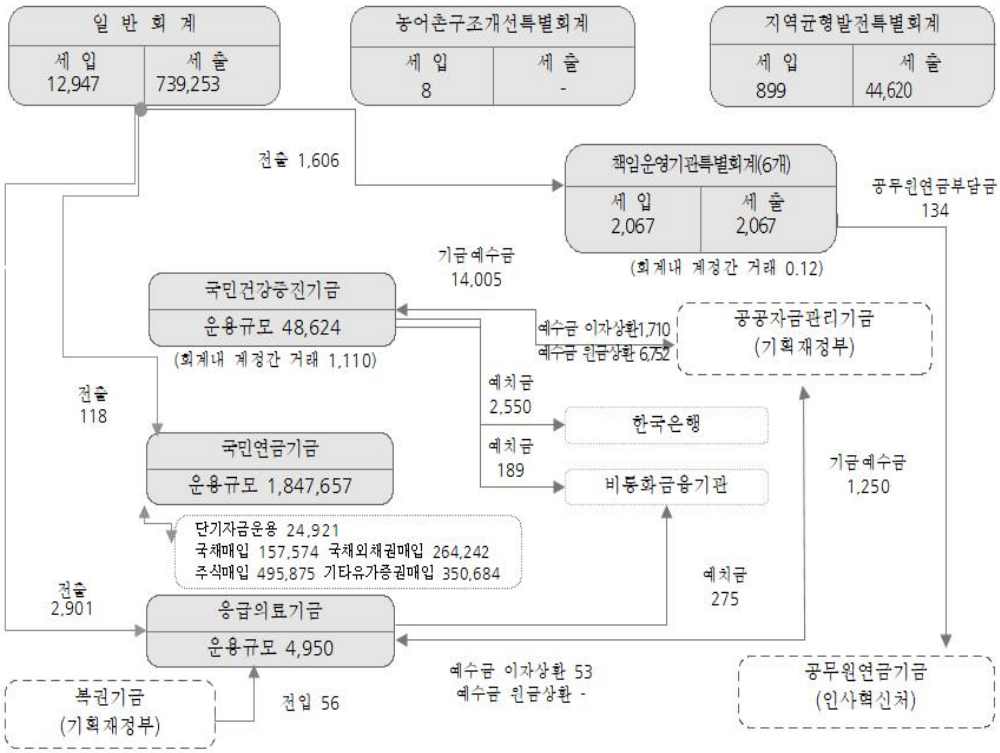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응급의료기금・국민연금기금 3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1,606억원, 응급의료기금으로 2,901억원, 국민연금기금으로 118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조 4,005억원을 예수하였고 응급의료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250억원을 예수하였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단위:억원)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2025년 대비 9.7%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보건복지부 총지출 137.6조원 중 의무지출은 122.1조원으로 8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의무지출 비중이 높음.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기초연금급여 사업은 이·전용 및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실제 수급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실제 시기별 가입 추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 특수성을 고려한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중이므로 이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소속 진료지원간호사로 한정되어 있는 점, 이들의 업무범위가 아직 법령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업무범위의 구체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기초연금급여 사업: 지속적인 이·전용 및 불용액 발생 문제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기초연금급여’**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5,477억 3,900만원(7.1%) 증액된 23조 3,389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1)]

[2026년도 기초연금급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초연금 지급	21,814,577	21,421,915	23,362,715	1,548,138	7.1
기초연금급여	21,791,220	21,398,558	23,338,959	1,547,739	7.1

이와 같은 증액은 통계청의 「2022~2027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2025년 7,360,000명에서 2026년 7,788,000명으로 428,000명(5.8%) 증가하였고, 물가상승률 2.0% 및 재정열악 지자체 수 증가(11개소→13개소)로 인한 추가지원금 109억 5,900만원(24.9%) 증액 등이 반영된 것임.

이에 따라 2026년도 기초연금 급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만 9,360원이 지급될 예정임.

1) 일반회계 - 기초연금 지급(2131-300)(연금정책관)

[기초연금급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초연금 급여 : 23,338,959백만원
가. 수급자 수 : 7,788천명(2022-207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나. 기준연금액 : 349,360원(물가상승률 2.0%)
다. 평균 국고보조율 : 84.42%(신규 통계치 산출)
라. 수급비율(전액:감액) : 87.3:12.7
마. 집행계수 : 96.9%
바. 재정열악지자체 추가지원금 : 54,814백만원(13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기초연금급여 사업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실제 수급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97억 8,600만원이 이·전용 감액되고 3,305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24년에는 2,024억 8,600만원이 이·전용 감액되고 3,904억 4,100만원이 불용되는 등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2025년에는 3,926억 6,200만원이 추경 재원으로 감액되는 등 매년 상당한 여유 재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연금 지급사업에 실제 소요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이·전용 및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114,031	175,473	16,289,504	-	△106,478	92,859	16,275,885	16,275,264	-	621
2023	18,530,432	-	18,530,432	-	△9,786	-	18,520,646	18,190,029	35	330,582
2024	20,201,456	-	20,201,456	35	△202,486	-	19,999,005	19,608,485	80	390,441
2025.8.	21,814,577	△392,662	21,421,915	80	-	-	21,421,995	16,837,462	-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예산의 과다 편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시 ‘부부 감액 비율’과 ‘감액수급자 비율’을 실제 수치에 부합하게 개선함으로써 이·전용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음.[2)]

이 외에도 현행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에서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령상 기준인 70%에 맞춰 수급대상자 수를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수급률은 2022년 67.4%, 2023년 67.0%, 2024년 66.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법정 기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사업대상자 수 및 실제 수급률 비교]

(단위: 만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8.
대상자 수	예산편성인원	598	628	665	701	736
	실제 지급인원	597	624	651	676	집계중
수급률	예산편성기준	70	70	70	70	70
	실제 수급률	67.6	67.4	67.0	66.0	집계중

주) 2025년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6,903천명(수급률 65.8%)
자료: 보건복지부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있어 법령상 기준에 따른 수급대상 노인 수는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초연금 편성예산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3)]

2) 부부감액 비율: (’25) 41%→(’26) 43.8%, 기타감액비율: (’25) 10%→(’26) 12.7%

3)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14년 6.9조원(GDP 대비 0.5%)에서 2023년 22.5조원(GDP 대비 0.9%)으로 3배 이상 증가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 수급률이 편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결과적으로 이 사업 예산의 이·전용 및 불용액 역시 증가할 수 밖에 없음.[4)]

따라서 실제 수급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예산 편성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이·전용 및 불용액 규모를 줄임으로써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추세 감안시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실제 수급률 일부 반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찾아뵙는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거주불명자 모바일 안내 등을 통해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역시 지속하겠다는 입장임.

2.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사업: 저조한 실집행률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등 초기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1:2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9억 3,400만원(2.6%) 증액된 1,549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6년도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151,041	121,043	154,975	3,934	2.6

이 사업은 지원한도 월 10만원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 계층 아동들의 적립금에 대응하여 1:2의 비율로 정부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549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5) 일반회계 -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1335-302)(인구아동정책관)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보호대상아동 15,288백만원
· 서울 1,014백만원 : 3,295명×90,000원×12월×30%
· 지방 14,274백만원 : 19,875명×90,000원×12월×70%
* (산식) 지원아동수×1인당월평균매칭지원금×지원개월수×보조율
○ 기초수급가구아동 131,096백만원
· 서울 7,011백만원 : 39,011명×65%×96,000원×12개월×80%×30%
· 지방 124,085백만원 : 295,914명×65%×96,000원×12개월×80%×70%
* (산식) 지원아동수×가입률×1인당월평균매칭지원금×지원개월수×저축률×보조율
○ 차상위계층 8,591백만원
· 서울 502백만원 : 5,590명×35%×95,000원×12개월×75%×30%
· 지방 8,089백만원 : 38,614명×35%×95,000원×12개월×75%×70%
* (산식) 지원아동수×가입률×1인당월평균매칭지원금×지원개월수×저축률×보조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대상 범위를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아동 가운데 만 12~17세 아동에 대해서만 가입을 지원하던 것을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만 0~11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2025년에도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음.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사업 확대 연혁]

연도	항목	기존	확대
2018	기초수급가구 가입 가능연령	만 12세~13세	만 12세~17세
2020	월 최대 본인 납입액	월 최대 4만원	월 최대 5만원
2022	매칭지원비율(아동가구 : 정부)	1 : 1	1 : 2
2024	기초수급가구 연령, 소득기준	(연령) 12~17세 (소득) 생계・의료급여	(연령) 0~17세 (소득) 생계・의료+주거・교육
2025	대상자 자격	보호대상, 기초수급 아동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첫째,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사업은 제도 확대에 따라 가입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인바, 단순히 대상자 가입률을 기초로 예산을 산출하기보다는 실제 시기별 가입 추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1년 6만 8,481명에서 2025년 25만 2,059명으로 가입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5년 7월 기준 제2회 추경으로 299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실집행률이 59.9%에 그치고 있음.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55,445	55,445	55,445	55,445	-	55,445	41,165	-	14,280	74.2
2023	49,900	49,900	47,600	47,600	-	47,600	42,341	-	5,259	84.9
2024	126,733	126,733	126,112	126,112		126,112	84,326	-	41,786	66.5
2025.7.	151,041	121,043	113,156	113,156	-	113,156	72,529	-	-	59.9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산 추계시 가입대상자 대비 보호대상 아동은 100%, 기초수급은 65%, 차상위는 35%의 가입률을 적용하는 등 실제 가입률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및 저축 현황]

(단위: 명, %)

구분	대상			가입				저축			
	보호대상아동	기초수급가구아동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가입률)	기초수급가구아동 (가입률)	차상위계층 (가입률)	계 (가입률)	보호대상아동 (저축률)	기초수급가구아동 (저축률)	차상위계층 (저축률)	계 (저축률)
2020	26,505	56,837	-	24,830	49,855	-	74,685	23,688	39,635	-	61,121
				(93.7)	(87.7)	-	(89.6)	(95.4)	(79.5)	-	(84.6)
2021	24,985	55,744	-	24,669	43,812	-	68,481	23,608	35,706	-	64,034
				(98.7)	(78.6)	-	(84.8)	(95.7)	(81.5)	-	(86.4)
2022	27,952	52,530	-	23,887	40,904	-	64,791	23,215	36,816	-	56,627
				(85.5)	(77.9)	-	(80.5)	(93.7)	(83.1)	-	(87.4)
2023	27,159	60,688	-	23,334	39,866	-	63,200	21,234	32,714	-	53,948
				(85.9)	(65.7)	-	(71.9)	(91.0)	(82.1)	-	(85.4)
2024	22,802	182,875	-	22,669	136,984	-	159,653	21,485	114,455	-	135,940
				(99.4)	(74.9)	-	(77.6)	(94.8)	(83.6)	-	(85.1)
2025.8.	23,334	204,903	44,563	21,968	177,352	17,657	216,977	19,185	143,531	14,491	177,207
				(94.1)	(86.6)	(39.6)	(79.5)	(87.3)	(80.9)	(82.1)	(81.7)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이는 단순히 연간 전체 가입 대상 대비 가입률을 적용한 것으로, 제도 확대에 따른 신규 가입대상 전체가 연초부터 일시에 가입·저축하는 것을 전제로 소요 예산을 추계하는 것인바, 이러한 방식은 신청주의에 따른 시기별 가입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2025년 신규 편성된 차상위계층 아동의 가입률이 2025년 8월 기준 39.6%에 그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신규대상자가 연초부터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산출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제도 확대에 따른 대상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되 실제 수급·가입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추계 방식을 마련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 미적립 아동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수도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기 가입·저축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축률을 가입자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지속적으로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가입대상 대비로 산출할 경우 저축률은 60%대에 머물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 비중이 상당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2024년 적립 및 미적립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에 매칭실적이 전혀 없는 미적립아동 수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수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2024년 미적립아동 수는 2,481명으로 2023년 734명 대비 238.0%가 증가하였는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2,416명으로 전체 미적립아동의 97.4%를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적립 및 미적립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적립아동			미적립아동		
		소계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	소계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
2018	81,412	78,665	25,301	53,364	2,747	267	2,480
2019	80,770	74,115	24,717	49,398	6,655	325	6,330
2020	74,685	72,477	24,485	47,992	2,208	345	1,863
2021	68,481	67,009	23,787	43,222	1,472	590	882
2022	64,791	64,348	23,752	40,596	443	135	308
2023	63,200	62,466	23,257	39,209	734	77	657
2024	159,653	157,172	22,604	134,568	2,481	65	2,416

주 1) 적립아동은 당해연도에 국가매칭금이 매칭된 사례가 있는 아동을 의미

2) 미적립아동은 당해연도에 1회도 국가매칭금이 매칭되지 않은 아동을 의미

3) 미적립아동의 경우 지원중지 아동 및 12월 계좌개설(다음년도 1월에 12월로 소급) 아동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이는 본인저축을 매칭지원 요건으로 하는 현행 사업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기초수급가구 소득·연령기준의 확대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 대상자가 급증하였음에도 매칭을 위한 후원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생계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의 직접 저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6]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6)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개선 방안 연구」(성균관대학교, 2024.12.)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부모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 장기 적금에 대한 부담, 제도 불신 등의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상확대에 머물러 제도의 실질적인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음.

따라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원기반 확대 및 국가 차원의 직접 지원을 통한 계좌 유지 등 다양한 구조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돌봄종사자 인원 증가 및 집행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0억 8,700만원(19.4%) 증액된 4,810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6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발달장애인 지원	402,962	427,853	481,049	78,087	19.4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25,051	25,394	26,641	1,590	6.3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17,482	17,782	18,688	1,206	6.9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41,671	43,986	43,621	1,950	4.7

내역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9,000만원(6.3%) 증액된 266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등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600만원(6.9%) 증액된 186억 8,800만원이 편성

7) 일반회계 -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장애인정책국)

되었음.

내역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5,000만원(4.7%) 증액된 436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 26,641백만원
- (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처우개선 3.5%
- (산출) 26,641백만원 = 34개소×1,632.4백만원×보조율48%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 18,688백만원
- (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처우개선 3.5% 증액 반영
- (산출) 125개소×(19.95백만원×12개월+72백만원)×보조율48%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 43,621백만원
- (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단가 상승(28,254 → 29,359원) 및 집행 계수 조정 반영
- (산출) 1,500명×29,359원(주활 단가의 170%)×154시간×12개월×67%(보조율)×80%(집행계수)

자료: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유형별 지원 사항]

구분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이용대상	신청자격	■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선정기준	■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80점 이상 ■ 가정내보호체계 점수가 '5점 이상'인 자로 통합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자	■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80점 이상인 자	■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24.9.1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한시 적용 (70점 이상 80점 미만 → 50점 이상 80점 미만)
서비스	내용	■ 낮활동 + 주거서비스	■ 낮활동 서비스(개별형)	■ 낮활동 서비스(그룹형)
		■ (공통)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미있는 낮활동		
		■ 편안하고 안전한 밤생활	-	
	제공시간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09:00 * 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원가정복귀 * 주말·공휴일은 휴무	■ (주간) 10:00~17:00 * 주말·공휴일은 휴무	■ (주간) 09:00~18:00 - 일 최대 8시간 - 월 최대 176시간 * 주말·공휴일은 휴무
지원규모	대상자수[1]	■ 340명	■ 500명	■ 1,500명

주 1) 2025년 기준 예산상 인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사업 실적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으나, 돌봄종사자와 이용자 간 1:1 매칭이 필요한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단기간에 실적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돌봄종사자 인원 증가 및 집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도전적 행동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1:1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돌봄서비스의 실집행 및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당시 기준 인원 및 금액에 비해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2025년 7월 31일 기준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 모두 실집행률이 40%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해당 지원기관 등에서 최대 수용가능 인원을 의미하는 ‘지원율’ 역시 예산편성 인원 대비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예산집행					지원인원		
		예산액 (A)	교부액	실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계획[1] (a)	실적[2] (b)	지원율 (b/a)
2024	24시간 개별 1:1	17,563	17,563	8,238	-	46.9	340	214	62.9
	주간 개별 1:1	14,192	14,192	6,386	-	45	500	360	72.0
	주간 그룹 1:1	35,552	35,552	4,671	-	13.1	1,500	816	54.4
	합 계	67,307	67,307	19,295	-	28.7	2,340	1,390	59.4
2025 (7.31 기준)	24시간 개별 1:1	25,394	20,383	6,711	-	26.4	340	256	75.3
	주간 개별 1:1	17,782	14,286	5,606	-	31.5	500	400	80.0
	주간 그룹 1:1	43,986	35,644	14,412	-	32.8	1,500	1,043	69.5
	합 계	87,162	70,313	26,729	-	30.7	2,340	1,699	72.6

주 1) 예산 편성상 인원
2) 지원기관 등에서 최대 수용가능 인원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종사자 채용의 어려움이 실집행률 저조의 주요 원인이라 보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전문수당 및 돌봄서비스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서도 돌봄종사자 참여 유인 강화를 위해 처우개선(3.5%) 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2025년도 제2회 추경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구 분	2025년 8월 추경 증액 내역	2026년 예산안
24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5→15만원), 운영비 증액(+600만원)	처우개선 3.5%
주간 그룹 1:1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단가 인상(24,930원 → 28,254원)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단가 인상(28,254원 → 29,359원)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이 사업은 이용자와 돌봄종사자 간 1:1 매칭이 전제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기간에 돌봄종사자 인력확보와 이를 통한 실적 개선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제로 돌봄종사자 채용 현황을 보면, 24시간 개별 1:1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경우 예산 편성상 이용자 인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돌봄종사자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8)]

[사업 유형별 돌봄종사자 채용 현황[9)]]

(단위: 명)

구분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합계
돌봄종사자	403	342	588	1,333
최중증 발달장애인[1)]	340	500	1,500	2,340

주 1) 예산 편성상 인원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정책이 실제 집행률 제고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돌봄종사자 인원 확대 및 집행실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대상 규모는 약 4,800명으로 추정('23년 기준)되나, 현재 예산상 최대 2,340명이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9) 2025.8.기준

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보험료 지원의 법적 기준과 예산편성 기준 간 불일치 문제

가. 개 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4억 5,500만원(58.7%) 증액된 823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51,912	51,912	82,367	30,455	58.7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타보전금(310-04) : 82,365백만원

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73.6만명×604천원×9.5%×50%×6개월×65%=82,365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0.6백만원

가. 여비: 1명×80천원×7회

○ 사업추진비(240-01) : 1.2백만원

가. 업무협의: 7명×10천원×6회

나. 간담회: 7명×30천원×4회

자료: 보건복지부

10) 일반회계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008-206)(연금정책관)

이 사업은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의 개정[11]으로 보험료 지원 요건인 납부 재개 요건이 삭제되면서 일정소득 수준 미만의 지역가입자로 지원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변동 사항]

구분	개정전(2022.7.~2025.12.)	개정후(2026.1.~)
지원대상자 범위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납부를 재개한 자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의 지역가입자
지원 대상 인원[1)]	19.3만명	73.6만명

주 1) 예산편성상 인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검토의견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6년 예산안 편성시 현행 고시 기준(기준소득월액 103만원)보다 강화된 8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법령상 기준과 예산상 기준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의 법적 정합성 확보 및 집행 혼선 방지를 위해 조속히 관련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준을 고시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50% 또는 정액(46,350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1)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삭제<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2026년 이 사업 예산안은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소득월액 103만원보다 강화된 80만원을 적용하면서 일률적으로 50%의 지원율을 적용하고 있어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 기준과 예산 편성 기준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액 산출 근거]

○ 73.6만명*(지원대상) x 604천원**(평균 기준소득월액) x 9.5%(보험료율) x 50%(지원율) x 6개월(지원기간) x 65%***(신청률) * 2026년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제5차 재정계산 결과 고려하여 추계) ** 2024년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평균 기준소득에 물가인상률 2회 반영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률 평균('22년 7월 ~ '24년 12월)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만약 사전에 고시를 개정하였다가 예산안이 변경될 경우 재개정이 필요해지므로 입법예고 등에 따른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고시와 다른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예산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심의를 고려하여 조속히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5.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사업(신규): 사업 대상 기준 및 지원 절차 개선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사업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또는 사회적 낙인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9억 7,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7,655	7,655	12,216	4,561	59.5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	-	4,974	4,974	순증

이 사업의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을 위한 푸드뱅크 사업단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보조율 100%) 9억 6,200만원, 먹거리 코너 물품 구입 및 전담인력 지원을 위한 지자체보조금(보조율 50%) 38억 3,200만원 및 사업운영비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아울러 이 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더해 국민의 자발적 후원과 기부물품을 활용해 운영될 계획으로, 공공재원과 민간자원의 결합을 통해 추진될 예정임.

12) 일반회계 -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2631-308)(사회서비스정책관)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푸드뱅크사업단 운영지원: 962백만원(순증)
- 운영인력 3명(12개월) 112백만원
- 홍보, 물류비 등 운영비 850백만원
・사업 운영 홍보비 500백만원, 기부물품 수령 및 지원 150백만원, 기부캠페인 운영 30백만원,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백만원, 성과분석 연구 및 현장점검 등 50백만원, FMS 시스템 개선 100백만원
○ 물품구입비: 3,120백만원
- 기본보장 코너 1개소당 4백만원×130개소×12개월×50%=3,120백만원(국비-지방비 1:1 매칭)
○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712백만원
- 월 3.1백만원×51개소×9개월×50% = 712백만원(17개 광역 시・도별 3명, 국비-지방비 1:1 매칭)
○ 일반 사업운영비: 180백만원
- 일반용역비 100백만원, 일반수용비 32백만원, 임차료 30백만원, 국내여비 12백만원, 사업추진비 6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이 사업은 코로나19 시기 일부 지자체(서울 영등포구,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3~5개 품목의 기본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임.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신청/소득기준 불필요)
(지원물품) 1인당 3~5개 품목 기본 먹거리·생필품(2만원 한도)
* 표준 제공물품 3~4개를 기본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물품 선정
(지원장소) 총 130여 개소(푸드마켓 + 신규 설치 코너*)
* 지자체 여건(접근성 등) 고려, 동주민센터・복지관・푸드뱅크 등에 코너 신규 설치
(이용 절차) 처음은 그냥 드림 → 2차 이용시 의무 상담, 필요시 복지자원 연계・사례 관리
* 지원 필요자에게는 푸드뱅크 수준(월 1~2회) 물품 지속 제공. 상담 후 지속 지원 불필요자에 대해서는 추가 이용 제한(지자체 여건에 따라 제한 요건 설정)
(운영 체계) 광역푸드뱅크 일괄구매 → 매월 기초푸드마켓 배송, 기초푸드마켓에서 배송된 물품+자체 모집품(1:1) 분배
- 現 푸드뱅크관리시스템(FMS) 활용 수요・공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전국푸드뱅크), 지역별 수요 공급 불균형 해소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지원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를 지원해 생계형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1차 이용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경우 더 많은 취약계층 지원에 유리하나 일부의 부적정·과다 이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사업 목적이 희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기준과 이용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의 기본 지원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으로, 주로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사업운영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1차 이용을 식생활 취약계층의 접근 장벽을 낮추기 위해 소득수준 요건,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이용부터는 기본상담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연계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들 중심으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임.

그러나 이는 이 사업의 목적이 생계 곤란자를 지원하여 이른바 ‘장발장’을 방지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차 이용이 전면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운영방식이 사업의 목적·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1차 이용 시 사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을 유도하고, 2차 이용부터 기본 상담을 거쳐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나, 1차 이용에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람도 이용 가능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특히 이 사업은 지자체 및 푸드마켓별로 설정한 ‘이용한도 내’ 또는 ‘기부 전제’ 기준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람도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임.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집중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 필요도가 높은 식생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지침 및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임.[13)]

13)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우선 보장하고 지원물품이 소진되지 않도록 배분 기준 및 재고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업 취지가 사업 운영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과 물품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사업(신규):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사업은 실질적인 재가거주지원을 위해 의료・돌봄 서비스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재가거주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이 낮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20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4)]

[2026년도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7,130	7,130	77,748	70,618	990.4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	-	72,025	72,025	순증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72,025백만원(순증)
-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52,875백만원
-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 19,150백만원(한시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이 사업은 지역간 돌봄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자체에 대한 초기 예산지원을 통해 ① 지자체 돌봄 역량 강화, ② 지역간 돌봄 격차 완화 및 ③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14) 일반회계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2631-336)(노인정책관)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취지		① 기존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되,[15] ②그럼에도 발생하는 지역서비스의 빈틈은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지역 현황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 보완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 지역 특색과 필요도를 반영한 지자체 특화 서비스 개발 (예시) 케어팜(진천), 돌봄특화마을(광주 북구), 거점형 노인케어안심주택(안산), 거동불편환자 중간집(천안), AI 챗봇 두리케어인형(전주) 등
		- 기본돌봄서비스에 해당하나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보충 (예시) 주택수리(낙상방지), 일상생활 지원(청소, 가사, 운동 등), 이동지원(돌봄택시, 동행지원) 등
		- 장애인 등 돌봄대상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신규서비스 개발
		- 퇴원환자 지원 인프라 구축, 재택의료센터 확충 등 지자체가 재가의료 개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구성

지원 대상은 전국 18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상황(① 재정자립도(하위 약 80% 지역, '25), ② 대상자 현황(고령화율 20% 이상, 장애인 규모 고려 등), ③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인프라·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보조율 30~50%)할 예정임.

15) <통합돌봄 주요서비스 현황>

구분	공통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제 정신건강복지센터 다제약물 관리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공재활프로그램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발달)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건강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복지관·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백세 운동교실 어르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동지원, 통합재가서비스	
일상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식사배달	노인맞춤형돌봄 경로당 식사제공 노인·고령자 복지주택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가사·간병 방문지원 수어통역 (발달) 재산관리 (발달) 공공후견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지원대상(183개 지역) 유형별 구분]

○ 유형 구분 (국비+지방비, 보조율: 서울 30%, 그 외 50%)
・ A그룹 : 의료취약지역 & 초고령지역 57개(10억원)
・ B그룹 : 의료취약지역 or 초고령지역 94개(8억원)
・ C그룹 : 그 外 32개(4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6.3월 시행)에 따라 시・군・구가 지역 돌봄체계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신규 확충되는 통합지원 전담인력 중 2,400명에 대한 6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으로,[16] 현재 신규 채용을 위한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 정원 확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중에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바,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17]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2025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16) 재정자립도가 낮은 183개 시군구, 30%(서울)~50%(지방) 국비 지원

17)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 · 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예타면제와 적정성 검토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방자치단체 신규 확충 전담 공무원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에 따른 제도 초기 기반 마련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나, 행정안전부의 정원 동결 지침과의 상충 가능성, 조례 개정 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정원 확보 및 예산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지원 절차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의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조기 인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 인건비를 한시적(6개월)으로 지원할 예정임.

신규 전담 인력은 지방공무원(9급 1호봉)으로 임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정원 확대 협의를 진행중으로, 인건비 지원을 통해 향후 돌봄 통합지원체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시행 초기 원활한 정착과 현장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신규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 업무 주요 내용]

시군구	읍면동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서비스자원 발굴·연계 ▲통합지원회의 운영 ▲모니터링 총괄 ▲자체서비스 개발 등	▲상담·신청·접수 및 대상자 발굴 ▲방문 조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참석 ▲서비스 의뢰·제공 ▲대상자별 모니터링

자료: 보건복지부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2024.4.)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2027년까지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 수요는 내부 재배치를 통해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원 확대 추진이 지침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18)]

1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이 균형되고 규모가

특히 정원 확대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규모 채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과 실행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인바,[19]

향후 정원 확보 및 예산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확보·채용 일정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에 있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시행 초기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적정하도록 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

19)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정해주는 '기준인건비 총액'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원을 증감하거나 조정하여 인력을 운용할 수 있음.

7.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복지)(신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보건)(신규):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사업은 AI 기술을 기존 복지서비스에 접목하거나 AI 기반의 신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돌봄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3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0)]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사업은 AI를 활용하여 의료기기,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등의 신속한 상용화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2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1)]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보건)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	-	30,000	30,000	순증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	-	20,000	20,000	순증

①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사업은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복지·돌봄 분야에서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봄 위기 완화 등 혁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5개 분야에서 단기(1년) 과제 4개, 장기(2년) 과제 12개 수행을 위한 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20) 일반회계 -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2631-340)(복지정책관)

21) 일반회계 -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3033-513)(보건산업정책국)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고독사 등 AI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 지원: 105억(순증)
- 단기(1년) 솔루션 2개 과제 × 30억원 = 60억원
- 장기(2년) 솔루션 3개 과제 × 15억원 = 45억원
※ 사업 수행기관의 공모·평가 등 과제 관리·운영 포함
○ RAG[22] 기반 지역특화 복지안내서비스 AI 개발: 45억(순증)
- 장기(2년) 솔루션 3개 과제 × 15억원 = 45억원
※ 사업 수행기관의 공모·평가 등 과제 관리·운영 포함
○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사업 지원: 30억(순증)
- 장기(2년) 솔루션* 약 2개 과제 × 15억원 = 30억원
* AI 맞춤형 보행 보조차 개발·보급 등(과제 관리·운영비 포함)
○ 스마트홈 및 AI 기술과 재가돌봄서비스 융합 기술 상용화: 90억(순증)
- 단기(1년) 솔루션 2개 과제 × 30억원 = 60억원
- 장기(2년) 솔루션 2개 과제 × 15억원 = 30억원
※ 사업 수행기관의 공모·평가 등 과제 관리·운영 포함, 사업 설계 과정에서 과제 수 조정 가능
○ 돌봄 시설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AX 활용기술 상용화: 30억(순증)
- 장기(2년) 솔루션 2개 과제 x 15억 = 30억원
※ 사업 수행기관의 공모·평가 등 과제 관리·운영 포함, 사업 설계 과정에서 과제 수 조정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②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사업은 AI 활용 의료기기 신속 상용화, AI 기반 만성질환 관리 모델 개발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제품 알고리즘 고도화, 허가 이후 병원 내 실증 지원, 급여등재 등을 위한 근거마련 등에 집중 지원하여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2개분야 20개 과제 수행을 위해 200억원이 편성되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을 때 의료기기와 만성질환관리 제품의 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2년), 단기(1년) 과제로 적절히 구성할 계획으로, 사업 적정성 계획 검토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22)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 기술): 답변 생성 전 실시간 검색 기능을 더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돕는 기술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AI 만성질환 관리 모델 개발: 100억원(10개 과제×최대 10억원)
○ AI 의료기기 신속 상용화: 100억원(10개 과제×최대 10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는 신속한 AI 전환 촉진을 위해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산업 분야의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23] 이는 기업·기관들이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AI 응용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제품을 빠르게 보급·확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유형	유형1(145개사)	1년내 즉시 개발가능하며, 시장에 빠르게 침투 가능한 품목
	유형2(155개사)	국민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핵심 품목(2년 지원)
지원방향	- AI 응용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 등 실증 및 양산체계 구축 - 기성 제품의 AI서비스 탑재(AI 모델 설계·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 제품 인증 획득 및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	

자료: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발췌

총사업비는 1조 1,570억 8,300만원으로, 산업부,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과기부, 국방부, 식약처 등 10개의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6~2027년 2년간 300개 과제에 대해 국비 9,340억원을 지원(지원율 80%)하려는 것임.

[각 부처별 사업비 및 과제 현황]

(단위: 개, 억원)

부처	물량	총사업비	국비	부처	물량	총사업비	국비
산업부	65	2,625	2,100	농림부	30	1,125	900
복지부	31	975	780	환경부	15	750	600
해수부	25	937.5	750	국토부	29	1,450	1,160
중기부	45	1,687.5	1,350	과기부	20	1,000	800
국방부	30	833.33	750	식약처	10	187.5	150

자료: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발췌

보건복지부는 소관 복지·보건 분야에서 2년간 총 사업비 975억원(국비 780억원, 민자 195억원) 규모의 AI응용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23) 국정과제 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2026년 예산안에는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예산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계 (c= a+b)	국비기준			민간매칭		
		소계 (a)	'26	'27	소계 (b)	'26	'27
계	975	780	500	280	195	125	70
-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600	480	300	180	120	75	45
-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375	300	200	100	75	50	25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첫째,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바,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사업은 총사업비가 600억원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2025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음.

또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사업은 총사업비가 375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 의결되어 다른 사업과 함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예타면제와 적정성 검토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사업은 각 부처의 소관 업무에 따라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바, 유사 과제에 대한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AI활용 의료기기, 만성질환 관리자·고위험자 관리 모델 개발 등 보건의료 분야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 및 시장진입 등을 지원할 계획임.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사업 개요]

○ (사업목적) AI 활용 의료기기 신속 상용화, AI 기반 만성질환 관리 모델 개발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제품 알고리즘 고도화, 허가 이후 병원 내 실증 지원, 급여등재 등을 위한 근거마련 등을 집중 지원하여 신속한 상용화 지원
○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의료 AI 상용화 지원
- 기재부, 전부처 AX-Sprint 사업 추진방안 부처협의 등: '25.9~11월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계획수립: ~12월
- 전담기관 사업수행(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선정, 관리, 평가 등): '26.1~12월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Type 1 의료기기 인허가 후 신속 상용화 : 50억원(5개 과제×최대 10억원)
- Type 2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및 신속 상용화 : 150억원(15개 과제×최대 10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2026년도 AX Sprint 사업을 통해 국민 활용도와 파급력, 의료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① 고령친화 제품, ② 만성질환 관리, ③ 의료공백 보완 등 3개 분야를 선정하여 9개 과제에 대해 지원할 예정으로, 두 부처 사업간 중복 가능성이 우려됨.[24)]

[식품의약품안전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료기기) 분야]

구분	고령친화	만성·정신질환 관리	의료공백 보완
지원 제품	- AI 기반 멀티모달 기반(음성, 행동, 표정 등 분석) 인지기능 평가 노인 질환 조기진단 소프트웨어 * 치매, 우울증, 파킨슨병 등 - AR/VR 센서 기반 재활치료기기	- 질환별 디지털치료기기(DTx) * 고혈압, 당뇨, 우울증, ADHD 등 - 생성형 AI 기반 질병 진단 보조 챗봇	- AI 기반 치료계획 보조 등 로봇 수술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4)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인허가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주로 제품 알고리즘 고도화, 허가 이후 병원 내 실증 지원, 급여등재 등을 위한 근거마련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범위가 상이하다는 입장임.

이 경우 사업자 선정에 있어 부처간 협력적 검토와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사 분야 과제에 중복 지원될 수 있고, 이는 한정된 재원의 비효율적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대상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공고 또는 공동심사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국가가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및 기업 규모별 자기부담률 차등 적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복지 및 보건 분야 AI 제품·서비스를 1년 또는 2년 내 신속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생산 제품·서비스에 대한 직접 지원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전부 개발 업체에 귀속되는 구조임.

보건복지부는 보조사업자인 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중앙사회서비스원(복지 분야)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 분야)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인데,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상당한 수익을 얻는 경우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5)]

AI 제품·서비스의 특성상 지원 대상 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상용화 성과와 더불어 유지·보수 등 사후적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26)] 해당 수익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27)]

---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6) AI 기반 제품·서비스의 경우 초기 판매 수익 외에도 유지·보수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음.

27) 보건복지부는 국고를 투입하여 제품을 개발한 만큼 일정 기간 동안 공동 활용 관리, 복지 대상자에게 시범적 서비스 제공, 추가적인 학습 등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등 AI 제품 수요자의 제품·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현재 민간 자부담률은 기업 규모와 자본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충분한 기업과 영세 기업에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원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임.

종합하면, 이 사업은 지원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전적으로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 환수제도 적용, 기업 규모별 자기부담률 차등 적용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돌봄 분야는 공공성이 크고 이용자의 구매력이 낮다는 특성이 있어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이 사업의 목적은 AI를 통한 국내 신사업 육성 및 국민 편의성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지나치게 강화된 조건 부여 시 기업 참여 유인 감소가 예상되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추진 및 목적 달성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신규):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은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이하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9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8)]

[2026년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43	4,243	14,957	10,714	252.5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	3,900	3,900	순증

이 사업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36억원 및 연구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 등 300백만원
○ **실시설계비 3,60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내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설립형태, 정원, 교육과정 등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한 세부적인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률안 논의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임.

28) 일반회계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2750-303)(공공보건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국회의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전제로 2026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36억원이 편성되었음.

해당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기 위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분야 복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법률안명 (의안번호)	발의일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희승 의원, 제2201301호)	2024.7.2.	(설립형태) 법률에 의한 법인 (학생선발) 지역 우수인재 선발(60%이상) (학비지원) 국고 및 지자체 전액 지원 (교육병원) 별도의 교육·실습기관 우선 설치 (의무복무) 졸업후 10년으로 하되, 군복무기간 미포함

자료: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췌

이 사업은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고, 설립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025년 10월 기준 해당 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인바, 보건복지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수행가능 여부, 시행시기 및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안 심사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이 사업은 기본조사설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선행절차 이행 없이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었음.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3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정원 등 설계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조에 따르면,[29] 건설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건축사업은 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실시설계비의 경우 기본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평가) 후 해당 사업 추진을 확정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업은 이와 같은 단계별 선행절차 없이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9)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의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설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건축 사업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9. 화장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신규), 임상 3상 특화 펀드 사업(신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려한 사업계획 필요 등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화장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은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419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0)]

내내역사업인 **‘임상 3상 특화 펀드’** 사업은 신약 연구개발에 있어 임상 3상은 비용이 막대하고 회수기간이 길며 실패·규제 리스크가 높아 민간투자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임상 3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화장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임상 3상 특화 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본예산 (A)	추경	예산안 (B)	(B-A)	(B-A)/A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	68,500	71,582	241,435	172,935	252.5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13,277	13,277	52,803	39,526	297.7
화장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41,940	41,940	순증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17,716	17,716	119,418	101,702	574.1
임상 3상 특화 펀드	-	-	60,000	60,000	순증

30) 일반회계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3039-300)(보건산업정책국)

① 2026년도 화장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안에는 미국 OTC 제조소 등록 사업 등 5개의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음.

[화장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화장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41,940백만원

(계속사업)

-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운영 5,141백만원,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 4,179백만원,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1,120백만원,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5,400백만원

(신규사업)

- 미국 OTC 제조소 등록 1,300백만원, AI 활용 안전성 통합정보 제공 및 관리 1,000백만원, **해외 물류기지 구축 18,000백만원**, 온라인 유통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 1,500백만원, 화장품 원료 국산화 4,30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명	사업 내용	편성세부 내역
미국 OTC 제조소 등록	제조소 서류 사전 검토, 제조소 모의 실사 및 현장 컨설팅 등	1,300백만원 - 52백만원 x 25개사
AI 활용 안전성 통합정보 제공 및 관리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화장품 안전성 정보 통합 허브 구축	1,000백만원 - 정보 수집 및 검증: 500백만원 - 정보학습: 300백만원 - 환경조성: 100백만원 - 화장품 수출 통합정보 제공: 100백만원
해외 물류기지 구축	미국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현지 물류거점 확보(LA, 뉴저지)	18,000백만원 - 9,000백만원 x 2개소
온라인 유통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채널 마케팅 컨설팅,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	1,500백만원 - 15백만원 x 100개 기업/브랜드
화장품 원료 국산화	화장품 원료 원료 국산화를 위한 화장품 원료 산업 단계별 전주기 지원	4,300백만원 - 원료 품질시험·검사 지원: 300백만원(10백만원 x 30개사) - 원료 효능·안전성 지원: 1,500백만원(100백만원 x 15개사) - 원료 시설·장비 지원: 2,500백만원(500백만원 x 5개사)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구성

이 중 '해외 물류기지 구축 사업'은 화장품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3위(20.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현지 물류 거점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미국 내 물류기지 2개소 임차를 위해 총 18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5%의 자부담이 부과될 계획임.

② 임상 3상 특화 펀드 사업은 신약 연구개발에 있어 임상 3상[31]의 경우 비용이 막대하고 회수기간이 길어 민간투자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상 3상 등 고위험 구간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모태펀드(보건계정)에 총 1,500억원을 출자하여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에는 출자금 60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공공출자 비율은 60%(정부+국책은행)로, 사업성이 높지 않은 분야에 대한 특화 펀드인 점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의 공공출자 비율인 40% 대비 20% 상향되었음.

[임상 3상 특화 펀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투자대상) 혁신 신약 및 바이오베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임상 3상 추진 기업 * 임상 3상 파이프라인 54건('24년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 조사 결과) ○ (투자규모) ('26) 600억원(총 1,500억원, 정부+국책은행 출자 비율 60%)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첫째, 해외물류 기지 구축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전협의 의무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차비로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려한 예산 집행 및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美 관세조치('25.8월) 등 관세, 환율 변동에 따른 중소화장품 기업의 물류부담 완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내(LA, 뉴저지) 현지 물류거점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31) 임상 1상: 신약 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처음 투여하여 안전성과 약물의 체내 작용 특성을 평가
임상 2상: 실제 환자에게 투여하여 치료 효과(유효성)와 적정 용량을 탐색
임상 3상: 다수의 환자 대상 대규모 시험을 통해 유효성・안전성 최종적 입증 및 허가 신청 근거 확보

[해외물류 기지 구축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국가) 미국 2개 지역(LA, 뉴저지 등) (지원 대상) 미국 수출 희망 500개사 (지원 내용)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선정·지정을 통한 중소 화장품 기업의 물류 지원(Fulfillment 서비스 제공) * 풀필먼트(fulfillment) : 판매자 상품보관, 주문관리, 상품포장, 배송, 판매대행 등을 제공 하는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 - 입고 및 검수(수입 통관 후 팔레트 입고), 상품 보관(팔레트 적재), 패킹(주문 기반 포장, 라벨링), 출고(B2B 팔레트 출고, B2C출고 등), 반품처리(반품 처리, 재포장 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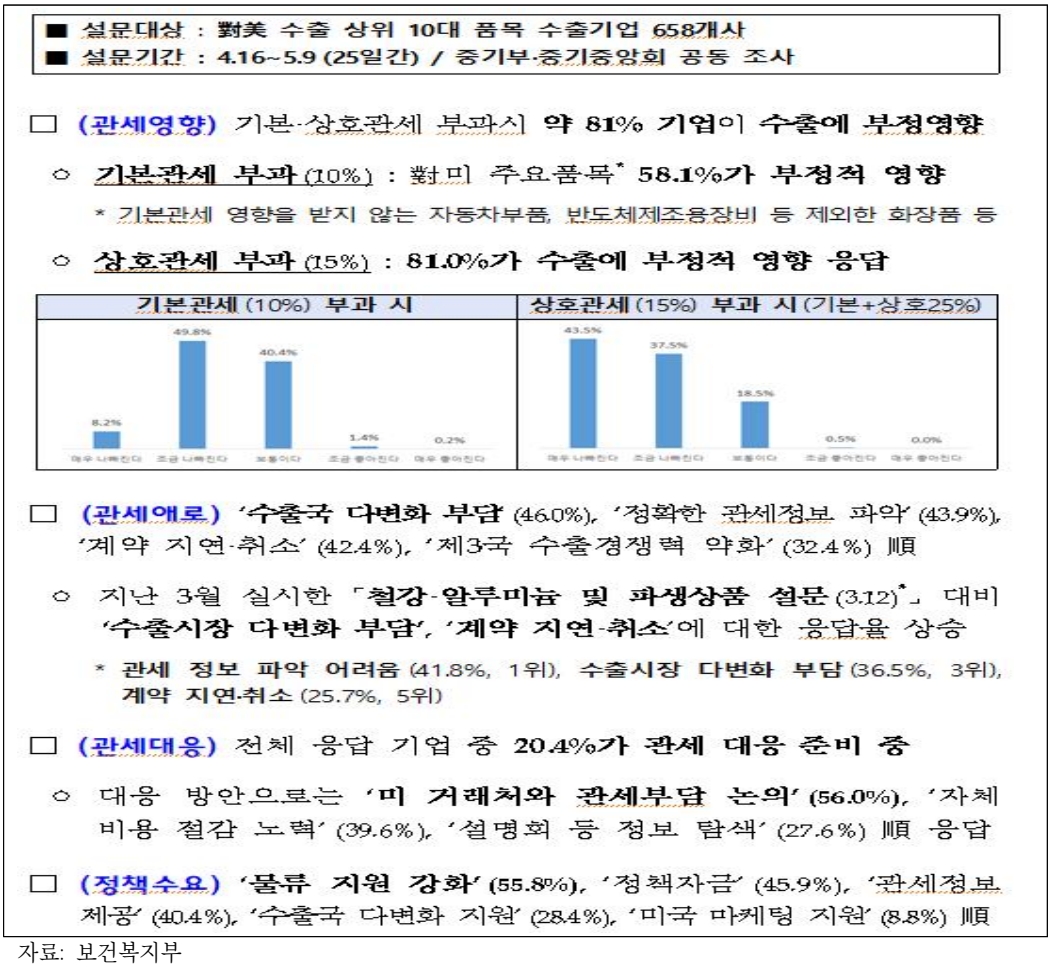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 지원 대상은 미국 수출 희망 500개사로, 국내 중견기업을 포함하되 일부로 한정하고,[32]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할 계획임.

최근 관계부처 합동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25.5.14.)에서 '물류 지원 강화'가 정책수요 1순위로 제시된 점을 고려할 때, 해외 현지 물류거점 확보를 통해 가격경쟁력 제고와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32) 중견기업은 30%(150개사) 이하로 제한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자료: 보건복지부

다만, 예산 심의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우선, 이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물류센터는 임차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회계연도 개시 이후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 수개월이 걸리므로 실제 사업 수행 기간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33]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 제3조[34]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33)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말 사전 공고(나라장터 7일간) 실시 및 국회에서 예산 확정 이후 바로 본 공고 실시하고, '26년 1월말까지 선정평가·계약체결 절차를 완료하여 2026년 1월말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동 센터 운영 개시가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34)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국가 결산도 회계연도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이 사업과 같이 연도 중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됨에도 사업자 선정지연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국가 회계연도와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사업의 연도별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사업 관리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35)]

따라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 집행 및 사업 운영이 회계연도에 맞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음,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르면,[3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최종적인 지원 대상이 해외 진출을 필요로 하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임에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전협의 의무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6년도 예산안에 180억원의 민간보조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였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전 협의가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말에 조사 후 다음연도 초에 협의를 실시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임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취지는 신규 사업의 중복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사후 협의는 사전협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35)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물류센터 운영기간을 사업자 선정('26.3.) 이후 연말까지로 할 경우, 다음연도 사업자 선정시까지 물류센터 운영에 공백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수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1년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6)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회의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둘째, 임상 3상 특화 펀드 사업은 임상 3상에 특화된 별도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이나, 기존 K-바이오·백신 펀드와 출자 목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임상 3상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지적 및 회수자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펀드의 회수자금을 우선 활용한 임상 3상 투자 확대 및 정부 신규 출자금의 감액 조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에 대해 현재 운용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의 경우 민간 벤처 캐피탈의 기피로 인해 임상 1~2상 단계에 집중 투자되고 있어 임상 3상에 특화된 별도의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K-바이오·백신 펀드' 역시 임상 3상을 포함한 신약개발 전 단계를 펀드 결성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신규 펀드의 출자 목적이 기존 펀드와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K-바이오·백신 펀드 투자 대상]

(투자 대상) 신약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 및 백신 분야 기업(1호 펀드)→ 제약 등 바이오헬스 전분야 및 백신 관련 혁신 기술 개발 기업(2~4호 펀드)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로,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 K-바이오·백신 펀드와 관련하여 당초 펀드 결성 목표에 따라 자금을 조속히 모집·결성해 임상 3상 단계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37)]

특히 K-바이오·백신 펀드의 반납자금(회수금)이 1,558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중 1,110억원을 재출자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448억원 역시 현재 추진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 5호(500억원) 및 6호(600억원)에 각각 200억원씩(총 400억원) 출자할 계획임.[38)]

37)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시 "당초 펀드 결성 목표대로 운용사당 2,500억원의 출자금을 조속히 모집 결성하여 K-글로벌 백신펀드 내 자금이 실제 임상 3상 단계의 백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한 바 있음.

38) 2025년 7월 공고, 2025년 10월 운용사 선정 예정

[K-바이오·백신 펀드 회수액 중 재출자 예정액[39]]

(단위: 억원)

계정	회수액(A)	재출자액(B)
보건	1,558	1,110

주) 복지부 출자 약정액 총 2,510억 원 - 복지부 출자금 예산 1,400억 원 = 1,110억 재출자액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국회의 지적 취지와 K-바이오・백신 펀드의 당초 목적을 감안하면, 해당 회수자금을 임상 3상 단계의 투자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각 펀드(5호・6호)에서 임상 3상 단계의 투자가 확대되는 경우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위한 신규 출자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을 검토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39) 2025.8.기준

10.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바이오)(R&D) 사업(신규): 중장기적 성과 달성을 위한 체계적·전략적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바이오)(R&D)’ 사업은 해외 Top-tier 연구자를 국내에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기업이 글로벌 최고 수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8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0]

[2026년도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바이오)(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바이오)(R&D)	-	-	1,800	1,800	순증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바이오)(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바이오): 1,800백만원
- 1,800백만원 = 6명 x 600백만원 x 6/12개월

자료: 보건복지부

이 사업은 임상·허가·GMP 등 제약바이오 전주기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이 국내 바이오기업에서 R&D 과제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수행될 계획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 따라 보건산업전문 R&D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할 예정임.[41]

---

40) 일반회계 -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바이오)(R&D)(3031-633)(보건산업정책국)

4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보건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육성 지원사업
4.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검사와 생산·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5. 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운영·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지원, 교육·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7.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8. 보건 제품 품질 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0.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나. 검토의견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바이오)(R&D) 사업은 바이오 분야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과기부의 유사 사업 구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과기부 사업의 경우 참여 주체가 보다 다양함에도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점, 연간 2억 원 이상 자부담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전략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바이오 분야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인건비 및 프로젝트 비용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국고 70%, 민자 25~30%),[42] 중견기업 기준 국고 6억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2억 5,700만원 수준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의 단가 및 매칭 구조 등을 정책적으로 참고한 것으로, 지원항목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고용부대비용 및 연구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예시)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바이오) 사업 중견기업 기준 과제당 지원내역]

○ 중견기업(7:3) 기준 과제당 연 857백만원(국고 600백만원, 민자 257백만원)
1) 인건비 등 : 520백만원
① 기본급
② 주거·이전비(임차보조금, 항공료, 이사비, 비자 등)
③ 가족·생활보조(가족정착비, 자녀 교육, 생활안정 지원)
④ 고용 부대비용(세금, 4대 보험, 고용주 부담금)
2) 프로젝트 비용 : 337백만원
① 연구설계 및 기획
② 연구활동비(실험재료비, 분석비, 장비비, 실험운영비)
③ 성과 관리비(특허비, 데이터 구축비, 학술활동비)
※ 전체 연구비의 60% 이상 인건비 집행 필요 (과기부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30%의 비율 적용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준용한 과기부 사업의 경우 이 사업과 매칭 구조, 금액[43] 및 지원방식 등은 유사하나 참여 가능주체가 대학·출연연·기업 연구소 등으로 보다 다양함에도 불구하고[44] 최근 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실적]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적(명)	157	152	144	183	119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실적 저하의 원인으로 정부 지원 수준이 실제 인재 유치 및 정착에 필요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45] 이는 현재와 같은 지원 구조만으로는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음.

특히 연간 2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들의 참여 유인을 떨어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임.

이러한 점들은 사업의 참여 기반 자체를 약화시켜 정책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여건과 지원 구조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지 않을 경우 이 사업 역시 참여 저조 등으로 인해 사업 효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참여 주체의 특성과 부담 수준을 균형 있게 반영한 운영 방안 마련 등 중장기적 성과 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4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과기부의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의 연구비는 인건비,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연구생활장려금 등 과제당 3~9억원 수준으로 평균지원액은 약 6억원임.

44)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신청자격>
-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 재단법인 연구기관(「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2025년도 제2차 신규과제 공고」발췌)

45) 「해외 과학자 유치 예산 2배 증가했지만 유치 실적은 감소」, (IT조선, 2024.9.26.)

11.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사업(신규): 제도의 실효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면밀한 설계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사업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및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6)]

[2026년도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299,130	175,569	168,414	△130,716	△43.7
간호인력 취업지원	3,327	3,327	3,977	650	19.5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	-	600	600	순증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 600백만원(신규) - 10,000명(상종·종합병원 진료지원간호사) × 200,000원(보험료) × 0.3(지원율)

자료: 보건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란 「간호법」 제정(2025.6.21.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와 위임하에 일정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간호사를 의미함.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소속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책임보험료 지원을 위해 연간 1인당 6만원 씩 총 6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46) 일반회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4331-300)(보건의료정책관)

[진료지원간호사 개요]

○ (정의)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일반적 위임에 따라 환자의 치료지원 및 시술·처치 등 의료행위 수행을 지원하는 간호사 ○ (경과) 진료지원업무는 의료현장의 의사인력 부족에 따라 그간 음성적으로 수행되었으나 「간호법」 제정('24.9.)에 따라 법제화 ○ (요건) 「간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 임상경력,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은 입법예고 준비 중('25.10.1~11.10 입법예고, '25년 말 또는 '26년 초 시행 예정) ○ (업무범위)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24.2.~)을 통해 인정한 54개 행위를 바탕으로 구체적 행위목록 고시 마련 추진 중(~'25.)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소속 진료지원간호사로 한정되어 있고, 이들의 업무범위가 아직 법령상 확정되지 않아 보상범위와 보험료 산출의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지원대상, 업무범위의 구체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위험과 그에 따른 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책임보험료를 지원(1인당 60,000원/연)할 계획임.

이는 전문적 교육과 임상경력을 기반으로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지원간호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와 간호사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임.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운영 중인 일반 간호사 대상 업무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2천만원, 보험료 연 16,000원)이 존재하고 있으나, 진료지원간호사는 일반 간호사 대비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별도 특화된 보험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예산 심의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이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소속 간호사 중 일부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당초 진료지원 업무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소속 간호사만 수행이 가능하여 대상자 산출시 해당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료지원간호사 및 이 사업 지원인원 현황47)]

(단위: 명)

구분	전체 간호사	진료지원 간호사	
		인원	지원인원
상급종합	75,035	10,375	10,000
종합병원	103,963	7,968	
계	178,998	18,343	

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 진료지원 간호사 현황은 미보유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간호법」 제14조에 따르면,48) 진료지원간호사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진료지원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종합병원 외 의료기관 소속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다음, 향후 시행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49) 및 업무범위50) 등을 보험설계에 반영할 필요 있음.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제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설계가 먼저 추진될 경우,51) 보상 범위와 보험료 산출의 객관성 부족으로 제도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간호사 보험과의 차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중복성과 재정투입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47) 2025.6.기준

48) 「간호법」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②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9) 대상: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병원 소속 진료지원간호사도 포함

50) 업무범위: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의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반영

51) 현재 보건복지부(대한간호협회)는 민간보험사와 진료지원간호사 보험 상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 확대 여부 검토, 업무범위의 제도적 확정, 기존 보험과의 차별성을 반영한 보험 설계 등 보다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12. 경로당 지원(자율)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한 부식비 지원 문제

가. 개 요

‘경로당 지원(자율)’ 사업은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9,100만원(1.6%) 증액된 875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52)]

[2026년도 경로당 지원(자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경로당 지원(자율)	86,203	86,203	87,594	1,391	1.6

[경로당 지원(자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68,546개소×2,958천원×48%×90%-286천원(계수조정)

자료: 보건복지부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2008년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 국고지원을 결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고보조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시·도 포괄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2026년도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음.

5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경로당 지원(자율)(2133-300)(노인정책관)

[경로당 지원현황('25년 예산안 기준)]

구분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지원주체	국고 50%(서울 20%), 지방비 50%(서울 80%) * 지방교부세법 개정('14년)에 따라 2015년부터 특별교부세 미교부			지방비 100%
지원내용 (296만원/年)	33만원 (월 16.5만원 ×2개월)	200만원 (월 40만원 ×5개월)	62.8만원 (정부양곡 20kg (52,340원) × 12포)	공과금, 식사보조비, 물품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 지자체마다 상이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더하여 2024년 11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 중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의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경로당에 대한 부식비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의 집행 후 남는 잔액을 재원으로 부식비를 지원할 계획임.

[「보조금법 시행령」별표2 제81호]

○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24.11.5.시행)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발췌, 법제처

나. 검토의견

경로당 지원(자율)사업은 부식비 지원을 위한 법률상 근거(「노인복지법」)가 마련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집행잔액을 활용할 계획인바, 이는 상당 규모의 예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활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건복지부는 부식비의 필요 소요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음.

2024년 12월「노인복지법」(2026.1.1.시행)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경로당 부식 구입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53]

53)「노인복지법」(법률 제20585호)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①「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행잔액의 부식비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②「보조금법 시행령」의 추가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국비 반영이 곤란하다는 점 등의 사유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별도의 부식비가 편성되지 않았음.

그러나 현행「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르면,[54] 예외적으로 유사 목적에 집행 잔액 활용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경로당 현장에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하기 위해 과도하게 절약하는 경우 오히려 원활한 경로당 운영에 지장을 우려가 있으며, 향후 식사제공이 확대(주3.5회 → 주5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원칙적으로 반납되어야 할 불용액을 다른 용도의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집행의 기본 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특히 집행 잔액을 활용한 지원은 국회 차원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원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사실상 우회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약 50억원 수준의 집행잔액이 국회의 심의 없이 부식비로 집행될 수 있음.

[경로당 지원(자율)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실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67,250	67,250	66,112	5,179
2023	70,444	70,444	69,237	5,929
2024	78,785	78,785	80,130	4,971
2025.7.	86,203	86,203	69,183	-

자료: 보건복지부

54)「보조금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지자체장이 보조사업 원래 목적 달성 및 예산 절감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보조금법」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경로당 부식비 지원의 경우 집행잔액(불용액)을 활용하는 임시적 방식을 지양하고 새로이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필요 소요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사를 거침으로써 지원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지 출>

13.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사업(신규):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 등의 경제적 피해 예방 및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18억 7,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5)]

[2026년도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치매관리체계구축	178,235	178,235	184,928	6,693	3.8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	-	1,874	1,874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사업비 전액(18억 7,4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는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업 관리 주체, 이용 대상자 선정, 신탁재산의 범위, 서비스 이용 기간 등 세부적인 사업 설계와 재산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25.8.~)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관리 주체 및 운영 방식 등도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임.

55) 국민건강증진기금 - 치매관리체계구축(2234-300)(노인정책관)

보조금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신탁 계약 상담, 계약서 검토, 계약 체결, 재산관리 실무, 정책·제도적 개선사항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 29명 고용을 위한 인건비 14억 800만원와 사업비 4억 6,600만원이 반영되었음.[56]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인건비 : 1,408백만원
* 29명 × 평균 인건비 약 48.6백만원 × 보조율 약 100%
○ 사업비 : 466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910,898명으로 2030년에는 1,212,31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수]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30년	2050년
65세 이상 노인	8,577,830	9,010,545	9,462,270	9,955,476	10,585,254	13,056,326	19,003,889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785,089	825,857	867,803	910,898	970,759	1,212,315	2,258,915
치매유병률(%)	9.15	9.17	9.17	9.15	9.17	9.29	11.89

주) 2021~2024년은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청, 각년도), 2025년부터의 자료는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22) 기반으로 「2023년 치매역학조사」(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2024) 성·연령별 유병률 적용하여 산출
자료: 보건복지부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노인학대 10,932건 중 경제적 학대는 298건에 그치지만,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의존·신뢰관계 및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낮은 신고율을 고려하면 실제로 발생하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57]

56)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 특성상 관리수탁자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국민연금공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57) 이현주, 「노인은 왜 경제적 학대의 대상이 되는가」, 이현주, KCGAT((사)후견신탁연구센터), <오피니언 제7호>, 2021.3.

[연도별·유형별 노인학대건수]

(단위: 건, %)

구분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2020	3,917	4,188	231	431	760	223	53	9,803
2021	4,390	4,627	260	406	691	204	46	10,624
2022	4,431	4,561	259	397	689	169	36	10,542
2023	4,541	4,531	265	352	758	165	26	10,638
2024	4,797	4,784	272	298	610	131	40	10,932

자료: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췌

나. 검토의견

첫째,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전문인력 채용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2개월분이 모두 반영된 보조사업 내 인건비 및 사업비 예산 규모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에 따르면,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29명) 및 사업비로 총 1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6년 1월부터 사업이 즉시 착수된다는 전제를 반영한 것임.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사업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비 및 인건비의 별도 조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재 사업 수행 체계 등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사업관리 주체와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필요 인력 및 사업비 규모의 구체성이 미흡한 상황임.

더욱이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58] 및 신규 인력 채용 절차가 수반되는 신규 보조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인건비 및 사업비는 채용 및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간에 한정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건비 및 사업비 일부는 실제 소요분을 반영해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8)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경우에도 「보조금법」 상 예외 규정 적용에 따라 별도 사업자 공모 없이 국민연금공단을 보조사업자로 정한 바 있어 이 사업 역시 보조사업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임.

둘째, 이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어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법령상 규정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등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음.[59]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바,[60]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 역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61]

---

59)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60)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1)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기획 또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정부예산안 제출시기 및 협의처리 기한 등을 고려하여 매년 5월 말까지 협의 요청을 완료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정부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설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정부 예산에 반영하려는 취지라 할 수 있음.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

○ (사회보장)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사람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자료: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25.5.

특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2025.1.)에서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완료한 이후에만 재정당국에 관련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절차가 2025년 9월부터 시작된바, 이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유사 사업 추진시 사전 협의 절차가 정부예산 편성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도록 사전 협의 절차가 정부 예산 편성 이전에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와 내부 검토 절차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4. 난임 극복 지원 사업: 사업대상자가 유사한 지방이양 사업과의 통합 방안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난임 극복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원, 난임시술 의료의 질 강화를 위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통계관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157억 5,700만원(340.3%)이 증액된 203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62)]

[2026년도 난임 극복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모자보건사업	27,643	31,338	34,612	6,969	25.2
난임 극복 지원	4,430	4,430	20,387	15,757	340.3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531	531	531	-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1,951	1,951	2,156	205	10.5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내내역사업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계획안은 전년과 같은 5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내역사업인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 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억 500만원(10.5%) 증액된 2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62) 국민건강증진기금 - 모자보건사업(2535-302)(인구아동정책관)

[난임 극복 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531백만원**
- (산출) 531명 × 1백만원 × 2회 × 50%(보조율)
○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2,156백만원**
- 중앙 1개소 x 666백만원 x 100%(보조율)
- (권역 11개소 x 248백만원 + 권역 2개소 x 124백만원) x 50%(보조율)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582백만원
- (산출) (남) 4백명 x 10% x 30만원 x 48%(보조율), (여) 6천명 x 10% x 200만원 x 48%(보조율)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 330백만원
○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036백만원
- (산출) 110명 x 185만원 x 12개월 x 42.5%(보조율)
○ 난임 극복 지원 운영 및 모니터링 등: 200백만원(신규)
- (산출) 사업 기술지원 및 분석, 모니터링 등 100백만원,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추출·통계관리 등 10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제8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23.3.28.) 및「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발표('23.7.27.)[63]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음.

이 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부부가 만혼 등의 이유로 기존에 보존한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보조생식술로 시술을 받아 아이를 갖고자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개요]

○ (목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 지원
○ (사업주체 및 지원조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경상보조(보조율 50%)
○ (대상) 난임 진단(1년 기간 필요)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내용)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 (지원금액 및 횟수) 회당 1백만원 지원, 부부당 2회까지

자료: 보건복지부

63)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 중 발췌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❶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❷ 난임지원 확대, ❸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② 중앙 및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모자보건법」제11조의4[64]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운영되고 있고,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전국에 총 1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실수요자의 대부분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이므로, 지방이양 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사업 대상자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중복성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 첫 해인 2024년의 실집행률은 4.2%에 그쳤으며, 2025년 8월말 기준으로도 3.3%에 불과한 상황이고, 예산편성 인원 대비 지원인원 역시 2024년 22.5%, 2025년 8월말 기준 17.1%에 그치고 있음.

64)「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8.			
	예산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실집행액] (B)	집행률 (B/A)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550	550 [23]	531	531	318.6 [17]	60.0 [3.3]

자료: 보건복지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계획인원 대비 지원인원]

(단위 : 건)

구분	2024년	2025.8.
계획건수	550	531
지원건수	124	91

자료: 보건복지부

이는 이 사업이 ‘난임진단 전에라도 기존에 보존한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까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의 특성상 실수요자는 결국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실제로도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이 사업 주요 수요층은 난임 진단 전이 아닌 난임 진단을 받은 자가 대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이양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므로 신청이 매우 저조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각 권역센터별 동일 금액 지원 방식에서 심리상담 건수 등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2026년도의 경우 11개소 권역센터에 연간 각 1억 2,400만원(2억 4,800만원×보조율 50%)을 지원할 예정임.[65]

그런데 2025년 6월말 기준 각 센터별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에 신규 설치된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상담센터를 기준으로 최다 4,647건, 최소 2,040건을 나타내고 있고, 상담인력 1인당 총 상담건수도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

[각 센터별 연간 상담건수, 상담인력 및 1인당 상담건수 현황]

(단위 : 명, 건)

센터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6.
중앙	상담 인력	4	4	3	3
	총 상담 서비스 건	6,131	6,019	4,938	2,062
	1인당 서비스 건	1,533	1,505	1,646	687
대구	상담 인력	3	3	3	3
	총 상담 서비스 건	6,014	6,284	5,946	2,245
	1인당 서비스 건	2,005	2,095	1,982	748
인천	상담 인력	3	3	3	3
	총 상담 서비스 건	7,822	8,216	7,052	4,647
	1인당 서비스 건수	2,607	2,739	2,351	1,549
전남	상담 인력	3	3	3	2
	총 상담 서비스 건	6,178	4,569	4,335	2,040
	1인당 서비스 건	2,059	1,523	1,445	1,020
경기도	상담 인력	3	3	3	3
	총 상담 서비스 건	5,714	5,927	5,630	2,233
	1인당 서비스 건	1,905	1,976	1,877	744
경상북도	상담 인력	3	3	3	3
	총 상담 서비스 건	5,003	6,009	5,290	2,795
	1인당 서비스 건	1,668	2,003	1,763	932
서울	상담 인력	- ('23년 개소)	4	5	5
	총 상담 서비스 건		1,292	5,490	3,300
	1인당 서비스 건		323	1,098	660
경기북부	상담 인력	- ('23년 개소)	3	3	4
	총 상담 서비스 건		687	4,758	2,617
	1인당 서비스 건		229	1,586	654
경북서부	상담 인력	- ('24년 개소)		1	2
	총 상담 서비스 건			458	1,053
	1인당 서비스 건			458	527
서울서남	상담 인력	- ('24년 개소)		3	3
	총 상담 서비스 건			454	3,224
	1인당 서비스 건			151	1,075

주) 전북·경남은 2025년 신규개소로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각 센터별로 연간 상담실적, 1인당 상담건수의 차이가

65) 2026년 신규 설치 예정 2개소는 각 6,200만원(1억 2,400만원×보조율 50%) 지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상담의 수요량과 관계없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하여는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되 나머지 지원액에 대하여는 전년도 심리상담 수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5.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차등 지원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호스피스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호스피스전문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9,200만원(0.8%) 증액된 111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66]

[2026년도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당초 (A)	수정	계획안 (B)	(B-A)	(B-A)/A
국가암관리	83,570	83,570	126,640	43,070	51.5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11,010	11,010	11,102	92	0.8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ㅇ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 6,966백만원**
- (입원형) 101개소 x 평균 41백만원
- (가정형) 39개소 x 평균 45백만원
- (자문형) 42개소 x 평균 20백만원
- (요양병원) 6개소 x 평균 25백만원

ㅇ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2,242백만원
- 인건비 : 1,714백만원(12개소x2명=24명)
- 운영비 :528백만원

ㅇ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 지원: 777백만원
- 인건비 : 508백만원(12명)
- 운영비 : 269백만원

ㅇ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운영 지원: 1,117백만원
- 인건비 : 501백만원(11명)
- 운영비 : 616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66)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암관리(2756-301)(공공보건정책관)

이 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스피스 대상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환자 및 가족에 대해 사별가족 프로그램, 영적 돌봄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은 호스피스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구분됨.

[유형별 호스피스전문기관 개요]

구분	운영방식	개소
입원형	-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24시간 전문 의료진의 돌봄과 증상 관리, 심리·사회·영적 지원, 자원봉사, 임종 관리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104
가정형	- 완화의료팀이 환자와 가족의 집으로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	39
자문형	-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담당 의료진의 변경 없이, 호스피스 팀이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전인적 돌봄과 상담, 증상 관리, 임종 준비 교육 등을 제공	43

자료: 국립암센터(www.hospice.go.kr),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입원형을 제외한 가정형·자문형 기관에 대해서는 균등지원을 하고 있는바,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이 법상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방식 도입 등 사업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29조[67]에서는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6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시기·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해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근거하여 매년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024년도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 결과]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유형별 전문기관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최우수	112	43	32	37
우수	62	51	6	5
보통	2	2	-	-
미흡	5	5	-	-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제3항[68]은 이러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입원형을 제외한 가정형·자문형 기관의 경우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균등 지원하고 있음.

[입원형 전문기관 차등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평가결과 / 말기환자 등록 건수	최우수(25백만원)	우수(20백만원)	보통(15백만원)
250건 이상(20백만원)	45	40	35
100 이상~250건 미만(17백만원)	42	37	32
100건 미만(15백만원)	40	35	30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인건비(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조 위주의 지원 구조임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균등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근거법인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원칙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입원형 기관에 대해서는 실제로 차등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즉 가정형·자문형 전문기관에도 평가결과를 반영한 차등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형태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한 보조금 차등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응급의료기금】

<지 출>

16.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신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치료시설, 장비 등 의료여건 개선 및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9]

[2026년도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62,927	75,033	176,476	113,549	180.4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	-	100,000	100,000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융자대상) 모든 응급의료기관(416개소, 2025. 7월기준)
* 권역센터 44개소, 지역센터 137개소, 지역기관 235개소
○ (융자금액) 권역센터 40억원, 지역센터 20억원, 지역기관 10억원 이내
* 신청금액 접수 후, 총 융자금액(1,000억원) 내에서 병원당 세부 한도액 조정
신청금액이 총 융자금액(1,000억원) 미달 시, 최고 한도액 조정

자료: 보건복지부

69)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2833-303)(공공보건정책관)

현행 「응급의료법」 제21조[70]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416개소)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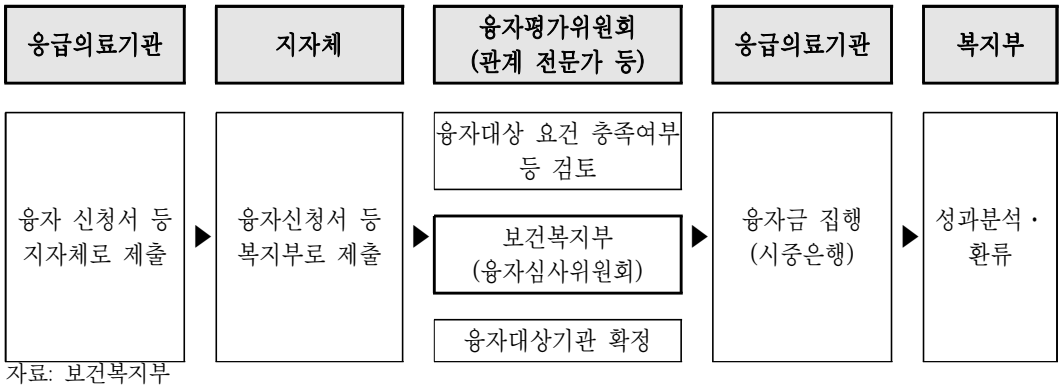
[응급의료기관 종별 현황]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416개소	44개소	137개소	235개소

주) 2025.7.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융자 시행 절차를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융자를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 보건복지부 내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융자대상 요건 및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금이 집행되는 형태임.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 사업수행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70) 「응급의료법」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나. 검토의견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완화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전 수요조사 미흡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등으로 인한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완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일시적 경영 악화로 인한 진료 중단이나 인력 축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점을 고려할 때 융자를 통한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지원 규모와 기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수요조사와 기관별 경영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융자대상, 대출한도·금리·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만 설정되어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예산 심의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 세부내역]

사업명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자금출처	응급의료기금(공자기금예수금)
지원규모	1,000억원
대상	모든 응급의료기관 413개소('25.9.)
대출한도	권역 40억원 / 지역 20억원 / 지역기관 10억원 이내
지원비율	100%
대출기간	15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고정금리 1.5%(취약지 1%), 취급수수료 포함
대출조건	15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집행기관	시중은행 중 선정 예정
신청기간	미정

자료: 보건복지부

우선, 과거 유사 융자사업에 비해 낮은 대출금리(고정 1.5%)를 적용[71]하고 있고 융자신청 목적(대환 대출, 장비비, 수리비, 인건비 등)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불필요한 융자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71) (2015년) 메르스 융자: 변동 2.47%, (2020년) 코로나 융자: 변동 2.15%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사용 범위 내에서 신청 범위를 넓게 인정해 실질적 운영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나, 불필요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기관 선정 및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지원방식 측면에서, 일정 기간 신청을 받은 후 융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개별 의료기관의 시급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지원의 시의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담보·신용 여부 등 융자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재정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담보부 융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융자를 통해 발생하는 혜택이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기관이 분담하도록 지원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72)]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수요 방지와 재정 건전성,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72)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융자 사업에 대한 본인부담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17.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협진 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취약지 응급환자의 처치·전원·영상판독 등 자문을 위하여 거점병원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같은 7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73]

[2026년도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2,810	22,810	42,446	19,636	86.1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754	754	754	-	-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ㅇ (시스템 유지보수) 421백만원
ㅇ (클라우드사용) 113백만원
ㅇ (거점병원 운영비) 220백만원(11개소x20백만원x100%)

자료: 보건복지부

이 사업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 74개소와 거점병원 11개소 간 네트워크(이하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의 기능 고도화·유지보수·관리 사업(민간위탁사업, 보조율 100%)과 11개소의 거점병원 운영비 지원 사업(지자체경상보조, 보조율 100%)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 수행체계를 보면, 응급의료기관은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을 이용하여 거점병원에 환자의 처치·전원·영상판독 등에 대해 협진을 요청(자문)하고 거점병원은 자문에 응하는 체계임.

73) 응급의료기금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2833-316)(공공보건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취약지역 응급환자 진료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협진 실적이 없는 거점병원에 대해서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협진 실적을 고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경우 2015년 실시 이래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의 사용대상인 협약기관은 2015년 26개소에서 2024년 74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을 실제 사용하는 기관 수 및 비중은 2015년 80%에서 2024년 20%로 10년 사이 약 1/4로 감소하였음.

구체적으로 2024년의 경우 협약기관 74개소 중 1건이라도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의 사용실적이 있는 기관수는 15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59개소는 연간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실사용기관 수 및 비중 현황]

(단위: 개소, %, 건)

구분	협약기관 수(A)		실사용기관 수(B)		실사용기관 비중(B/A)		협진 건수
	자문기관	의뢰기관	자문기관	의뢰기관	자문기관	의뢰기관	
2015	6	26	6	20	100	80	204
2016	11	73	9	35	80	50	648
2017	10	67	8	37	80	60	936
2018	10	71	9	29	90	40	1,027
2019	10	74	10	49	100	70	1,798
2020	11	75	10	37	90	50	1,706
2021	11	76	8	32	70	40	1,316
2022	11	76	8	21	70	20	743
2023	11	76	8	18	70	20	1,163
2024	11	74	6	15	50	20	971
2025.8.	11	72	4	13	40	20	700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거점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의 실집행도 매년 부진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실제 원격협진 실적이 전혀 없는 거점병원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편성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2	200	74	37.0
2023	200	85	42.5
2024	220	89	40.5
2025.7.	220	7	3.2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구성

[거점병원 협진 건수]

(단위: 건)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8,709	1,027	1,798	1,706	1,316	743	1,163	971
목포한국병원	4,816	835	1,002	867	667	305	540	600
원주세브란스병원	1,655	32	230	246	341	247	336	223
제주한라병원	803	26	88	219	133	108	172	57
안동병원	367	32	168	116	21	12	14	4
충북대병원	345	2	147	105	32	12	37	10
성가롤로병원	284	4	43	24	58	30	48	77
길병원	204	9	63	41	62	24	5	-
단국대병원	136	86	44	6	-	-	-	-
춘천성심병원	99	-	6	75	2	5	11	-
인하대학교병원	-	-	-	-	-	-	-	-
원광대학교병원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이 사업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을 통해 진료정보 및 X-ray・MRI 등 영상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해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응급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거점병원에 대한 실적 기반 인센티브 마련, 시스템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의료진 대상 정기적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74)]

7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거점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해당 권역 취약지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구조로 거점병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나, 응급실 인력부족에 따른 대응여력 부족과 적극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부재로 참여가 저조한데, 이는 응급원격협진은 의료진 본인이 근무하는 응급실환자가 아니라 원격지의 취약지 의료기관에 내방한 환자를 양 병원간에 협진을 하는 것으로 거점병원 의료진은 인센티브 없이 부가적인 일이 늘어났다고 여기는 경향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이에 따라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인건비 집행기준 완화(인건비 사용비율 30→최대 70%까지) 및 협약기관 수당확대(월7→15만원), 운영비 집행기준 개선 등 집행지침을 개선하여 참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25년 7월~)하고, 권역내 거점센터가 없는 경우 권역 외 기관간에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25.10

둘째, 취약지 응급협진망 앱의 경우 연간 활용실적이 전혀 없어 사업 성과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등 이 앱의 지속 운영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PC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더하여 취약지 응급협진망 앱을 운영중에 있음.

그러나 2024년 및 2025년 8월말 기준, 이 앱을 활용하여 의뢰요청한 환자 수는 0건으로 협약기관이 협진을 의뢰하거나 자문 시 이 앱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취약지 응급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성과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앱 사용 실적]

(단위: 명, 건)

구분	협진		전원	
	의뢰요청 사용 환자 수[1]	진행 과정 사용 건수[2]	의뢰요청 사용 환자 수[1]	진행 과정 사용 건수[2]
2021	50	587	106	175
2022	26	325	10	158
2023	5	352	5	330
2024	-	87	-	1,345
2025.8.	-	5	1	886

주 1) 의뢰요청 사용 환자 수: 협진, 전원 의뢰요청 시 앱을 사용하여 의뢰한 환자 수
2) 진행 과정 사용 건수: 협진, 전원 진행 과정 중 앱을 사용하여 확인한 건수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용앱보다는 이미 익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상용앱과 전화를 활용하면서 앱사용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함에도 앱 운영(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조제1항[75]을 고려하여 성과가 저조한 앱은 폐기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

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임.

75)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3조(모바일 앱의 정비) 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운영성과 측정이 완료된 모바일 앱 중 성과가 저조한 앱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준에 따라 폐기, 보완대책 시행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앱에 대해서는 운영성과가 저조하여도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 구축 · 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2. 국민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가 차원의 안보 · 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국가경제의 심각한 손실이나 국민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응급원격협진 시스템의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앱 운영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집행액	20	24	30	30	30	30

주) 집행액: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운영 및 유지관리는 전체 시스템(웹, 앱)을 통합하여 전산용역을 수행 중으로, 앱에 관련된 집행 내역을 기반으로 작성

자료: 보건복지부

4. 대국민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
6.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폐기가 곤란하다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5조에 의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국민연금기금】

<지 출>

18.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편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 등을 포함한 국민에게 노후준비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15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76)]

[2026년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노후준비서비스	1,563	1,563	1,563	-	-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 4월부터 노후준비서비스(舊 노후설계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였는데, 2009년 1월 「국민연금법」 제46조의3의 신설로 이 사업이 법제화됨에 따라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매년 국민연금기금 지출계획에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음.

76) 국민연금기금 - 노후준비서비스(7432-440)(인구아동정책관)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서비스제공자 양성: 2억 1,100만원
가. 전문강사 역량강화 과정 운영: 35명 × 1,028천원 = 36백만원
나. 전문 상담직원 역량강화 과정 운영: 92명 × 631천원 = 58백만원
다. 서비스제공자 교육훈련 과정 운영: 200명 × 585천원 = 117백만원
○ 상담서비스 제공: 4억 6,400만원
가. 상담콘텐츠 제작: 8종 × 22,000천원 = 176백만원
나. 상담사례 전파용 홍보책자 등 제작: 40,000부 × 2,075원 = 83백만원
다. 고객 정보제공용 소책자 제작·발송: 7,000부 × 1.3천원 = 9백만원
라. 상담서비스 제공 및 상담 품질관리(173백만원)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여비 등: 92명 × 62,500원 × 12월 = 69백만원
· 상담사 모니터링 및 상담고객 행태변화조사 등: 92명 × 1,130천원 = 104백만원
마. 관계기관 및 공사연금 등 정보연계 운영: 20명 × 288천원 × 4회 = 23백만원
○ 교육서비스 제공: 8억 8,800만원
가. 교육콘텐츠 제작: 35명 × 885천원 = 31백만원
나. 교육서비스 제공 및 교육품질관리: 민간강사 강의료 69명×200.3천원×45회=622백만원
· 전문강사 여비: 35명 × 61.1천원 × 6회 × 12월 = 154백만원
· 강의 모니터링: 104명 × 317천원 = 33백만원
다. 상설교육센터 운영: 7개소 × 6,857천원 = 48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노후준비서비스사업은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 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목적 및 재정의 안정성 등 기금운용원칙을 고려하여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당초 이 사업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 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는데, 2015년 6월「노후준비 지원법」제정으로「국민연금법」제46조의3도 함께 개정되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대상이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으로 확대되었음.

[「국민연금법」 개정 전·후 비교]

법률 제9385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36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발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예산은 계속해서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설치된 재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77]

즉 기금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시책인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78]

특히 상담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2024년 39.5%, 2025년 6월말 기준 47.2%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 사업의 경우 전 국민을 위한 「노후

77)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78)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준비 지원법」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회계로 사업을 이관·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노후준비서비스 중 상담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A)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미가입자(B)	
				B/A
2022	104,326	88,506	15,820	15.2
2023	50,975	40,273	10,702	21.0
2024	12,632	7,639	4,993	39.5
2025.6.	7,420	3,918	3,502	47.2

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 효율화로 '23. 6. 30.부로 일반상담 업무 종료
자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수입은 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억원(8.3%) 증가함.[1)]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428	428	464	35	8.3
총수입	428	428	464	35	8.3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지출은 8,122억원으로 전년 대비 632억원(8.4%) 증가함.

문의: 민승환 예산결산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7,489	7,502	8,122	632	8.4
총지출	7,489	7,502	8,122	632	8.4

나. 예산안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억원(8.3%) 증가함.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27	427	462	36	8.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0.2	0.2	0.2	0.02	12.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6	1.6	1.2	△0.4	△23.9
합 계	428	464	464	35	8.3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122억원으로 전년 대비 632억원(8.4%) 증가함.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6,816	6,829	7,569	753	11.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673	673	552	△121	△18.0
합 계	7,489	7,502	8,122	632	8.4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5개(350억 9,6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은 미래 의료기기 선도기술을 확보 및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하고 보건안보 대응역량 확보를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4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중독자 데이터 기반 마약 중독 재활기술 개발연구사업(R&D)’은 마약류 중독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약 중독 단계별 뇌변화 모니터링, AI 기반 재활 및 재활 예측 모델 개발, 마약류 중독·재발 기전 예측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37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R&D)’은 바이오헬스 첨단제품의 신속제품화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제품의 품질·성능·안전성·유효성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민간 규제과학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 및 국민 건강·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5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AI 기반 독성예측 평가기술 개발연구(R&D)’는 의약품에 대한 기존 부작용(독성) 평가 결과의 개인별 적용 한계 극복을 위해 국내 의약품 복용 환자 대상 의료기관의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부작용(독성)예측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59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마지막으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식품·의료기기 등)’은 산학연 역량을 집결하고, 유망 AI 융합분야의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150억원이 편성되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4,950
2	중독자 데이터 기반 마약 중독 재활기술 개발연구(R&D)	3,755
3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R&D)	5,475
4	AI 기반 독성예측 평가기술 개발연구(R&D)	5,916
5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식품・의료기기 등)	15,000
총지출		35,096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운영’ 사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사업,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 등 총 18개임.[3)]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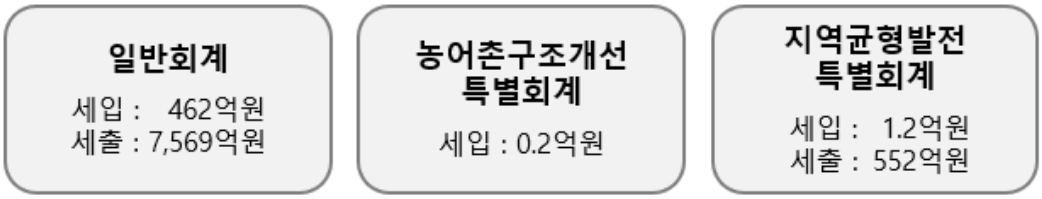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운영	2,011	2,950	939	46.7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28,530	41,502	12,972	45.5
3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621	2,163	542	33.4
4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5,193	7,837	2,644	50.9
5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4,541	6,734	2,193	48.3
6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2,040	3,320	1,280	62.7
7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2,077	4,998	2,921	140.6
8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572	6,647	3,075	86.1
9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2,516	3,291	775	30.8
10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R&D)	19,381	25,748	6,367	32.9
11	화장품 글로벌 규제대응 안전성평가 기술개발(R&D)	1,800	2,960	1,160	64.4
12	백신 품질관리 동물대체 평가기술 기반 구축(R&D)	1,838	2,450	612	33.3
13	한미 차세대 항암제 평가 기술개발 국제 공동연구(R&D)	1,800	2,400	600	33.3
14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R&D)	750	1,000	250	33.3
15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정보화)	12,512	17,739	5,227	41.8
16	식의약 규제과학혁신지원 강화	547	11,419	10,872	1,987.6
17	안전평가원 관리운영	5,608	11,794	6,186	110.3
18	위해사범중앙조사단운영	1,031	1,873	842	81.7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특히 희귀·필수의약품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품목 주문생산 확대, 극소수요 자가치료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등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전공급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지원 예산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높음에도 실제 수납액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고 세입예산안을 산출하여 과소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 수납실적을 반영한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식품·의료기기)’은 정부 지원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전부 업체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수익에 대해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 규모별 자기부담률 차등 적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 계상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사업의 보조금 및 용역연구비 등의 집행잔액·반납액으로 구성되는 비목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200만원(3.0%) 증액된 3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1)]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3,056	3,056	3,148	92	3.0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높음에도 실제 수납액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적용하여 세입예산안을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수납실적과 증가추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예산액 대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24.5%, 2023년 158.2%, 2024년 168.7%, 2025년 7월말 기준 189.3%에 달하고 있어 연례적으로 세입예산이 과소편성되고 있음.

1)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기획조정관)

[2022~2026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2,445	2,445	2,445	3,691	3,043	124.5	646	-
2023	2,673	2,673	2,673	4,786	4,230	158.2	556	-
2024	2,759	2,759	2,759	5,082	4,655	168.7	427	-
2025.7.	3,056	3,056	3,056	6,550	5,784	189.3	-	-
2026(안)	3,148	-	-	-	-	-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산출 시 단순히 전년 대비 3%의 증가율만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데, 이는 실제 수납액의 연도별 증가율이 2023년 39.0%, 2024년 10.0%, 2025년 7월 기준 24.3%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보수적인 산정방식으로 보임.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산출 내역]

○ 2025년 예산(3,056백만원) × 증가율 3% = 3,148백만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 증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8.
수납액	3,043	4,230	4,655	5,784
전년대비 증가액	1,149	1,187	425	1,129
전년대비 증가율	60.7	39.0	10.0	24.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 재구성

세입예산액을 실제 수납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하게 계상하는 것은 세입·세출 간 괴리를 심화시키고 재정추계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수납액 규모와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한 후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른 현지실사 예산의 적정 규모 산정 필요

가. 개 요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은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및 HACCP 적용 등을 통한 수입식품 생산단계 안전 위해요인 분석 및 차단, 국내 생산식품 수출위생관리 지원 확대 등 수출입식품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800만원(△5.1%) 감액된 20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2)]

[2026년도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2,133	2,133	2,025	△108	△5.1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823백만원(전년동)**
- (자체) 해외제조업소 점검(70개소): 285백만원, (위탁) 해외제조업소 점검(130개소): 536백만원
- 현지실사 장비 구입: 1.8백만원(온도계, 조도계 등), 현지실사 회의 등 업무수행경비: 0.7백만원
- 사전안전관리 회의 개최 등 업무추진 70천원×10회 = 0.7백만원

○ 현지실사 기반구축: 189백만원
- 현지실사 전담인력(에디터 3명) 인건비: 167백만원, 현지실사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 등: 22백만원

○ 수입식품 HACCP 적용: 371백만원
- 수입김치 HACCP 의무적용 등: 108백만원, 수입김치 HACCP 사후관리 등: 263백만원

○ 수출입 식품 동등성 확보 및 안전성 지원: 643백만원
- 동물성 식품 수출국 안전관리 실태 현지조사: 140백만원
- 동물성 식품 동등성 평가 운영비: 120백만원, 동등성 평가지원 전문분석요원(에디터 1명): 55백만원
- 수출 상대국 규제대응 및 수출지원: 50백만원, 식품안전담보사업: 278백만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 일반회계 -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1515-301)(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업을 통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3]에 따라 수입식품등[4]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5]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제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에 대해 ① 등록 수입식품등의 무작위표본검사 제외, ② 우수수입업소 명칭, 소재지 등의 식품안전나라 등 게재, ③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및 ④ 등록한 수입식품등의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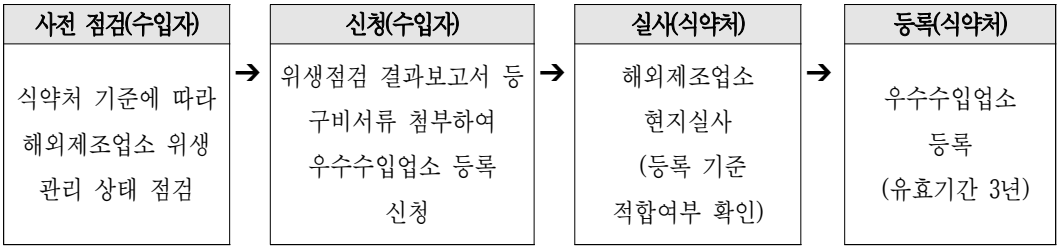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⑨ 우수수입업소의 등록대상과 등록 ·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 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함.

5)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의 생산 · 제조 · 가공 · 처리 · 포장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 · 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함)을 말함.

[우수수입업소 등록절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검토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입업체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위생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할 계획인바, 이에 따른 현지실사 소요 감소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수입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내에 안전한 수입식품의 유통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최근 5년간 우수수입업소가 등록한 수입식품등의 수입실적은 2020년 5,698건(1억 8,968만 달러)에서 2024년 1만 922건(2억 6,287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우수수입업소 수입식품등 수입건수 및 수입금액 현황]

(단위: 건, 천$)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건수	5,698	6,331	6,168	7,126	10,992
금액	189,675	233,818	233,799	249,734	262,86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시기인 2016년에는 20개국 140개소에서 1,075개의 제품이 등록된 후 2024년에는 12개국 107개소에서 803개의 제품이 등록되는 등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25년 8월 기준 16개국 138개소에서 991개의 제품이 등록되어 실적이 개선된 측면이 있음.

[우수수입업소 등록현황]

(단위: 개소, 개)

연도	우수수입업소 수	국가 수	제품 수	비 고
2016	140	20	1,075	식품(840개), 첨가물(9개), 건강기능식품(8개), 기구・용기(218개)
2017	152	22	1,037	식품(861개), 첨가물(6개), 건강기능식품(15개), 기구・용기(155개)
2018	129	19	758	식품(719개), 첨가물(4개), 건강기능식품(22개), 기구・용기(13개)
2019	106	17	634	식품(591개), 첨가물(3개), 건강기능식품(28개), 기구・용기(12개)
2020	99	14	641	식품(600개), 첨가물(3개), 건강기능식품(26개), 기구・용기(12개)
2021	94	13	619	식품(583개), 첨가물(3개), 건강기능식품(22개), 기구・용기(11개)
2022	86	12	604	식품(569개), 첨가물(3개), 건강기능식품(21개), 기구・용기(11개)
2023	88	12	652	식품(625개), 첨가물(3개), 건강기능식품(24개)
2024	107	12	803	식품(756개). 첨가물(3개), 건강기능식품(17개), 축산물가공품(9개), 기구・용기(18개)
2025.8.	138	16	991	식품(945개). 첨가물(3개), 건강기능식품(17개), 축산물가공품(8개), 기구・용기(18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데, 주요내용은 수입업체가 해외 위생평가기관의 위생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우수수입업소로 신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6)]

이와 같이 등록 절차가 개선되는 경우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의 실제 소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제도개선에 따른 현지실사 소요 감소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현지실사를 위한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7)8)]

---

6)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식약처 고시) 개정 예정('25.12)
(현행) 수입자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위생점검 보고서 제출 후 식약처 현지실사 통해 등록
(개정) 위생평가기관 위생점검 보고서 제출하는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하여 신속 등록

7) 2026년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위한 예산은 2025년과 같은 8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8)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8월 기준 해외제조업수는 총 51,363개소이며 이 중 통관단계 부적합 업소가 매년 800여 개소가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상 편성되어 있는 현지실사 해외제조업소 수는 200개소에 불과('24년 280개소 수행)하여,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개선으로 소요 비용이 감소하더라도 위해 우려 해외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임.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지실사 집행 현황[9]]

(단위: 개소,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8.
우수수입업소 등록점검 업소수	1	6	15	28
우수수입업소 등록점검 여비 총 소요예산[주)]	2,696,952	8,194,015	21,593,653	33,713,555

주) 출장자의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해외제조업소 1개소 현지실사 시 유럽 지역 약 220만원, 미주 지역 280만원, 아시아 지역 110만원 소요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는 부적합 이력, 위해정보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해외제조업소와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 접수된 해외제조업소를 묶어서 동시에 진행하며, 수출국 현지 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가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국외 출장 1회(입출국 기준) 시 4~8개소(이동동선 등 고려) 점검, 점검관 2인 1조).

3. 수출허가지원 거점 구축 사업(신규): 공모사업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수출허가지원 거점 구축'** 사업은 주요 수출국의 의약품 인허가를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분석 및 상담을 위한 사무국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9억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수출허가지원 거점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2,040	2,040	3,320	1,280	62.7
첨단기술 활용 의료제품 국제협력 강화	516	516	1,518	1,002	194.2
수출허가지원 거점 구축	-	-	916	916	순증

[수출허가지원 거점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허가지원 사무국 구성 및 규제애로 상담(3인) : 310백만원

- **수출지원(임상, 인허가심사, GMP) : 75백만원 × 3명 = 225백만원**
- **사무실 임차 : 5백만원 x 12개월 = 60백만원**
- **공공요금, 집기 임차 등 사무실 운영: 15백만원**
- 출장비 및 회의비 : 10백만원

○ 품목(군)별 허가 사례수집·분석 제공 : 450백만원

- 품목별 허가 사례(임상, 심사 보완 등) 수집, 분석용 DB구독 및 운영 = 400백만원
- 품목군별 임상 문헌 구입·해설서 개발 : 5백만원 × 10건 = 50백만원

○ 허가심사 전문가 협의체 운영 : 16백만원

○ 규제당국 회의, 비즈니스미팅 등 규제지원 : 90백만원

○ 수출규제 사례집 개발 : 50백만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10) 일반회계 -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2033-301)(의약품안전국)

나. 검토의견

수출허가지원 거점 구축 사업은 공모사업 특성상 실제 운영 개시 시점이 늦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 공모·선정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으로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수출시 업계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국가별 비관세 장벽(인·허가 규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정보 수집·분석 지원, 규제 애로 상담 등 수출기업의 규제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수출허가지원 사무국’을 구축·운영할 계획임.[11)]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주요 업무내용]

○ **(허가상담)** 허가지원 사무국을 구성하여 각 허가단계별로 밀착지원, 신설규제·법령해석 지원 등 규제 애로 상담 및 해소
○ **(제도분석·제공)** 분야별 전문기관을 ‘수출허가지원 사무국’으로 지정, 수출 대상국가의 허가제도 모니터링 및 허가서류 분석·제공
○ **(규제지원)** 규제당국간 회의, 규제당국자 초청 비즈니스 미팅, 규제설명회(포럼) 등을 통한 규제지원 추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이 사업 세부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12개월 사무국 운영을 전제로 임상·인허가 심사·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분야 수출지원을 위한 인건비(3명) 2억 2,500만원, 사무실 임차비 6,000만원, 공공요금 등 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 사업은 일반용역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인데, 「국가계약법」에 의한 조달청 공고 및 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1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건비 및 운영비의 편성 개월 수는 공모 및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체설문조사 결과 규제장벽이 가장 큰 애로사항(71.0%)으로 조사되었음.

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공고 및 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사업의 조속한 수행을 위해 사전 공고절차를 거쳐 2026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진행절차) 일상감사→계약요청→공고→사업자선정→사업수행→검사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월부터 사무국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공모사업의 특성상 일정 지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공모·선정 등으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으로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사업: 교육과정 본격 운영 전 '안전성 평가자' 자격기준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사업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체 단계에 대한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억 1,000만원(1,506.2%) 증액된 25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6년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2,077	2,077	4,998	2,921	140.6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411	411	2,791	2,380	579.1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160	160	2,570	2,410	1,506.2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2,570백만원
- 화장품 업계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 컨설팅: 1,460백만원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홍보 및 교육: 50백만원(순증)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가 위원회: 100백만원(순증)
-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660백만원(순증)
- **전문인력(안전성 평가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300백만원(순증)**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강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음.

이 사업은 화장품이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계의 경우 안전성 평가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다수로,[14)]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함께 정부

13) 일반회계 -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2131-302)(바이오 생약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화장품 안전성 평가 흐름도 및 지원 필요 인프라 현황]

단계	세부내용	지원 필요 인프라
0. 원료 안전성 평가	1) 위험성 확인: 물질이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2) 위험성 결정: 독성시험 결과 등으로부터 독성기준값 선정 * 유해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최고용량 또는 관찰되는 최소 용량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필요〉 · 원료 안전성 정보가 없는 경우, 별도 안전성 평가 수행 필요 * 천연물 등 신규원료 대다수 안전성 정보 無 〈대체시험 기술 개발 필요〉 · 국제적으로 화장품 동물시험이 금지되어, 평가를 위한 대체기술* 개발 필요 * 장기 유사모델,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1. 원료·제품 제품정보 수집	1) 제품 정량적·정성적 구성에 대한 자료 2) 제품 물리·화학적 특성 및 안정성에 대한 자료 3) 제품에서의 미생물 관리에 대한 자료 4) 불순물, 포장 용기에 대한 자료 5)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제품의 사용방법 6) 화장품의 노출 정보 7) 물질에 대한 노출 정보 8) 물질의 독성 정보에 대한 기술 9) 화장품의 유해사례에 대한 정보 10) 기타 안전성 정보	〈평가 가이드라인, 모델 개발 필요〉 · 안전성 평가 작성 등 참고 가이드라인, 제품·성분 유형별 평가모델 개발·배포 필요 〈컨설팅·상담창구 운영 필요〉 · 중소업체* 대상 작성 요령, 평가 기술 자문 등 컨설팅 수행 필요 * 생산실적 10억 미만 업체 비중이 약 94%
2. 제품 안전성 평가	1) 화장품에 표기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설명 2) 안전성 평가 고찰 및 결론 3) 평가자 서명 및 자격 증명	〈안전성 평가자 양성 필요〉 · 평가자료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안전성 평가자) 검토·승인 필요
3. 제품판매	안전성 평가 완료 후 제품 판매	-
4. 제품 정보 수집	제품 유통·판매 이후 수집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자료 최신화	〈유통 제품 안전정보 제공 필요〉 · 유사 제품 유해사례 등 평가자료 최신화를 위한 정보체계 필요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14)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억 달러))** ('21) 49.2→ ('22) 44.7→ ('23) 53.2→ ('24) 68.0
(업계 현황) 업체 94%(11,088곳)가 생산실적 10억 미만이며, 연구인력이 없는 업체가 72%(8,486곳)임

나. 검토의견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통해 안전성 평가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새로 추진하는 것은 교육 대상의 범위 등이 모호해 질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격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전문인력인 '안전성 평가자' 양성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할 계획임.[15]

[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추진 및 안전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table>
<tr><th>구분</th><th>2월</th><th>3월</th><th>4월</th><th>5월</th><th>6월</th><th>7월</th><th>8월</th><th>9월</th><th>10월</th><th>11월</th></tr>
<tr><td>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td><td rowspan="2">기관 선정</td><td colspan="4">교육 커리큘럼·과목별 시간 등 표준 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td><td colspan="3">프로그램, 교재안 마련 교육생 의견 반영 교재안 내용조정</td><td colspan="2">교육결과 반영 표준 프로그램, 교재 마련</td></tr>
<tr><td>안전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td><td colspan="2">교육시설 확보, 강사진 구성</td><td colspan="2">교육대상자 선정</td><td colspan="3">안전성 평가자 교육 실시, 수료증 발급</td><td>교육 결과 평가</td><td>-</td></tr>
</tabl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적 기준을 우선 준용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전문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16]

다만,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는 절차로, 평가자의 전문성은 안전성 평가자료의 검토·승인을 통해 해당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의

15) (평가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2억원
(안전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원

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평가자 자격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에 맞춰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은 자격기준을 두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는 설명임.

<식약처 추진 자격요건(안)>

- 의약학, 생물학, 화학, 독성학 학위 취득자로서 업무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 의약학, 생물학, 화학, 독성학 학위 취득자로서 전문 교육과정(비학위)을 이수한 사람
- 전문 교육과정(학위 과정) 이수한 사람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로서 화장품 안전성 업무 종사 경력이 있으며 전문 교육과정(비학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실효성을 위해서는 자격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17]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의 경우 교육 대상 및 범위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요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이 설계·운영되는 것이 법률과 제도의 체계적 연계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전문 인력 공백 최소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안전성 평가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자격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7) 현재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제2211154호, 2025.6.30.)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5.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 사업: 수수료의 국고 세입 계상 검토 필요

가. 개 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주요 필수 백신의 제품화 기술지원, 백신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운영 및 백신 생산용 세포주 분양을 위한 국가 셀뱅크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9,600만원(△17.1%) 감액된 82억원이 편성되었음.[18)]

[2026년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백신안전기술지원 센터 지원	9,896	9,896	8,200	△1,696	△17.1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민간경상보조(320-01): 7,421백만원
가. 인건비(45명) 3,105백만원
나. 기본운영비 1,775백만원(공공요금 및 제세 등)
다. 백신 등 시험분석 및 제품화 지원 1,121백만원(시험분석재료비 등)
라. 백신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 880백만원
마 국가 셀뱅크 운영 450백만원원(재료비 등)
바.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90백만원
○ 민간자본보조(320-07): 779백만원
가. 백신 등 시험분석 및 제품화 지원 749백만원원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장비 구축
나. 백신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 30백만원
· 실급교육실 설비 및 비품 구축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18) 일반회계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2131-304)(바이오생약국)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재단법인으로 2020년 6월 설립되었으며, 백신 개발 및 허가·승인까지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개요]

(위치) 전남 화순군 백신산업특구 일원

(설립목적) 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

* 근거법령:「약사법」제90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주요 연혁)

- 식약처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식약처, '20. 6.)
- 약사법 개정(센터 설립근거 마련, '21. 7.)
- 센터 본관동 준공(백신 임상시험검체분석 및 품질검사시설 등, '22. 10.)
- 센터 개소식 및 제1대 센터장 취임('22. 11.)
- 센터 교육동 준공(백신 등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시설 등, '2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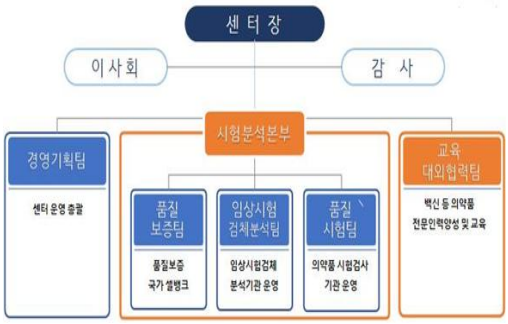
(주요 기능) 백신 개발 및 허가·승인까지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

① 제품화 종합 컨설팅, ② 임상검체 분석지원, ③ 품질검사·시험 지원, ④ 전문인력 양성 교육

(조직) 1본부, 5팀, 43명

(예산) ('22) 226.56억원, ('23) 199.91억원, ('24) 109.68억원, ('25) 98.96억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검토의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교부조건에 따라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할 수 있는바, 현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역시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국고 세입으로 계상하여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약사법」제90조의3[19]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인건비, 기본운영비, 셀뱅크 운영비 등)를 민간보조사업(보조율 100%)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최근 4년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 예산	22,656	19,991	10,968	9,89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센터는「약사법」제90조의3에 근거하여 국내 백신개발 임상 지원을 위해 검체 분석 및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품질시험・검사 수행, 백신 개발・제조・품질관리용 세포주 분양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수수료 징수 현황]

(단위: 원)

사업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말	합 계
임상검체 및 품질시험 분석 수수료	24,640	121,848,000	2,509,360	124,382,000
세포주 분양 수수료	20,295,364	4,394,000	15,876,000	40,565,364
합 계	20,320,004	126,242,000	18,385,360	164,947,36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19)「약사법」
제90조의3(백신센터의 사업) ① 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백신 개발지원 및 제품화 기술지원
2. 백신 관련 인허가, 국제기준 · 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3. 백신 임상검체 분석 및 시험법 구축
4. 백신 품질검사 지원 및 시험법 구축
5. 백신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백신센터는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징수되고 있는 수수료는 별도의 근거없이 센터의 잉여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상황인바, 향후에도 매년 1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잉여자금이 과도하게 센터에 적립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향후 사업별 수수료 전망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임상검체 및 품질시험	626	77	92	114	147	196
임상검체분석[1]	383	29	44	65	98	147
품질시험[2]	243	48	48	49	49	49
세포주 분양[3]	100	20	20	20	20	20
합계	**725**	**97**	**112**	**134**	**167**	**216**

주 1) ('25~'29) 분석건수 목표 전년대비 50% 상향
2) ('25~'29) 분석건수 목표 전년대비 2건 상향
3) ('25~'29) 10년간 분양 평균으로 산정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으며, 특히 운영수입에 대하여는 반환 가능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센터가 징수한 수수료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센터 내부의 결산잉여금으로 적립하기보다는 국고 세입으로 계상하여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HACCP제도 활성화 사업: HACCP인증 수수료 세입 계상 필요 등

가. 개 요

'HACCP제도 활성화' 사업은 HACCP 인증지원 및 확대, 기존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HACCP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안전한 식품의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300만원(△11.2%) 감액된 55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20)]

[2026년도 HACCP 인증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HACCP제도 활성화	6,268	6,268	5,565	△703	△11.2
HACCP 인증지원	4,225	4,225	3,334	△891	△21.1

내역사업인 **'HACCP 인증지원'** 사업은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체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시설개선자금 등) 및 인증업체 사후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9,100만원(21.1%) 감액된 3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HACCP 인증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HACCP 사후관리: 306백만원
- 사후관리 평가 3,162개소×40천원×2명=253백만원
-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인쇄 등 44백만원
- 현장 조사·평가 HMS 통신비: 16대×12월×45천원=8,640천원

○ HACCP 교육 내실화 : 18백만원

○ HACCP제도 활성화 : 10백만원
- HACCP 발전협의회 위원 수당: 250천원×8명×4회=8백만원
-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500천원×4회=2백만원

○ **HACCP 의무적용 준비업체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3,000백만원 (감 900백만원)**
- 300개소×20백만원×50%=3,000백만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 일반회계 - HACCP제도 활성화(1032-300)(식품안전정책국)

‘HACCP 인증지원’ 사업은 전국에 있는 HACCP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가공업소 중 해당 연도에 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설치자금을 지원(자부담 50%)하는 것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민간보조사업(보조율 100%)으로 추진되고 있음.

[HACCP 인증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 목적	HACCP 의무적용을 위해 소규모 업소의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설치자금 지원
지원 대상	2025년도에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업소
업종별 지원대상 수	약 390개소(1개소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자격	① ('25.2월~12월) 2025년 해썹 신규 인증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 전년도 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소 ② ('25.10월~12월) 2025년 해썹 신규 인증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등 * 전년도 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잔여분이 있는 경우 지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검토의견

첫째, HACCP 인증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자체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국가 세입으로 계상하거나 법적근거 마련 후 자체수입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등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재정운용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HACCP 인증은「식품위생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근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업무를「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근거법 상 HACCP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총리령에서는 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HACCP인증 수수료 현황]

구분	대상 업종	인증심사	연장심사	변경 인증심사
식품	모든 업종 (식품유형별 또는 업소별 부과)	200천원	200천원	100천원
축산물	업소 규모별 부과	330 ~ 900천원	320 ~ 870천원	100천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원은 납부된 수수료를 인증원 내부 규정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등 수수료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집행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반납하고 있음.

[HACCP인증 업무 관련 예산 징수 및 집행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인증건수	수수료 수입	자체집행
2021년	17,628	3,942,945	3,942,945
2022년	18,355	3,695,429	3,695,429
2023년	20,860	4,439,000	4,297,946
2024년	18,892	4,566,000	4,481,593
2025.9.	14,733	4,328,240	697,20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17조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국고로 납입하게 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은 국가에,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단체에게 수수료를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21]

예를 들어 ‘어선수수료’의 경우 「어선법」 제39조제4항에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을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하도록 명문 규정을 둠으로써 수입의 직접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2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및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수수료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입법례]

「어선법」
제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 · 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1. ~ 15. (생 략)
②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자료: 「법제기준과 실제」(국회 법제실, 202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HACCP 수수료를 인증원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인증원장에게 HACCP 인증 수수료에 대한 징수 권한만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징수 권한과는 별개로 수수료 수입까지 인증원에 귀속시킨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HACCP 인증 수수료의 경우 인증업무 등의 필요 경비에 직접 충당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입으로 편성하는 방안 등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재정운용 체계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22)]

둘째, HACCP 인증지원 사업은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HACCP 인증 정착을 위하여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시설 개선 지원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액 국고보조 지원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HACCP 인증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업체당 평균 900

22)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제10조에서 수입금을 운영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등 심사수수료 규정」에서 HACCP 수수료를 인증원 자체수입으로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25.2.)하였으므로, 이를 세입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인증원의 위・수탁사업에 사용후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만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HACCP 인증지원 사업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9월
지원업체 수	597	260	422	428	268
총 지원액	5,600	2,500	4,000	4,000	2,475
업체당 평균 지원액	9.4	9.6	9.5	9.3	9.2
업체당 지원한도	최대 1천만원				

주) 해썹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러한 국고보조지원 방식은「식품위생법」제48조에서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23] 영세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이 사업의 직접적인 근거 법률인「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르면,[24] 영세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도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지원 주체 중 하나인 지자체 차원의 참여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외의 지원주체 확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25]

따라서 이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3)「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25)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서 적정 수준을 부담할 경우 지자체의 업체 점검 등 업무 부담 발생 및 업체의 자금 지원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고보조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7.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기술지원 및 기능성원료 재평가 사업: 스마트 GMP 구축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기술지원 및 기능성원료 재평가’** 사업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사전요건으로 GMP를 운영하고,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26)]

[2026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기술지원 및 기능성원료 재평가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건강기능식품 관리	1,034	1,034	1,124	90	8.7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기술지원 및 기능성원료 재평가	243	243	243	-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기술지원 및 기능성원료 재평가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225백만원
- 37,500천원×6종=225,000천원
○ 기능성 평가를 위한 자문회의 운영 18백만원
- 전문가 자문수당: 150천원×10명×7회=10,500천원
- 운영비: 600천원×7회=4,200천원
- 전문가 회의 등 장소 임차료: 2,100천원
-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 500천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6) 일반회계 - 건강기능식품 관리(1032-309)(식품소비안전국)

건강기능식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을 의미하는데,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업장의 구조·설비 및 원료 구입·생산·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대한 생산과 품질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말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21.12.)에 따라 '칭량정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GMP")의 요건 및 관리 기준을 마련·운영('24)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도 스마트 제조 도입 등 품질·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스마트 GMP 시스템 도입 개요]

구분	내용
도입(1단계) 칭량 정보 자동 기록 관리	원료의 입·출고, 칭량 정보 자동 기록관리 구축
발전(2단계) 공정 자동 기록 관리	제조설비 감시정보 실시간 자동 기록(수집) 관리
완성(3단계) 실시간 제조관리 기록	제조지시기록서 정보 실시간 전산화 및 확인 검토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검토의견

제조업체 작업자 실수 등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부적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스마트 GMP를 도입한 제조업체는 전체의 3.6%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스마트 GMP의 확대·보급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부적합 원인 중 '기능성원료 함량 부적합'이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부분 원료 칭량시 작업자가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기능성분 함량 부적합	26 (49.1%)	27 (73.0%)	27 (77.1%)	33 (57.9%)	27 (64.3%)	140 (62.5%)
그 외 기준·규격 부적합	27 (50.9%)	10 (27.0%)	8 (22.9%)	24 (42.1%)	15 (35.7%)	84 (37.5%)
계	53	37	35	57	42	224

주) 자가품질검사 포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원료 함량이 기준치와 일치하지 않아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제조 공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안전성 확보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GMP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스마트 GMP를 구축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전체 제조업소의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특히 소규모 업체일수록 구축률이 낮음.

[스마트 GMP 구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매출액				계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전체 제조업소 수	11	45	140	308	504
스마트GMP 구축업소 수	5 (45.5%)	8 (17.8%)	3 (2.1%)	2 (0.5%)	18 (3.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인력 부족과 투자 대비 가시적 효과 부족을 이유로 제조업소의 참여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부적합 사례 발생은 결국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27]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스마트 GMP 확대·보급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스마트 GMP 도입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7) **(국내제품 판매액)** ('18) 2.4조원 → ('20) 3.1조원 → ('22) 3.9조원 → ('24) 3.6조원
(건강기능식품 수출액) ('18) 1,259억원 → ('20) 2,264억원 → ('22) 2,781억원 → ('24) 3,802억원

8.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식품·의료기기)(신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 환수 검토 등

가. 개 요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식품・의료기기)’ 은 산・학・연의 역량을 집결하여 유망 AI 융합분야 제품의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8)]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식품·의료기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	-	15,000	15,000	순증
AI 식육 이물검출기 개발지원	-	-	1,500	1,500	순증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	-	13,500	13,500	순증

내역사업인 **‘AI식육 이물검출기 개발지원’** 사업은 현재의 식육 이물 검출 방식의 한계를 넘어 정확도와 검출률을 높일 수 있는 AI 기반 식육 이물검출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사업은 의료기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서 핵심 제품을 중점 지원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등의 신속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3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8) 일반회계 -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식품・의료기기)(7034-306)(의료기기안전국)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식품·의료기기) 예산안 세부내역]

○ AI 식육 이물검출기 개발지원 사업
- 1개 제품 × 1,875백만원 × 80%(국비) = 1,500백만원
○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
- 9개 제품 × 1,875백만원 × 80%(국비) = 13,500백만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신속한 AI 전환 촉진을 위해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산업 분야의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29] 이는 기업·기관들이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AI 응용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제품을 빠르게 보급·확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유형	유형1(145개사)	1년내 즉시 개발가능하며, 시장에 빠르게 침투 가능한 품목
	유형2(155개사)	국민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핵심 품목(2년 지원)
지원방향	- AI 응용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 등 실증 및 양산체계 구축 - 기성 제품의 AI서비스 탑재(AI 모델 설계·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 제품 인증 획득 및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	

자료: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발췌

총사업비는 1조 1,570억 8,300만원으로, 산업부,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과기부, 국방부, 식약처 등 10개의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6~2027년 2년간 300개 과제에 대해 국비 9,340억원을 지원(지원율 80%)하려는 것임.

[각 부처별 사업비 및 과제 현황]

(단위: 개, 억원)

부처	물량	총사업비	국비	부처	물량	총사업비	국비
산업부	65	2,625	2,100	농림부	30	1,125	900
복지부	31	975	780	환경부	15	750	600
해수부	25	937.5	750	국토부	29	1,450	1,160
중기부	45	1,687.5	1,350	과기부	20	1,000	800
국방부	30	833.33	750	식약처	10	187.5	150

자료: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발췌

29) 국정과제 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디지털 의료기기 분야에서 1년 내 신속 개발 및 현장 적용이 가능한 AI 제품·서비스를 ‘유형1’ 과제로 분류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0개의 과제(식품 분야 1개, 의료기기 분야 9개)를 선정하고 과제별 15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50억 원을 편성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식품·의료기기) 개요]

○ 식육(소·돼지고기) AI 이물검출기 개발 사업: 15억원
- (사업내용) 이물검출율과 정확도를 높여 안전한 식육 공급과 영업자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적용가능한 AI 이물검출기 개발
- (지원규모) 15억원(1개 과제)
- (기대효과) 판정 정확도를 높여 정상제품이 이물제품으로 오판되는 것을 줄여 정상제품이 폐기되는 손실 감소(현행 30% 이상 오판독 → 5%)
○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사업: 135억원
- (사업내용) 의료기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서 핵심 제품을 중점 지원하여 디지털의료기기 신속 상용화 지원
- (지원규모) 135억원(9개과제, 각 과제당 15억원) * 예비창업자·스타트업 30% 할당
- (기대효과) 개발 단계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제품별 맞춤형 규제 전략을 밀착 지원하여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도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검토의견

첫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국가가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및 기업 규모별 자기부담률 차등 적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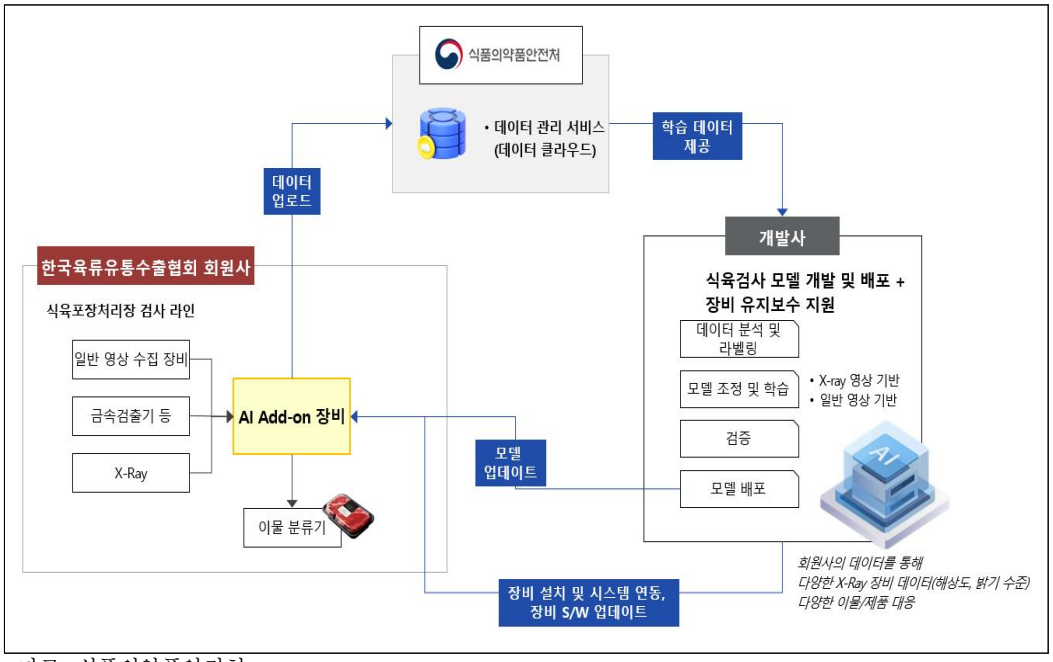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식품 및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 AI 제품·서비스를 1년 내 신속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생산 제품·서비스에 대한 직접 지원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전부 개발 업체에 귀속되는 구조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 분야) 및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료기기 분야)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인데,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상당한 수익을 얻는 경우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30]

AI 제품·서비스의 특성상 지원 대상 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상용화 성과와 더불어 유지·보수 등 사후적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31] 해당 수익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AI이물검출기 개발 사업’과 같이 초기 제품 판매 외에도 판매·설치된 제품을 통해 학습·축적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제공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업은 수익 환수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I 이물검출기 개발 모식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1) AI 기반 제품·서비스의 경우 초기 판매 수익 외에도 유지·보수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민간 자부담률은 기업 규모와 자본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충분한 기업과 영세 기업에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원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임.

종합하면, 이 사업은 지원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전적으로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익 환수제도 적용, 기업 규모별 자기부담률 차등 적용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32)]

둘째, 첨단 AI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은 각 부처의 소관 업무에 따라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바, 유사 과제에 대한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업을 통해 국민 활용도와 파급력, 의료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① 고령친화 제품, ② 만성·정신질환 관리, ③ 의료공백 보완 등 3개 분야를 선정하여 9개 과제에 대해 지원할 예정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료기기) 분야]

구분	고령친화	만성·정신질환 관리	의료공백 보완
지원 제품	- AI 기반 멀티모달 기반(음성, 행동, 표정 등 분석) 인지기능 평가 노인 질환 조기진단 소프트웨어 * 치매, 우울증, 파킨슨병 등 - AR/VR 센서 기반 재활치료 기기	- 질환별 디지털치료기기 (DTx) * 고혈압, 당뇨, 우울증, ADHD 등 - 생성형 AI 기반 질병 진단 보조 챗봇	- AI 기반 치료계획 보조 등 로봇 수술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런데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 역시 2026년도 AX Sprint 사업을 통해 AI 기반 혁신의료기기 상용화 지원, 만성질환 관리 모델 개발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두 부처 사업간 중복 가능성이 있어 보임.[33)]

32)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수 기준 적용시 기업의 참여유인이 감소하여 AI를 국민 일상에서 체감하고자 하는 당초 사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3)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보건) 사업 총 사업비>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보건) 사업 개요]

○ (사업목적) AI 활용 혁신의료기기 신속 상용화, AI 기반 만성질환 관리 모델 개발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제품개발, 임상실증, 인허가 전문컨설팅 등 집중 지원하여 신속한 상용화 지원
○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의료 AI 상용화 지원
- 기재부, 전부처 AX-Sprint 사업 추진방안 부처협의 등: '25.9~11월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계획수립: ~12월
- 전담기관 사업수행(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선정, 관리, 평가 등): '26.1~12월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AI 만성질환 관리 모델 개발: 100억원(10개 과제×10억원)
- AI 의료기기 신속 상용화: 100억원(10개 과제×10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 부처간 협력적 검토와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사 분야 과제에 중복 지원 우려가 있고, 이는 한정된 재원의 비효율적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대상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공고 또는 공동심사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34]

(단위: 억원)

구분	2026년	2027년	계
국비(80%)	200	100	300
민간(20%)	50	25	75
계	250	125	375

자료: 보건복지부

34)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제품 허가 이후 상용화 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의 인허가 단계의 규제를 지원함으로써 두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질병관리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수입은 32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8억원(△52.1%) 감소함.[1)]

[2026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668	668	320	△348	△52.1
총수입	668	668	320	△348	△52.1

문의: 민승환 예산결산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지출은 1조 3,312억원으로 전년 대비 650억원(5.1%) 증가함.

예산안은 5,2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원(6.9%) 증가하고, 기금은 8,089억원으로 전년 대비 312억원(4.0%) 증가함.

[2026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4,885	4,885	5,223	338	6.9
기 금주	7,776	7,776	8,089	312	4.0
총지출	12,661	12,661	13,312	650	5.1

주) 기금관리주체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하는 금액임

나. 예산안

2026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06억원(△30.4%) 감소함.

[2026년도 질병관리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586	586	227	△359	△61.3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417	417	471	54	12.8
합 계	1,003	1,003	698	△306	△30.4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41억원(8.6%) 증가함

[2026년도 질병관리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717	4,717	5,104	387	8.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417	417	471	54	12.8
합 계	5,134	5,134	5,575	441	8.6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026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에는 총 3개(50억 9,0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시체해부법」개정에 따라 국내 시체연구자원의 관리·활용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공공기관 임무중심 감염병연구 다부처협력사업(R&D)’ 사업은 공공연구기관 간 백신·치료제 공동연구 및 국가 통합 라이브러리 구축, 공동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3억원이 편성되었음.

‘소외질환 극복연구(R&D)’ 사업은 2025년도 새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신규 R&D 사업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당뇨 및 COPD에 대한 예방진단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질병관리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637
2	공공기관 임무중심 감염병연구 다부처협력사업(R&D)	1,300
3	소외질환 극복연구(R&D)	3,156
총지출		5,09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질병관리청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II(R&D)’ 사업, ‘형질분석연구(R&D)’ 사업 등 총 9개임.[3)]

[2026년도 질병관리청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53	17,160	17,107	32,277.4
2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II(R&D)	1,245	19,949	18,704	1,502.3
3	형질분석연구(R&D)	4,982	11,777	6,795	136.4
4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720	1,215	495	68.8
5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개발기술 구축 지원사업(R&D)	3,375	5,175	1,800	53.3
6	다부처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R&D)	3,478	4,921	1,443	41.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	목포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8,763	12,495	3,732	42.6
[국민건강증진기금]					
8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2,129	2,813	684	32.1
9	국가예방접종실시	601,831	639,246	37,415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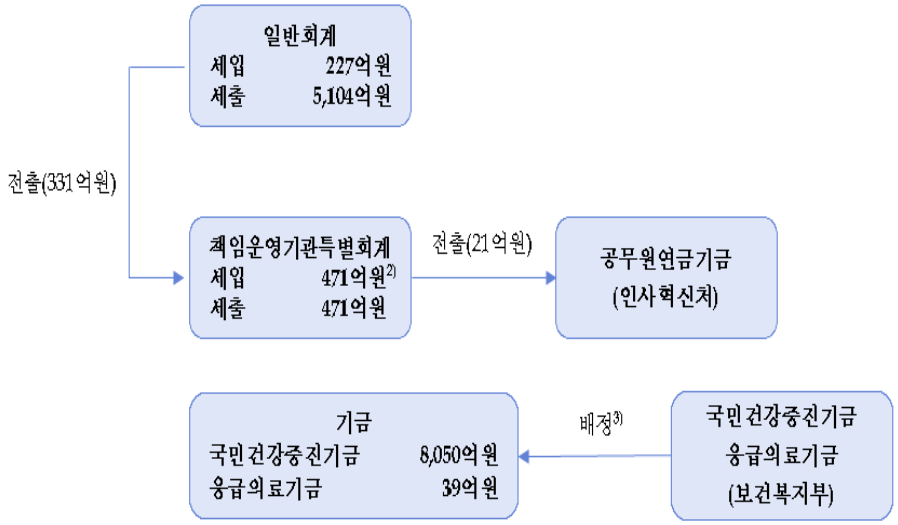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330억 7,700만원이 전출되었음. 또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1억 1,100만원이 전출되었음.

[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주 1) 총계 기준
2) 자체수입(총수입) 9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31억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47억원으로 구성
3) 기금관리주체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아 사용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고도화,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의 지속관리, 백신·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R&D 분야 지원 강화 등 질병관리청 핵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2026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질병관리청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이 2021년 사업 시작 이후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 사업은 인체자원거점은행들이 인체유래물등의 분양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고려하여 향후 사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수 감소 등에 따른 실집행률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 정부의 접종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편성 기준 변경을 통한 세입예산 정확성 제고 검토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반납액으로 구성되는 비목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6억 6,900만원(△63.9%) 감액된 20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4)]

‘기타재산이자수입’ 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예치이자 수입 및 연구성과에서 창출된 기술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비목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5,200만원(△27.7%) 감액된 6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55,849	55,849	20,180	△35,669	△63.9
기타재산이자수입	911	911	659	△252	△27.7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은 보조사업 예산 규모가 비슷한 코로나19 이전('17~'19) 보조사업 예산 대비 평균 ‘수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반납이 원칙이므로 실제 반납되어야 할 평균 ‘징수결정액’을 함께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4)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5) 일반회계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운영지원과)

질병관리청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2024년 보조사업 불용액 중 미수납액과 2025년 보조사업 결산상 불용 예상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이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추계하였음.

세부 산출근거 중 '2025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예상액' 및 '이자수입 예상액'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예산 규모가 유사했던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의 '보조사업 예산 대비 평균 수납비율'을 적용하였는데,[6] 구체적으로 2025년 질병관리청 보조사업 예산인 242억 4,30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3%, 0.5%의 평균 수납비율을 적용하였음.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세부 산출근거]

구분	세부 산출근거
기타경상이전수입	○ 2024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미수납액: 25억원 - 2024년도 보조사업 불용액 49,998백만원×0.05*('24년 미수납률)=2,499백만원 ○ **2025년 보조사업(24,243백만원) 집행잔액(예상액): 약 7.3억원** **- 24,243백만원 × 3%*(3년 수납비율) = 727백만원** *** 예산 규모가 비슷한 코로나19 이전('17~'19년) 평균 수납비율 3% 적용** ○ 지자체 이월 등 사후 정산 예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금액: 109억원 * 코로나19 장례지원비(14억), 격리입원치료비(7억원), 재택치료비(68억원), 진단검사비(20억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른 환수금 : 60억원
기타재산이자수입	○ **2025년 보조사업(24,243백만원)의 이자수입(예상액) : 121백만원** **- 24,243백만원 × 0.5%*(3년 수납비율) = 121백만원** *** 예산 규모가 비슷한 코로나19 이전('17~'19년) 평균 수납비율 0.5% 적용** ○ 지자체 이월 등 특이소요에 대한 이자수입(예상액): 538백만원 - 2,499백만원('25년 예상 미수납액) × 4%(보조사업 이자율) = 100백만원 - 10,954백만원(환수금 제외) × 4%(보조사업 이자율) = 438백만원

자료: 질병관리청

그러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신속히 정산·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반납은 다음연도 내에 이행되어야 함.

이를 고려하면, 세입 규모의 바탕이 되는 '집행잔액 예상액' 및 '이자수입 예상액'은 보조사업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이 아닌 실제 반납되어야 할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추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징수결정된 금액이 신속히

6)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해 2021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예산규모와 수납액이 급증하여 현재 예산 규모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반납될 수 있도록 징수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납률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운용 방향으로 보임.

또한 두 세입과목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크다는 점에서 세입예산을 다소 과소추계하는 측면이 있어 온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기타경상이전수입	2022	4,920	213,022	153,115	3112	71.8	59,907
	2023	29,002	698,457	509,564	1756	72.9	188,893
	2024	200,975	616,948	583,832	290.5	94.6	33,116
	2025.7.	55,849	75,822	30,292	54.2	40	45,530
	2026(안)	20,180	-	-	-	-	-
기타재산이자수입	2022	100	1,586	1,210	121	76.3	375
	2023	500	5,639	4,568	913	81.0	1,071
	2024	500	9,443	8,745	1,749	92.6	698
	2025.7.	911	3,850	2,294	251.8	59.5	1,556
	2026(안)	659	-	-	-	-	-

자료: 질병관리청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2026년도 두 세입예산 과목의 경우 국가 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위해서 세입예산 산출 기준 연도('17~'19)의 평균 징수결정액을 함께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입예산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7)]

7) 세입예산 산출 기준연도의 징수결정액이 수납액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입예산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세입예산 산출 기준 연도(2017~2019년)별 보조사업 규모 및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평균
보조사업규모(A)		38,864	22,368	33,268	31,500
이전수입	징수결정액	1,503	1,186	673	1,121
	수납액(B)	1,338	1,020	376	911
	비율(B/A)	3.4	4.6	1.1	3.0
이자수입	징수결정액	118	184	173	158
	수납액(C)	114	177	167	152
	비율(C/A)	0.3	0.8	0.5	0.5

자료: 질병관리청

<세 출>

2.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센터 설립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가. 개 요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분야 연구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연구-진료현장 간 분절된 지식의 통합·조정을 위한 국립심뇌혈관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9,500만원(68.8%) 증액된 12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6년도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720	720	1,215	495	68.8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1,215백만원(실시설계비)
- (산출) 1,014백만원(건축소방통신설계 실시설계비) + 181백만원(전기설계 실시설계비) + 20백만원 (수수료, 수당 등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

자료: 질병관리청

이 사업은 전남 장성, 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면적 13,837㎡의 국가연구소 설립을 위해 총사업비 769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개요]

○ (목적) 심뇌혈관질환 관련 첨단의료기술 개발 연구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연구기관 설립
○ (사업기간) 2021년~2029년
○ (총사업비) 769억

8) 일반회계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6631-309)(국립보건연구원)

○ (사업규모) 연구소 1개소, 연면적 13,837㎡ / 대지면적 24,255㎡

○ (설립위치) 전라남도 장성군(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 추진경과

- (2020.11)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사업이관
- (2021) 국립심뇌혈관질환연구소 설립 세부운영계획 및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2) 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라 설립 규모 확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실시
- (2023.7.)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추진
- (2024.8.) 총사업비 조정 확정(475→769억)
- (2025.6.) 설계 착수

자료 : 질병관리청

나. 검토의견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은 2021년 사업 시작 이후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질병관리청은 실시설계 착수 및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등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4년 8월 26일 769억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설계공모를 추진하였고, 현재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를 진행중이며, 2026년 1/4분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를 위한 비용이 반영되었음.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기본조사설계 로드맵]

구분		2025							2026												2027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기본설계	계획설계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중간설계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총사업비 협의												
실시설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포함 기간)										

자료: 질병관리청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475억원, 2021~2024년까지 4년간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음.

이후 2020년 9월 질병관리청 개청으로 2021년도부터 질병관리청 예산으로 이관되었는데, 당초 475억 규모로 계획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구체적인 건립 기본계획 수립('21) 과정에서 부지매입비 변동 등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 필요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22.5~'23.7, KDI)하였음.

2024년 8월 기획재정부 검토('23.11.~'24.5.)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사업비 769억원, 사업기간 2021~2029년까지로 확정되었음.

[국립심뇌혈관센터 규모 및 설립예산 변경 경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보건복지부 용역(안) 475억원	2021 질병관리청 용역(안) 2,052억원	2023 타당성재조사 결과 1,001억원	2024 총사업비 최종 확정 769억원
조직	4부 1센터 15과	1부 4센터 28과	1부 4센터 25과	3센터 15과
연면적(㎡)	13,657	34,256	19,798	13,837
대지면적(㎡)	11,377	34,162	24,255	24,255
총사업비	47,518	205,248	100,122	76,880
공사비	40,290	116,912	63,108	43,831
보상비	2,258	28,718	20.390	20,390
부대비	4,970	14,024	7,522	5,670
설계비	2,513	8,473	3,729	2,626
감리비	2,364	5,135	3,649	2,943
시설부대비	93	416	144	101
기타투자비	-	26,935	-	-
연구장비	-	22,261	-	-
비품	-	1,887	-	-
전산시스템	-	2,787	-	-
예비비	-	18,659	9,102	6,989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발췌

이와 같은 총사업비 조정 및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인해 이 사업은 당초 계획된 2021년부터 설립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왔음에도 2024년까지 매년 예산이 전액 불용되거나 이월된 바 있음.[9)]

9) 2025년 7월말 기준으로도 예산현액 대비 32.9%가 이월 및 불용될 예정임.

[최근 5년간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A)	전년도 이월(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다음연도 이월	불용
2021년	4,368	-	-	4,368	-	-	4,368
2022년	2,800	-	-	2,800	-	-	2,800
2023년	2,500	-	-	2,500	-	-	2,500
2024년	330	-	-	330	-	330	-
2025.7.	720	330	-	1,050	623	164	181

자료 : 질병관리청

현재 질병관리청은 2029년까지 연구소 운영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설계 종료시마다 설계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 절차적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향후 일정 지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10)]

그러나 사업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비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연구성과 창출과 공유가 늦어져 센터가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부지 매입 및 인허가 등 남은 단계에서 철저한 일정 관리와 함께 사업비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센터 설립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연구 기능 약화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기본설계 중 중간설계부터 대략적인 공사비, 공사기간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총사업비 협의 내용 및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경험을 유념하여 사전 협의 등을 통해 필요사항을 준비하고, 적극대응하여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3.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 인체자원 분양수수료를 고려한 국고보조율 조정 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은 보건의료 연구 및 산업의 주요 인프라인 질병기반 인체자원의 안정적인 수집·제공 체계 운영을 위한 병원기반 민간 인체자원은행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50억원이 편성되었음.[11)]

[2026년도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보건의료생물자원 종합관리(R&D)	8,880	8,880	8,293	△587	△6.6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	5,000	5,000	5,000	-	-

이 사업은 질병 기반 인체자원의 안정적 수집・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12)] 국내 인체자원 활용 연구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10개의 특성화 인체자원은행 네트워크의 운영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국고 100%)으로, 현재 10개의 거점은행(19개 협력은행)이 참여하고 있음.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민간경상보조비(320-01): 4,500백만원
-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 10개 × 450,000,000원= 4,500백만원
○ 민간자본보조비(320-07): 500백만원
-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 10개 × 50,000,000원= 500백만원

자료: 질병관리청

11) 일반회계 -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R&D)(6634-322)(국립보건연구원)

12) 인체자원이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임상・역학정보와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배아줄기세포는 제외) 및 이로부터 분석된 유전정보 등을 의미함

[특성화 인체자원은행 네트워크 참여 거점은행 현황(2025.8월말 기준)]

거점은행(10개소)	특성화 질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질환, 알레르기 질환(아토피), 정상군
경북대학교병원	염증성장질환
서울대학교병원	신장질환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질환
서울아산병원	췌장암, 담도암, 폐암, 난소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천식, COPD, IPF 및 해당질환의 대조군
아주대학교의료원	간질환 및 정상군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유방질환 및 여성생식기질환
충북대학교병원	건강대조군 및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백혈병, 뇌종양, 폐암, 대장암, 간암, 위암, 유방암

자료: 질병관리청

나. 검토의견

대다수 인체자원거점은행은 인체유래물등의 분양시 보존 및 제공 등에 든 경비를 분양수수료로 징수하면서 이를 자체수입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바, 거점은행에서 징수하고 있는 분양수수료를 감안하여 현재 국고보조율(100%)의 조정 등 사업 지원 방안 개선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13]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무상이 원칙이나,[14]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를 제공받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③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등) ②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인체유래물등의 수집 · 분석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 · 보수 비용
2. 인체유래물등의 수집 · 분석 및 보관을 위해 사용된 소모품비 · 인건비
3. 인체유래물등의 운반에 드는 운송비

14) ‘인체유래물등’이란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의미함.

이에 따라 인체자원 거점은행(10개소) 중 대다수 거점은행의 경우 인체유래물등을 분양하면서 분양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를 은행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에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아주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4억 2,11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충북대학교병원은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억 8,171만원을 징수하였음.

[인체자원 거점은행 분양수수료 징수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계
경북대학교병원	6,080	7,000	7,120	29,114	810	1,485	51,609
서울대학교병원	10,946	14,183	7,665	14,261	25,542	61,339	133,936
서울대학교치과병원[1)]	-	-	768	1,225	1,900	1,270	5,163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	10,585	17,866	16,902	66,254	22,550	134,157
서울아산병원	-	-	-	-	-	-	-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8,750	-	6,655	16,566	10,165	16,973	59,109
아주대학교병원[1)]	-	-	151,990	70,445	124,256	74,415	421,106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23,530	21,332	10,735	8,963	13,468	3,916	81,944
충북대학교병원[1)]	-	-	-	2,945	70,998	107,763	181,706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	-	-			-

주 1) 협력은행 포함 금액
2)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분양수수료의 경우 국가보조사업을 통해 확보한 인체자원과 은행 자체 확보 인체자원 분양을 통해 징수한 수수료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설명임

자료: 질병관리청

그런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체수입이 충분하여 자부담률 제고가 가능한지 면밀히 점검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수입이 있거나 자부담(수수료 등)이 가능한 사업은 보조율을 인하하는 등 보조사업의 보조율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지침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거점은행에서 징수하고 있는 인체자원 분양 수수료를 고려하여 현행 보조율 유지의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각 거점은행별 수수료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한 보조율 조정 등 사업 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시험연구 인력지원 사업(신규): 신규과제 수행기간을 고려한 시험연구인력 인건비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시험연구 인력지원’** 사업은 소아비만·당뇨병 및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성폐쇄성폐질환) 예방진단 기술 개발연구 사업의 과제 기획·수행을 위한 연구 전문 연구인력(공무직, 기간제, 박사 후 연구원)의 인건비로, 2026년도 예산안은 1억 5,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5)]

[2026년도 시험연구 인력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소외질환 극복연구(R&D)	-	-	3,156	3,156	순증
시험연구 인력지원	-	-	156	156	순증

‘소외질환 극복연구(R&D)’ 세부사업은 ① 시험연구 인력지원 사업, ②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중재 연구 사업, ③ 소아청소년 당뇨 적정관리 기반마련 사업 및 ④ 만성폐쇄성질환(COPD) 예방진단 기술개발 사업 등 총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내역사업인 ‘시험연구 인력지원’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세부편성 내역을 보면, 소아비만·당뇨병 및 COPD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시험연구 인력(2명) 채용을 위해 12개월분의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및 복리후생비가 편성되었음.

15) 일반회계 - 소외질환 극복연구(R&D)(6634-370)(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시험연구 인력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상용임금 (110-03) : 129백만원
- (기본급 및 수당) 64.5백만원 × 2명× 12/12개월 = 129백만원
○ 복리후생비 (210-12) : 1백만원
- (복리후생비) 0.5백만원 × 2명 = 1백만원
○ 고용부담금 (320-09) : 26백만원
- (4대보험, 퇴직급여적립금) 13백만원 × 2명× 12/12개월 = 26백만원

자료: 질병관리청

나. 검토의견

시험연구 인력지원 사업에서 시험연구 인력(2명) 채용을 위해 12개월분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세부사업 내 총 8개의 신규과제 중 7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이 9개월로 계획되어 있고, 12개월 계획 과제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은 ‘시험연구 인력지원 사업’ 외 다른 3개의 내역사업을 통해 총 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인데, 이 중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중재 연구’사업 과제 중 1개 과제를 제외한 7개의 과제는 연구기간이 9개월로 계획되었음.

[시험연구 인력 지원사업 외 내역사업별 예산안 세부내역]

○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중재 연구: 1,000백만원
- 1개 과제x 250백만원x12/12개월= 250백만원(* 소아청소년 비만 중재 지표개발)
- 3과제×333.3백만원×9/12개월 = 750백만원(* 소아청소년 비만 중재모델 개발 및 실증연구 등)
○ 소아청소년 당뇨 적정관리 기반마련: 1,250백만원
- 1과제×1,333백만원×9/12개월 = 1,000백만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전수 레지스트리 구축)
- 1개 과제×333.3백만원×9/12개월 = 250백만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진단법 고도화)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예방진단 기술개발: 750백만원
- 1과제 x 400 백만원 x 9/12개월= 300백만원(* 한국인 COPD 아형별 서브코호트 구축 및 진단기준 연구)
- 1과제 x 600 백만원 x 9/12개월= 450백만원(* 한국인 COPD 예방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연구)

자료: 질병관리청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12개월 계획 과제의 경우 질병관리청 직접수행 과제로서 2026년 초부터 착수할 예정이며, 9개월 계획 과제 또한 과제기획 및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험연구 인력지원’ 사업 내 인건비도 12개월분을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설명과 같이 12개월 계획 과제는 국립보건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인바, 연구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비와 일반연구비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필요시 과제에 편성된 시험연구비(210-13목)로 연구보조인력의 운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16] 현재와 같이 12개월분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임.

따라서 총 8개의 신규과제 중 7개 과제의 연구기간이 9개월로 계획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직접 수행과제를 위해 전체 지원인력 인건비를 12개월분으로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인건비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6) 12개월분이 편성된 과제의 경우 시험연구비(210-13) 2억원과 일반연구비(260-01)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다만, 질병관리청은 시험연구비를 활용한 일용임금 대상자를 채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임.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 출>

5. 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 사업: 수입대체경비 세입 대비 세출 과소 편성지양 필요

가. 개 요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국립마산병원 등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임상시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00만원(△6.6%) 감액된 3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17]

[2026년도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	362	362	338	△24	△6.6

[2026년도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외부수탁연구용역 수행사업: 326백만원
- (시험연구비) 278백만원, (고용부담금) 38백만원, (자산취득비) 10백만원, (무형자산) 2백만원
○ 생명윤리위원회(IRB)심의비: 2백만원
- 심의비 1,000천원 = 100천원 × 10회
- 위원교육비 1,000천원 = 100천원 x 10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 10백만원
-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 7,000천원
- 직원 교육비 : 1,500천원
- 프로그램운영비 : 1,500천원

자료: 질병관리청

17)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4631-650)(국립마산병원)

나. 검토의견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 편성시 세입예산에 비해 세출예산을 과소 편성하였는데, 이 경우 실제 초과지출 승인이 세입의 초과수입보다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세출예산을 세입예산과 합리적으로 연계·반영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수입대체경비는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18]에 따라 초과수입의 범위 내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초과지출 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음.[19]

그런데 2026년도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수입대체경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연구용역 수주 계획에 따라 기타잡수입으로 4억 7,900만원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이 예상되는 반면, 세출예산은 3억 3,800만원만 반영되어 세입예산 대비 1억 4,100만원 세출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2021년 이후 수입대체경비 사업비 및 기타잡수입 편성·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8.	2026년(안)
사업비	예산액(A)	103	103	103	760	362	338
	집행액(B)	773	790	706	461	288	-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예산액(A)	426	439	568	760	362	479
	집행액(B)	810	842	719	471	348	-

자료: 질병관리청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부처예산안 제출 당시의 연구용역 수주계획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는데, 부처안 제출 이후 발생한 연구용역 수주 계획(목표) 증가 소요를 최종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입예산안에는 증액 반영하였으나, 세출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18)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19) 「국가재정법」 제53조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에 대하여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로 명시하고 있어, 세입예산 또는 수입계획을 기준으로 발생한 초과수입에 대하여 초과지출승인을 허용하고 있음.

수입대체경비는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이 과소 편성될 경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실제 초과지출 승인 규모가 세입의 초과수납분보다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국가재정법」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초과지출을 허용하되 그 범위를 ‘수입의 초과수납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비의 초과지출 승인 범위를 수입의 초과수납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을 세입예산과 합리적으로 연계·반영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

<지 출>

6.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 사업 실적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9억 6,700만원(12.6%) 증액된 86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20]

[2026년도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국가예방접종실시	601,831	601,831	639,246	37,415	6.2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7,700	7,700	8,667	967	12.6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8,667백만원

- 피해보상반 등 운영: 504백만원
- **코로나19 피해보상금 등: 7,010백만원**
- 코로나19 공공업무 위탁 : 570백만원
- 코로나19 안전성연구센터 및 연구용역: 593백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연구용역: 100백만원
  *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위탁: 493백만원

자료: 질병관리청

20)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예방접종실시(6431-303)(의료안전예방국)

이 사업에는 이상반응 보상금(기타보전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대상’이 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됨에 따라 이를 보상하기 위해 편성된 것임.

[이상반응 보상금 지원내용(2025.8.기준)]

구분	내 용
보상	사망일시보상금[1] 및 장제비(30만원), 장애인일시보상금(중증은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경증은 55%), 진료비[2] 및 간병비(일 5만원)
지원	- 코로나19 백신에 한해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등 추가적 국가지원 **(관련성의심질환)** 심의기준 ④-1에 대해 의료비(5천만원 상한) 및 사망위로금(1억원) 지원 **(사인불명위로금)**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불명’인 경우 지원(1천만원) **(한시적지원)** ①사인불명위로금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접종 후 90일 내 사망, 최대 3천만원) 및 부검미실시사례 지원(최대 2천만원), ②접종 후 3일내 사망한 경우 또는 시간근접·특이 임상경과 등을 검토하여 위로금 지원(최대 3천만원)

주 1)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상당
2)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자료: 질병관리청

나. 검토의견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수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저조한 실집행률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 정부의 접종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 당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25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권고·실시('21.2월~'24.6월)되었으나,[21] 2024년 하반기 이후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접종량이 감소하고 있음.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최근 4년간 코로나19 연도별, 접종대상별 접종 건수]

(단위: 건)

구분		코로나19 접종실적			
연도	대상	계	보건소	의료기관	접종센터
2021	전국민	103,415,932	1,629,645	85,447,585	16,338,702
2022	전국민	30,943,359	595,699	30,320,747	26,913
2023	전국민	6,456,774	228,395	6,228,379	-
2024	고위험군[1)]	5,180,763	118,192	5,062,571	-
2025.8.	고위험군[1)]	253,460	25,673	227,786	-

주 1)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자료: 질병관리청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은 이상반응 보상을 위한 기타보전금을 2025년 대비 9억 7,700만원(16.1%) 증액된 7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5.10.23.시행)에 따라 기존 ‘지원 영역’이 ‘보상 영역’으로 편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기존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련성 의심’으로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1억원이 지급되었으나,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보상위원회 및 피해보상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망당시 최저임금의 240배로 확대됨.

[특별법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

구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❹-1기준	특별법 보상 심의 확정시
진료비	관련 진료비 최대 5천만원	관련 진료비 보장(한도 없음)
간병비	1일 5만원 (진료비 포함 5천만원 이내)	1일 5만원
장애인보상금	-	중증도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20% ~ 100%
사망보상금	(위로금 1억원)	사망당시 최저임금의 240배

주) ❹-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료: 질병관리청

그러나 피해보상 제도는 그동안 지원금 상향(1천만원→최대 3천만원), 시간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최대 3천만원) 등 지속적으로 국가 피해보상·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왔음에도 보상실적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접종량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 이상반응 보상건수 역시 2023년 2,078건에서 2024년 239건, 2025년 8월말 기준 40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보상심사 신청 및 보상 현황]

(단위: 건)

구분	신청 건수	심의 건수	보상[1]			
				진료비등	사망일시보상금등	장애일시 보상금
2021	47,784	8,618	3,433	3,433	1	-
2022	43,285	70,357	19,097	19,092	15	-
2023	6,686	15,694	2,078	2,076	7	-
2024	2,272	5,255	239	238	2	1
2025.8.	367	411	40	39	-	1
합계	100,394	100,335	24,887[2]	24,878	25	2

주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2)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중복 수령자 16명,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중복 수령자 1명
자료: 질병관리청

또한, 보상건수 감소로 인해 기타보전금은 2024년도의 경우 본예산 100억 4,000만원 중 24억 8,700만원만 집행(집행률 24.8%)되고 79억 3,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25년 8월말 기준으로도 집행률이 13.3%에 불과한 상황임.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2024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12,031	12,031	15,870	27,901	19,818	12,031	4,436	-	8,083
	- 일반수용비(210-01)	504	504	-	504	465	504	465	-	39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	100	100	100	100	-	-
	- 기타보전금(310-04)	10,040	10,040	15,490	25,530	17,594	10,040	2,487	-	7,936
	- 민간위탁사업비 (320-01)	1,387	1,387	380	1,767	1,659	1,387	1,384	-	108

(단위: 백만원)

구분	세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2025. 8.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7,700	7,700	-	7,700	1,893	7,700	1,893		
	- 일반수용비(210-01)	504	504	-	504	118	504	118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	100	60	100	60		
	- 기타보전금(310-04)	6,033	6,033	-	6,033	800	6,033	800		
	- 민간위탁사업비 (320-01)	1,063	1,063	-	1,063	915	1,063	915		

자료: 질병관리청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의 수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저조한 실집행률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 정부의 접종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소요를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7. 암역학조사 사업: 사업 개편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암 역학조사’** 사업은 암 역학조사 의뢰에 따른 역학조사 필요 여부 검토 후 역학조사 실시 또는 기술 지원, 암 역학조사 실시기준·방법 등 개발 및 역학조사 시행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같은 2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22)]

[2026년도 암 역학조사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만성질환 예방관리	13,925	13,925	14,332	407	2.9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근거생산	751	751	-	-	-
암 역학조사	287	287	287	-	-

질병관리청은 이 사업을 통해 ① 암역학조사, ② 암역학조사반 운영, ③ 암 역학조사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세부사업 과목구조 개편으로 2024년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암관리 사업’에서 질병관리청 소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이관되었음.[23)]

[암 역학조사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암 역학조사(자치단체경상보조): 250백만원**
○ 중앙암역학조사반 및 사업운영비 10백만원(회의수당 및 인쇄비 6백만원, 현장조사 여비 4백만원)
○ 암 역학조사 정책연구 27백만원(1개과제×27백만원)

자료: 질병관리청

22) 국민건강증진기금 - 만성질환 예방관리(6533-308)(만성질환관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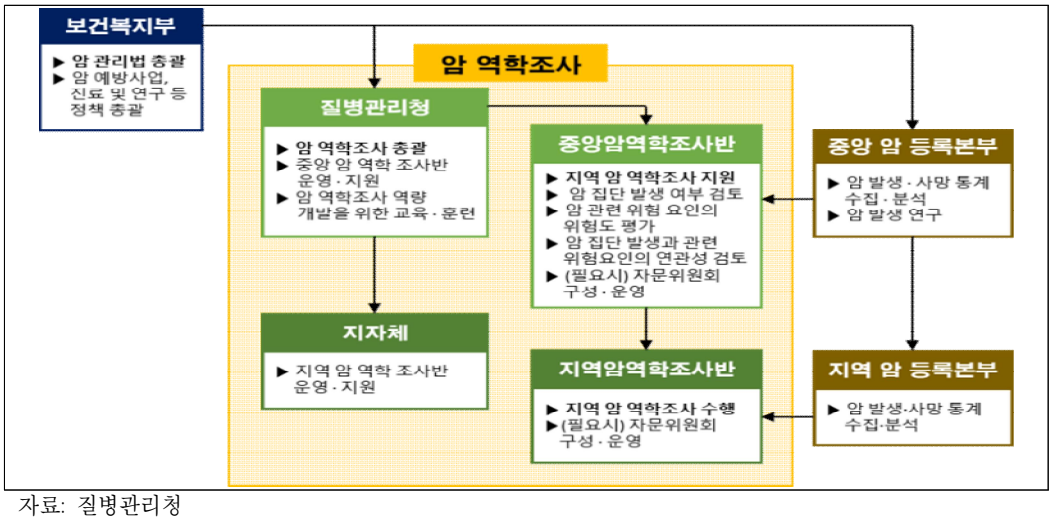
23)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암관리 사업(2756-301)(보건의료정책실)

나. 검토의견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암 역학조사 수행의뢰 및 실시 실적이 전혀 없고, 역학조사가 필요한 암진단 발생 관련 현안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반복적으로 편성된 뒤 전액 불용되고 있으므로, 사업 개편의 필요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암 역학조사 사업은 특정지역 및 인구집단에서 암의 집단 발생하는 경우 의심되는 암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관할지역 역학조사는 시·도지역역학조사반이 수행하고, 질병관리청 중앙역학조사반은 시·도의 지원 요청 등 필요시 역학조사의 시행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수행하고 있음.[24]

[암역학조사 추진체계도]



자료: 질병관리청

24) 「암관리법」
제16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암 역학조사 수행의뢰 및 실시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지자체의 암 역학조사 의뢰 및 역학조사가 필요한 암집단 발생관련 현안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관련 지자체 보조금이 매년 전액 불용되고 있음.[25]

[암 역학조사 사업 중 지자체경상보조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2019년	350	350	-	350	-	350	-	-	350
2020년	350	350	-	350	-	350	-	-	350
2021년	350	350	-	350	-	350	-	-	350
2022년	350	350	-	350	-	350	-	-	350
2023년	350	350	-	350	-	350	-	-	350
2024년	250	250	-	250	-	250	-	-	250
2025년	250	250	-	250	-	250	-		
2026년(안)	250	250	-	250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특정 암 종류의 과다한 발생 등이 예측되거나 관찰될 경우 그 발생원인을 신속히 규명하여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향후 암 집단발생 등 예기치 못한 암 역학조사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실제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된 후 불용되는 것은 다른 필수 예산 항목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25) <2018년 이전 암역학조사 집행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조사 내역	집행
2012년	500	여수시 갑상샘암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1차년도	178
		진도군 간암과 C형 간염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1차년도	270
2013년	500	여수시 갑상샘암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2차년도	200
		진도군 간암과 C형 간염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2차년도	284
2014년	440	여수시 갑상샘암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3차년도	123
		진도군 간암과 C형 간염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3차년도	204
		남원시 폐암 집단발생 1차년도	100
2015년	350	전라북도 남원시 폐암 집단발생 2차년도	350
2016년	350	전라북도 남원시 폐암 집단발생 3차년도	35
2018년	350	해남 지역 소아 혈액암 발생 보완 조사	21

자료: 질병관리청

따라서 이 사업이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8.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면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적정 예산편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전담인력 배치 및 국내 생산 중단 결핵 치료제 구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억 400만원(3.5%) 증액된 122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26)]

[2026년도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국가결핵예방	39,051	39,051	39,472	421	1.1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11,893	11,893	12,297	404	3.5

이 사업은 지역사회 결핵관리 질 향상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등에 결핵관리전담요원(595명)을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국비 50%)하는 ‘보건소 결핵관리전담용원 인건비’ 사업과 국내 생산 중단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및 국내 부재 소아용 항결핵제를 구매·공급하기 위한 ‘결핵 치료제 공급’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보건소 결핵관리전담요원 인건비: 11,961백만원
- (산출) 595명 x 40,205천원(단가) x 50%(국비)
○ **결핵 치료제 공급: 336백만원**

자료: 질병관리청

26)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결핵예방(6136-303)(감염병정책국)

나. 검토의견

결핵 치료제 공급 사업(2026년 계획액 3억 3,600만원)은 전체 결핵환자 수의 감소세 등으로 소요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매년 실집행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결핵 치료제 소요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결핵환자 수는 17,944명으로, 2015년(40,847명) 대비 56.1%, 2023년 대비 8.2%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결핵 과거력이 없는 결핵 신환자 수 역시 2024년 14,412명으로 2015년 대비 55.2% 감소하는 등 결핵환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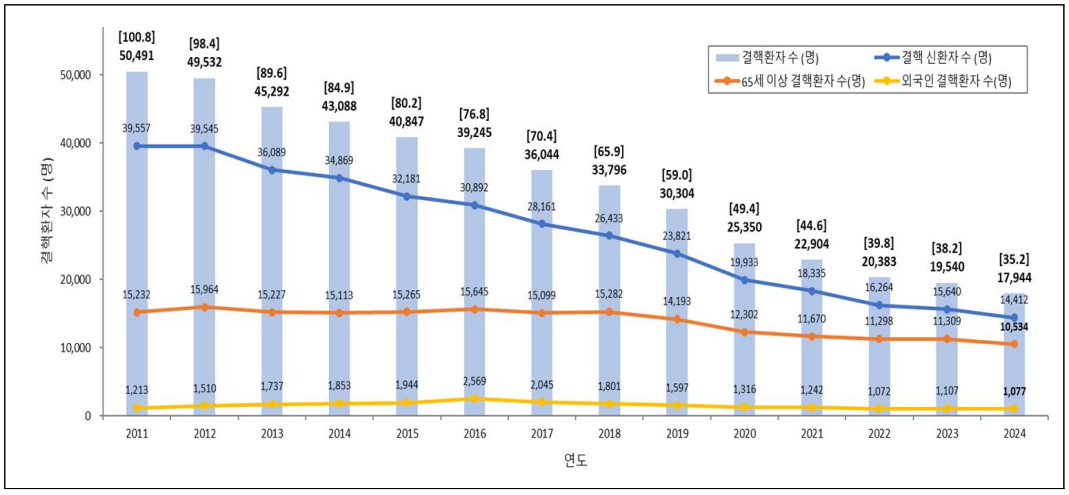
[결핵(신)환자 수(율)]

(단위: 명,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결핵환자수	40,847	39,245	36,044	33,796	30,304	25,350	22,904	20,383	19,540	17,944
전년대비증감	△5.2	△3.9	△8.2	△6.2	△10.3	△16.3	△9.6	△11.0	△4.1	△8.2
[율][주)]	[80.2]	[76.8]	[70.4]	[65.9]	[59.0]	[49.4]	[44.6]	[39.8]	[38.2]	[35.2]
신환자수	32,181	30,892	28,161	26,433	23,821	19,933	18,335	16,264	15,640	14,412
전년대비증감	△7.7	△4.0	△8.8	△6.1	△9.9	△16.3	△8.0	△11.3	△3.8	△7.9
[율]	[63.2]	[60.4]	[55.0]	[51.5]	[46.4]	[38.8]	[35.7]	[31.7]	[30.6]	[28.2]

주) 인구 10만명당 발생 인원율(2024년의 경우 10만명 당 35.2명 발생)
자료: 질병관리청

[결핵환자 추이]



자료: 질병관리청

최근 결핵치료제 공급사업의 실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해 결핵환자 수의 지속적 감소,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구성 변화에 따른 주사제 사용량 감소 및 단기 치료요법 확대 등 치료환경의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결핵 치료제 공급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안)
예산액	실집행	예산액	실집행	예산액	실집행	예산액	실집행	예산액	실집행	예산액
345	106	949	779	787	146	289	91	336	집행중	336

주) 2025년 7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3,700만원임(실집행률 11.0%)
자료: 질병관리청

특히 정부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3년~'27년)」에 따라 2027년까지 결핵발생률 20명(10만명 당)을 목표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철저한 환자관리 및 지원, 결핵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결핵환자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최근 5년간 결핵 치료제 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과 실제 집행 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21년·2022년 및 2024년의 경우 카나마이신 치료제 구매를 위해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구매하지 않았으며, 2022년 이후 매년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제는 소아용 항결핵제가 유일함.

[결핵치료제 공급 사업 실집행내역]

구분	편성	집행
2021	카나마이신: 2,486원(단가)×62,500앰플(소요량)=155백만원 스트렙토마이신: 7,980원(단가)×17,000바이알(소요량)=136백만원 클로파지민: 600원(단가)×64,000정(소요량)=38백만원 의약품 보관 및 배송: 16백만원	소아용 항결핵제: 4,430원×5,641팩=25백만원 스트렙토마이신: 8,289원×9,570바이알=76백만원 의약품 보관 및 배송: 5백만원

구분	편성	집행
2022	카나마이신: 2,486원(단가)×62,500앰플(소요량)=155백만원 스트렙토마이신: 7,980원(단가)×17,000바이알(소요량)=136백만원 클로파지민: 600원(단가)×64,000정(소요량)=38백만원 소아용 항결핵제: 600천원(공급단가)×1,000병(소요량)=604백만원 의약품 보관 및 배송 : 16백만원	소아용 항결핵제: 185천원×4,160병=767백만원 의약품 보관 및 배송 : 12백만원
2023	카나마이신: 2,486원(단가)×31,000앰플(소요량)=77백만원 스트렙토마이신: 11,000원(단가)×5,500바이알(소요량)=60백만원 소아용 항결핵제: 145,000원(단가)×4,166병(소요량)=604백만원 의약품 보관 및 배송: 46백만원	카나마이신: 2,486원×29,640앰플=74백만원 소아용 항결핵제 : 170천원×500병=85백만원×80%(선금)=67백만원 * 소아용 항결핵제 입고 지연으로 20% 이월(17백만원) 의약품 보관 및 배송: 5백만원
2024	카나마이신: 2,486원(단가)×31,000앰플(수요량)=77백만원 스트렙토마이신: 11,000원(단가)×3,280바이알(수요량)=36백만원 소아용 항결핵제: 185천원(단가)×951병(수요량)=176백만원	스트렙토마이신: 9,800원×4,950바이알=48백만원 소아용 항결핵제: 163천원×85병=14백만원 의약품 구매 부대비용 등: 29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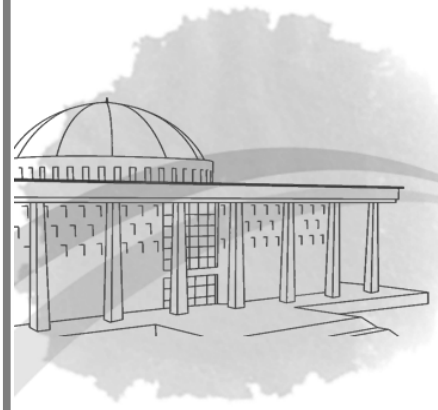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자료: 질병관리청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사전 수요조사, 사용량·재고량에 대한 정기 조사 및 모니터링, 의약품의 유효기간 및 해외 유통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량을 예측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획하였으나, 장기 치료의 특성상 실제 사용과 예측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사전 예측이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최근 공급이 중단된 다제내성결핵치료제(프로티온아미드)의 공급 필요성에 따라 긴급 도입이 결정되는 등 장기요법 다제내성결핵환자의 치료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결핵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근 환자 수의 감소 추세 및 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핵 치료제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소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1)]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수입은 2조 8,7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9억원(10.5%) 증가함.

예산은 1조 8,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01억원(15.8%) 증가하고, 기금은 1조 3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억원(2.3%) 증가함.[2)]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5,837	15,837	18,338	2,501	15.8
기 금	10,129	10,129	10,367	238	2.3
총수입	25,966	25,966	28,705	2,739	10.5

문의 : 이동현 예산결산조사관 gerbera@assembly.go.kr (02-6788-5680)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정부안 제출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이관사업 현황은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참조

2)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지출은 15조 3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09억원(8.3%) 증가함.

예산은 14조 1,1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315억원(8.7%) 증가한 반면, 기금은 9,219억원으로 전년 대비 △506억원(△5.2%) 감소함.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29,839	129,956	141,154	11,315	8.7
기 금	9,725	9,725	9,219	△506	△5.2
총지출	139,564	139,681	150,373	10,809	8.3

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26년안 8,786억원) 미포함

나. 예산안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5개 회계(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조 4,4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32억원(△2.3%) 감소함.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652	652	371	△281	△43.1
환경개선특별회계	73,468	77,242	71,476	△1,992	△2.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79	1,879	2,224	345	18.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7	127	323	196	154.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1	21	21	-	-
합 계	76,147	79,921	74,415	△1,732	△2.3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개 회계(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조 4,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59억원(4.8%) 증가함.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81,873	86,243	76,456	△5,417	△6.6
환경개선특별회계	73,468	77,242	71,476	△1,992	△2.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2,007	27,754	32,255	248	0.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5,967	26,880	44,187	18,220	70.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24	824	24	△800	△97.1
합 계	214,139	218,943	224,398	10,259	4.8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5개 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조 2,5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9억원(2.5%) 증가함.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한강수계관리기금	5,626	5,626	5,375	△251	△4.5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76	2,376	2,663	287	12.1
금강수계관리기금	1,908	1,908	2,042	134	7.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697	1,697	1,803	106	6.2
석면피해구제기금	623	623	656	33	5.3
합 계	12,230	12,230	12,539	309	2.5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21개(1,690억 1,3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3)]

그 중 ‘물순환촉진지원’ 사업은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홍수·가뭄 빈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도시침수, 비점오염 유출 등 복합적 물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6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지원’ 사업은 국내 환경 기업의 AI 응용제품 사업화 기간 단축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1~2년 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품목의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물순환촉진지원	1,600
[환경개선특별회계]		
2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지원사업	50,000
3	기후변화 적응 수재해 관리 기술개발사업(R&D)	29,897
4	CLEAN-AIR 기술개발(R&D)	16,300
5	폐타이어 활용 고품질 원료 확보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R&D)	8,000
6	유기성 폐자원 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사업(R&D)	8,000
7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 기술개발(R&D)	7,000
8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및 AI활용 고도화 기술개발(R&D)	6,700
9	수소자동차 핵심부품 재활용 기술개발사업(R&D)	6,300
10	바이오가스 연료 활용 기술개발사업(R&D)	6,000
1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태계 복원 및 관리 기술개발사업(R&D)	5,900
12	이차전지 염폐수처리 기술개발사업(R&D)	3,900
13	상수도 과불화화합물 대응 기술개발사업(R&D)	3,700
14	지역맞춤형 오존관리 기술개발사업(R&D)	3,600
15	폐의류 문제해결 플래그십 재활용 기술개발사업(R&D)	3,500
16	현장수요 맞춤형 환경분야 실용화 촉진 기술개발(R&D)	2,700
17	차세대 초순수 생산·공급 및 자립형 생산공정 기술개발사업(R&D)	2,600
18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원료개발 및 이용다변화 기술개발(R&D)	1,000
19	국제협력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143
20	국제협력관실 기본경비	173

3)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1	무공해차 안심보험	2,000
총지출		169,013

[산업통상부로부터 이관받은 2026년도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전력망물리기반AI모델개발및실증(R&D)	4,000
2	에너지기술사업화스피드업(Speed-Up)사업(R&D)	2,000
3	에너지차세대리더육성사업(R&D)	5,625
4	전기차충전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정보화)	176
5	SMR혁신제조국산화 기술개발(R&D)	8,130
[에특회계]		
6	수소연료전지고도화지원센터플랫폼구축	599
7	수소시설안전관리강화	918
8	수용가전기설비 원격점검및디지털 안전기술개발(R&D)	4,000
9	장거리고압수소배관망 고안전성확보및AI기반 안전관리기술개발	4,000
[지특회계]		
10	AX실증밸리조성(R&D)	7,033
11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세종)	18
[전력기금]		
12	가파도RE100마을(Net-Zeroisland) 조성	22,000
13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24,500
14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119,616
15	재생e 인버터 성능개선 사업	3,000
16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8,247
17	해상풍력용부품시험센터구축	2,000
18	사고저항성핵연료(ATF)인허가대응기술개발사업(R&D)	1,000
19	차세대핵연료시범연료봉기술개발사업(R&D)	3,702
20	소형모듈원전(SMR)제조부품시험검사지원센터건립	100
21	원전생태계고도화사업	7,988
22	방사선환경실증기반구축사업	1,500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비점오염저감’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총 64개임.[4)]

4)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금호강 하천 조성	3,200	15,100	11,900	371.9
2	수자원정보구축 및 운영(정보화)	2,640	5,860	3,220	122.0
3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5,000	10,942	5,942	118.8
4	하천편입토지보상	10,000	19,696	9,696	97.0
5	소속기관전산운영경비	1,693	2,978	1,285	75.9
6	하천재해대책비	232,000	400,000	168,000	72.4
7	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	5,042	6,919	1,877	37.2
8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R&D)	16,720	22,380	5,660	33.9
9	국가하천유지보수	262,157	296,948	34,791	13.3
10	국가하천정비	679,400	747,651	68,251	10.0
11	취양수시설 개선	-	38,000	38,000	순증
[환경개선특별회계]					
12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청사 신축	185	1,500	1,315	710.8
13	전국폐기물통계조사	450	2,429	1,979	439.8
14	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960	3,180	2,220	231.3
1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8,748	26,081	17,333	198.1
16	국토환경 녹색복원	3,371	9,826	6,455	191.5
17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R&D)	2,800	6,200	3,400	121.4
18	환경교육강화	1,932	4,276	2,344	121.3
19	디지털 담수화 플랜트 농축수 자원화 기술개발사업(R&D)	3,700	7,800	4,100	110.8
20	생태계기반탄소흡수원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R&D)	2,365	4,727	2,362	99.9
21	인재개발원기본경비	113	207	94.0	83.2
22	물환경정책연구 및 홍보	6,272	10,578	4,306	68.7
23	물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R&D)	3,500	5,900	2,400	68.6
24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사업(R&D)	5,000	8,000	3,000	60.0
2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13,809	21,984	8,175	59.2
26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3,025	4,777	1,752	57.9
27	미세먼지정보센터 기본경비	241	372	131	54.4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28	비점오염저감사업	28,786	43,857	15,071	52.4
29	화학물질관리 국제협력	665	1,006	341	51.3
30	환경지킴이	10,288	15,315	5,027	48.9
31	국토환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3,264	4,750	1,486	45.5
32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개발(R&D)	6,512	9,279	2,767	42.5
33	상수도 연구관리	7,647	10,544	2,897	37.9
34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지원	4,223	5,814	1,591	37.7
35	공익근무요원운영(총액인건비대상)	171	235	64	37.4
36	새만금사업환경대책	14,189	19,297	5,108	36.0
37	수도권청기본경비	491	666	175	35.6
38	한국환경보전원 출연	5,674	7,498	1,824	32.1
39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48,953	64,078	15,125	30.9
40	야생동물질병관리원 기본경비	643	841	198	30.8
4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333,328	425,304	91,976	27.6
4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16,661	138,008	21,347	18.3
43	국립공원공단출연	222,728	258,998	36,270	16.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4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459	5,508	5,049	1,100.0
45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제주)	633	2,727	2,094	330.8
46	습지보전관리(자율)	8,466	22,191	13,725	162.1
47	야생동물 피해예방관리(제주)	150	354	204	136.0
48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자율)	28,465	57,630	29,165	102.5
49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자율)	3,879	7,820	3,941	101.6
50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세종)	140	280	140	100.0
51	노후상수도정비(제주)	27,195	53,566	26,371	97.0
52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자율)	3,185	5,581	2,396	75.2
53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4,121	6,996	2,875	69.7
54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제주)	1,035	1,735	700	67.6
55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자율)	8,834	13,705	4,871	55.1
56	하수처리장 설치(세종)	820	1,174	354	43.2
57	하수처리장 설치(자율)	790,900	1,110,459	319,559	40.4
58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자율)	3,300	4,630	1,330	40.3
59	하수처리장 설치(제주)	54,202	74,937	20,735	38.3
60	노후상수도정비(세종)	1,895	2,557	662	34.9
61	하수관로 정비	674,789	882,070	207,281	30.7
62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자율)	55,078	66,011	10,933	19.9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63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자율)	904,763	1,073,373	168,610	18.6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64	환경기초시설 설치	13,846	19,530	5,684	41.1

주)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수행하던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을 일반회계로 분리하여 편성한 것임

[산업통상부로부터 이관받은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1,645	3,666	2,021	123
[에특회계]					
2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2,857	3,381	524	18.3
3	시멘트산업이산화탄소저감종합실증센터	5,912	7,612	1,700	28.8
4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R&D)	1,542	5,275	3,733	242.1
5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44,018	52,113	8,095	18.4
6	CCUS(이산화탄소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진흥센터 구축	300	8,800	8,500	2,833.3
7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8,900	37,200	28,300	318.0
8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6,600	20,900	14,300	216.7
9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9,185	26,458	17,273	188
10	액화수소(LH2)인수기지핵심설비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3,000	7,100	4,100	136.7
[전력기금]					
11	500kV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개발(R&D)	-	12,000	12,000	순증
12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해석기술개발(R&D)	4,500	7,409	2,909	64.6
13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1,160	3,130	1,970	169.8
14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4,183	5,559	1,376	32.9
15	차세대그리드센터 구축	5,790	9,310	3,520	60.8
16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56,373	202,085	45,712	29.2
17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326,300	648,000	321,700	98.6
18	차세대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혁신지원(R&D)	2,000	5,615	3,615	180.8
19	무탄소에너지보증	42,000	50,000	8,000	19.0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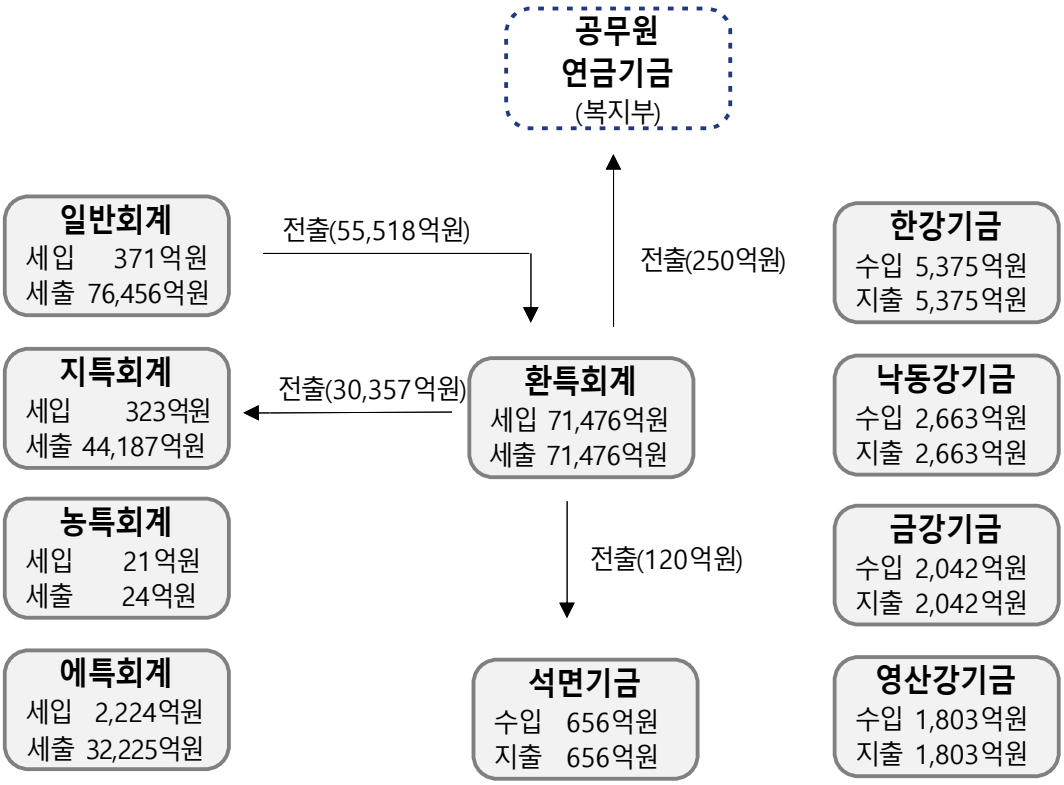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20	AI기반분산·예비전력안전관리통합플랫폼개발및실증(R&D)	4,164	9,446	5,282	126.8
21	LiB기반 위험성평가및안전성강화기술개발(R&D)	5,000	16,040	11,010	220.8
22	극한환경대응차세대BESS고신뢰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R&D)	2,500	7,500	5,000	200
23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R&D)	3,500	7,100	3,600	102.9
24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5,408	10,155	4,747	87.8
25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35,160	83,920	48,760	138.7
[방폐기금]					
26	처분시설운영	35,695	40,519	4,824	13.5
27	중저준위방폐물 복합처분시설안전관리강화기술개발(R&D)	5,100	8,944	3,844	75.4
28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1,502	2,500	998	66.4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5조 5,518억원 전출되었음.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3조 357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120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50억원이 전출되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1) 총계 기준
2) 정부안 제출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
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26년안 8,786억원) 미포함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특징으로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기본방향으로하여 관련 예산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주요 사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4,253억원, 27.6%), 전기차 안심보험(20억원, 신규) 등의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음.

또한,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2,969억원, 13.3%), AI 홍수예보인프라(215억원, 126.6%), 물순환촉진지원(16억원, 신규) 등을 확대하였음.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은 2026년 예산안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비율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예산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1,000%를 상회하는 등 초과수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잔액 규모 등 수납액이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세입예산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물순환촉진지원’사업은 지정된 물순환 촉진구역에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 촉진구역 공모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속히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넷째,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요조사, 과제발굴 및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 중복지원 방지방안, 지원대상 선정 기준, 사업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2025년 10월 1일「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동법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상업 · 무역 · 공업 ·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 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 · 이용 · 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으로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총수입은 7조 6,526억원으로 2조 8,705억원에서 4조 7,821억이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19조 1,282억원으로 15조 373억원에서 4조 909억원이 증가하였음.

2026년 세출예산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총 132개 세부사업을 이관받았고, 해당 사업들의 2026년 예산안은 4조 909억원임.[5)]

주요 이관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사업 1,196억 1,600만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사업 6,480억원, ‘원전 생태계 고도화’사업 79억 8,800만원 등임.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이관 사업 현황(세출)]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전기차충전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정보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전기차충전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정보화)	176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전력망물리기반AI모델개발및실증(R&D)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전력망물리기반AI모델개발및실증(R&D)	4,000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에너지기술사업화스피드업(Speed-Up)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에너지기술사업화스피드업(Speed-Up)사업(R&D)	2,000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SMR혁신제조국산화기술개발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SMR혁신제조국산화기술개발사업(R&D)	8,130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총액)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총액)	118

5) 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전기위원회기본경비(총액)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전기위원회기본경비(총액)	17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	1,311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전기위원회기본경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전기위원회기본경비	212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에너지차세대리더 육성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에너지차세대리더 육성사업(R&D)	5,625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	4,458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160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에너지정보통계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정보통계센터	446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에너지센서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센서스	1,490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에너지국제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국제협력	500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회계관리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회계관리비	39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분산에너지활성화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분산에너지활성화지원	37,200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82,842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수소시설안전관리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수소시설안전관리강화	918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9,785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	1,788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시멘트산업이산화탄소 저감종합실증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시멘트산업이산화탄소 저감종합실증센터	7,612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26,458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4,853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	1,935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및도입기반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도입기반구축	1,485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구축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구축사업	5,074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20,900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	8,800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수소연료전지 고도화지원센터 플랫폼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수소연료전지 고도화지원센터 플랫폼 구축	599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R&D)	194,829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액화수소(LH2)인수기지핵심설비 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액화수소(LH2)인수기지핵심설비 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7,100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장거리고압수소배관망 고안전성확보및AI기반 안전관리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장거리고압수소배관망 고안전성확보및AI기반 안전관리기술개발(R&D)	4,000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수용가전기설비원격 점검및디지털안전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수용가전기설비원격 점검및디지털안전기술개발(R&D)	4,000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52,113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R&D)	630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에너지기술R&D 관리기관지원(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기술R&D 관리기관지원(R&D)	5,275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에특)(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에특)(R&D)	10,473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276,510
산업통상자원부	지특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서울계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특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서울계정)	6,864
산업통상자원부	지특회계	수소생산기지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특회계	수소생산기지 구축	5,990
산업통상자원부	지특회계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특회계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원	180
산업통상자원부	지특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제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특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제주)	920
산업통상자원부	지특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특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세종)	18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기금전담기관인건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기금전담기관인건비	4,917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기금관리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기금관리비	1,81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사업운영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사업운영비	1,06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5,06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127,674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R&D)(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R&D)(산업부)	83,92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전기설비안전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기설비안전점검	109,454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52,9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14,95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24,5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노후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노후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3,28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3,13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8,57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ESS통합관리시스템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ESS통합관리시스템구축	1,204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극한환경대응차세대BESS 고신뢰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극한환경대응차세대BESS 고신뢰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R&D)	7,5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AI기반분산·예비전력안전관리 통합플랫폼개발및실증(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AI기반분산·예비전력안전관리 통합플랫폼개발및실증(R&D)	9,44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LiB기반위험성평가 및 안정성강화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LiB기반위험성평가 및 안정성강화기술개발(R&D)	16,04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전력효율향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력효율향상	120,334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1,7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02,08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648,000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9,0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차세대재생에너지 표준화및인증고도화혁신지원(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차세대재생에너지 표준화및인증고도화혁신지원(R&D)	5,61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재생에너지인버터성능개선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재생에너지인버터성능개선사업	3,0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무탄소에너지 보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무탄소에너지 보증	50,0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8,247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해상풍력용 부품 시험센터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해상풍력용 부품 시험센터 구축	2,0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가파도RE100마을 (Net-Zeroisland)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가파도RE100마을 (Net-Zeroisland)조성	22,0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5,55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119,61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20,0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차세대그리드센터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차세대그리드센터구축	9,31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지원사업	1,7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구축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구축사업	13,08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국산무연탄사용 발전소 한시적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국산무연탄사용 발전소 한시적 지원	16,42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기타지원(발전소주변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기타지원(발전소주변지역)	4,13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335,75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R&D)	1,22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R&D)	3,168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R&D)	31,89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원전해체경쟁력 강화기술개발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원전해체경쟁력 강화기술개발사업(R&D)	49,227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R&D)	26,66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현장수요대응원전첨단제조기술및부품장비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현장수요대응원전첨단제조기술및부품장비기술개발(R&D)	7,153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R&D)	4,5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 해석 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 해석 기술개발(R&D)	7,40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R&D)	7,1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500kV급전압형HVDC변환용 변압기기술개발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500kV급전압형HVDC변환용 변압기기술개발사업(R&D)	12,0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인허가대응기술개발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인허가대응기술개발사업(R&D)	1,0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차세대핵연료시범 연료봉기술개발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차세대핵연료시범 연료봉기술개발사업(R&D)	3,7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사업(R&D)	7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전력기금)(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전력기금)(R&D)	2,033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전력)(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전력)(R&D)	15,938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CDA)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CDA)	21,52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전력산업홍보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력산업홍보	5,378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전력산업정책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력산업정책개발	347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32,18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10,15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150,0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원전생태계고도화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원전생태계고도화사업	7,988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사업	1,5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100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방폐기금운영인건비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방폐기금운영인건비	986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방폐기금운영관리비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방폐기금운영관리비	435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처분시설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처분시설운영	40,519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처분시설방사선안전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처분시설방사선안전관리	9,872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17,572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3,498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방사성폐기물홍보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방사성폐기물홍보	2,762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R&D)	23,115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 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 개발(R&D)	700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중저준위방폐물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강화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중저준위방폐물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강화기술개발(R&D)	8,944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 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 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R&D)	5,500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2,500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인건비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인건비	40,783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본경비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본경비	26,626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본부인건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본부인건비	17,622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본부기본경비(총액)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본부기본경비(총액)	332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총액)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총액)	18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본부기본경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본부기본경비	1,205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	452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223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258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산업기술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에너지기술분야)	517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정보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정보화)	267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IEF, CCOP분담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IEA, IRENA 분담금)	3,125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DA)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DA)	824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에너지복지 사각지대해소)(사업운영비)	494,027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에너지자원정책연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자원정책연구	224
산업통상자원부	지특회계	AX실증밸리조성(R&D)(자율주행모빌리티플랫폼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특회계	AX실증밸리조성(R&D)(에너지산업AX핵심기술개발)	4,923
합계						4,090,918

세입예산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에서 601억, 에특회계에서 4조 1,566억원과 전력기금 및 방폐기금 총 15조 5,268억원을 이관받았고, 이를 합한 2026년 이관된 세입예산액은 19조 7,435억원임.[7)]

6) (산업부)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역량강화, 페루 태양광 에너지 전기차 충전소 시험운영, 인도네시아 영농형태양광 발전 기반 전기이륜차 충전 시스템 구축, UNIDO 필리핀・라오스 산업 부문의 녹색 구(기후부) 스리랑카 에어컨 에너지효율시험소 구축 지원 사업, IEA 케냐・세네갈 포용적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디지털에너지시스템 비전 및 전략 수립 지원

7) 총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도 이관 사업 현황(세입)][8]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목 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목 명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15,066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과태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과태료	110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과징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과징금	26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44,920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투자계정)	정부출자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투자계정)	정부출자수입	10,593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투자계정)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투자계정)	기타재산이자수입	7,469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투자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투자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	33,583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투자계정)	계정간전입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투자계정)	계정간전입금	147,644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투자계정)	기금전입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투자계정)	기금전입금	909,142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투자계정)	기금예수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투자계정)	기금예수금	2,299,678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투자계정)	전년도세계잉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투자계정)	전년도세계잉여금	355,452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융자계정)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융자계정)	기타민간이자수입	22,269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융자계정)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융자계정)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70,764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기타민간이자수입	15,57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56,453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가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가산금	2,798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2,616,097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108,433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기타잡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기타잡수입	31,532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 /기금	목 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 /기금	목 명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85,543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기금예탁원금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기금예탁원금회수	443,25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기금예탁이자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기금예탁이자수입	12,64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8,263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13,050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193,758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법정부담금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법정부담금	837,553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41,347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기타잡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기타잡수입	88,184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기금예탁원금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기금예탁원금회수	4,016,300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기금예탁이자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기금예탁이자수입	100,321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52,147
산업통상자원부	방폐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383,527
합계						19,743,510

8)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과태료, 과징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에특회계) (투자계정)정부출자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융자계정)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일부 세입 이관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 전출 규모 과다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2026년 예산안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총계는 전년 대비 1,992억 2,300만원(△2.7%) 감소한 7조 1,476억 1,100만원임.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5조 5,517억 7,400만원, 회계 자체수입 1조 5,398억 2,100만원 및 전년도 세계잉여금 560억 1,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임.

[2026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총 계	7,346,834	7,724,233	7,147,611	△199,223	△2.7
일반회계 전입금	5,982,683	6,360,082	5,551,774	△430,909	△7.2
수입(자체수입)	1,315,851	1,315,851	1,539,821	223,970	17.0
전년도 세계잉여금	48,300	48,300	56,016	7,716	16.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중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9] 금액은 전년 대비 4,309억 900만원(△7.2%) 감소한 5조 5,517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 3조 7,747억 9,700만원은 「환경정책기본법」[10]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분으로 전입되었음.

9) 「환경정책기본법」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10)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과 관련하여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2026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예산안(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임의전입금)	5,982,683	6,360,082	1,776,977	△4,205,706	△70.3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교통·에너지·환경세분)	-	-	3,774,797	3,774,797	순증
합계	5,982,683	6,360,082	5,551,774	△430,909	△7.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액은 전년 대비 6,236억 6,300만원(25.8%) 증가한 3조 357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지역지원계정 1조 3,077억 6,700만원과 지역자율계정 1조 5,908억 1,500만원 등을 합산한 금액임.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예산안(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 (8010-801)	2,009,624	2,100,918	1,307,767	△701,857	△34.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전출 (8010-803)	1,895	1,895	4,011	2,116	111.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전출 (8010-804)	27,195	27,195	133,125	105,930	389.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 (8010-808)	373,341	373,341	1,590,815	1,217,474	326.1
합계	2,412,055	2,503,349	3,035,718	623,663	25.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4개 사업 총 3,938억 3,800만원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였고, 2026년에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12개의 사업 총 1조 3,524억 8,500만원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였음.

[2023년 ~ 2026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사업]

(단위: 백만원)

		2023년	2025년	2026년
사업 수	지원	-	3개	4개
	자율	2개	1개	8개
	합계	2개	4개	12개
예산액	지원	-	389,208	36,489
	자율	101,605	4,630	1,315,996
	합계	101,605	393,838	1,352,485
대표 사업	사업명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자율)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지원)	하수처리장 설치(자율)
	예산액	17,642	13,342	1,186,57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2026년 예산안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비율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예산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6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7조 1,476억 1,100만원인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총 5조 5,517억 7,400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 총 1조 5,398억 2,100만원 등을 합한 액수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교통시설특별회계법」·「환경정책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서 일정한 비율로 각각의 특별회계 및 기금에 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1)]

11) 교통시설특별회계로 68% (「교통시설특별회계법」제8조제1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23%(「환경정책기본법」부칙 제4조의2), 기후대응기금으로 7%(「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으로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2조)

그 중「환경정책기본법」부칙 제4조의2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3조 7,747억 9,7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법정 전입되었음.

법정전입금을 타 회계로 전출하는 것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3%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정전입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임의전입금인 1조 7,769억 7,700만원만이 타 회계로 전출이 가능할 것임.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총 3조 357억 1,800만원을 전출하도록 편성되어 있음. 이는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임의전입금인 1조 7,769억 7,700만원 대비 1조 2,587억 4,100만원을 초과하여 전출하는 것임.

[임의전입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전출금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 환경개선특별회계 임의전입금	1조 7,769억 7,700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	3조 357억 1,800만원
차이	1조 2,587억 4,100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단 교통·에너지·환경세분을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했으므로「환경정책기본법」을 준수하였고, 전입된 금액을 타 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임.

그러나「환경정책기본법」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전입 규정은 단순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이전하는 기술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환경개선 목적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일단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한 이후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국회가 개별 법률을 통해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을 각각 교통시설특별회계로 68%, 환경개선특별회계로 23%, 기후대응기금으로 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으로 2%를 전입하도록 규정한 재원 분배 취지를 왜곡하고 법정 전입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보임.

따라서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액이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보다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일반회계】

<세 입>

2.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실적 및 수입 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수입’ 은 국고보조금 예치이자, 대행역무비 예치이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7,400만원(130.8%) 증가한 3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1,586	1,586	3,660	2,074	130.8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 세부내역]

○ 최근 3년 평균 결산액: 36억 6,000만원

- 2022년 36억 3,100만원, 2023년 28억 6,500만원, 2024년 44억 8,500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2) 일반회계-기타재산이자수입(54-546)(기획재정담당관)

나. 검토의견

첫째,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1,000%를 상회하는 등 초과수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잔액 규모 등 수납액이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세입예산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 평균 결산액을 기준으로 2026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을 3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이는 2022년 수납액인 36억 3,100만원, 2023년 수납액인 28억 6,500만원, 2024년 수납액인 44억 8,500만원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임.

[최근 4년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210	210	1,915	5,806	3,631	1,729.0	62.5	2,174	-
2023	210	210	210	5,092	2,865	1,363.8	56.2	2,227	-
2024	210	210	210	6,646	4,485	2,135.7	67.5	2,161	-
2025. 8.	1,586	1,586	1,586	6,380	4,164	262.5	65.2	2,216	-
2026(안)	3,660	3,660	3,660	-	-	-	-	-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수납액(수납률)이 2022년 1,729.0%, 2023년 1,363.8%, 2024년 2,135.7%인 등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1,000%를 상회하고 있음. 심지어, 2025년 8월까지의 수납액이 41억 6,400만원으로, 이미 예산액인 15억 8,600만원보다 25억 7,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수납률이 262.5%에 해당함.

이와 같이 수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로 대행역무비 예치이자가 늘어남에 기인함. 2023년 대행역무비 예치이자로 21억 2,500만원이 수납되었고, 2024년에는 29억 6,100만원, 2025년에는 8월 기준으로 이미 40억 8,500만원이 수납되었음.

대행역무비 예치이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수탁사업에 대한 예치이자이고, 이는 매년 위·수탁사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것이므로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 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위수탁사업비 규모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위수탁사업비 총 규모(예산)	307,500	322,000	324,300
대행역무비 예치이자	2,125	2,961	4,085
국고보조금 예치이자	662	1,388	53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예치이자	66	98	9
기타	11	38	17
합계	2,865	4,485	4,16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같이 2023년부터 매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액이 늘고 있고, 2025년 상반기 수납액이 이미 2026년 예산안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최근 3년간 수납액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현실적인 수납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고보조금 잔액 규모, 금리 및 예치이자 수입 증가 원인을 분석하여 기타재산이자수입 세입예산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경우 연례적으로 소송 결과 불복에 따른 임의 체납을 이유로 약 20억원이 수납되지 않고 있으므로, 독촉 등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수납할 필요가 있음.

기타재산이자수입은 2022년부터 연례적으로 약 20억원이 미수납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하천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 기인함.

구체적으로, 2025년 8월까지 미수납액 22억 4,900만원 중 20억 7,200만원이 소송판결금 이자 미수납액에 해당하고, 이 중 18억 1,100만원이 하천사업과 관련한 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임.[13)]

13) 하천분야 주요 소송은 총 2건(판결이자 미납급 20억 7,200만원 중 18억 1,100만원)이며, 이는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청구 소송(2015년 납부 요청, 판결이자 미납금 총 9억 5,500만원)과 하천사업보상 서류위조 관련 소송(2021년 납부 요청, 판결이자 미납금 총 8억 5,600만원)으로 구성됨.

[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미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총계	국고보조금 정산이자	법정대행사업비 정산이자	소송판결금 이자	기타
미수납 내역	2,249	132	10	2,072	3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소송판결금 이자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 및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수납하겠다는 입장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연례적으로 수납하지 않고 있는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확정된 소송 판결에 불복하여 체납되고 있는 금액 및 이자를 조속히 수납할 필요가 있음.

<세 출>

3.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지역 반대 등을 해소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보 개방,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극한가뭄 발생으로 하천수위 저하 시 기존 취·양수시설에서 취수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시설을 개선해 안정적인 물이용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8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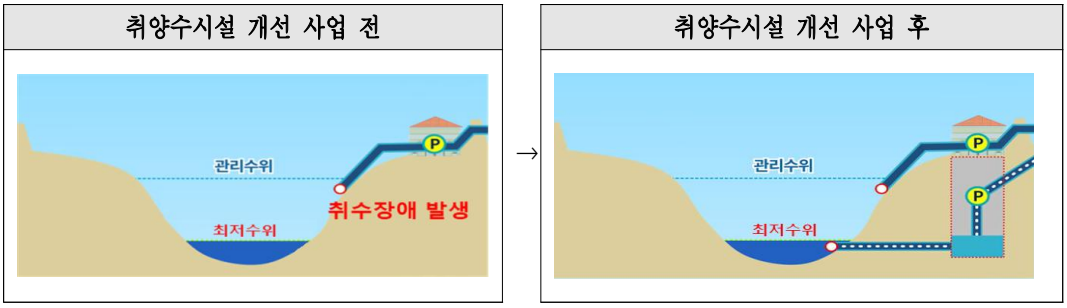
[2026년도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취양수시설 개선	-	-	38,000	38,000	순증

이 사업은 하천의 수위가 저하되었을 때 현재의 취·양수시설로는 물이용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하천이 최저수위일 경우에도 물이용이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를 개선하는 사업임.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내용]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4) 일반회계-취양수시설 개선(5331-311)(수자원정책관)

이 사업은 2021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수행하던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을 일반회계로 분리하여 편성한 것임.

2025년 10월 기준 총 70개의 취·양수장이 있는데,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사업으로 1개소의 개선이 완료되었고, 7개소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및 습지 보호구역 지정으로 사업수행 여부 검토 중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미 완료되었거나 미실시 예정인 8개소를 제외하고 개선이 필요한 62개의 취·양수장 중 14개소[15]는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사업으로 수행하고, 48개소[16]는 이 사업을 통해 수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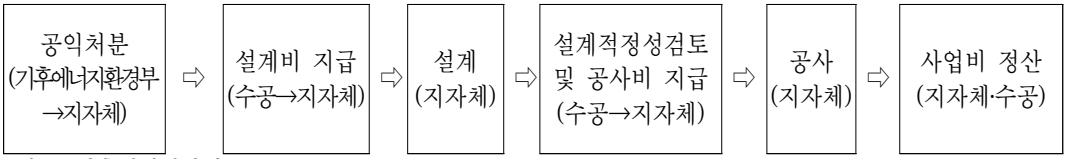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table>
<tr><th colspan="8">취·양수장 (70개소)</th></tr>
<tr><th colspan="4">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사업(기존사업)</th><th colspan="3">취양수시설 개선사업(신규사업)</th><th>검토</th></tr>
<tr><td>완료</td><td>공사중</td><td>설계중</td><td>설계완료</td><td colspan="2" rowspan="2">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사업(계속)</td><td rowspan="2">신규</td><td rowspan="4">7개소</td></tr>
<tr><td rowspan="3">1개소</td><td rowspan="3">4개소</td><td>18개소</td><td>11개소</td></tr>
<tr><td colspan="2">이월액으로 수행</td><td>설계중</td><td>설계완료</td><td rowspan="2">29개소</td></tr>
<tr><td>4개소</td><td>6개소</td><td>14개소</td><td>5개소</td></tr>
<tr><td>1개소</td><td colspan="3">14개소</td><td colspan="3">48개소</td><td>7개소</td></tr>
</tabl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취양수시설 개선처분을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계비 및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수행절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예산안은 총 48개소의 취·양수시설의 설계비로 222억원, 공사비로 158억원 등 총 380억원이 편성되었음.

15) 공사중 4개소, 설계중 4개소, 설계완료 6개소를 합하여 총 14개소

16) 공공수역 녹조발생 사업에서 19개소, 신규 29개소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건설보상비(410-00) : 380억원 - 취양수 시설 48개소(양수장 40개소, 취수장 8개소) - 설계비: 222억원(31개소 - 양수장 27개소, 취수장 4개소) - 공사비(2025년 설계중인 취・양수장): 158억원(17개소 - 양수장 13개소, 취수장 4개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은 2021년부터 수행하던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사업에서 분리 편성된 사업인데, 기존 사업이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인하여 집행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은 지역 반대 등을 해소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은 2021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수행하던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을 일반회계로 분리하여 편성한 것임.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사업은 2021년부터 수행하였으나 2025년 10월 기준 1개소만이 완료되었고, 33개소[17]는 현재까지 설계 및 공사 진행중임.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실집행률이 2022년 30.0%, 2023년 20.2%, 2024년 29.8%에 그치는 등 연례적으로 부진하였음.

17) 공사중 4개소, 설계중 18개소, 설계완료 11개소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관리주체(한국수자원공사)					
	본예산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실집행률(B/A)
2021	3,200	-	3,200	3,200	3,200	-	3,200	3,200	-	100.0
2022	42,226	-	42,226	42,226	42,226	-	42,226	12,682	29,544	30.0
2023	53,600	△36,000	17,600	17,600	17,600	29,544	47,144	9,552	37,592	20.2
2024	-	-	-	-	-	37,592	37,592	11,205	26,387	29.8
2025.7.	-	-	-	-	-	26,387	26,387	-	-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은 집행 부진을 이유로 2024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이월액만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으나, 2024년에는 예산현액 375억원 중 112억 500만원만이 집행되었고, 2025년에는 7월까지 집행되지 않았음.

이와 같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양수시설 개선 공사 중에는 하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임.[18)]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민들에게 이 사업은 하천수위 저하에도 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이 사업이 적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8)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약해 사업이 부진했으나, 2025년 하반기에 이월예산 지방자치단체 교부 및 영산강 유역 시설 신규착공 등 성과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입장임.

4. 물순환촉진지원 사업(신규): 조속히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지연 방지 필요

가. 개 요

‘물순환촉진지원’ 사업은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고 맞춤형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9)]

[2026년도 물순환촉진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물순환촉진지원	-	-	1,600	1,600	순증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물순환 촉진구역을 공모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역을 제안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평가하여 후보지를 선정한 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물순환촉진지원 사업 수행절차]

물순환촉진구역 공모	→	물순환촉진구역 제안	→	물순환촉진구역 평가	→	물순환촉진구역 심의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
2025년 12월~1월		2025년 12월~1월		2026년 2월		2026년 2월		2026년 3월 ~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물관리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예산안은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4개소의 물순환 취약성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기본조사설계비로 각 개소마다 4억원 총 16억원이 편성되었음.

19) 일반회계-물순환촉진지원(5131-317)(물이용정책관)

[물순환촉진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600,000천원 - 물순환체계 구축(1,600,000천원)(4개소 × 4억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물순환촉진지원 사업은 지정된 물순환 촉진구역에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 촉진구역 공모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속히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3년 10월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한 후[20] 해당 구역에 대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21]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에 물순환 촉진구역을 공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받은 후 2026년 1월에 제안받은 지역에 대한 평가 및 2월 심의를 거쳐 3월부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0월까지도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20)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21)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 따라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물순환 촉진구역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도시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은 상황임. 물순환 촉진구역의 평가가 완료되어야 이후 절차인 심의 및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함에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예산안 확정 전에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공모 평가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 사업의 근거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에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10월 기준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순환 촉진구역 선정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업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종합계획이 2027년에 수립될 예정이므로, 실질적인 물순환 촉진사업은 2028년에 추진될 계획임. 결국 실제 물순환 촉진사업은 법이 제정되고 약 4년 3개월 후에 수행되는 것임.

[물순환촉진지원 사업 집행계획]

물순환 촉진구역 평가 및 심의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	→	물순환 촉진사업 시행
2026년 1월 ~ 2월		2026년 3월 ~ 2027년		2028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시작 전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에 대한 평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적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환경개선특별회계】

<세 입>

5. 면허 및 수수료: 수납실적 및 수입 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검토 필요

가. 개 요

‘면허 및 수수료’는 폐기물 수출입 허가에 대한 수수료 및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 확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400만원(3.9%) 증가한 14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22)]

[2026년도 면허 및 수수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면허 및 수수료	1,382	1,382	1,436	54	3.9

[면허 및 수수료 예산안 세부내역]

○ 최근 5년 평균 결산액: 1,436백만원

- 2020년: 1,110백만원, 2021년: 1,287백만원
- 2022년: 1,080백만원, 2023년: 1,754백만원, 2024년: 1,951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2) 환경개선특별회계-면허 및 수수료(65-651)(기획재정담당관)

나. 검토의견

면허 및 수수료 수입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초과수납이 반복되고 있는데, 다른 수입과 달리 최근 5년 결산액의 평균으로 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최근 3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등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5년 평균 결산액을 기준으로 2026년 면허 및 수수료 예산안을 1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이는 2020년 수납액인 11억 1,100만원, 2021년 수납액인 12억 8,700만원, 2022년 수납액인 10억 8,000만원, 2023년 수납액인 17억 5,400만원, 2024년 수납액인 19억 5,100만원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임.

[최근 5년간 면허 및 수수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857	857	857	1,116	1,110	129.5	99.5	6	-
2021	857	857	857	1,289	1,287	150.1	99.8	1	-
2022	857	857	857	1,086	1,080	126.0	99.4	6	-
2023	1,242	1,242	1,242	1,755	1,754	141.2	99.9	2	-
2024	1,242	1,242	1,242	1,965	1,951	157.1	99.3	14	-
2025. 8.	1,382	1,382	1,382	1,488	1,477	106.9	99.3	11	-
2026(안)	1,436	1,436	1,436	-	-	-	-	-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런데 매년 면허 및 수수료의 수납액이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2년 수납률은 126%이고, 2023년 수납률은 141%, 2025년 수납률은 157%에 달하여 예산액과 수납액 간의 초과수납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

심지어 2025년은 8월까지의 수납액이 14억 7,700만원에 달하여, 이미 수납률이 107%에 달하는바, 상반기 수납액만으로 예산안에 따른 수납액을 상회하고 있고 이는 이미 2026년 예산안보다 4,100만원이 더 수납된 것임.

면허 및 수수료는 폐기물수입허가, 자동차 검사, 환경측정분석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폐기물수입허가로 세입이 증가하고 있음. 폐기물수입허가로 인한 세입은 2022년 6억 5,900만원, 2023년 13억 9,100만원, 2024년 15억 8,000만원, 2025년 7월까지 13억 4,700만원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는 폐기물수입허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음에 기인함.

[면허 및 수수료 세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폐기물수입허가 (거래량)	자동차 검사	환경측정분석사	성능검사수수료 등	합계
2022년	659 (89만톤)	64	102	256	1,080
2023년	1,391 (97만톤)	181	71	111	1,754
2024년	1,580 (102만톤)	198	100	57	1,951
2025.8.	1,347	59	101	69	1,576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더해, 면허 및 수수료는 기타재산이자수입 등 다른 수입이 최근 1~3년간의 평균 결산액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달리 수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바, 이로 인해 현실적인 수납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23)]

[기타재산이자수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입 산출방식]

회계	세입명	산출방식
일반회계	토지대여료	최근 1년 수납액
	기타재산이자수입	최근 3년 수납액
환경개선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최근 2년 수납액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최근 3년 수납액
	기타경상이자수입	최근 3년 수납액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른 수입과 같이 면허 및 수수료 세입도 최근 3년간 평균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폐기물수입허가 거래량 등을 분석하여 실제 수납액과 부합하는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3) 만약, 면허 및 수수료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2026년 예산액을 편성한다면 15억 9,500만원으로, 현재 예산액인 14억 3,600만원보다 1억 5,900만원이 증가함.

<세 출>

6.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신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가. 개 요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환경 기업의 AI 응용제품 사업화 기간 단축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1~2년 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품목의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4)]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	-	50,000	50,000	순증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750억원에 80%를 지원[25)]하여 국비 총 600억원으로 집행되는 사업임.[26)]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예산 전액을 출연하고, 기술원에서 과제를 선정 및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됨.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집행방법]

부처		피출연기관		사업수행자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원기업(컨소시엄) 15개사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4) 환경개선특별회계-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환경)(1933-320)(녹색전환정책관)

25) 민간부담금은 총 150억원(20%)임.

26) 국비 총 600억원: 단년도 10개 과제: 2026년 각 40억원씩 지급(10개 과제 총 400억원), 2개년도 5개 과제: 2026년 및 2027년 각 20억원씩(2년 합계 40억원) 지급(5개 과제 총 200억원)

2026년 예산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단년도 10개 과제(총 400억원) 및 2개년도 5개과제(총 100억원)를 선정 후 지원하기 위하여 총 5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AI응용제품 총 15개 과제 - 단년도 10개 과제 × 40억원 = 400억원, 2개년도 5개 과제 × 20억원 = 100억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첫째, 이 사업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요조사, 과제발굴 및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 중복지원 방지방안, 지원대상 선정 기준, 사업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1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단년도 과제) 10개에 각각 40억원, 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2개년도 과제) 5개에 각각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500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사업계획]

지원유형	단년도 10개과제	▸1년內 즉시 개발가능하며, 시장에 빠르게 침투 가능한 품목
	2개년도 5개 과제	▸국민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핵심 품목(2년 지원)
지원방향	▸AI 응용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 등 실증 및 양산체계 구축 ▸기성 제품의 AI 서비스 탑재(AI 모델 설계·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제품 인증 획득 및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이 사업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 9월(9.5.~9.11.)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AI를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사고 위험 대응을 위한 국민체감형 기술과 2년 내 상용화 가능한 환경 분야 AI 제품·서비스에 대한 총 156건의 수요조사서를 접수하여 10월 현재 선별 중에 있음.

[2025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과정]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환경분야 AI 기술 수요조사 (9.5. ~ 9.11.)
□ 조 사 명 : 환경분야 AI 기술 수요조사
□ 조사내용(2가지 주제로 조사)
1. AI+환경 혁신기술 수요조사: AI를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사고 위험 대응을 위한 국민체감형 기술
2.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2년 내 상용화 가능한 환경 분야 AI 제품·서비스
□ 제출기간: 2025년9월5일(금)~9월11일(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요조사, 과제발굴 및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 중복지원 방지방안, 구체적인 사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 사업의 경우 1년 내 즉시 개발 가능한 지원품목과 1년 이상 개발이 필요한 지원품목의 기술성숙도를 모두 시작품단계(TRL 5 이상)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두 품목이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술성숙도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27)]

[사업계획서상 AI 응용제품의 기준]

구분	Type1	Type2
지원기간	1년 지원	2년 지원
지원내용	양산 라인 구축, 제품 홍보 등 마케팅 지원, 지식재산권·상표권·저작권 등 특허 지원, 시제품 성능 검증, 최적화 지원, 법/규제 대응 컨설팅 등	
기술성숙도 수준	시제품 개발·검증하는 단계(TRL 5 이상)부터 지원 대상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27)「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 · 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 · 부품 · 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 · 부품 · 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험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둘째,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는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음.[28]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법 제38조제5항[29]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준비를 9월 말에 착수하였고, 10월 말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임.

통상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6~12개월 가량 소요되어 9월말에 착수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을 시행하는 2026년 중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속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30]

---

28)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2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30)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임.

7. 조류 충돌 예방 및 유해조류 관리 연구사업(신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조류 충돌 예방 및 유해조류 관리 연구’** 사업은 공항 주변 조류 조사 등 항공기 충돌 조류의 종특성 연구, 충돌시료 처리 프로세스 표준화, 종특이적 구별법 개발 등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1억 8,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1)]

[2026년도 조류 충돌 예방 및 유해조류 관리 연구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960	960	3,180	2,220	231.3
조류 충돌 예방 및 유해조류 관리 연구	-	-	2,182	2,182	순증

[조류 충돌 예방 및 유해조류 관리 연구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항공기 충돌 조류 종특성 분석 : 1,672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1,372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300백만원

○ 항공기 충돌 조류 종동정 고도화: 510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51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첫째, 조류충돌 예방 및 유해조류 관리 연구사업은 세부사업인 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세부사업의 내용과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별도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31) 환경개선특별회계-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1844-313)(국립생물자원관)

조류충돌 예방 및 유해조류 관리 연구사업은 세부사업인 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바, 동 세부사업은 AI(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한 철새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임.

동 세부사업은 ①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 ② 철새 유전자 분석 및 종판별 분석 및 ③ 조류충돌 예방 및 유해조류 관리 연구사업 총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존에 편성된 내역사업인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의 경우 도서지역의 철새를 모니터링하는 등 철새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것이고, 철새유전자 분석 및 종판별 분석 사업은 철새의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하고, 철새의 기원지를 추적하는 사업임.

[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의해 건립된 국가철새연구센터(인천 옹진군 소청도 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서지역 철새 상시 모니터링 및 철새 이동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철새 현장조사 강화를 통한 철새 보전과 서식지 관리를 지원함
철새 유전자 분석 및 종판별 분석	유전자를 활용한 철새의 유전적 다양성 분석, 분류학적 검토 및 철새 기원지 추적
조류충돌 예방 및 유해조류 관리 연구사업	공항 주변 조류 조사 등 항공기 충돌 조류의 종특성 연구, 충돌시료 처리 프로세스 표준화, 종특이적 구별법 개발 등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지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런데 이와 달리 신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공항 주변 ‘조류’를 조사하여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는 세부사업 및 기존 내역사업이 ‘철새’ 정보를 분석하여 ‘AI(조류 인플루엔자)’를 대응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성이 부족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대해 국내 조류의 90%가 철새이므로 조류를 조사하는 것도 사업 내용에 포함된다고 하나, 세부사업 및 기존 내역사업들이 철새로 한정하여 분석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은 세부사업 및 다른 내역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하고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 사업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류 충돌 예방 및 유해조류 관리 연구사업의 목적이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의 공항조류탐지 및 한국형 조류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공항 인근 조류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형 조류탐지 성능기준 및 검증기술을 개발하는 '공항조류탐지 및 한국형 조류관리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류충돌 예방 및 유해조류 관리 연구사업과 국토교통부의 공항조류탐지 사업은 모두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을 지원하는 같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은 공항 주변 조류를 조사하여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의 사업은 조류충돌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상호 협조가 있어야 조류 충돌 예방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공항조류 관련 기관 역할]

기관	주요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항 주변 조류 조사 • 충돌 위험 중점관리종에 대한 생태 특성 조사 • 충돌 시료 종동정 •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참석 및 조류 충돌 예방 대책 자문
국토부, 공항공사	•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대책 수립 • 공항 내 조류 분산 및 퇴치 활동 • 공항 내·외 조류 서식지 관리 • 항공기 충돌 잔해 시료 채취 및 의뢰 •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개최(상반기, 하반기)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09년 이미 공항공사와 국가 생물자원 보전·확보 및 조류의 항공기 충돌 위험감소에 관한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공항공사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임.[32)]

[기술협력 MOU 주요 내용]

○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생체 및 사체의 생물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한 보전 및 제공 ○ 공항 내 생태조사를 위한 출입 등 연구활동 지원 ○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잔해(깃털 및 혈흔 등) 분석 및 결과 제공 ○ 조류충돌위험 관리기법 발전을 위한 자문 및 전문지식의 교류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32)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4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관련 대책·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존에 체결된 MOU는 조류충돌 잔해 분석 및 결과 제공, 자문 및 전문지식의 교류 등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신규사업을 통해 추진하려는 종특성 연구, 시료 처리 프로세스 표준화 사업수행을 위하여 무엇을 제공받고 어떤 절차로 조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사업수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한 사업 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6억 3,100만원(△34.4%) 감액된 1,727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33)]

[2026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290,279	290,279	197,132	△93,147	△32.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63,335	263,335	172,704	△60,631	△34.4

이 사업은 조기폐차,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 50%의 비율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과정]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172,704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33) 환경개선특별회계-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1633-302)(대기환경정책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지자체 자본보조(330-03) : 172,704백만원

- 조기폐차 (115,000,000천원)
· (5등급) 4.4만대*1.2백만원*50% = 26,400백만원
· (4등급) 6.388만대*2.5백만원*50% = 79,850백만원
· (건설기계) 0.5만대*3.5백만원*50% = 8,750백만원
-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54,933백만원)
· (운행차 DPF) 1,500대*3.3백만원*50% = 2,475백만원
· (PM-NOx) 40대*15백만원*50% = 300백만원
· (운행차 전동화) 50대*15백만원*50% = 375백만원
· (건설기계 DPF) 25대*11백만원*50% = 138백만원
· (엔진개조·교체) 3,600대*16.5백만원*50% = 29,700백만원
· (건설기계 전동화) 1,155대*38백만원*50% = 21,945백만원
-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2,321백만원)
·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82대*56.6백만원*50% = 2,321백만원
-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450,000천원)
·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 3개소*300백만원*50% = 45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건설기계 조기폐차, 건설기계 전동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전년도에 비해 대수가 증가하거나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므로,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건설기계 조기폐차에 87억 5,000만원,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 중 건설기계 전동화에 219억 4,500만원,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에 23억 2,100만원,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에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부진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24년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5,000대 편성 중 1,091대(21.8%), 건설기계 전동화는 150대 편성 중 19대(12.6%),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은 220대 편성 중 42대(19.0%),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은 3개소 편성 중 2개소(66.6%)만이 집행되었음.

2025년 8월까지를 기준으로 하여도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5,000대 편성 중 735대(14.7%), 건설기계 전동화는 455대 편성 중 245대(53.8%),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은 70

대 편성 중 22대(31.4%)만이 집행되었고,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은 집행된 개소가 없는 등(0%) 집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2024년, 2025년 및 2026년 예산안 상 기준대수 및 실제 집행대수]

구 분	2024년 본예산 기준 대수	2024년 실제 집행대수 (실집행률)	차이	2025년 본예산 기준 대수	2025년 8월말 실제 집행대수	2026년 예산안
건설기계 조기폐차	5,000대	1,091대 (21.8%)	3,909대	5,000대	735대 (14.7%)	5,000대
건설기계 전동화	150대	19대 (12.6%)	131대	455대	245대 (53.8%)	1,155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220대	42대 (19.0%)	178대	70대	22대 (31.4%)	82대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	3개소	2개소 (66.6%)	1개소	3개소	0개소 (0%)	3개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런데 2026년 예산안은 건설기계 전동화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에 각각 2025년보다 700대, 12대 더 많이 편성하였고, 건설기계 조기폐차와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 사업은 2025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심지어 이러한 편성대수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보다 많은 것임.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지자체 수요조사보다 1,371대 많은 5,000대, 건설기계 전동화는 492대 많은 1,155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은 4대 많은 82대,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은 1개소가 많은 3개소로 편성되었음.

[2026년 수요조사와 예산안 편성대수]

	지자체 수요조사	예산 편성대수	차이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건설기계 조기폐차	3,629대	5,000대	1,371대	23억 9,925만원
건설기계 전동화	663대	1,155대	492대	36억 9,000만원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78대	82대	4대	1억 1,320만원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	2개소	3개소	1개소	1억 5,000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사업에서 건설기계마다 규격에 따른 단가 편차가 커 가액의 평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입장임.[34)]

그러나 집행예산을 기준으로 하여도 건설기계 조기폐차의 실집행률이 2024년 48.9%, 2025년 9월까지 실집행률이 42.1%이고, 건설기계 전동화는 2024년 14.2%, 2025년 49.2%에 불과하며,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은 2024년 33.6%, 2025년 18.4%인 등 부진한 상황임.

[2024년 및 2025년 9월 기준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2024년 예산안	2024년 실집행액	차이	실집행률	2025년 예산안	2025년 실집행액	차이	실집행률
건설기계 조기폐차	9,325	4,564	4,761	48.9%	9,325	3,924	5,401	42.1%
건설기계 전동화	3,420	486	2,934	14.2%	8,640	4,248	4,392	49.2%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2,900	975	1,925	33.6%	2,320	427	1,893	18.4%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	450	220	230	48.9%	450	-	-	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과거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 집행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4)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건설기계 전동화 및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은 전기지게차 등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 수요 예측 물량을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9.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 기술개발(R&D) 사업(신규): 정확한 규제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 기술 개발(R&D)’ 사업은 블록체인 및 AI기술 기반 원·부자재 공급망(원료·소재·부품·제품) 내 살생물제·화학물질의 지능형 공정 안전관리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5)]

[2026년도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 기술개발(R&D)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기술 개발사업 (R&D)	-	-	7,000	7,000	순증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총 5년) 총 300억원으로 수행되며, 예산 전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출연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집행할 예정임.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 기술개발(R&D)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의 원활한 이행과 관리를 위해 살생물제를 함유한 원·부자재의 공급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및 AI기술 기반의 지능형 공정 안전관리 기술 개발

○ (사업 기간) 2026년~2030년(총 5년)

○ (총 연구비) 300억원(국고 300억원)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기술 개발사업 (R&D)	7,000	6,500	6,500	5,000	5,000	30,0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6년 예산안은 공급망 내 블록체인 및 지능형 AI 기술 적용·활용의 기술적 기반

35) 환경개선특별회계-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 기술개발사업(R&D)(2310-316)(환경보건국)

확보를 위한 신규 과제 1개에 연구개발활동비등으로 70억원이 편성되었음.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 기술개발(R&D)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7,000백만원 - (신규) 1개 과제 × 9,333백만원 × 9개월/12개월 = 7,00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시스템에 정보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정보관리·활용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개발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36]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 및 원료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업 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외 규제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기업이 원료 등 성분을 직접 입력하거나 OCR[37] 등을 이용하여 제품 정보 스캔 후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규제 대상 여부를 출력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임.

이에 더해 시스템에 블록체인(Block chain)[38]을 접목하여 기존 하청업체 등에서 수기로 작성하여 제품 생산 업체에 제공하던 정보를 시스템 상으로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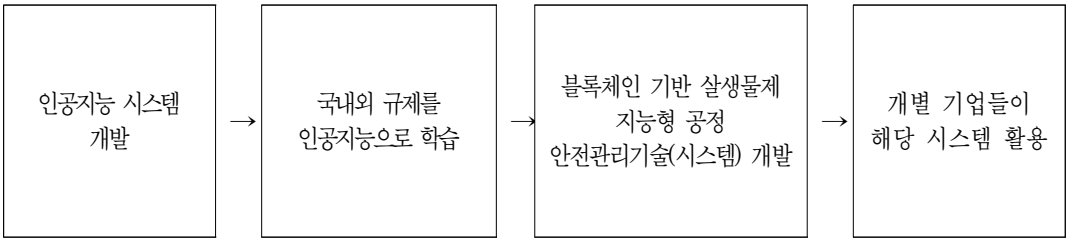
---

3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 문자 인식, 스캔본이나 사진 등에 담긴 텍스트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변환하는 기술

38)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체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임. 이에 따라 데이터 삭제 등의 경우에도 중앙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데이터 작성자가 할 수 있고, 삭제 기록이 남음.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 기술개발(R&D)사업 수행 계획]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 수기로 원료 등을 작성하던 방식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생소한 방식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입력하는 원료명이 상표명・약어・외국어로 표기되거나 농도・단위 표기가 혼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인공지능의 규제 매칭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제품 정보를 스캔하여 입력하는 경우 제품 스캔의 정확도가 높지 않으면 입력 데이터가 잘못되어 규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출력될 수 있음. 특히, 이 사업은 블록체인 방식으로 기업 간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할 예정인데, 블록체인은 공동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에서 데이터 삭제 등이 어려움.

이로 인해 제품 및 원료가 받아야 하는 규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출력되는 것이 반복될 경우 기업에서 시스템을 이용할 유인이 적어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스템에서 물질 정보를 입력할 때 허위 정보의 입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안내하여 오류 정보 생성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입장임.[39]

그러나 단순한 안내 고지가 곧바로 하청업체・공급사의 입력 관행 개선으로 연결된다고 하기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시스템 개발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40] 시스템에 정보 입력 시 오류 발생으로 인한 정보관리・활용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39)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사 시스템인 자동차 분야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체계의 입력방식인 선택 입력방식(Combo box, 기존 법률에 따라 구축된 화학물질 DB와 연계해 검색 후 선택하여 입력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입장임.

40) 동의어 및 단위 정규화, OCR 정확도 임계치 설정 등

10. 유기성 폐자원 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R&D)사업(신규): 국제항공유 인증 및 활용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유기성 폐자원 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R&D)’ 사업은 유기성 폐자원을 신규 발굴·확보 및 재활용하여 SAF(지속가능항공유)[41] 등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의 개발을 통해 글로벌 탄소감축 규제에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8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2]

[2026년도 유기성 폐자원 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R&D)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유기성 폐자원 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사업 (R&D)	-	-	8,000	8,000	순증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총 5년) 총 487억원(국고 375억원, 민간 112억원[43])으로 수행할 예정으로, 국고 예산 전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출연하여 기술원에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41)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가능항공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 특성이 유사하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갖춘 대체 연료(기존 항공 엔진과 시설에서 혼합 사용 가능)

42) 환경개선특별회계-유기성 폐자원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사업(R&D)(1532-328)(자원순환국)

4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 매칭의 경우 수요조사 및 간담회 결과 국내 5대 정유사에서 사업수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입장임.

[유기성 폐자원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사업(R&D) 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유기성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SAF(지속가능항공유),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규제 및 탄소감축 요구에 대응*
* [現] SAF 혼합비율 1% 수준 → [목표]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혼합비율 확대 필요
※ SAF: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배출량 최대 80% 저감
○ (사업 기간) 2026년~2030년(총 5년)
○ (총 연구비) 487억원(국고 375억원, 민간 112억원)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유기성 폐자원 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사업 (R&D)	8,000	8,500	9,000	7,000	5,000	37,5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6년 예산안은 유기성 폐자원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과제 3개[44]에 연구개발활동비등으로 총 80억원이 편성되었음.

[유기성 폐자원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사업(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8,000백만원
- (신규) 3개 과제 x 3,555,600천원 x 9/12개월 = 8,00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유기성 폐자원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하려는 SAF(지속가능항공유)의 실제 활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인증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활한 인증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기성 폐자원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기술개발사업은 신규 유기성 폐자원 발굴 및 동물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기존 항공유를 SAF로 대체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① 기존의 폐유지유를 이용한 SAF 대신 신규 유기성폐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는 연료화 기술개발, ② 동물성 폐자원(사체, 동물성 유지 등)을 활용한 연료화 기술개발 및 ③ 이러한 원료 추출·정제·연료화 과정이 실

44) ① 신규 유기성 폐자원 발굴 및 연료화 기술개발 ② 동물성폐자원 활용 바이오 연료화 기술개발 ③ 원료 추출·정제·연료화 과정의 환경성 평가

제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저감되는지 측정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유기성 폐자원 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사업(R&D) 사업 로드맵]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 개발한 SAF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에서 엔진 시험을 거쳐야 하고, 실제 운항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유 인증(ASTM 품질 인증 등)[45]을 받아야 함.

국제항공유 인증은 연구를 통해 선정된 원료를 바탕으로 시험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후 항공사에서 엔진을 시험하고,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ASTM 위원회[46]에서 국제항공유 규격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국제항공유 인증 과정]

원료 선정	→	안전성 검증	→	엔진 시험	→	ASTM Annex 등록 서류 작성	→	규격 심사
기술원, 연구기관		공인 시험기관		항공사		연구기관		미국 ASTM 위원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45) ASTM 품질 인증: SAF가 기존 항공유와 혼합·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한 국제 기준

46)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재료시험학회, 기술 국제 표준 개발

현재 사업 계획상으로는 첫 번째 단계인 원료 선정 연구 계획만 있고, 이후 단계인 안전성 검증, 엔진 시험 및 ASTM 인증을 받기 위한 로드맵은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엔진 시험을 수행하는 항공사 및 규격 심사를 담당하는 미국 ASTM 위원회 등과의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단순히 원료 선정에 대한 연구만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거나, 엔진 시험을 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개발된 SAF가 실제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유기성 폐자원 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SAF가 인증을 거쳐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항공사 및 ASTM 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지방비 매칭 가능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 3개소의 추가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원(40.0%) 증액된 63억원이 편성되었음.[47)]

[2026년도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87,815	87,815	85,309	△2,506	△2.8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4,500	4,500	6,300	1,800	40.0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총 클러스터 설계비의 7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30%를 매칭하여 시·군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집행절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기후에너지환경부 (6,300백만원)	=> (6,300백만원)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 (9,000백만원)	구미시, 해남군, 보령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총 3개소 클러스터 설계를 국고 보조하기 위하여 총 63억원이 편성되었음.

47) 환경개선특별회계-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1531-307)(녹색전환정책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클러스터 설계(국고보조율 70%) 6,300만원(3개소×2,100백만원, 330-0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025년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방비 매칭이 안되어 전액 불용예정인데, 2026년에도 국고 지원 비율만 높여 편성하였으므로 지방비 매칭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융합클러스터 설계 비용을 일정 비율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3개 지자체에 국고보조율 50%로 각각 15억원씩 총 4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될 예정임.

이는 2025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가 각각 매칭시켜야 하는 지방비인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함.

그런데 2026년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로, 이는 2025년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지방비가 매칭되지 않아 예산이 전액 불용예정인 지방자치단체와 모두 동일함.

2026년 예산안상 국고 지원비율은 2025년 50%에서 70%로 20%p 증가하여 지방에서 매칭시켜야 하는 금액은 각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었지만, 이미 2025년 매칭 실패로 인하여 불용이 예정된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지방비 매칭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48]

48)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에는 지방비 매칭이 가능하도록 지방의회를 설득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2026년도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설계비용]

	대상	사업비용	지원비율	지원금액	지방 매칭 금액	비고
2025년	3개 지자체 (경북, 전남, 충남)	총 90억원	50%	45억원 (각 15억원)	45억원 (각 15억원)	지방비 미확보로 전액 불용
2026년	3개 지자체(동일)	총 90억원	70%	63억원 (각 21억원)	27억원 (각 9억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2억 3,300만원(41.8%) 증액된 380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49)]

[2026년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비점오염저감사업	28,786	38,098	43,857	15,071	52.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	26,853	36,165	38,086	11,233	41.8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는 70%, 일반지역에는 50%의 비율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 사업 예산안 집행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	보조	지자체 보조	38,086	비점오염원관리지역 70%, 일반지역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113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 사업 예산안은 계속사업 39개소에 총 365억 5,100만원, 신규사업 3개소에 총 15억 3,5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

49) 환경개선특별회계-비점오염저감사업(1131-302)(물환경정책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38,086,000천원
- 계속사업: 39개소×937,205천원=36,551,000천원
- 신규사업: 3개소×511,667천원=1,535,000천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함에도 2026년 41.8%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특히 2025년 8월 기준 전년도 이월액조차 집행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은 연례적으로 과다한 이월 등으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부진함. 2022년 실집행률은 57.9%, 2023년 실집행률은 52.7% 2024년 실집행률은 64.5%임. 2025년 8월까지 기준으로 실집행률도 43.1%에 불과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 사업 실집행률]

(단위: 억원, %)

년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A)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2	487	487	491	491	283	774	437	491	282	282	55	57.9
2023	349	349	344	344	282	626	363	344	184	226	37	52.7
2024	333	333	307	307	255	562	386	307	215	162	14	64.5
2025. 8.	269	362	234	234	162	396	195	234	116	-	-	43.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3년 본예산 349억원 중 344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실집행 단계에서 226억원이 이월되었고, 2024년에는 본예산 333억원 중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2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62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심지어, 2024년 총 1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77억 2,300만원의 재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한데 기인함.

[2024년 결산 기준 재이월이 발생한 발생 지방자치단체]

(단위: 백만원)

연번	2024년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2024년 실집행액	이월액	재이월액
1	934	-	1,959	1,959	1,399	560	560
2	663	663	97	760	670	90	90
3	136	136	1,223	1,359	561	798	662
4	144	144	1,574	1,718	663	1,044	911
5	-	-	1,042	1,042	289	753	753
6	470	470	158	628	145	483	52
7	636	636	774	1,410	398	1,012	376
8	87	87	2,861	2,948	2,353	595	508
9	-	-	690	690	0	690	690
10	440	440	31	471	0	471	31
11	1,659	1,659	749	2,408	2,179	229	20
12	1,278	1,278	180	1,458	1,425	33	30
13	-	-	718	718	337	348	381
14	-	-	200	200	108	92	92
15	542	542	1,103	1,645	734	880	369
16	1,482	1,482	2,253	3,735	2,059	1,676	1,320
17	-	-	951	951	73	878	878
합계	8,471	7,537	16,563	24100	13,393	10,632	7,72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같이 재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보조사업비의 재이월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의 취지에도 위반되고 있는 것임.[50]

그런데 2025년 8월 기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조차 전액 실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17개의 지방자치단체에게 2026년 예산안 상 총 282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5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이월사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025년 교부액이 이월될 가능성이 큼.

[2025년 전년도 이월액을 집행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2026년 예산액]

(단위: 백만원)

연번	2025년 예산액	2025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2025년 8월 전년도 이월액 실집행액	2026년 예산액
1	143	143	1,570	633	1,238
2	-	-	85	34	180
3	736	404	560	404	3,276
4	100	100	777	776	795
5	632	613	90	-	162
6	100	100	798	761	740
7	-	-	483	35	1,100
8	1,000	1,000	716	492	1,650
9	556	556	226	-	771
10	2,427	1,424	691	499	4,000
11	1,780	803	471	440	3,080
12	5,800	5,410	229	200	2,965
13	159	60	33	-	255
14	-	-	348	-	3,170
15	150	60	92	75	350
16	-	-	992	528	2,593
17	-	-	1,521	780	1,893
합계	13,583	10,673	9,682	5,657	28,21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지전용·하천점용 등 행정협의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나 2026년 예산에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이월사유가 해소된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재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세 출>

13. 전기차 보급사업: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한 사업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 전기승합(버스), 전기이륜차의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96억원(5.89%) 증액된 1조 6,11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51)]

[2026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무공해차 보급사업	2,263,104	1,900,854	2,282,513	19,409	0.9
전기차 보급사업	1,521,770	1,242,770	1,611,370	89,600	5.89

이 사업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1조 2,087억원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에 4,026억 7,000만원을 지원함.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방식]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기차보급	보조	지자체 보조	1,208,700	정액지원[5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한국환경공단	402,67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51) 에너지및자원사업회계(투자계정)-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대기환경정책관)

2026년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전기승용차 208,000대에 각 300만원을 지원하여 총 6,240억원, 전기이륜차 20,000대에 각 80만원을 지원하여 총 160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민간경상보조(320-01) : 402,670,000천원 - 전기차 민간경상보조 (402,670,000천원) · 전기승용 52,000대 × 3,000천원 = 156,000,000천원 · 전기승합 2,500대 × 70,000천원 = 175,000,000천원 · 전기화물 7,167대 × 10,000천원 = 71,670,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208,700,000천원 - 전기차 자치단체 보조 (1,208,700,000천원) · 전기승용 208,000대 × 3,000천원 = 624,000,000천원 · 전환지원 177,500대(승용 156,000대, 화물 21,500대) × 1,000천원 = 177,500,000천원 · 전기버스 1,000대 × 70,000천원 = 70,000,000천원 · 전기버스(어린이통학용) 300대 × 115,000천원 = 34,500,000천원 · 전기화물 28,670대 × 10,000천원 = 286,700,000천원 · 전기이륜 20,000대 × 1,600천원 × 50% = 16,000,000천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전기차 보급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전기승용차, 전기버스(승합), 전기이륜차 지원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에도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결과보다 지원 물량이 많이 편성되었으므로,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사업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예산안은 전기차 보급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지원 총 6,240억원, 전기승합차 지원 총 1,045억원[53], 전기이륜차 지원 총 160억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부진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24년 전기승용차는 203,000대 편성 중 99,463대(48.9%), 전기승합차 지원은 2,000대 편성 중 1,498대(74.9%), 전기이륜차 지원은 40,000대 편성 중 11,270대(28.2%)만이 집행되었음.

2025년 8월까지를 기준으로 하여도 전기승용차는 234,000대 편성 중 103,304대(44.1%), 전기승합차 지원은 2,000대 편성 중 508대(25.4%), 전기이륜차 지원은 20,000

52) 이륜차는 50%

53) 전기승합차 지원은 전기버스(700억원)와 전기버스(어린이통합용)(345억원)을 합한 금액임.

대 편성 중 4,070대(20.3%)만이 집행되는 등 실적이 부진함.

[2024년, 2025년 및 2026년 예산안 및 실제 집행대수]

구 분	2024년 본예산 기준 대수	2024년 실제 집행대수 (실집행률)	차이	2025년 본예산 기준 대수	2025년 8월기준 실제 집행대수 (실집행률)	2026년 예산안
전기승용차	203,000대	99,463대 (48.9%)	103,537대	234,000대	103,304대 (44.1%)	208,000대
전기승합차	2,000대	1,498대 (74.9%)	502대	2,000대	508대 (25.4%)	1,300대
전기이륜차	40,000대	11,270대 (28.2%)	21,968대	20,000대	4,070대 (20.3%)	20,000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지어, 2025년에는 이러한 집행 부진이 연내 집행 중 예상되어 전기승용차 지원 대수를 기존 234,000대에서 197,000대로 37,000대를 감액하는 내용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기도 했음.[54)]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실제 집행 대수가 부진함에도 2026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보다 많은 물량을 편성하였음. 전기승용차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보다 30,692대 많은 208,000대, 전기승합차는 475대 많은 1,300대, 전기이륜차는 5,376대 많은 20,000대가 편성되었음.

[2026년 수요조사와 예산안 편성대수]

	지자체 수요조사	예산 편성대수	차이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전기 승용차	177,308대	208,000대	30,692대	920억 7,600만원
전기버스(승합)	825대	1,300대	475대	181억 8,200만원[55)]
전기이륜	14,624대	20,000대	5,376대	43억 80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와 실제 집행대수를 보면, 각각 수요조사 결과

5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환경부): (전기승용)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불용규모 1,110억(3.7만대) 감액 필요

55) 전기버스(개당 7,000만원)과 전기버스어린이통학용(개당 1억 1,500만원)의 대수를 고려하여 평균치로 계산

대비 전기 승용차는 56,893대, 전기승합차는 2,721대, 전기이륜차는 16,286대가 적게 집행되었음. 이를 고려하면, 수요조사 결과와 예산 편성 대수의 차이보다 집행부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음.

[2023년 및 2024년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와 실제 집행대수]

	2023년			2024년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실제 집행대수	차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실제 집행대수	차이
전기 승용차	127,864대	111,579대	△16,286대	156,356대	99,463대	△56,893대
전기버스(승합)	3,626대	2,921대	△705대	4,219대	1,498대	△2,721대
전기이륜	30,752대	17,312대	△13,440대	34,318대	18,032대	△16,286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NDC[56] 달성을 위한 보급 목표 대수 달성을 위한 대수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연례적으로 집행 대수가 예산안에 편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차량 편성 대수를 NDC 목표 물량에 맞출 것이 아니라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NDC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질적인 NDC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사업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6)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하며,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목표를 수립함.

14. 중속충전기 구축 지원사업(신규): 중속충전기 편성 대수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중속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2~3시간 체류하는 장소에 적합한 전기차 중속충전기 구축 비용 중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7)]

[2026년도 중속충전기 구축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928,423	865,423	930,938	2,515	0.3
전기차충전기 구축 지원	623,750	560,750	550,750	△73,000	△11.7
중속충전기 구축 지원	-	-	30,000	30,000	순증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단 및 협회에서 전기차충전기 설치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심사 후 선금을 지급하고, 설치 준공 확인 후 잔금 지급 및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중속충전기 구축 지원사업 집행과정]

국고보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 지원	사업 정산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단, 협회	공단, 협회 → 충전기 설치 희망자	공단, 협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역사업인 전기차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은 급속충전기, 중속충전기, 스마트제어 충전기, 이륜교환형충전기 등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총 45억 1,7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 예산안은 중속충전기 총 2,000대에 국고보조비율 50%로 각 1,5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57) 에너지및자원사업회계(투자계정)-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1633-312)(대기환경정책관)

[2026년 전기차충전기 구축 지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민간자본보조(320-07) : 451,750백만원
- 급속 3,790기 × 150백만원 × 50% = 284,250백만원
- 중속 2,000기 × 30백만원 × 50% = 30,000백만원
- 스마트 제어 50,000기 × 4.4백만원 × 50% = 110,000백만원
- 스마트 제어 교체 15,000기 × 3백만원 × 50% = 22,500백만원
- 이륜교환형 500기 × 20백만원 × 50% = 5,00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전기차충전기 구축 지원사업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중속 충전기 보급 사업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편성된 지원 대수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충전기 구축 지원사업에서 중속 충전기 설치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중속 충전기는 대형마트・극장・아울렛 등 유동인구가 많고 평균적으로 2~3시간 체류하는 장소에 적합한 충전기임.

2026년 예산안은 중속충전기 총 2,000대에 설치비를 국고 지원비율 50%로 각 1,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그런데 신규로 수행되는 중속충전기 설치 대수 2,000대를 산정할 때 별도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동주택 등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전기차충전기 구축지원 사업 내 완속 충전시설 물량을 조정하고, 조정한 물량과 액수를 중속충전기로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2026년 완속충전기와 중속충전기 예산안]

	2025년 예산안		2026년 예산안		
	대수	액수	대수	액수	증감액
완속충전기	91,000대	2,430억원	65,000대	1,325억원	△1,105억원
중속충전기	-	-	2,000대	300억원	300억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그러나 완속충전기와 중속충전기는 설치 장소 및 수요가 서로 다르므로, 단순히 완속충전기 설치 예산을 줄였다는 이유로 중속충전기 설치 대수를 2,000대로 반영하는 것은 물량 산정의 타당성과 명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 완속충전기는 아파트 등 7시간 이상 체류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중속충전기는 극장 등 2~3시간 체류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것임.

[급속, 중속, 완속 충전기의 차이점]

	급속충전기	중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설치 장소	이동거점(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등	대형마트, 극장, 아울렛 등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회사) 등
수요자	1시간 미만 급속 충전 필요	2~3시간 체류하는 자	7시간 이상 체류하는 자
규격	현행 지침상 40kW 이상 (대체로 100kW 이상 설치)	30~50kW 예정	현행 지침상 40kW 미만 (대부분 7kW 설치)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충전기 구축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 저조 이유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들었는데, 대형마트·극장·아울렛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중속충전기 역시 불안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완속 충전기 물량 조정을 이유로 중속충전기 2,000대를 신규 설치 지원 대수로 편성한 것은 물량 산정의 타당성과 명확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중속충전기의 편성 대수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신규): 투자수요의 면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은 전기·수소 모빌리티 도입을 연계한 충전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분야 신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4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8)]

[2026년도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928,423	865,423	930,938	2,515	0.3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	-	74,000	74,000	순증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면, 모펀드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모펀드에 출자한 후 모펀드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 진행 방식]

모펀드 운용사 선정	▸	전문·운영 위원회 구성	▸	모펀드 출자	▸	투자 및 회수분배	▸	모니터링	▸	펀드 청산
기후에너지 환경부		모펀드 운용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용사		모펀드 운용사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모펀드를 공모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운영하려는 모펀드는 투자기간 5년, 존속기간 20년으로, 하위펀드 설정액 대비 최대 50% 이내에서 투자할 계획임.

2026년 예산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모펀드에 출자하는 금액으로 총 740억원이 편성되었음.

58) 에너지및자원사업회계(투자계정)-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1633-312)(대기환경정책관)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출자금(460-01) : 74,000백만원 -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74,00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무공해차 인프라펀드는 2개의 프로젝트 펀드와 1개의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1개의 프로젝트 펀드는 2026년 금액이 미정이거나 시기가 미정이므로 투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장기적인 무공해차 충전소 운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펀드 조성 필요성을 바탕으로 2026년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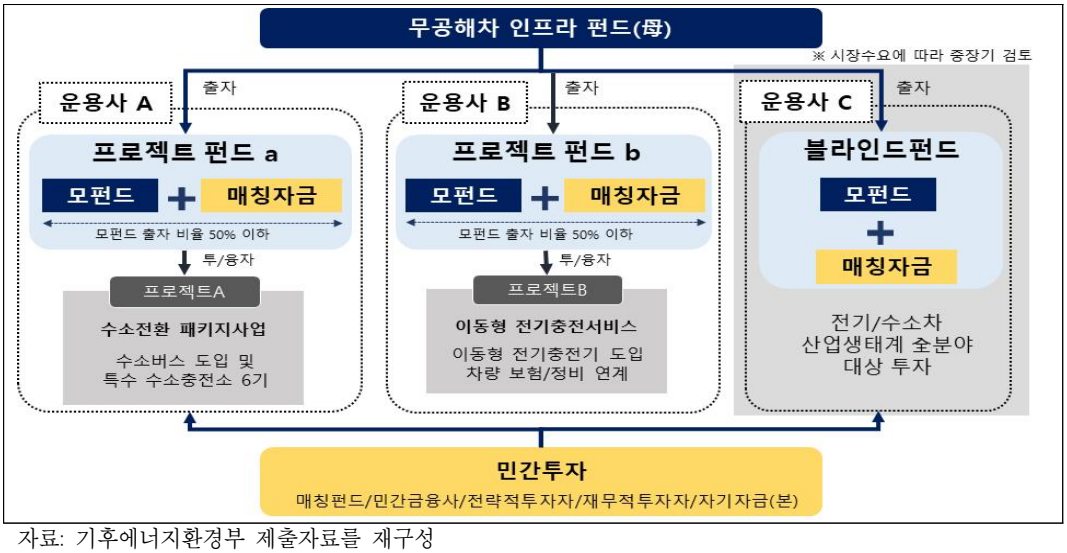
이는 투자기간 5년, 존속기간 20년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출자금을 교부 하면, 모펀드에서 민간 출자를 매칭한 자펀드를 통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구체적으로, 모펀드가 2개의 프로젝트 펀드에 출자하여 각각 수소전환 패키지 프로젝트와 이동형 전기충전서비스 프로젝트에 추진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수소전환 패키지 프로젝트는 수소버스 도입 및 특수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프로젝트이고, 이동형 전기충전서비스 프로젝트는 이동형 전기충전기 도입과 차량 보험/정비를 연계하는 프로젝트임.

이에 더해, 시장 수요에 따라 전기/수소차 산업생태계 전분야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펀드에 출자할 계획도 있음.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 운영계획]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는데, 수소충전과 관련하여 6개 기업이, 전기충전과 관련하여 5개 기업이 수요를 표시하였고, 1개 기업이 둘을 종합하여 별도로 제출하였음.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 수요조사 결과]

구분	수요 기업	투자수요금액 (억원)	자펀드 결성시기	사업내용
수소 충전	A사	700	2026년	기 보유 디젤차량 수소버스로 전환 및 수소충전소 운영
	B사	30~50	2026년	액화수소 공정 및 탱크 개발, 수소충전소 등
	C사	미정	미정	산업 폐기 가스 수소전환 모듈
	D사	100	미정	액화수소 생산·저장·이송·안정 기술 독자개발
	E시	50~100	미정	수소충전 인프라 장비
	F사	30~50	미정	수전해 수소 기술 보유 및 모듈형 제작으로 충전소 직접 연동
전기 충전	G사	미정	2026년	전기차 충전결제플랫폼
	H사	미정	2026년	공동주택 중심 완속 충전 사업확장
	I사	200	미정	급속충전 파워모듈 제조·개발 선도적 기술 보유
	J사	미정	미정	전기차충전플랫폼 운영
	K사	100	미정	전기차 인프라
L사 별도제출		2,000	2026년	수소충전 관련기업 10개사, 전기충전 관련기업 10개사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그런데 현재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별도 제출한 L사를 제외하고, 자펀드 결성시기를 2026년으로 명시한 A사, B사의 투자수요금액은 각각 700억원, 50억원에 불과함.

심지어, 전기충전 관련 프로젝트를 제출한 G사, H사, I사, J사, K사의 경우 투자수요금액이 미정이거나 자펀드 결성시기가 미정이므로, 두 개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전기충전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펀드 자체가 2026년에는 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모펀드를 하위펀드 설정액 대비 최대 50% 이내에서 투자할 계획이므로, 예산액인 740억원이 모두 매칭 자금과 결합되어 프로젝트에 투자된다면 그 금액은 최소 1,480억원이 될 것이나, 2026년 사업내용 및 투자수요금액과 자펀드 결성시기가 명확한 수요 기업은 A사와 B사 뿐이므로 이를 합하더라도 750억원에 불과하여 현재 예산안 상 자펀드 최소 규모인 1,480억 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큼.[59]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 투자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2026년 자펀드 결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59)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L사가 제출한 투자 수요를 포함하여 2026년에 약 2,73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프라펀드 조성 전 관련 금융기관과 투자 수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여 차질없이 자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16.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지원기반구축 사업: 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지원기반구축’** 사업은 수소생산을 위한 실증 규모의 테스트스테이션 구축 및 수요자 맞춤형 시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2억 4,800만원(411.5%)이 증액된 214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60)]

[2026년도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지원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9,185	9,185	26,458	17,273	188.1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지원기반구축	4,191	4,191	21,439	17,248	411.5

이 사업은 수소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및 기타 사업운영 관련 부대비용 8,900만원과 10MW 급 전력공급 설비 구축비용 213억 5,000만원으로 계획됨.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지원기반구축 사업 세부내역]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 민간경상보조(320-01) : 1억 9,100만원 가.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지원기반구축사업 · 사업운영 관련비용(운영비, 부대비용 등) 1억 9,100만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40억원 가.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지원기반구축사업 · 10MW급 전력공급 설비 구축 비용(일부) 40억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8,900만원 가.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지원기반구축사업 · 사업운영 관련비용(수소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및 기타 사업 운영 관련 부대비용 등) 8,900만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213억 5,000만원 가.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지원기반구축사업 · 10MW급 전력공급 설비 등 213억 5,000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6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5203-301)(수소경제정책관)

이 중 민간자본보조(320-07목)로 편성된 2025년도 장비구축비 40억원 중 2025년 9월 기준 산업통상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게 32억원을 교부하였으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전년도 이월금 16억 7,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48억 7,000만원 중 5억 9,000만원(실집행률 12.1%)만 실집행 되었음.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험평가 장비 구축 사업의 특성상 건축 일정에 연계하여 장비 설계 및 발주가 필수적임에 따라, 건축 상세설계 일정이 2025년 9월에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장비구축비도 실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될 예정이라는 입장임.

[장비구축비(민간자본보조)에 대한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가스기술공사(보조사업자)				
본예산 (A)	교부액 (B)	교부액 (B)	전년도 이월금 (C)	예산현액 (D=B+C)	실집행액 (E)	최종 집행률 (E/D)
4,000	3,200	3,200	1,670	4,870	590	12.1

주) 2025년 9월 기준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실집행 내역은 2024년 이월금 중 4억 9,000만원이 ‘수소품질 평가설비 1set’ 선금으로 집행되었고, 2025년 예산액 중 1억원을 ‘전기분야 통합 상세설계 용역’ 선금으로 집행되었으며, 각 설비에 대한 중도금 약 70~80%는 2025년 연말에, 잔금은 2026년에 집행될 예정임.

[장비구축비(민간자본보조) 실집행액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2024년 이월금	건설비 (시설비)	**2025.02.28. (집행완료)**	**490**	**수소품질 평가설비 1Set 선금**
		2025.11.(예정)	211	수소품질 평가설비 1Set 중도금(1차)(~70%)
		2025.11.(예정)	249	통합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설비 1Set 선금
		2025.12.(예정)	720	대용량 수전해용 유틸리티 공급시스템 제작 및 설치 선금
	소계		1,670	-
2025년 예산	건설비 (실시설계비)	**2025.08.19. (집행완료)**	**100**	**전기분야 통합 상세설계 용역 선금**
		2025.12.(예정)	60	전기분야 통합 상세설계 용역 중도금(~80%)
	건설비 (감리비)	2025.12.(예정)	200	전기공사 감리 용역 선금
	건설비 (시설비)	2025.12.(예정)	450	전원공급설비 제작 및 설치 선금
		2025.12.(예정)	200	수변전설비 2차 제작 및 설치 용역 선금
		2025.12.(예정)	240	전기설비 공사(건축전기 제외) 1차분 선금
		2025.12.(예정)	1,000	전기 공급 표준시설부담금(100%)
		2025.12.(예정)	180	수전해 내압 및 기밀시험용 시스템 장비 제작 및 설치 선금
		2025.12.(예정)	525	수전해 셀 성능 평가 장비 제작 및 설치 선금
		2025.12.(예정)	160	수소생산 효율 평가 시스템 장비 제작 및 설치 선금
		2025.12.(예정)	885	소형 스택 평가 장비 제작 및 설치 선금
	소계		4,000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이 사업은 센터 건축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인데, 기업지원동 및 시험평가동 2개의 센터 구축은 경기도와 평택시의 지방비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비 180억원 중 2025년에 40억원은 확보되었으나, 2026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74억원은 예산 심의 중이며 잔액 66억원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할 예정임.

또한 센터는 현재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으며, 2025년 12월에 착공하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장비 구축 및 센터 구축 개요]

구분	시험평가 장비 구축	센터 건축(기업지원동, 시험평가동)
사업비	300억원(국비)	180억원(지방비) - 2025년 40억원 확보 - 2026년 74억원 본예산 반영, 잔액 66억원은 2026년 추경으로 확보예정
수행주체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2026년 단년도에 선금, 중도금, 잔금이 모두 편성된 4개 계획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2조 및 지방비·건축 일정의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금 편성 시점을 2027년 이후로 조정하고 이를 2026년도 예산안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예산안 중 장비구축비(민간자본보조) 213억 5,000만원에 대해 다음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4차연도(2026년)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예정일자	집행예정	사용목적
건설비(420)	실시설계비(02)	2026.12.	40	전기분야 통합 상세설계 용역 잔금(~100%)
		2026.03.	150	전력계통 해석 및 검증 용역(100%)
		소계	190	-
건설비(420)	시설비(03)	2026.06.	305	수변전설비 제작 및 설치 잔금(~100%)
		2026.04.	184	수변전설비 2차 제작 및 설치 용역 중도금(~70%)
		2026.06.	150	수변전설비 2차 제작 및 설치 용역 잔금(~100%)
		2026.05.	600	전원공급설비 제작 및 설치 중도금(~70%)
		2026.08.	450	전원공급설비 제작 및 설치 잔금(~100%)
		2026.06.	320	전기설비 공사(건축전기 제외) 1차분 중도금(~70%)
		2026.12.	240	전기설비 공사(건축전기 제외) 1차분 잔금(~100%)
		2026.03.	**855**	**전기설비 공사(건축전기 제외) 2차분 선금(30%)**
		2026.06.	**1,140**	**전기설비 공사(건축전기 제외) 2차분 중도금(~70%)**
		2026.12.	**855**	**전기설비 공사(건축전기 제외) 2차분 잔금(~100%)**
		2026.06.	40	질소공급설비 제작 및 설치 잔금(~100%)
		2026.12.	300	수소품질 평가설비 1Set 잔금(~100%)
		2026.07.	219	통합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설비 1Set 중도금(~70%)

(단위: 백만원)

4차연도(2026년)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집행예정 일자	집행예정	사용목적
		2026.12.	201	통합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설비 1Set 잔금(~100%)
		2026.06.	135	수전해 내압 및 기밀시험용 시스템 장비 제작 및 설치 중도금(~70%)
		2026.12.	135	수전해 내압 및 기밀시험용 시스템 장비 제작 및 설치 잔금(~100%)
		2026.06.	120	수소생산 효율 평가 시스템 장비 제작 및 설치 중도금(~70%)
		2026.12.	120	수소생산 효율 평가 시스템 장비 제작 및 설치 잔금(~100%)
		2026.06.	700	수전해 셀 성능 평가 장비 제작 및 설치 중도금(~70%)
		2026.12.	525	수전해 셀 성능 평가 장비 제작 및 설치 잔금(~100%)
		2026.06.	2,125	소형 스택 평가 장비 제작 및 설치 중도금(~70%)
		2026.12.	1,290	소형 스택 평가 장비 제작 및 설치 잔금(~100%)
		2026.03.	**348**	**시험실 항온항습 시스템(설비) 제작 및 설치 선금(40%)**
		2026.06.	**261**	**시험실 항온항습 시스템(설비) 제작 및 설치 중도금(~70%)**
		2026.12.	**261**	**시험실 항온항습 시스템(설비) 제작 및 설치 잔금(~100%)**
		2026.03.	**392**	**생산수소 배출(연소) 시스템(설비) 제작 및 설치 선금(40%)**
		2026.06.	**294**	**생산수소 배출(연소) 시스템(설비) 제작 및 설치 중도금(~70%)**
		2026.12.	**294**	**생산수소 배출(연소) 시스템(설비) 제작 및 설치 잔금(~100%)**
		2026.03.	**699**	**통합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설비 2차분 제작 및 설치 선금(30%)**
		2026.06.	**932**	**통합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설비 2차분 제작 및 설치 중도금(~70%)**
		2026.12.	**699**	**통합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설비 2차분 제작 및 설치 잔금(~100%)**
		2026.06.	2,530	수소 회수 및 공급설비 제작 및 설치 중도금(~70%)
		2026.12.	1,461	수소 회수 및 공급설비 제작 및 설치 잔금(~100%)
		2026.06.	960	대용량 수전해용 유틸리티 공급시스템 제작 및 설치 중도금(~70%)
		2026.12.	720	대용량 수전해용 유틸리티 공급시스템 제작 및 설치 잔금(~100%)
		소계	20,860	-
	감리비 (04)	2026.6.	150	전기공사 감리 용역 중도금(~70%)
		2026.12.	150	전기공사 감리 용역 잔금(~100%)
		소계	300	-
합계			21,350	-

주) 볼드체는 2026년에 선금, 중도금, 잔금이 모두 집행될 계획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 지방비 확보 여부 및 인허가·착공일자 등 건축 일정의 불확실성

개요에서 서술하였듯, 경기도 평택시는 장비가 들어가게 될 예정인 기업지원동과 시험평가동 총 2개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180억원 중 2025년 예산 40억원만 확보해둔 상황임.

2026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74억원은 차년도에 반영될지 여부가 미정이고, 이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잔액 66억원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여야 함.

또한 2025년 9월 기준 건축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에도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 등 착공 이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일부 남아있어, 2025년 12월에 착공이 이루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함.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위 센터에 들어갈 예정인 여러 장비의 예산을 잔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해두었는데, 그 현실성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2026년 단년도에 선금, 중도금, 잔금을 전액 편성한 것의 적정성 여부

‘전기설비 공사(건축전기 제외) 2차분’, ‘시험실 항온항습 시스템(설비) 제작 및 설치’, ‘생산수소 배출(연소) 시스템(설비) 제작 및 설치’, ‘통합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설비 2차분 제작 및 설치’ 총 4개 계약은 2026년에 선금, 중도금, 잔금이 전액 편성되어 있음.

이 중 ‘전기설비 공사(건축전기 제외) 2차분’ 및 ‘통합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설비 2차분 제작 및 설치’ 계약은 1차분 공사가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편성되었음.

이들 4개 계약은 단년도에 중도금 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전액 편성하였으므로, 2026년 예산안 중 잔금 집행일정을 차년도로 옮기는 등 보다 현실적으로 계획 및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6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힌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연차별 예산편성 조정 내역]

당 초

• 각 장비별 선금, 중도금, 잔금을 1개년도에 편성
* (장점) 계약의 안정성↑ / (단점) 이월액 발생

연도별 장비구축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장비 (선금)	ⓑ장비 (선금)	ⓒ장비 (선금)	ⓓ장비 (선금)
(중도금) (잔금)	(중도금) (잔금)	(중도금) (잔금)	(중도금) (잔금)

조 정

• 각 장비별 선금, 중도금, 잔금을 연차별로 나눠 편성
* (장점) 이월액 최소화 / (단점) 계약의 안정성↓

연도별 장비구축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장비 (선금)	(중도금)	(잔금)	-
ⓑ장비 (선금)	(중도금)	(잔금)	-
-	ⓒ장비 (선금)	(중도금)	(잔금)
-	ⓓ장비 (선금)	(중도금)	(잔금)

6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7.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신규): 보조율 차등적용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은 농공단지, 대학캠퍼스에 분산자원을 AI 기술로 제어하여 전력 생산-소비를 최적화하는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7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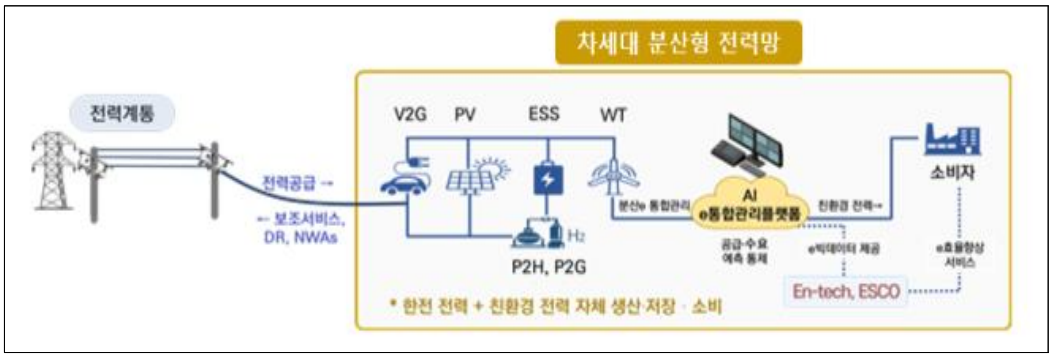
[2026년도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8,900	8,900	37,200	28,300	318.0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	-	27,200	27,200	순증

차세대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이란 분산에너지와 운영시스템(플랫폼)으로 구성되는데, 전력 수요량과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신으로 수요량과 발전량을 원격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임.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조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6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5139-308)(전력정책관)

이 사업은 2026년에 1개 농공산단과 4개 캠퍼스를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설비 구축을 70%의 보조율로 지원할 예정이고, 2027년까지 총 435억원 중 305억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130억원을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2026년도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 세부내역]

○ 사업비 : 270억원 · (농공산단) 1개 × 140억원(보조율 70%) = 140억원 · (캠퍼스) 4개 × 32억 5,000만원(보조율 70%) = 130억원 ○ 운영비 2억원 · 1개 × 2억원 = 2억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단순히 동일한 보조율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대상지의 재정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6~2027년 2년간 435억 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1곳과 대학 캠퍼스 5곳에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이를 시범사업의 형태로 운영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확산을 통하여 민간 투자를 이끄는 전력시장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단지 및 캠퍼스에 구축되는 설비(태양광, ESS, 플랫폼 등)가 유사하고, 산단 입주기업 및 캠퍼스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율을 70%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농공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영세한 사업장이 많고 캠퍼스에 비해 민간 매칭금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형별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보조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63)]

[2026년도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내역사업 세부내역]

구분	2026	2027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산단 1개, 캠퍼스 4개	캠퍼스 1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63)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초기임을 고려하여, 2026년 실증 사업을 수행한 이후, 유형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율 차등방안을 검토해 본다는 입장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계정)】

<세 출>

18. 하수관로 정비사업: 연내 집행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하수 배수체계 구축으로 국민보건·위생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의 유출·누출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20억 9,800만원(38.5%) 증액된 4,755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64)

[2026년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하수관로정비	674,789	766,083	882,070	207,307	30.7
하수관로 정비	343,438	427,687	475,536	132,098	38.5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지역에 따라 30~60%의 비율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하수관로 정비 사업 집행과정]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하수관로 정비	보조	지자체 보조	882,070 백만원	30~60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112. 하수관로 정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예산안은 계속사업 163개소 총 3,488억 6,700만원, 신규사업 39개소 총 1,266억 6,900만원을 합하여 4,755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6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하수관로정비(지역지원)(1132-312)(물환경정책관)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475,536백만원
- 계속사업 163개소 348,867백만원
- 신규사업 39개소 126,669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2025년 8월 기준 전년도 이월액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37개에 달하므로,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연례적으로 큰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7,487억 7,300만원의 예산안 중 1,443억 2,400만원(19.3%)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7,839억 4,800만원의 예산안 중 1,380억 2,500만원(17.6%)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에는 9,359억 4,300만원의 예산안 중 1,936억 2,700만원(20.7%)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최근 3년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액과 실집행 단계에서 이월액]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안(A)	748,773	783,948	935,943
실집행 이월액(B) (비율: B/A)	144,324 (19.3)	138,025 (17.6)	193,627 (20.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교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2024년 총 3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64억 3,100만원의 재이월이 발생하였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2024년 결산 기준 재이월이 발생한 발생 지방자치단체]

(단위: 백만원)

연번	2024년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2024년 실집행액	이월액	재이월액
1	-	-	20	20	-	20	20
2	-	-	150	150	-	150	150
3	150	100	200	300	-	300	200
4	842	420	857	1,277	148	1,117	697
5	-	-	175	175	-	175	175
6	-	-	84	84	-	84	84
7	1,402	-	765	765	51	714	714
8	-	-	1,708	1,708	1,584	124	124
9	2,312	2,312	1,677	3,989	2,116	1,873	1,466
10	579	579	724	1,303	875	428	171
11	272	272	5,454	5,726	487	5,239	4,967
12	1,417	1,417	40	1,457	168	1,289	40
13	1,303	1,303	4	1,307	9	1,298	4
14	1,679	1,679	742	2,421	1,182	1,239	98
15	901	901	719	1,620	709	911	268
16	1,945	1,600	500	2,100	477	1,623	107
17	1,454	1,454	2,479	3,933	2,348	1,585	205
18	1,459	1,459	1,904	3,363	1,433	1,930	471
19	106	106	471	577	28	549	443
20	517	267	738	1,005	790	215	57
21	13,414	12,414	12,098	24,512	12,387	12,125	1,672
22	18,064	15,064	1,022	16,086	7,355	8,722	392
23	819	819	1,269	2,088	208	1,880	1,239
24	1,544	1,389	424	1,813	172	1,641	252
25	245	245	129	374	2	372	127
26	-	-	598	598	500	98	98
27	100	100	491	591	386	205	105
28	3,219	3,219	2,792	6,011	4,548	1,462	244
29	-	-	336	336	-	336	336
30	172	-	140	140	-	140	140
31	1,489	1,293	626	1,919	82	1,837	621
32	214	214	100	314	308	6	6
33	222	222	106	328	54	274	52
34	100	100	129	229	34	195	95
35	-	-	272	272	-	272	272
36	-	-	70	70	-	70	70
37	2,939	2,939	2,456	5,395	4,698	697	249
합계	58,879	51,887	42,469	94356	43,139	51,195	16,43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재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보조사업비의 재이월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의 취지에도 위반되고 있는 것임.[65]

그런데 2025년 8월 기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액 조차 실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37개의 지방자치단체에게 2026년에도 총 925억 7,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이들 지자체는 2025년 예산액 총 867억 3,400만원 중 525억 1,3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전년도 이월액 총 212억 2,500만원 중 73억 800만원만을 실집행한 상황임.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상반기까지 당해연도 교부액은 물론, 전년도 이월액조차 원활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2025년 교부액이 그대로 이월될 가능성이 큼.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원 발생, 용지보상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으로,[66] 2026년 예산 편성시 사업별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연부율을 조정・편성했다는 입장임.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6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66)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예산의 증액 편성은 노후관로(20년 이상 경과) 정비를 통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반영되었다는 입장임.

[2025년 전년도 이월액을 집행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2026년 예산액]

(단위: 백만원)

연번	2025년 예산액	2025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2025년 8월 전년도 이월액 실집행액	2026년 예산액
1	1,060	451	185	-	629
2	2,080	451	349	49	8,668
3	720	-	6	-	1,313
4	1,029	800	1,370	-	175
5	430	-	150	-	276
6	2,214	-	200	-	1,831
7	1,619	1,619	621	23	118
8	254	-	100	5	277
9	1,887	-	282	-	3,019
10	4,061	4,061	1,117	-	1,695
11	2,513	2,513	4,363	2,571	3,270
12	3,894	3,117	2,175	470	1,991
13	181	-	101	-	461
14	688	-	59	1	902
15	1,583	1,583	163	-	2,256
16	2,167	1,500	2,132	1,472	1,555
17	500	-	311	41	3,164
18	5,000	4,467	523	-	3,509
19	1,169	-	129	-	101
20	1,100	770	230	-	4,280
21	5,890	5,800	860	858	6,278
22	-	-	362	197	329
23	2,797	2,312	327	270	839
24	7,215	-	1,829	258	3,132
25	1,602	696	310	16	2,542
26	567	-	17	-	673
27	3,662	3,288	143	-	3,928
28	6,614	4,100	533	328	5,882
29	6,061	5,280	629	5	1,004
30	600	-	45	19	1,353
31	340	-	320	40	318
32	1,998	1,998	6	-	3,048
33	1,154	129	2	-	662
34	4,053	3,539	138	-	5,245
35	800	800	70	-	186
36	2,537	239	1,039	685	12,754
37	6,695	3,000	29	-	4,914
합계	86,734	52,513	21,225	7,308	92,57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9.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수관 정비 및 지하 저류조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억 4,700만원(32.9%) 증액된 199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67)]

[2026년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하수관로정비		674,789	766,083	882,070	207,281	30.7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15,000	15,000	19,947	4,947	32.9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에 25%의 비율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이 사업은 당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조달청 공고 이후 사업이 2차례 무응찰되어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28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음.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개요]

	강남역		광화문	
	계획변경 전	계획변경 후	계획변경 전	계획변경 후
총사업비	3,500억원	5,386억 500만원	2,500억원	3,297억 7,300만원
사업규모 (직경, 길이)	직경: 3.1m 길이: 8.3㎞ 저수용량: 16.8만㎥	직경: 6.5~10.6m 길이: 5.8㎞ 저수용량: 48.5만㎥	직경: 3.2m 길이: 5.5㎞ 저수용량: 7.6만㎥	직경: 7.2~9.2m 길이: 2.3㎞ 저수용량: 12.2만㎥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	2023년 ~ 2028년	2023년 ~ 2027년	2023년 ~ 2028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6년 예산안은 강남역 대심도에 136억 4,400만원, 광화문 대심도에 63억 400만원 총 199억 4,700만원을 서울특별시에 교부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

6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하수관로정비(지역지원)(1132-312)(물환경정책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9,947백만원 - 강남역 대심도 13,644백만원 - 광화문 대심도 6,303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차례 유찰로 사업수행이 1년 이상 지연되었고 2025년 8월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추가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설치하려는 강남역 및 광화문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조달청 공고 무응찰로 인하여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고, 2023년 및 2024년 각각 당해연도 예산액의 실집행률이 0%, 0.01%에 불과함.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실집행 결산]

(단위: 백만원, %)

년도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3	서울특별시	5,435	5,435	4,500	4,500	-	4,500	0	4,500	0	4,500	0	0
2024	서울특별시	13,731	13,731	6,000	6,000	4,500	10,500	4,501	6,000	1	5,999	0	0.01
2025. 9.	서울특별시	15,000	15,000	13,000	13,000	5,999	18,999	568	13,000	0	집행중	집행중	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5년에도 사업 수행이 지연되고 있음. 2025년 사업 실집행자인 서울특별시의 집행계획을 보면, 2025년 7월까지 용역준공, 모형실험, 공사기성 등을 수행하여 전년도 이월액 59억 9,900만원 중 일부인 48억 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음.

그 이후 11월부터 실시설계비 등을 이유로 나머지 이월액(11억 6,900만원)과 2025년 예산액(150억원)을 합한 161억 6,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음.

[2025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지자체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2025년					
		1~5월	6월	7월	8~10월	11월	12월
집행예정액 합계		562	1,542	2,726	-	13,226	2,943
광화문	집행예정액	25	824	800	-	8,407	2,943
	집행원인	용역준공	모형실험 등	공사 기성		실시 설계비	우선시공분 및 감리 준공
강남역	집행예정액	537	718	1,926	-	4,819	-
	집행원인	감리선금	모형실험 등	공사기성 및 인허가 용역준공		실시 설계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2025년 9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광화문의 용역준공 및 강남역의 감리선금 등을 이유로 한 5억 6,800만원에 불과함.

이 사업은 2025년 9월 기준으로도 원래 계획상 6월에 집행예정이었던 모형실험 등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후 계획한 절차들도 순차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2026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집행 계획상 11월~12월에 총 71억 6,800만원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2025년 현재 사업이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 연말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2026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지자체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1~3월	4~7월	8월	11~12월
집행예정액 합계		799	6,000	5,980	7,168
광화문	집행예정액	305	-	2,980	3,018
	집행원인	부대 용역준공		공사, 감리 기성	공사, 감리 준공
강남역	집행예정액	494	6,000	3,000	4,150
	집행원인	부대 용역준공	보상비	공사, 감리 기성	공사, 감리 준공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집행계획에 따라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20. ce100프로젝트 추진 사업(신규): 수요 책정의 적절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ce100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ce100(무채굴 순환이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ce100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8)]

[2026년도 ce100프로젝트 추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자원순환촉진지원	10,614	10,614	11,477	863	8.1
ce100프로젝트 추진	-	-	2,200	2,200	순증

이 사업은 개별 기업 또는 동일 산업단지 내 기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협약 및 특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지원비를 지급하며, 기업별 ce100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ce100프로젝트 추진 사업 집행과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획수립	기업예산지원	기업 여건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ESG 검증	용역발주	ESG 검증방안 연구용역 추진		
협의체 운영	1차협의체		2차 협의체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2026년 예산안은 ce100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총 20개 기업에 각 1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지원비로 20억원, 협의체 운영비로 1억원, ESG검증연구비로 1억원 총 22억원이 편성되었음.

6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원순환촉진지원(지역지원)(1431-301)(자원순환국)

[ce100프로젝트 추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ce100프로젝트 추진(민간위탁사업비 22억원) - 기업지원비: 20개 기업×1억원 - 협의체운영: 1억원 - ESG검증연구: 1억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ce100프로젝트 추진 사업의 예산안으로 편성된 20개 기업 지원 개수는 현재 RE100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바탕으로 수요가 책정되었으나, ce100과 RE100은 서로 사업 내용이 다르므로 수요가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ce100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ce100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지원하고자 하는 ce100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100%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회수하여 제품이나 원료로 되돌리는 등 순환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이 사업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69]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법에 따라 순환경제성과 관리대상자에 대해서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함. 동법 시행규칙[70]은

6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5조 ⑦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행정적 · 기술적 ·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7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1. 업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가. 식료품 제조업
나. 음료 제조업
다.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라.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마.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사.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차. 1차 금속 제조업

순환경제성과 관리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업종 및 규모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RE100 가입 기업 36개소 중 제조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 순환경제성과 관리대상자가 아닌 16개 기업을 제외한[71] 20개를 근거로 ce100 프로젝트 지원 대상 기업을 20개로 편성하였음.

그런데 수요 편성 기준인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e) 비율 100%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즉, RE100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고, ce100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순환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두 사업의 내용이 다름.

[RE100과 ce100의 공통점과 차이점]

	RE100	ce100
정의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전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
공통점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구축을 추구	
차이점	소비 단계의 전력원을 재생에너지로 대체	생산 과정의 부산물・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전환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ce100과 RE100 가입 기업이 유사한 목적과 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수요를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파.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하. 전기장비 제조업
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규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

71) RE100 가입 기업 중 IT 기업 등 업종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제외

그러나 달성하려는 목표와 내용이 다른 대상자를 바탕으로 수요를 책정한 것은 면밀하게 수요가 책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ce100프로젝트 추진 사업의 수요가 면밀하게 책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력산업기반기금】

<지 출>

21. 가파도 RE100 사업(신규): 철저한 사전계획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가파도 RE100’ 사업은 가파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풍력·ESS(Energy Storage System)[72] 등을 활용하도록 공급설비를 지원하고 에너지 전기화를 위해 고효율 히트펌프 등 주택설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22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3]

[2026년도 가파도 RE100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가파도 RE100	-	-	22,000	22,000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제주 가파도에 재생에너지와 ESS 및 히트펌프[74]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디젤발전 방식을 풍력과 ESS 설비로 전환하는 공급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이 편성되고, 화석연료 방식의 난방을 고효율 히트펌프로 전환하고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주택설비 지원 13억 4,000만원이 편성됨.

이와 함께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에 대한 지역 환경,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장기 전망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재생e+ESS+HP 모델화, 효과성, 태양광+HP 주택지원에

72)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이란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한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계통 안정화에 필수적인 장치임.

73) 전력산업기반기금-가파도 RE100(5202-330)(수소열산업정책관)

74) 히트펌프란 공기, 물, 지중(땅) 등 주변에 있는 열을 난방이나 냉방, 급탕(온수)에 활용하는 장치임.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히트펌프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와 함께 설치 시 태양광 발전설비의 활용을 높이고, 난방에너지 사용의 전기요금비용을 저감 하는 등 융합 시너지가 큼.

대한 사전현황조사를 수행하고, 공급설비 및 주택설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 4억 5,000만원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부대비용 2억 1,000만원이 함께 편성되었음.

[가파도 RE100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ㅇ (지원대상) 제주 가파도 ㅇ (사업내용) 도서 지역 마을단위 ‘재생에너지+ESS+히트펌프’ 지원 - (공급설비) 디젤발전 방식 → ‘풍력+ESS’ 설비 전환 - (주택설비) 화석연료 난방 → 고효율 히트펌프 전환, 태양광 설치지원 - (실증운영) 주택지원 현장조사 용역, 협의체 및 위원회 운영, 설명회 개최 등 사업운영비	
예산	**산출내역**
공급설비 지원 (200억원)	① (육상풍력 설비지원) 1기 × 90억원 = 90억원 ② (ESS 설비지원) 1식 × 110억원 = 110억원
주택지원 (13억 4,000만원)	① (태양광 설비지원) 83가구 × 430만원 × 100% = 3억 5,700만원 ② (히트펌프 설비지원) 132가구 × 745만원 × 100% = 9억 8,300만원
실증 인프라 지원 (6억 6,000만원)	ㅇ 사업설계 및 조사, 타탕성 분석 등 용역(4억 5,000만원), 협의체 및 위원회 운영, 설명회 개최 등 사업운영비(2억 1,000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가파도 RE100 사업은 대규모 풍력 및 ESS 설비가 설치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별 설치여건, 설치의향, 에너지 비용 등 현장조사를 보다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가파도 RE100 사업은 특정 지역(가파도)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의 특성상 단순한 시설 설치 차원을 넘어 지역 맞춤형 에너지 체계를 설계하여야 하므로 사전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따라 편성된 4억 5,000만원의 용역비는 단순 연구용역이 아니라, 태양광+히트펌프 주택지원 등 육상풍력과 설비지원 수요를 조사하고, 설비 적정성을 검토하며, 에너지자립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 수요 조사 및 사업 수행 타당성 분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함.

그러나 이 사업은 수요 조사 및 사업 수행 타당성 분석 예산과 실제 사업비가 동시에 편성되어 보다 철저한 사전계획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이행의 주요 수단으로서 마을단위 ‘재생에너지+ESS+히트펌프’ 패키지 보급을 추진하는 것이며, 국정과제에[75] 반영됨에 따라 조속히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이미 제주도,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파도 에너지 수요·공급, 설치 설비에 등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검토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타당성과 합리적 수준의 예산 규모를 반영하였다는 입장이며, 전문 연구용역 등은 내년 초부터 3개월 이내에 조속히 마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대규모 풍력 및 ESS 설비가 설치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주택 설비 지원의 경우에도 주민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별 설치여건, 설치의향, 에너지 비용 등 현장조사를 보다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75) 38번 에너지고속도로, 39번 재생에너지중심 대전환

22.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구축 사업: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장비구축 예산 조정 필요

가. 개 요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구축’ 사업은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과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25억 5,600만원(2,373.5%)이 증액된 130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76)]

[2026년도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구축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구축	529	529	13,085	12,556	2,373.5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포항테크노파크의 운영비가 전년 대비 3억 8,600만원이 감액된 1억 4,300만원이 2026년에 편성되었으며, 대신 민간자본보조(320-02목) 129억 4,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구축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5억 2,900만원	ㅇ 민간경상보조(320-01) : 5억 2,900만원 - 전담기관 운영관리비 ・ 인건비 : 1억 7,000만원 ・ 운영비 : 3억 2,200만원 ・ 기타 사업관리비 : 3,700만원	130억 8,500만원	ㅇ 민간경상보조(320-01) : 1억 4,300만원 - 전담기관 운영관리비 ・ 인건비 : 4,600만원 ・ 운영비 : 8,700만원 ・ 기타 사업관리비 : 1,000만원 ㅇ 민간자본보조(320-02) : 129억 4,200만원 - 연료전지 시험평가장비(11종 14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76) 전력산업기반기금-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구축(5203-353)(수소경제정책관)

2025년 전담기관 운영관리비 5억 2,900만원 중 2025년 7월 기준 전년도 이월금 1억 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억 3,100만원 중 2억 6,45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년 전담기관 운영관리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포항테크노파크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4	146	146	146	146	-	146	44	102	30.1
2025. 7월기준	529	529	529	529	102	631	264.5	-	5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미집행액 3억 6,650만원 중 1억 1,620만원은 인건비로서 연내 집행예정이나, 차액 2억 5,030만원은 ① 2026년부터 시작되는 장비 구축계획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② 하반기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등 클러스터 사업 관련 협의를 위해 집행될 예정임.

참고로, 2026년부터 시작되는 장비 구축계획 검증 용역은 2025년 5월에 발주하여 7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임.

2026년도 예산안 중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129억 4,200만원은 아래 11종 14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1차년도 예산임.

[2026년 구축 예정으로 계획한 시험평가장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번	장비명	대	예산(안)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연료전지 시험 평가	1	1~300kW PEMFC 스택 평가장치	1	1,694.3	2,541	4,235.3
	2	1~300kW PEMFC 스택 내구성 평가장치	1	2,178.5	3,267	5,445.5
	3	10,25,50,100kW급 PEMFC 시스템 평가장치	1	484.2	726	1,210.2
	4	1kW SOFC/SOEC 겸용 성능평가장치	3	280.0	420	700
	5	고온형 연료전지 평가장치(1~50kW)	1	3,387.5	5,082	8,469.5
	6	고온형 연료전지 내구평가장치(1~50kW)	1	3,387.5	5,082	8,469.5
기타 물성평가	7	실시간 가스분석기	2	169.2	-	169.4
	8	개질기 평가장치	1	102.4	-	102.4
	9	4 point probe	1	48.4	-	48.4
	10	분리판 물성 평가장치	1	605	-	605
	11	수소연료 품질 분석기(이동용)	1	605	-	605
합계			14	12,942	17,118	30,06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2026년 14대 장비 도입 계획안 129억 4,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아직 2028년까지 총 44종 63대 장비 구축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장비 타당성 검토결과 및 기업 수요조사 등을 반영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별 장비 구축 예산을 보다 면밀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6년 도입 계획인 11종 장비 14대에 대한 1차년도 예산안은 총 129억 4,200만원임.

그러나 2025년 10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2026년 도입 예정인 장비 11종 14대, 2027년 도입 예정인 장비 12종 17대, 2028년 도입 예정인 장비 21종 32대 구축 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용역은 2025년 12월에 마무리 될 예정임.[77]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장비검증을 위한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을 우선 편성하였고, 14대 장비 구축 적정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최종 종료되기 이전인 2025년 10월에 중간점검 평가서를 받아 분석할 예정이라는 입장임.[78]

그러나 2028년까지 도입 예정인 총 44종 63대 장비 전체에 대한 장비 구축계획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임에도 2026년도 일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1차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이 사업은 연구용역 최종 결과 및 클러스터 건축 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장비 구축과 관련된 단계별 예산 배분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

77) 이 사업 분석 보고서 마지막에 장비리스트 첨부

78) 또한「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제6조에 따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을 예정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6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 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중장위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026~2028년 구축 예정으로 계획한 시험평가장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번	장비명	대	예산(안)			합계 (vat 포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료전지 시험 평가	1	1~300kW PEMFC 스택 평가장치	1	1,694.3	2,541	-	4,235.3
	2	1~300kW PEMFC 스택 내구성 평가장치	1	2,178.5	3,267	-	5,445.5
	3	10,25,50,100kW급 PEMFC 시스템 평가장치	1	484.2	726	-	1,210.2
	4	1kW SOFC/SOEC 겸용 성능평가장치	3	280.0	420	-	700
	5	고온형 연료전지 평가장치(1~50kW)	1	3,387.5	5,082	-	8,469.5
	6	고온형 연료전지 내구평가장치(1~50kW)	1	3,387.5	5,082	-	8,469.5
기타 물성 평가	7	실시간 가스분석기	2	169.2	-	-	169.4
	8	개질기 평가장치	1	102.4	-	-	102.4
	9	4 point probe	1	48.4	-	-	48.4
	10	분리판 물성 평가장치	1	605	-	-	605
	11	수소연료 품질 분석기(이동용)	1	605	-	-	605
제작 및 조립	12	스퍼터링 머신	1	-	726	1,089	1,815
	13	PEMFC 스택 조립 장치	2	-	185.9	278.73	464.63
	14	고온 연료전지 스택 면압, 수축 거동 평가장치	2	-	294.3	441.4	735.7
연료전지 시험 평가	15	BOP평가장치(밸브류)	1	-	145.2	217.8	363
	16	BOP평가장치(모터류)	1	-	338.8	508.2	847
	17	고온형 열교환기 평가장비	1	-	145.2	217.8	363
	18	1~200kW급 E-BOP평가장치	1	-	1,210	1,815	3,025
	19	300kW급 E-BOP평가장치	1	-	624.5	936.5	1,561
	20	암모니아 전용 SOFC 단셀 평가장치	3	-	581	871.2	1,452.2
	21	암모니아 전용 10kW SOFC 평가장치	2	-	413.4	619.9	1,033.3
	22	암모니아 전용 50kW SOFC 평가장치	1	-	2,371.85	3,557.7	5,929.55
	23	암모니아 전용 50kW SOFC 내구평가장치	1	-	2,371.85	3,557.7	5,929.55
물류 및 환경 시설	24	초순수 제조 장치	4	-	-	484	484
	25	전동 지게차	1	-	-	54.4	54.4
	26	가스 저장소	1	-	-	968	968
	27	공기공급장치	4	-	-	643.7	643.7
	28	냉각장치	4	-	-	706.6	706.6

(단위: 백만원)

구분	연번	장비명	대	예산(안)			합계 (vat 포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소 생산	29	암모니아크래커	1	-	-	968	968
설계	30	연료전지 시험 시뮬레이션	1	-	-	847	847
기타 물성 평가	31	방사선 비파괴 투과 검사장비	1	-	-	1,815	1,815
O&M 평가 장비	32	TESTO 310 연소가스측정기	1	-	-	1.6	1.6
	33	Fluke 789 ProcessMeter	1	-	-	1.8	1.8
	34	Fluke 1507 절연저항테스터	1	-	-	1.1	1.1
	35	Fluke 325 클램프 미터	1	-	-	0.5	0.5
	36	Fluke 9062 모터 및 위상회전 표시기	1	-	-	0.6	0.6
	37	Fluke 64 Max IR 비접촉 온도계	1	-	-	0.4	0.4
	38	Fluke Ti300+ 열화상카메라	1	-	-	21.2	21.2
	39	Fluke 773 밀리암페어 클램프 미터	2	-	-	5.5	5.5
	40	Fluke 714B 열전쌍 교정기	1	-	-	2.5	2.5
	41	GHM G1410 전도도미터	1	-	-	0.7	0.7
	42	MA888 Ethylene Glycol 용 디지털 굴절계	1	-	-	0.67	0.67
	43	Portable gas chromatography	2	-	-	245.6	245.6
	44	Sub stack voltage measurement	1	-	-	50.2	50.2
합계			63	12,942	26,526	20,930	60,39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3.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신규): 하향된 ESS 평균 단가를 반영한 예산 편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은 지역 단위의 소규모 전력망(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배전망에 구축하여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1,196억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9)]

[2026년도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	-	119,616	119,616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는 보조사업이고, 총사업비 1조 29억원 중 5,018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 1,171억원(보조율 50%), ‘공유형 ESS’ 사업 11억 2,000만원(보조율 50%), ‘커뮤니티 솔라’ 사업 8억 9,600만원(보조율 80%)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1. 사업지역: 호남 우선 추진 - 국내 최대 재생e 자원 보유 하고 있으나, 출력제어 등 계통 한계가 빈번한 지역으로 분산 전력망 사업 최적지(호남 지역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1.9GW(‘25.3월 기준)) 2. 사업내용: 배전망 ESS 설치 지원 3. 사업비: 약 1조 29억원, 국비지원 약 5,018억원 4. 사업기간: 2026~2030년
ㅇ AI 활용 ESS 구축지원 : 1,176억원 가. ESS 설치지원 : 1,171억원 - 400MWh × 2억 9,275만원(보조율 50%) = 1,171억원 나. 사업운영비 : 5억원 ㅇ 공유형 ESS) : 11억 2,000만원 가. ESS 설치지원 : 11억 2,000만원 - 1개 × 11억 2,000만원(보조율 50%) = 11억 2,000만원 ㅇ 커뮤니티 솔라 : 8억 9,600만원

79) 전력산업기반기금-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5203-333)(전력정책관)

가. ESS 설치지원 : 8억 9,600원 - 1개 × 896백만원(보조율 80%) = 896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역사업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정한 단가를 살펴보면,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은 ESS 단가를 5억 8,600만원/MWh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16~2023년까지 수행된 융합시스템보급사업 지원사업장 ESS 평균 단가 약 5억 6,000만원/MWh에 EMS 및 통신설비 등 기타 비용 2,600만원/MWh을 추가하여 설정한 것이고, ‘공유형 ESS’ 사업 및 ‘커뮤니티 솔라’ 사업은 당시 평균 단가 약 5억 6,000만원을 그대로 설정하였음.[80]

[내역사업별 ESS 지원 단가 설정 기준]

내역사업	ESS 지원 단가 설정 기준
AI 활용 ESS 구축지원	ㅇ 총 사업비 : 234,200백만원 (자부담 117,100백만원 + 보조 117,100백만원) ㅇ ESS 보급 목표 : 400MWh ㅇ ESS 단가 : 586백만원/MWh (AI 활용 통합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EMS·통신설비 등 비용 포함) *** 2023년 융합시스템보급사업 지원사업장 ESS 평균 단가 약 560백만원/MWh** **** 2023년 융합시스템보급사업 지원사업장의 MWh당 xEMS 평균 단가 17.7백만원에 AI 활용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등 기타 비용 추가하여 총 26백만원/MWh로 산정**
공유형 ESS	ㅇ 총 사업비 : 2,240백만원 (자부담 1,120백만원 + 보조 1,120백만원) ㅇ ESS 보급 목표 : 4MWh ㅇ ESS 단가 : 560백만원/MWh *** 2023년 융합시스템보급사업 지원사업장 ESS 평균 단가 약 560백만원/MWh**
커뮤니티솔라	ㅇ 총 사업비 : 1,120백만원 (자부담 224백만원 + 보조 896백만원) ㅇ ESS 보급 목표 : 2MWh ㅇ ESS 단가 : 560백만원/MWh *** 2023년 융합시스템보급사업 지원사업장 ESS 평균 단가 약 560백만원/MWh**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이 사업은「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서, 동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임.[81]

80)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수행된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이 ‘융합시스템보급사업’임.

81)「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은 최근의 ESS 단가 하락 추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및 PCS·EMS·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된 계획안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우선, 이 사업은「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 및 동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없이 계획안이 편성되었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사업 내역사업의 단가를 2023년까지 수행한 융합시스템보급사업(이하 “과거 사업”) 지원사업장 ESS 평균 단가를 적용하였으나, 피크저감전용, 비상발전겸용, 계통안정화용 및 ESS 재사용으로 구분하여 보조비율을 상이하게 계획한 과거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3개 내역사업 전체에 대하여 5억 6,000만원/MWh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계획되었음.

[2017~2023년 융합시스템보급사업 지원사업장 ESS 평균 단가]

연도	예산산출 근거
2017년	○ 6,831백만원 - 피크감축용 : 9.9억원/1MWh×30%×8개 - 비상전원겸용 : 9.9억원/1MWh×50%×9개
2018년	○ 7,215백만원 - 피크감축용 : 8.12억원/1MWh×30%×5개소 - 비상전원겸용 : 8.12억원/1MWh×50%×10개 - 주거용 : 10백만원×50%×387세대
2019년	○ 5,715백만원 · 피크감축용 6.95억원 × 30% × 6개소 · 비상전원용 6.95억원 × 50% × 12개소 · 가정용 0.08억원 × 50% × 74세대
2020년	○ 3,517백만원 · 피크저감용 6.95억원×30%×6개 · 비상전원용 6.95억원×50%×12개 · 가정용 0.08억원×50%×74개 ○ 3,920백만원 · 공통안전 342MWh×11백만원/MWh×50% · 소화설비 292MWh×14백만원/MWh×50%
2021년	○ 4,865백만원 · 피크저감전용 5.15억원 × 2MWh × 60% · 비상발전겸용 5.15억원 × 10MWh × 70% · 계통안정화용 5.15억원 × 1MWh × 50% · ESS 재사용 5.15억원 × 1MWh × 70%

연도	예산산출 근거
2022년	○ 4,378백만원 · 피크저감전용 5.15억원 × 2MWh × 60% · 비상발전겸용 5.15억원 × 7MWh × 70% · 계통안정화용 5.15억원 × 2MWh × 50% · ESS 재사용 5.15억원 × 2MWh × 70%
2023년	○ 3,940백만원 · 피크저감전용 4.25억원 × 1.90MWh × 60% · 비상발전겸용 4.25억원 × 5.90MWh × 70% · 계통안정화용 4.25억원 × 3.95MWh × 50% · ESS 재사용 4.25억원 × 2.90MWh × 7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과거 사업 예산편성 당시 ESS 평균 단가를 살펴보면, 2017년 9.9억원/MWh에서 2018년 8.12억원/MWh, 2019년 6.95억원/MWh으로 낮아졌고, 2022년에는 5.15억원/MWh까지 하락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에는 4.25억원/MWh을 단가로 설정하여 편성되었음.

또한 ESS의 단가는 규모, 배터리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규모가 크고 원자재가 저렴할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년도 예산편성 당시 계획한 ESS 단가는 ESS 배터리[82] 뿐만 아니라 PCS[83], EMS, 공사비 등 합한 단가이며, 나라장터 ESS 평균 단가도 12~15억원/MWh 수준이므로 감액은 어렵다는 입장임.[84]

따라서 이 사업 예산안 규모는 ① 최근 ESS 단가 하락 추세, ESS 규모 및 배터리의 종류를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하되, ② 향후 진행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하고, ③ ESS 배터리와 PCS, EMS,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8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SS 중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하이며, 비중을 고려할 때 ESS 전체 단가는 MWh 당 5억원 이상이라는 입장임.

83)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전력변환장치)란 배터리에 저장된 직류(DC) 전기를 교류(AC)로 변환하거나, 반대로 외부 전력을 배터리에 충전할 때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이고,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관리시스템)란 ESS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임.

84) 또한 2023.4.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용량은 수명보증기간 동안 정격 방전용량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어 정격용량의 1.3~1.5배 용량을 확보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단가 역시 약 5.6억~6.4억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함.

【기후대응기금】

<지 출>

24.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 사업은 LFP배터리[85]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핵심광물 확보로 연료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3억 4,000만원(35.3%) 증액된 8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86]

[2026년도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	24,836	24,836	12,680	△12,156	△48.9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6,630	6,630	8,970	2,340	35.3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여 LFP배터리 재활용 설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년간 총 156억원을 투입할 예정임.[87][88]

이에 따라 2025년 계획안은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선금으로 66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고, 2026년 계획안에는 공사비인 8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85) LFP 배터리: 리튬(Lithium), 철(Fe), 인산(Phosphate)으로 구성되는 전기차 배터리

86) 기후대응기금-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6233-400)(자원순환국)

87) 공사비 130억원 및 설계・감리 등 부대비용 26억원

88) 공사비: 전처리 공정(열처리, 파분쇄 등)으로 30억원, 후처리 공정(습식공정)으로 100억원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8,970백만원 - LFP배터리 재활용설비 구축(8,97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검토의견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은 조달청과 협의 과정이 지연되어 당초 2025년에 마무리 될 예정이었던 실시설계가 2026년 3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기반이 미비하여 단순 처분되는 경향이 있는 LFP 배터리로 인해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LFP 배터리 재활용 기반 구축사업을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설계비로 8억 2,000만원, 공사비로 51억 1,900억원 등 총 6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조달청과 협의 과정이 지연되어 실시설계가 늦어져 2025년 8월말 기준 실집행액이 7억 300만원(10.6%)에 불과함.

[2025년 8월말 기준 LFP 배터리 재활용 기반 구축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계획안 편성액	2025년 8월말 기준 실집행액	2026년 계획안 편성액
설계비	820	699	-
공사비	5,119	-	7,561
감리비	398	-	1,052
시설부대비	50	-	46
운영비	29	1	30
여 비	21	3	20
일반관리비	193	-	261
합 계 (실집행률)	6,630	703 (10.6%)	8,97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5년 9월 기준으로 실시설계가 2026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공사비 선금은 2025년에 집행되지 못하고 2026년으로 이월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의 준공을 목표로 부대비용과 공사비 전액인 89억 7,000만원을 2026년 계획안에 편성하였는바, 이 사업이 공사비 선금조차 2025년에 집행되지 않을 예정임을 감안하면, 2026년에 편성된 공사비도 이월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89]가 2026년에도 연장적용될 경우 선금으로 공사비를 100%를 지급하여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해당 고시의 연장을 전제하고 조건부로 계획안을 편성한 것으로서, 이미 계획 내에 시설 준공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여 고시의 연장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이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8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확대*
* '25.6.30.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기상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기상청 소관 총수입은 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24.4%) 증가함.[1)]

[2026년도 기상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88	88	110	22	24.4
총수입	88	88	110	22	24.4

2026년도 기상청 소관 총지출은 5,485억원으로 전년 대비 787억원(16.8%) 증가함.

[2026년도 기상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4,698	4,698	5,485	787	16.8
총지출	4,698	4,698	5,485	787	16.8

문의 : 이동현 예산결산조사관 gerebera@assembly.go.kr (02-6788-568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24.4%) 증가함.

[2026년도 기상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88	88	110	22	24.4
합 계	88	88	110	22	24.4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485억원으로 전년 대비 787억원(16.8%) 증가함.

[2026년도 기상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684	4,684	5,471	787	16.8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4	14	14	-	-
합 계	4,698	4,698	5,485	787	16.8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기상청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2개(59억 7,2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국가레이더 융합 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R&D)’ 사업은 위험기상 선제대응을 위한 국가레이더 활용 위험기상 감시·예측 정보 및 지상원격탐사 자료를 접목한 맞춤형 레이더 융합활용 정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5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R&D)’ 사업은 위험기상 및 미래수요 대응력 향상을 위한 기상장비 및 관측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미래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4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상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국가레이더 융합 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R&D)	2,572
2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R&D)	3,400
총지출		5,972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기상청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사업, ‘기상기후교육’ 사업, ‘기후위기 대응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R&D)’ 사업 등 총 4개임.[3)]

[2026년도 기상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19,500	111,058	91,558	469.5
2	기상기후교육	2,361	4,308	1,947	82.5
3	기후위기 대응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R&D)	4,800	7,300	2,500	52.1
4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시스템 개선 및 운영(정보화)	1,255	1,710	455	36.3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는 없음.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전체 사업 중 R&D 사업의 예산 비중이 높다는 점임. 주요사업(일반, R&D, 정보화, ODA) 예산 중 R&D 사업의 예산이 4,194억원 중 2,264억원(54.0%)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2026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타잡수입’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초과수납이 반복되고 있고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납실적과 수입전망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운영’ 사업은 현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취득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조속히 마련하여 제도가 지연되지 않고 적시에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 간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술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R&D)’ 사업은 기존 사업인 국가레이더 통합 활용기술 개발 사업 결과를 고도화하는 후속 사업이므로, 기존 사업의 적시 마무리 후 이 사업이 조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잡수입: 수납실적 및 수입 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 조정 필요

가. 개 요

‘기타잡수입’ 은 항공마일리지 구매액, 저작권료 수입, 자산 매각대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기타잡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타잡수입	5	5	5	-	-

[기타잡수입 예산안 세부내역]

○ 합계 500만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100만원
- 기상년월보 판매 및 폐기문서 매각대 100만원
- 저작권료 수입 300만원

자료: 기상청

4) 일반회계-기타잡수입(69-691)(기획조정관)

나. 검토의견

기타잡수입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초과수납이 반복되고 있고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납실적과 수입전망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예산액은 매년 동일하게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100만원, 기상년월보 판매 및 폐기문서 매각대 100만원, 저작권료 수입 300만원을 합한 5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그런데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2022년 640%, 2023년 160%, 2024년 2,500%으로 나타나 매년 수납액이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산출근거와 실제 수납 내역이 부합하지 않음에 기인함.

[최근 4년간 기타잡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5	5	5	32	32	640	100	-	-
2023	5	5	5	8	8	160	100	-	-
2024	5	5	5	125	125	2,500	100	-	-
2025	5	5	5	12	12	240	100	-	-
2026(안)	5	5	5	-	-	-	-	-	-

자료: 기상청

2024년의 경우 기타잡수입은 공적 마일리지 구매 항목으로 예산안보다 486만원이 더 많은 586만원이 수납되었고, 자산 매각대금 등은 예산안 편성 시 수납 항목에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억 1,961만원이 수납되었음.[5)]

5) 기상년월보 판매 및 폐기문서 매각대와 저작권료 수입은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수납되지 않았음.

[2024년 기타잡수입 예산안 산출내역과 실제 수납내역]

(단위: 만원)

	2024년 예산안 산출내역(A)	2024년 실제 수납 내역(B)	차이(B-A)
공적 마일리지 구매	100	586	486
자산 매각대금 등	0	11,961	11,961
합계	500	12,547	12,047

자료: 기상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5년에도 2024년과 유사하게 공적 마일리지 구매 항목으로 예산안보다 316만원이 더 많은 416만원이 수납되었고, 자산 매각대금 등은 예산안 편성 시 수납 항목에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029만원이 수납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5년 기타잡수입 예산안 산출내역과 실제 수납내역]

(단위: 만원)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A)	2025년 8월까지 실제 수납 내역(B)	차이(B-A)
공적 마일리지 구매	100	416	316
자산 매각대금 등	0	1,029	1,029
합계	500	1,445	945

자료: 기상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관행적으로 동일한 내역으로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공적 마일리지 구매는 초과 수납되고 있고, 자산 매각대금 등은 실제 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에도 편성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음.

기상청은 이에 대해 자산 매각대금 등은 매년 초 물품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예산안 편성 시점에는 매각 또는 폐기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자산 매각대금 등의 경우에도 예산안 상의 교체예정 물품의 취득당시 금액과 과거 매각 내역을 고려하여 세입 편성 시 반영될 필요가 있음.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상관련 장비 총 83대가 가동 연한을 넘어 교체예정이고 이들의 취득 당시 금액의 합이 36억 8,800만원이므로, 과거 매각대금을 고려하여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2026년 예산안 상 교체 예정 물품의 과거 매각 사례]

(단위: 만원)

물품명	대수(A)	취득 당시 금액 (예산안)	과거 매각대금을 고려한 금액[6]
ASOS	7대	47,600	-
AWS	24대	108,000	
시정・현천	22대	33,000	
운고・운량	16대	67,200	
연안부이	12대	105,000	
선박기상관측장비	2대	8,000	
합계	83대	368,800	479

자료: 기상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기상청은 최근 수납액 및 수납 내역을 분석하고, 교체예정 물품을 바탕으로 자산 매각대금 등을 반영하여 현실과 부합하게 기타잡수입 세입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취득 당시 금액 36억 8,800만원에 2023년~2025년 취득액 대비 수입액 비율 0.13%를 곱한 값

[2023년 ~ 2025년 8월 기준 물품의 취득 금액 대비 매각 금액(지장물 보상금 등 제외)]

(단위: 만원)

	취득 당시 금액	매각 수입액	취득액 대비 수입액 비율
2023년	490,567	708	0.14%
2024년	477,589	571	0.12%
2025년 8월	286,238	343	0.12%
합계	1,254,394	1,622	0.13%

자료: 기상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세 출>

2.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운영사업(신규): 운영 규정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운영’** 사업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인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8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

[2026년도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운영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6,678	6,678	4,712	△1,966	△29.4
지역 기후변화 분석 정보 생산 및 이해확산	1,896	1,896	2,709	813	42.9
기후변화과학 교육사 운영	-	-	800	800	순증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운영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운영: 800백만원
- 표준교재 및 시험 문제은행 개발(200백만원)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관리시스템 구축(530백만원)
-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20백만원)
-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조달수수료 등 부대비용(50백만원)

자료: 기상청

7) 일반회계-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1331-303)(기후과학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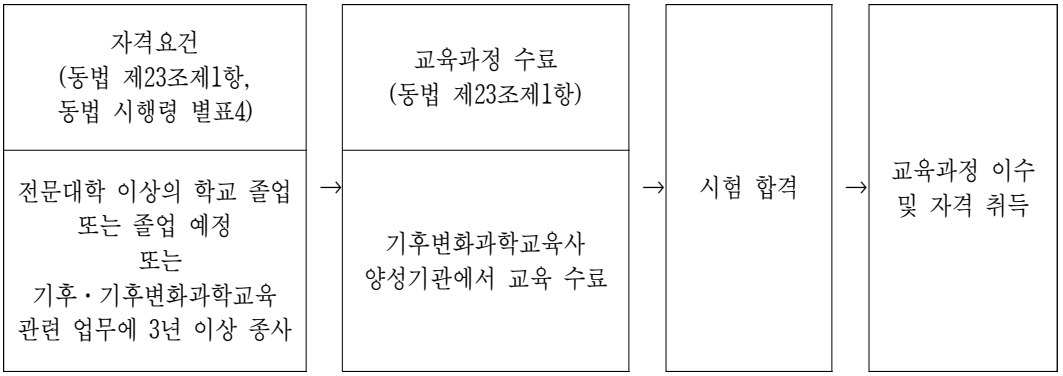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첫째, 현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취득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상청은 이를 조속히 마련하여 제도가 지연되지 않고 적시에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5년 3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부여 규정이 신설되었고,[8]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9]

동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이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취득을 신청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합격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취득 절차]



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제17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또는 졸업 예정인 사람
2. 기후·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동법의 위임을 받아 자격요건,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적정할 것'으로, 제3호는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5년 10월 기준으로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한 내용]

<table>
<tr><th></th><th>교육과정 관련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10])</th><th>시험 관련</th></tr>
<tr><td rowspan="2">규정이 필요한 내용</td><td>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td><td rowspan="2">시험 과목, 절차 등</td></tr>
<tr><td>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td></tr>
<tr><td>2025년 10월 기준</td><td>고시 마련되지 않음</td><td>별도의 규정 없음</td></tr>
</table>

이에 대해 기상청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6년 예산안은 표준교재 및 문제은행 개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기 위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과 시험 관련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음.

따라서 기상청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취득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도가 지연되지 않고 적시에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둘째, 기상청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취득 후 활용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취득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11)]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취득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과학교육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취득 후에도 활용처가 제한될 수 있음.

이에 대해 기상청은 현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한 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임.[12)]

이와 같이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취득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격을 취득할 유인이 없어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관련 교육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특히,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 중 기후·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이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취득할 만큼의 유인이 있어야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음.

따라서 기상청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취득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11)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업무 관련 규정]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③ 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2) 기상청은 현재 자체 기후변화과학교육 (2024년 174개교 총 677회, 2025년 173개교 총 416회)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3.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사업: 기술이전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개발(기상청)(R&D)’ 사업은 위험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을 강화하기 위한 천리안위성 5호 개발로 고품질의 기상・우주기상 관측정보를 생산하고 민간주도 정지궤도 위성 개발체계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15억 5,800만원(469.5%) 증액된 1,110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6년도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사업	19,500	19,500	111,058	91,558	469.5

이 사업은 기상청에서 예산 전액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5,434억 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임.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사업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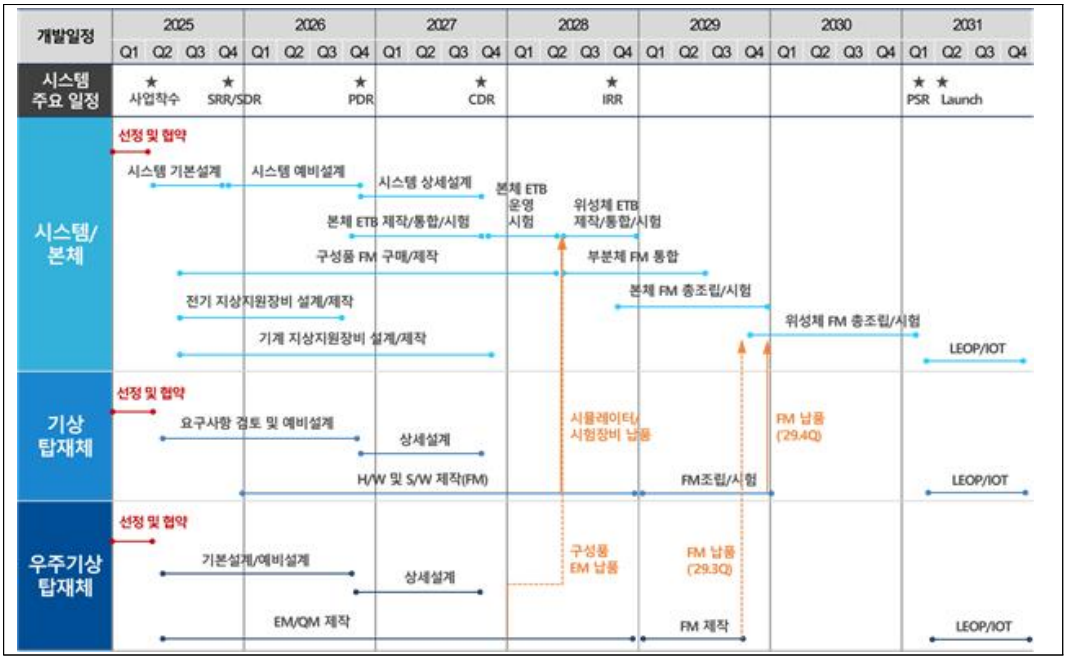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사업비	19,500	111,058	147,625	143,994	71,988	36,334	12,908	543,407

자료: 기상청

이를 수행하기 위해 2025년에는 시스템/본체, 기상 탑재체, 우주기상탑재체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2026년에 예비설계를, 2027년에 상세설계를 수행할 예정임. 그 후 2028년부터 조립 및 통합을 수행하고, 2031년 2분기 발사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13) 일반회계-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3137-406)(국가기상위성센터)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사업 개발일정]



자료: 기상청

이 사업은 기상산업기술원이 시스템/본체 개발을 수행하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기상탑재체와 우주기상탑재체 개발을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2025년 9월 기준으로 시스템/본체 개발사업은 민간기업에서, 우주기상탑재체 개발사업은 연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고 기상탑재체 개발사업은 민간기업과 협약 체결 과정 중임.

2026년 예산안은 2025년에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본체, 기상 탑재체, 우주기상탑재체에 대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예비설계 등을 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111,058백만원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시스템/본체 개발 25,100백만원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기상탑재체 개발 82,958백만원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우주기상탑재체 개발 3,000백만원

자료: 기상청

나. 검토의견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 간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술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은 기상청과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출연하고, 기술원에서 민간기업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민간기업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스템/본체 개발의 경우 사업 수행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을 수행할 계획임.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수행방법]



자료: 기상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천리안위성 5호의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미보유한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아야 하는데, 기술이전과 관련한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2025년 4월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이 선정되고 난 이후, 기술이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상청과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민간기업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하였음.

4자 협의체는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의 회의를 하였으나, 이전할 기술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아직 기술이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임.

구체적으로, 2025년 5월에 개최된 1차 회의에서 각 부처 및 민간기업의 연락담당자를 정하였고, 그 후 6월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 민간기업이 22건의 기술이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요구하였으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후 7월에 개최된 3차 회의에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기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14] 이후 10월까지 4자 협의체는 개최되지 않고 있음.

[기술이전 협의를 위한 4자 협의체 회의 상황]

회의차수	년월	내용
-	2025. 4.	민간기업 선정
1차회의	2025. 5.	기상청,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민간기업 간 연락담당자 지정
2차회의	2025. 6.	민간기업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기술이전 22건 요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
3차회의	2025.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민간기업에서 요구한 기술이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의견

자료: 기상청

2025년 8월 및 9월에는 민간기업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 실무회의도 열린 바 있으나, 실무회의를 통해서도 기술이전 시기 및 어떤 기술을 이전할지에 관련한 이견으로 인하여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이 사업은 2025년부터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기상탑재체, 우주기상탑재체를 개발하여 2031년 2분기에 발사하여 운영할 예정임.

그런데 이 사업은 시스템/본체, 기상탑재체, 우주기상탑재체의 개발 과정에서 배치 위치, 전력 등을 공동으로 설계해야함.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 이전될 기술이 확정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15]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실제로, 시스템/본체 개발을 하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인 민간기업은 2025년 예산안 63억원 중 970만원을 집행하여 0.1%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1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민간기업에서 요구한 기술이전 목록의 변동 가능성, 세부기술항목 및 이전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5) 당초 계획상 2025년 기본설계 단계에서 민간기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 기술이전 목록을 구비할 예정이었고, 늦어도 2026년 2분기 내에는 실제 기술이전이 시작되어야 함.

[2025년 9월말 기준 시스템/본체 개발사업의 예산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안(A)	기술원 출연액	교부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
시스템/본체	6,300	6,300	6,300	9.7	0.1%

자료: 기상청

따라서 천리안위성 5호의 개발 과정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도록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 간 기술이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R&D) 사업(신규): 선행 사업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R&D)’ 사업은 국지적·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기상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국가레이더를 활용한 위험기상 감시·예측 및 지상원격 탐사자료, 신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레이더 융합활용 정보 서비스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5억 7,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사업	-	-	2,572	2,572	순증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한 ‘국가레이더 통합 활용기술 개발(R&D)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서, 기상레이더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사업비 245억 7,200만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R&D) 사업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합계
사업비	2,572	3,500	4,000	4,000	4,000	3,500	3,000	24,572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2025년까지 국가레이더 통합 활용기술 개발사업으로 ① 국가레이더 통합분석 ② 예보지원용레이더 활용 ③ 소형기상레이더 활용 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가레이더 활용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해당 기술을 고도화시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16) 일반회계-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R&D)(3133-323)(기상레이더센터)

[기존 사업과 국가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사업의 수행사업]

<table>
<tr><th></th><th>국가레이더 통합
활용기술
개발사업(R&D)</th><th></th><th>국가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사업(R&D)</th></tr>
<tr><td>사업수행년도</td><td>2021년 ~ 2025년</td><td rowspan="5">→</td><td>2026년 ~ 2032년</td></tr>
<tr><td rowspan="4">수행사업</td><td rowspan="2">국가레이더 통합분석
기술 개발</td><td>레이더 위험기상 탐지
기술 개발</td></tr>
<tr><td>레이더 위험기상 분석
기술 개발</td></tr>
<tr><td rowspan="2">예보지원용레이더
활용기술 개발</td><td rowspan="2">레이더 기반 예측정보
산출기술 개발</td></tr>
<tr><td>소형기상레이더
활용기술 및 레이더
신기술 개발</td></tr>
</table>

자료: 기상청

이 사업은 국가레이더 위험기상 탐지 및 분석 기술 개발과 국가레이더 위험기상 예측 및 융합기술 개발이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내역사업은 각각 레이더 위험기상 탐지 및 분석, 레이더 기반 예측정보 산출 및 지상원격탐사 융합 활용을 수행할 예정임.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가레이더 위험기상 탐지 및 분석 기술 개발 : 1,420백만원
- 2과제 × 710백만원 × 12/12개월 = 1,420백만원
* [과제1] 레이더 위험기상 탐지 기술 개발 412백만원
* [과제2] 레이더 위험기상 분석 기술 개발 1,008백만원

○ 국가레이더 위험기상 예측 및 융합기술 개발
- 2과제 × 576백만원 × 12/12개월 = 1,152백만원
* [과제1] 레이더 기반 예측정보 산출기술 개발 622백만원
* [과제2] 지상원격탐사 기반 융합 활용 기술 개발 530백만원

자료: 기상청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사업은 기존 사업인 국가레이더 통합 활용기술 개발 사업 결과를 고도화하는 후속 사업이므로, 기존 사업의 적시 마무리 후 이 사업이 조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2025년까지 수행한 기존 사업인 국가레이더 통합 활용기술 개발 사업(이하 “기존 사업”)의 수행 결과를 활용하고자 2026년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음.

기존 사업은 국가 레이더를 활용한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레이더 자료의 표준체계를 개발하고 강수 및 태풍 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등 현재 기상 상황에 대한 탐지 및 분석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음.

이와 달리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 사업은 위험기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사업의 결과물을 고도화하여 강수예측을 학습한 후 지능형 강수예측을 제공하는 등 위험기상의 조기탐지 및 정보제공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존사업과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사업과 비교]

요소기술 개발 (국가레이더 통합 활용기술 개발 사업)		**융합기술 개발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 사업)**
1) 레이더 자료 표준체계 개발 2) 강수 및 태풍 분석 기술 개발 3) 수도권 위험기상 분석	→	1) 낙뢰, 강설 등 위험기상 조기탐지 기술 개발 및 정보 제공 2) 강수/적설 추정 기술 개발 3) 강수예측 학습을 통해 지능형 강수예측 제공

자료: 기상청

이 사업은 기존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상레이더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임. 이에 따라 기존 사업을 수행하던 16명의 연구원들이 이어서 2026년 1월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

그런데 기존 사업은 2025년에도 수행되고 있고, 이 사업은 기존 사업의 연구 결과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수행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만약 기존 사업의 수행이 지연되어 2025년에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2026년에 잔여 업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이 사업 또한 사업 수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음.

실제로 기존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12월 31일이고, 2023년에는 12월에 예산안의 22.9%를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23.7%를 집행하는 등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고 있음.

2025년에도 9월까지 예산안 20억 3,700만원 중 10억 1,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49.9%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 마무리도 늦어질 수 있음.

[2023년, 2024년 및 2025년 기존사업의 월별 실집행 금액]

(단위: 백만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합
2023년	60	96	115	198	734	114	79	87	190	181	63	571	2,489
	2.4%	3.8%	4.6%	7.9%	29.4%	4.5%	3.1%	3.5%	7.6%	7.2%	2.5%	22.9%	
2024년	58	68	162	405	61	104	71	96	80	176	60	418	1,760
	3.3%	3.8%	9.2%	23.0%	3.4%	5.9%	4.0%	5.4%	4.5%	10.0%	3.4%	23.7%	
2025년 9월	68	72	153	233	110	66	102	103	111	-	-	-	1,018
	3.3%	3.5%	7.5%	11.4%	5.4%	3.2%	5.0%	5.0%	5.4%	(예산액) 2,037			

자료: 기상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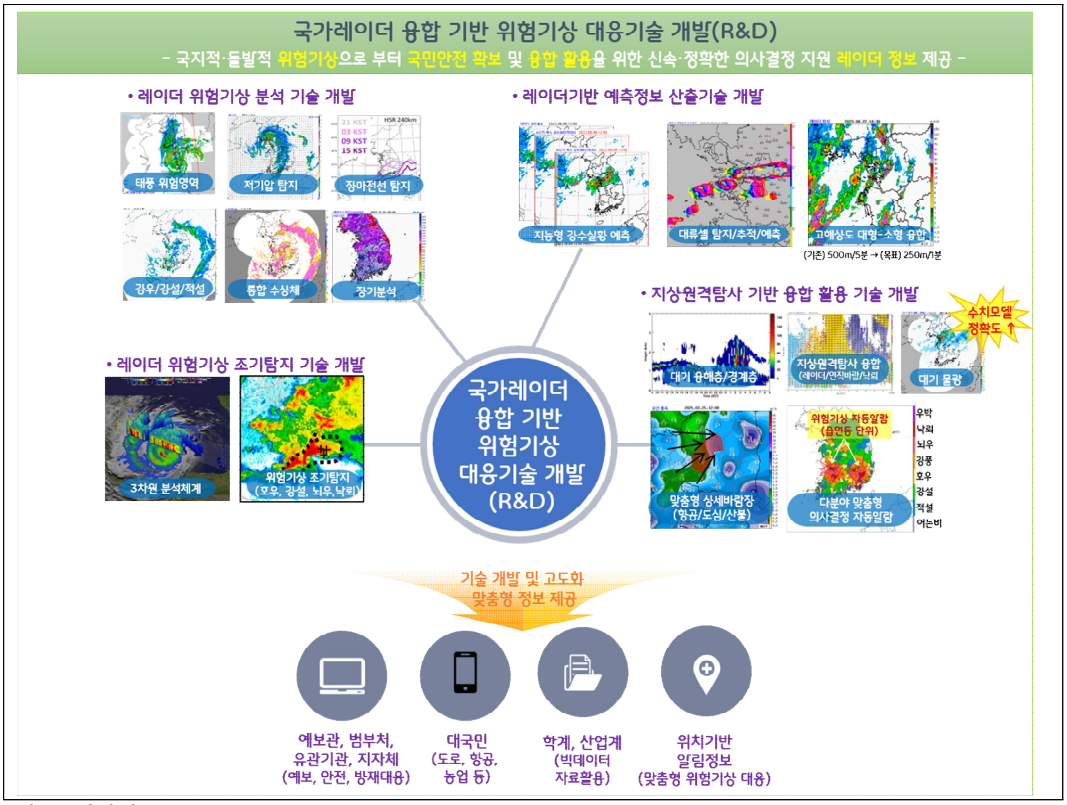
따라서 기상청은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2026년 1월부터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사업은 위험기상 조기 탐지 결과를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제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고해상도 위험기상 예측 정보를 예보관, 국민, 학계 등 다방면으로 제공하여 극한기상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추정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적설, 뇌우 등의 위험기상을 조기탐지하고, 위험기상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함.

[국가 레이더 융합기반 위험기상 대응기술 개발사업 목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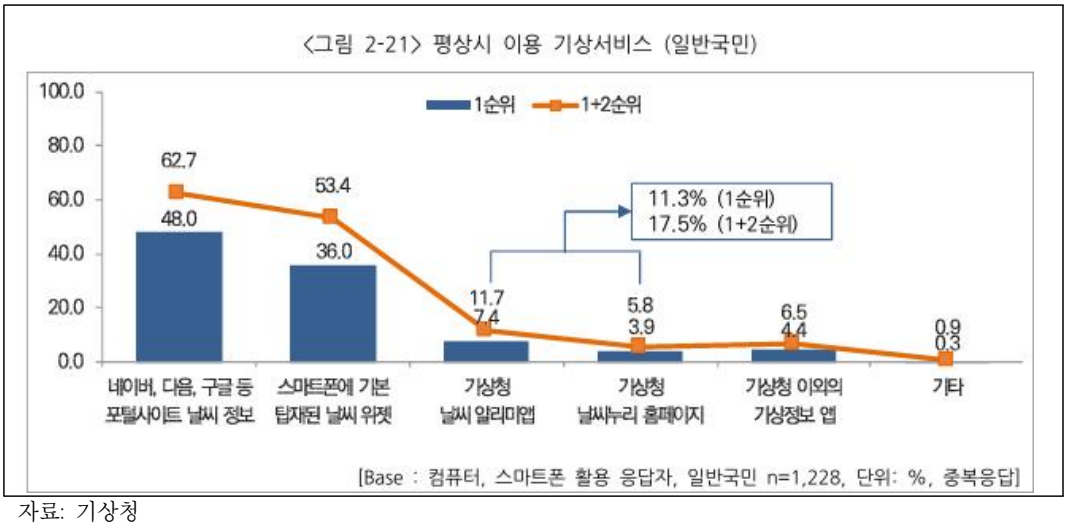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이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강수예보를 전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홈페이지나 기상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험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위험기상 정보를 대국민 대상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정작 위험기상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홈페이지 접속이 안된다거나 어플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정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2024년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요약)보고서' 상 기상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1순위로 이용하는 국민 비율이 11.3%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용자가 한정적이므로 위험기상의 맞춤형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2024년 평상시 이용 기상서비스]



자료: 기상청

따라서 기상청은 국민 안전을 위하여 맞춤형 위험기상을 제공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대국민 정보제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운영사업(신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적시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운영’** 사업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이전에 따라 사무기기와 집기류 구매 등 운영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6억 2,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7)]

[2026년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운영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상기후교육	2,361	2,361	4,308	1,947	82.5
기상기후인재 개발원 운영	-	-	2,627	2,627	순증

기상청은 서울청사에 있는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충청북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독립청사를 신축하고 있고, 신축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2025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임.

이에 따라 신축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운영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집기·기기를 구매 및 설치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공무직 근로자 18명을 채용하며 6월 현원 19명의 이전을 통해 7월부터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2026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운영계획]

년월	운영 예정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준공	2025. 11.
집기·기기 구매 및 설치	2026. 1. ~ 5.
공무직 근로자(18명) 채용	2026. 3 ~ 5.
현원(19명) 이전	2026. 6.
교육훈련 개시	2026. 7. ~

자료: 기상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7) 일반회계-기상기후교육(6134-302)(기후인재개발원)

이에 따라 이 사업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2026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집기류 구매,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 등을 하려는 것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026년 상반기 이전, 하반기 운영 예정 - 신축건물 업무기반 마련 집기류 구매 및 교육운영 환경 조성(2,053백만원) - 비연고 근무자 관사 취득(200백만원) - 청사신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18인 신규 채용(374백만원)

자료: 기상청

나. 검토의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2026년 상반기에 공무직 근로자 채용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채용이 적시에 완료되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6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운영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려는 공무직 근로자는 시설물관리원 5명, 청소원 6명, 경비원 4명,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으로 총 18명임. 이들은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채용 과정을 거쳐 교육훈련 개시 시기인 2026년 7월부터 근무할 예정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필요인력 현황]

구분	직종	채용인원
시설물 관리	시설물관리원	5명
	청소원	6명
	경비원	4명
구내식당 운영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소계		18명

자료: 기상청

실제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2025년 6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인원 모집이 되지 않아 2025년 7월 재공고를 올린 바 있음. 심지어 재공고를 통한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여 합격자가 추가로 결정되는 등 당초 채용계획보다 1달 이상 지연된 바 있음.

이와 같이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2025년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재공고와 임용 포기 등으로 채용의 지연이 발생한 것을 고려했을 때, 2026년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

따라서 기상청은 충분한 일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 일정을 앞당기는 등 공무직 근로자 채용이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6.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사업(R&D): 연구 성과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은 인공지능, 예보기술, 관측기술 등 기상청 기상·기후 서비스 수준 제고에 필요한 핵심 기술 현업화를 위해 자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4,800만원(6.3%) 증액된 348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2026년도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상업무지원기술 개발연구(R&D)	32,753	32,753	34,801	2,048	6.3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예보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4,106백만원
○ 관측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13,154백만원
○ 기후·기후변화 예측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6,678백만원
○ 황사·연무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1,093백만원
○ 응용기상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3,417백만원
○ 인공지능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6,353백만원

자료: 기상청

나. 검토의견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은 논문의 등급별 점수를 통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있는데, 매년 성과지표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사업이 목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사업성과를 높여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기상·기후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예보기술, 관측기술, 인공지능기술

18) 일반회계-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4133-301)(국립기상과학원)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기상청은 저널의 영향력과 논문게재 건수 및 SCI급 학술지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2022년 실적이 137점, 2023년 실적이 121점, 2024년 실적이 70점인 등 매년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음.

[최근 3년간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실적]

<table>
<tr><th></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h>산출근거</th><th>측정산식</th></tr>
<tr><td>기상・기후 연구 성과 창출실적 (단위: 점)</td><td>137</td><td>121</td><td>70</td><td>국내외 게재된 논문의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한 것으로 연구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td><td>Σ(표준화순위보정영향력지수* 등급별 논문게재 건수×가중치**)

*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mrnIF) =100×(N×rnIF-1)/(N-1)
- N: 해당분야 내 저널 수
- rnIF: 순위보정영향력지수 = (N-R+1)/N
- R: 해당 저널의 분야 내 등수

** 우수학술지 게재 강화를 위한 공인된 JCR(Jornal Citation Reports)기반의 등급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가중치 부여
<table><tr><td>1등급</td><td>2등급</td><td>3등급</td><td>4등급</td><td>KCI</td></tr><tr><td>5</td><td>4</td><td>3</td><td>2</td><td>1</td></tr></table>※ SCI급 학술지 등급 구분 기준: mrnIF값
상위 25% 이상 (1등급),
25% ~ 50% (2등급),
50% ~ 25% (3등급),
하위 25% 미만 (4등급)</td></tr>
</table>

자료: 기상청

구체적으로 기상청은 연구 실적을 논문이 게재된 저널을 해당 저널의 분야 내 등수 등을 바탕으로 영향력지수 등급을 산출한 후, 등급별 게재한 논문 건수를 바탕으로 SCI급 학술지 등급 구분 기준을 가중치로 두고 산출하고 있음.

이처럼 매년 연구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는 이유는 전체 논문 건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2022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건수는 55건인데, 2023년에는 4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건이 줄어들었고, 2024년에는 3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9건이 줄어 사업성과가 양적으로 줄고 있음.

또한, 5등급 학술지에 개제된 비율이 2023년 42.2%에서 2024년 67.6%로 25.4%p 늘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사업성과가 저하되고 있음.

[최근 3년간 논문게재 건수 및 등급별 게재 건수]

(단위: 건)

성과 분류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논문편수 (점수)	55건 (137점)	1등급	11	45건 (121점)	1등급	10	34건 (70점)	1등급	6
		2등급	8		2등급	7		2등급	2
		3등급	6		3등급	9		3등급	3
		4등급	2		4등급	1		4등급	0
		5등급	28		5등급	19		5등급	23
5등급 비율	50.9%			42.2%			67.6%		

자료: 기상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 사업의 목표가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현업화하는 것이고,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위와 같은 논문 게재 건수 등임. 그런데 이러한 지표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해 기상청은 논문성과의 개선을 위해 논문성과 확대 계획[19]을 수립하는 등 성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최근 논문 건수 감소와 5등급 학술지 게재 비율 증가 등 성과지표의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단순한 계획 수립만으로 논문 건수 증가나 우수 학술지 게재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19) 2025년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성과 계획

(단위: 건)

분야		예보	관측	기후	응용	지구 대기 감시	인공 지능	기후 변화	합계 (건수)
논문	SCI	3	6	4	12	2	1	3	31
	KCI	8	9	1	11	6	1	6	42

자료: 기상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기상청은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에서 수행되는 연구들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고, 공신력있는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1)]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은 35조 6,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9,605억원(2.8%) 증가함.

예산은 3,6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원(4.0%) 증가하고, 기금은 35조 3,373억원으로 전년 대비 9,463억원(2.8%) 증가함.[2)]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3,472	3,472	3,613	141	4.0
기 금	343,910	343,910	353,373	9,463	2.8
총수입	347,382	347,382	356,986	9,605	2.8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정부안 제출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이관사업 현황은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참조

2)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은 37조 6,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함.

예산은 6조 6,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781억원(15.3%) 증가하고, 기금은 30조 9,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924억원(4.7%) 증가함.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57,549	60,722	66,330	8,781	15.3
기 금	295,903	311,370	309,827	13,924	4.7
총지출	353,452	372,092	376,157	22,705	6.4

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할 예정인 예산 2025년도 본예산 총지출 금액 5억 7,700만원과 2026년 예산안 총지출 금액 129억원 5,100만원이 제외된 금액임

나. 예산안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6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원(4.0%) 증가함.

[2026년도 고용노동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3,254	3,254	3,264	10	0.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18	218	349	131	59.9
합 계	3,472	3,472	3,613	141	4.0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4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7조 2,644억원으로 전년대비 9,381억원(14.8%) 증가함.

[2026년도 고용노동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57,183	59,605	65,305	8,122	14.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66	1,317	895	29	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29	1,529	2,410	1,181	96.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985	3,985	4,034	49	1.2
합 계	63,263	66,436	72,644	9,381	14.8

주 1) 총계 기준
2)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할 예정인 예산 2025년도 본예산 총지출 금액 5억 7,700만원과 2026년 예산안 총지출 금액 129억원 5,100만원이 제외된 금액임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52조 4,618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151억원(△4.2%) 감소함.

[2026년도 고용노동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고용보험기금	276,955	276,955	276,108	△847	△0.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34,181	234,181	209,002	△25,179	△10.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1,829	21,829	25,121	3,291	15.1
임금채권보장기금	9,142	9,142	8,969	△173	△1.9
근로복지진흥기금	5,661	5,928	5,419	△242	△4.3
합 계	547,769	548,036	524,618	△23,151	△4.2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5개(465억 3,6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3)]

‘건설근로자고용지원’ 사업은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과 이에 따라 청년 등이 선호하는 직종의 훈련 및 현장실습 지원을 통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은 1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은 경계선지능청년 직업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은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회적기업육성(지특)’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및 양질의 취약계층 고용 창출을 위해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은 321억원이 편성되었음.

‘미래환경변화 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R&D)’ 사업은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시책 이행 및 미래 산업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방향 제시를 위해 2026년도 계획안은 15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사업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국민 누구든지 산재 발생위험 등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2026년도 계획안은 111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고용노동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건설근로자고용지원	1,480
2	경계선지능청년지원	26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사회적기업육성(지특)	32,10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	미래환경변화 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R&D)	1,554
5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11,142
총지출		46,536

3)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산재근로자요양관리’ 사업,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대지급금지급’ 사업 등 총 31개임.[4)]

사회적기업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창원지원, 성장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574억원이 증액(2025년 284억원→2026년 859억원)되었음.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여 비수도권 청년 이탈 방지 및 인력난 완화 등 비수도권 소재 기업·청년을 우대지원 하기 위해 1,308억원이 증액(2025년 7,772억원→2026년 9,080억원)되었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인원 확대(30.5만명→35만명) 등을 위해 1,671억원이 증액(2025년 8,457억원→2026년 1조 128억원)되었음..

산재근로자요양관리는 국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업무상질병전담팀 운영, 산재보상 정보 공개 등 산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44억원이 증액(2025년 98억원→2026년 141억원)되었음.

업종별재해예방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사고성 재해 관리 강화,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716억원이 증액(2025년 1,632억원→2026년 2,348억원)되었음.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도모 및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원인원이 약 0.6만명 늘어남에 따라 258억원 증액(2025년 3,774억원 → 2025년 4,032억원)되었음.

대지급금 지급은 체불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3개월→6개월)하여 2,172억원이 증액(2025년 5,293억원→2026년 7,465억원)되었음.

4)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2026년도 고용노동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고용센터인력지원	97,719	108,734	11,015	11.3
2	사회적기업 지원	28,412	85,872	57,460	202.2
3	청년미래플러스	2,000	4,060	2,060	103.0
4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77,181	907,959	130,778	16.8
5	내일배움카드(일반)	580,161	627,325	47,164	8.1
6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82,333	193,723	11,390	6.2
7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85,130	944,265	59,135	6.7
8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845,709	1,012,830	167,121	19.8
9	중장년 경력지원제	3,640	8,417	4,777	131.2
10	중장년층취업지원	18,443	24,844	6,401	34.7
11	상생협력확산지원	8,542	11,251	2,709	31.7
12	근로감독역량강화	13,311	55,113	41,802	314.0
13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346	480	134	38.7
14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3,930	57,464	53,534	1,362.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07,864	125,108	17,244	16.0
[고용보험기금]					
16	고용서비스모니터링	4,111	6,317	2,206	53.7
17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19,225	197,240	78,015	65.4
18	구직급여	10,917,074	11,537,611	620,537	5.7
19	조기재취업수당	525,484	585,196	59,712	11.4
20	고용안정장려금	390,894	439,394	48,500	12.4
21	모성보호육아지원	4,022,454	4,072,832	50,378	1.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2	산재보험급여	8,004,326	8,146,300	141,974	1.8
23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9,757	14,146	4,389	45.0
24	산재병원지원	79,654	122,788	43,134	54.2
25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81,792	537,093	55,301	11.5
26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458,840	538,840	80,000	17.4
27	업종별재해예방	163,152	234,829	71,677	43.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8	장애인고용장려금	377,377	403,220	25,843	6.8
29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52,114	270,699	18,585	7.4
[임금채권보장기금]					
30	대지급금지급	529,346	746,517	217,171	41.0
[근로복지진흥기금]					
31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5,358	9,992	4,634	86.5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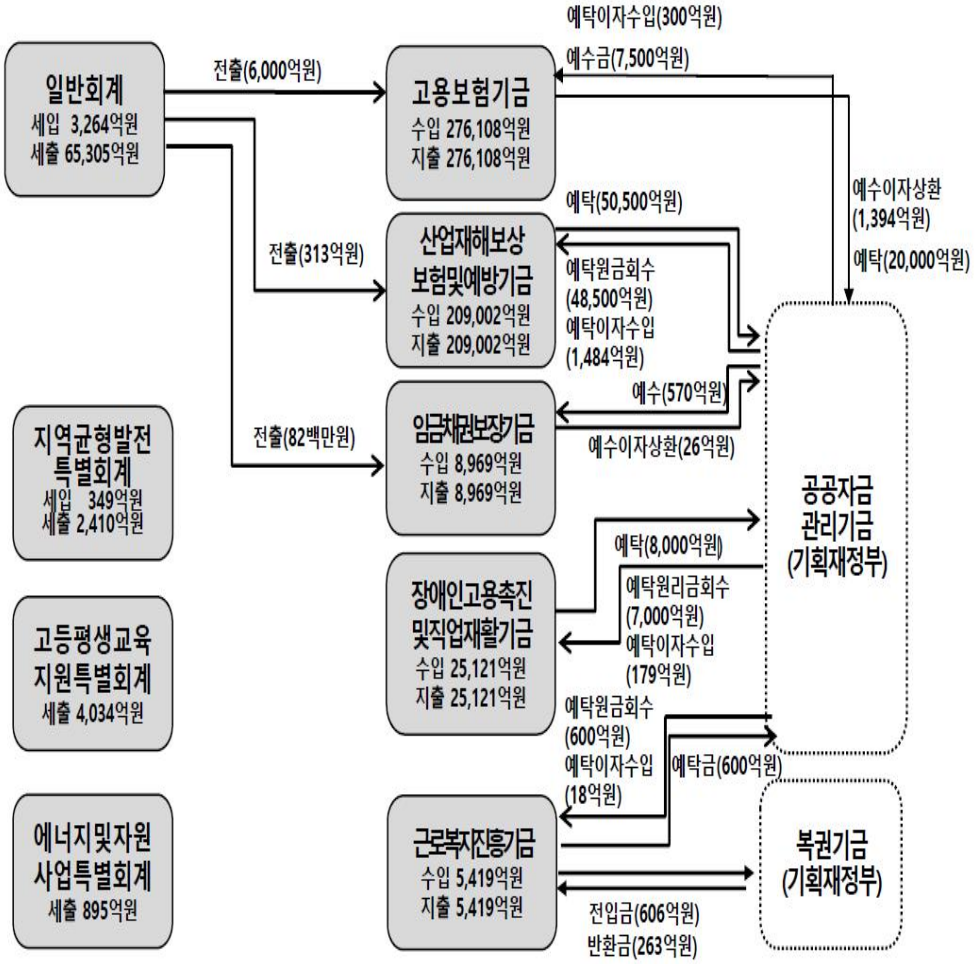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6,00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313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8,200만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2조원을 예탁하면서 예수이자 1,394억원을 상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7,500억원과 예탁이자수입 300억원을 회수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조 500억원을 예탁하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4조 8,500억원과 예탁이자수입 1,484억원을 회수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570억원을 예수하면서 예수이자 26억원을 상환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8,000억원을 예탁하면서 예탁원금 7,000억원과 예탁이자수입 179억원을 회수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억원을 예탁하면서 예탁원금 600억원과 예탁이자수입 18억원을 회수하고, 복권기금으로부터 606억원을 전입받고 263억을 상환할 예정임.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정부안 제출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의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중점 투자한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6년 고용보험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따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계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2조원), 실업급여계정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7,500억원)가 동시에 계획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법」 제82조는 고용보험기금은 계정별로 구분 관리하도록 하여 계정 간 자금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수·예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의 경우 7만 8,000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2024년간 평균 약 3만 8,914명이 지원되었던 과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목표인원과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비수도권을 지원하려는 사업개편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해 경기도 소재 제조업과 같이 수도권 빈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경우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므로 사업내용 개편이 수도권 소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차등 지원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5.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총 4개 사업이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고, 해당 사업들의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129억 5,100만원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이관으로 총지출은 당초 37조 6,156억 9,700만원 대비 129억 5,100만원 감소한 37조 6,027억 4,600만원으로 변동되며, 총수입은 변동없음.

주요 이관사업은 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 중 여성경제활동촉진 지원 사업 117억 3,100만원,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 사업 9억 200만원임.

[고용노동부 2026년도 이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성평등가족부	일반회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11,731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성평등가족부	일반회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902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본부인건비	성평등가족부	일반회계	인건비	257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	성평등가족부	일반회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61
합계						12,951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고용보험기금(총괄): 「고용보험법」 제82조의 계정 간 구분 관리 취지를 고려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예탁 필요

가. 개 요

‘기금예수금’ 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원 확충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액은 7,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

[2026년도 기금예수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금예수금	-	-	750,000	750,000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은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계정의 여유재원을 공공자기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액은 2조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	-	2,000,000	2,000,000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5) 고용보험기금 - 기금예수금(94-943)(고용서비스정책관)

6) 고용보험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9001-840)(고용서비스정책관)

나. 검토의견

2026년 고용보험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따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계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2조원), 실업급여계정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7,500억원)가 동시에 계획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법」 제82조는 고용보험기금은 계정별로 구분 관리하도록 하여 계정 간 자금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수·예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제82조제2항은 고용보험기금 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84조는 계정별로 기금의 여유자금 적정규모를 규정하고 있음.

[「고용보험법」 제82조 및 제84조의 계정 구분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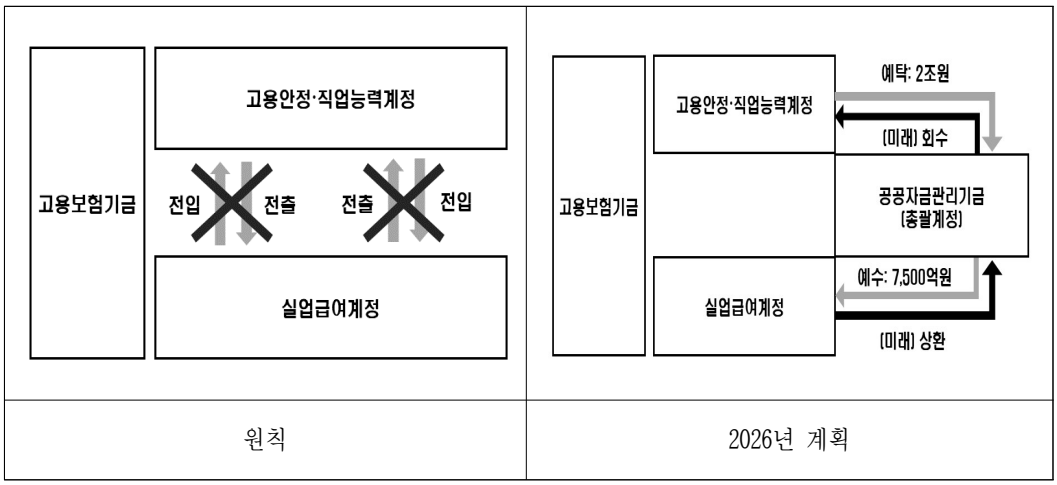
이 중 실업급여의 경우 보험급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장려금이 중심이 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성격 및 지출구조가 상이함.

성격이 다른 두 분야의 재정을 혼합하여 관리할 경우 부족한 보험급여 적립금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누적된 보험급여 재원이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업으로 과다하게 이전되어 안정적인 적립금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정을 구분한 것이며,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계정 간 전입·전출을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2026년 지출계획과 같이 고용안정·직업능력계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실업급여계정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매개로 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이 이동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고용보험기금 계정 간 자금운영 원칙 및 2026년 자금운영계획 도식도]



원칙 | 2026년 계획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지출계획에 따른 예수·예탁은 계정별로 이루어진 것으로「고용보험법」제82조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임.

실업급여 계정은 지출증가 상황에 대비하여 7,500억원을 예수(10년 만기)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계정은 법정적립배율을 상회하는 상황이므로 재정당국의 요청에 따라 2조원을 예탁(1년 만기)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예수·예탁은「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래 목적[7]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계정별 예수·예탁과 같은 형식적인 분리만을 근거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운용 구조가「고용보험법」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7)「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6년 계획안에 따르면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은 사업비는 2024년 결산 2조 2,387억 9,600만원 대비 1,527억 7,300만원(△6.8%)이 감소한 2조 860억 2,300만원이 지출되고, 전체 지출 약 4조 860억원 중 약 2조원(49.0%)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될 예정이며, 실업급여 계정은 2024년 결산 15조 1,734억 700만원 대비 1조 3,588억 6,500만원 증액된 약 16조 5,322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기금운용이 용인될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업의 활성화보다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의 여유자금 확보를 우선시하고 이 여유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 실업급여 계정의 부족 재원에 활용하는 운용이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고용보험법」 제8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일반회계】

<세 출>

2.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사업: 근로감독관의 양적 확대와 함께 업무체계 개선 필요

가. 개 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사업은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32억 4,100만원(30.5%)이 증액된 5,700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6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436,770	436,770	570,011	133,241	30.5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정기·수시직제로 증원된 인원 1,300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음.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은 공무원 신분으로 각각 근로조건 기준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9개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임.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15개 법률(「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 확보 여부를 현장 근로감독하고, 진정·고소사건 상시 접수·수사, 노사분규 예방·지도 등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와 인허가 등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함.

산업안전감독관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4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감독, 신고사건 처리,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수사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와 인허가 등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함.

8) 일반회계-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7007-107)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26일 수시직제를 통해 근로감독관 기준정원을 당초 2,241명에서 2,254명(+13명)으로 증가시켰고, 산업안전감독관 기준정원을 당초 892명에서 1,179명(+287명)으로 증가시켰음.

또한 2026년에는 근로감독관 기준정원을 2,604명(+350명)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감독관 기준정원을 1,829명(+650명)으로 확대할 예정임.

[2025~2026년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충원계획]

	기존 정원	수시직제 ('25.8.26.)	2026년 충원계획
근로감독관	2,241명	+13명	+350명
기준정원	2,241명	2,254명	2,604명
산업안전감독관	892명	+287명	+650명
기준정원	892명	1,179명	1,829명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한국의 근로감독관 1인당 1년 평균 사업장 감독·점검 건수는 14.3건에 불과한데, 이는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임금체불과 같은 신고사건 처리에 집중되는 현상 때문으로 보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양적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예방적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기준 한국의 감독관 1인당 1년 평균 사업장 감독·점검 건수는 19.6건으로 영국·독일·일본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

[주요국가의 사업장 수·노동자 수·감독관 현황]

(단위: 건)

	한국 (2024년)	영국 (2021년)	독일 (2023년)	일본 (2023년)	미국 (2015년)
감독관 1인당 1년 평균 사업장 감독·점검 건수	19.6 (14.3)	55	104	55.2	28

주) 한국의 경우 산업안전감독을 제외한 노동분야 근로감독관의 감독·점검 건수는 14.3회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방문횟수를 제외한 노동 분야 근로감독관의 감독·점검 건수는 14.3건으로 실질적인 예방적 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1인당 1년 평균 사업장 감독·점검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신고사건 처리 업무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이는 경기악화 등에 따라 임금체불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비정형적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등 처리가 쉽지 않은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며, 현재 기존 실무인력의 약 80%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함.

실제로 2022~2024년까지 신고사건의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4년을 기준으로 처리된 신고사건 39만 8,041건 중 36만 5,474건이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에 해당하여 임금체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2020~2024년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고사건 처리 건수	접수	364,355	314,308	305,519	371,116	394,145
	처리	380,138	322,994	310,805	370,653	398,041
	임금체불	331,797	278,331	264,820	333,995	365,474
	직장내괴롭힘	5,823	7,301	9,292	10,696	13,380
	직장내성희롱	769	844	871	1,112	1,175
	그 외 유형	52,755	47,124	46,822	38,111	34,438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업무체계 개선 등의 조치 없이 근로감독관만 증원될 경우, 증원된 감독관이 다시 신고사건 처리에 투입되어 사후시정에만 집중할 뿐 당초 의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16년 대비 2024년에 근로감독관 정원은 954명 증가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업무 중 신고사건 처리 업무의 비중은 증원 전후가 유사한 수준임.

[2016~2024년 근로감독관 인원 및 업무 현황]

(단위: 명, 개소, 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근로감독관 정원		1,282	1,450	1,902	2,213	2,290	2,307	2,283	2,260	2,236
근로감독관 현원		1,185	1,278	1,456	1,918	1,874	2,001	2,126	2,141	2,141
전체 피고용 근로자 수		17,362,903	17,736,224	18,198,793	18,743,650	17,181,055	18,182,282	18,835,715	19,159,335	19,159,335
전체 감독대상 사업장 수		1,950,338	2,017,707	2,029,782	2,146,156	1,865,536	1,995,751	2,099,955	2,124,670	2,124,670
지도·감독 건수		22,094	22,574	26,082	25,415	15,797	22,252	27,180	28,120	28,349
노사분규 건수		120	101	134	141	105	119	132	223	131
신고 사건 처리 건수	접수	403,724	414,702	436,499	448,947	404,613	346,486	335,279	400,800	429,663
	처리	366,361	374,006	399,207	417,708	380,138	322,994	310,805	370,653	398,041
인허가·체불청산지원·신고및심사 건수		230,081	223,545	244,959	305,688	232,897	223,464	216,169	529,511	289,833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양적 확대와 함께 업무체계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신고사건 처리 방안·감독관의 예방적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9)]

9) 2022년 한국노동법학회의「근로감독 행정 전문성 제고 방안」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증가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으로 인해 근로감독관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여 사업장 근로감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또한 자율청산 유도를 우선 시 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기소에 집중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음.

3. 근로감독혁신운영 사업(신규):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권한 위임의 ILO협약 부합 여부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근로감독혁신운영’** 사업은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5억 2,2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음.[10)]

[2026년도 근로감독혁신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근로감독역량강화	13,311	13,311	55,113	41,802	314.0
근로감독제도혁신	-	-	41,159	41,159	순증
근로감독혁신운영	-	-	20,522	20,522	순증

[2026년도 근로감독혁신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근로감독혁신운영) 205억 2,200만원(순증)
* 토너 등 소모품 구매 5억 6,900만원(70만원×813명)
* 근로감독관 근무복 제작 3억 4,100만원(21만원×2종×813명)
*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임차 7억 2,900만원(75만원×12개월×81대)
*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유류비 9,700만원(10만원×12개월×81대)
*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교육 용역비 92억 1,600만원(69만원×12주×1,113명)
* 근로감독혁신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 수사 업무경비 20억 1,100만원(31,420개소×3만 2,000원×2명)
↳ 31,420개소(감독 사업장 등)×3만 2,000원(여비단가)×2명(2인 1조 수행)
※ 여비단가: 근무지 내 출장(2만원) 비율(60%)과 근무지 외 출장(5만원) 비율(40%)을 고려하여 평균 단가로 산정
*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교육여비 10억 4,100만원(3만 2,000원×813명×40일)
* 근로감독관 수사활동비 29억원(25만원×1,300명×9개월×0.99%)
* 근로감독관 전산장비 및 사무가구 구매 36억 1,800만원(445만원×813명)

자료: 고용노동부

10) 일반회계-근로감독역량강화(3032-306)

나. 검토의견

첫째,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감독관 300명에 대한 교육비를 편성하였는데, 「근로기준법」 및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법 개정 논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6년 근로감독역량강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근로감독제도혁신 사업 411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용역비(210-14)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감독관 300명에 대한 12주 간의 교육을 위해 1주당 단가 69만원으로 예산 2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음.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이 위임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감독권한을 지방고용관서의 장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마련하고,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근로감독관 소속 관서(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할 구역 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2026년 10월 기준,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회의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① 「지방자치법」 상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점, ② 근로감독권이 분산되는 경우 지역별 근로자 권익 보호에 격차가 없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적인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 ③ 근로감독 권한의 위임이 근로기준의 적용이 전 지역에 통일성·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ILO 협약 제81호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연내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한이 위임될 것을 전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감독관 300명에 대한 교육비를 편성하였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증가하는 근로감독 수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 내 전국지방노동관서에서는 전국 단위 사업장을 점검·감독하고,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근로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분담·협업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①「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11]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점, ② 근로감독권이 분산되는 경우 지역별 근로자 권익보호에 격차가 없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적인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협약 제81호(근로감독 협약)[12]에서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지휘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통일성・일관성 있는 근로감독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ILO협약은 근로감독 권한을 중앙정부의 감독・통제 하에 두도록 규정하여, 권한을 이양하거나 단순히 지방에 위임하는 경우 협약 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더라도 근거 법령 마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권한[13]을 담보할 경우 ILO협약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2021년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법학회와 실시한「국가사무로서 근로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법적 검토」연구용역 보고서는 우크라이나가 근로감독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분권화하였으나 ILO전문가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능이 중앙정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놓이도록 의견이 제시되는 등 외국의 성공적 선례를 찾기 어렵고, 국민과 노사를 설득하는 문제뿐 아니라 ILO라는 국제기구도 설득해야하는 문제에도 직면할 것이라는 점에서 오랜 기간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다고 분석하였으며,[14]

---

11)「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12) ■ ILO 협약 제81호(근로감독 협약)
제4조 : 1.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2. 연방국가의 경우, '중앙기관'이라 함은 연방정부기관 또는 연방구성단위의 중앙기관을 말한다.
■ ILO 권고 제20호(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시행상 필요한 감독제도에 관한 일반원칙 권고) 제10호 : **"감독기관은 중앙 국가기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하**에 있어야 하고 **그들의 어떠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지방기관의 관할하에 두거나 혹은 이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서도 안된다**. "

13) 감독 착수 명령권, 시정명령권, 취소권, 직무감사권, 징계의결 요구권 등 도입

14) 보고서에서는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로감독 지시,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감독관에 대한 인사・명령권, (3) 인사・명령권의 행사를 위한 물적, 인적, 재정적 토대 형성권, (4) 근로감독에 관한 예산배정권, (5) 전국단위 정책 수립, 집행권, (6) 근로감독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활동방법 결정권, (7) 전국단위 법령적용의 일관성, (8) 근로감독 절차규정의 형성권, (9) 산하 조직간 업무에 수행 대한 조정권, (10) 근로감독 절차 및 집행의 균질성, (11) 근로감독조직에 대한 인사관리의 질적 보장과 균일성 확보, (12) 근로감독 시스템의 시너지 담보, (13) 근로감독 시스템의 효율성 및 효과성 보장 여부, (14)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통계를 수집, 처리, 분석, 발표권 여부 등이 주된 연구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근로감독사무를 기관위임사무화하는 경우 권한과 책임의 분리를 가져와 수임기관의 업무해태 가능성이 높거나, 권한보유자와 사무수행자의 괴리로 인한 행정혼선이 있는 등 비판의 위험이 있다고 분석한 것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권한 위임 시 내실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노·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노·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음.

[제21대 국회「근로기준법」개정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 노·사 단체 의견 〉

▲(한국노총)「근로감독 기능 지방정부 이양논의 반대한다」('21.5.13)

"**근로감독의 효율성 또한 극히 저하**됨은 물론, 지자체별 중복예산 투입으로 **재정 효율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 "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청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 … **"통일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 또한 어렵게 된다"** … **"ILO 협약에도 위반된다"** … **"그렇지 않는 지자체가 더 많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왜 국제사회가 100여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근로감독 기능을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일원화**시켰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경총)「'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정부 공유' 논의 보도에 대한 경영계 입장」('21.5.13)

"경영계는 …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정부 공유 논의방향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지자체별 상이한 근로감독 집행 등으로 **근로감독의 통일성·일관성 훼손**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 **… "전문성이 떨어져,** 일정 정도 이상의 근로감독 수준이 유지되지 않아 근로감독 대상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등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 지방자치단체 의견 〉

▲ **경기도**

근로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등 개정 건의

▲ **인천광역시**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국가의 통일된 기준 필요, 위임시 지자체별 재량에 따른 다른 잣대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혼란 초래 우려. 근로감독관의 권한 위임 사무는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등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전담인력 확충 방안 등 지자체의 수행 역량, 명확한 기준,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협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

▲ **대구광역시**

근로감독관의 업무는 노동관계법령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통일성이 필요한 업무이고 지자체가 근로감독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 위하여는 전문인력 충원·양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은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다각적인 준비와 검토가 요구되는 중장기 과제로 접근해야 하며, 현재에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울산광역시**

근로감독 직무 위임 시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자체의 노동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근로조건의 통일성·일관성 있는 기준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축적된 전문성에 기반한 노동환경 지도·감독이 필요하므로 현행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북특별자치도**

근로감독권한의 지방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수반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협조할 예정임

자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209778)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셋째,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기간을 확보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신규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 12주와 현장적응훈련(OJT) 12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교육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및 「민법」, 「형법」 등 관련 법과, 수사사례 등을 학습함.

신규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 10주와 현장직무교육(OJT) 12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교육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 등 관련 법과, 수사사례 등을 학습함.

그러나 한국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단기간에 진행되어 업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신임 근로감독관의 경우 영국은 9개월 이상, 독일은 3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임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영국은 12개월, 독일은 1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일본은 일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교육 내용을 통합하여 1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주요 국가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교육 현황]

		한국	영국	독일	일본
근로감독관	교육기간	12주(집체) +12주(OJT)	9개월 이상	3년	1년
	교육주요내용	노동관계법 이론, 실무, 사례, 실습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이론 및 조사기법 학습	불법고용, 임금 및 사회보험 위반 등 단속, 수사 관련 이론 및 실습	노동기준법, 민법, 노동계약법, 노동판례, 건설기계 등 현장연수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기간	22주 집체10주 +OJT12주	12개월 집체교육 +OJT	[바이애른주 감독관] 18개월 이론 500시간 + 기관실습 [재해보험조합 감독관] 1~3년 AP Ⅰ(학위 유형): 2년~3년 AP Ⅱ(기술자 유형): 1년~3년	1년
	교육주요내용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실무, 현장 체험 및 실습	법률 및 집행, 산업보건 및 위생안전 기술 전문 실무역량 등	[바이애른주 감독관] 산업안전감독 기초 산업안전집행, 실습 등 [재해보험조합 감독관] 법적근거, 직업병 조사, 안전보건조치, 종사 산업별 역량강화 교육 등	일반 근로감독관과 함께 동일한 연수 진행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간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임.

또한 단기적으로는 노동교육원 등의 인프라 한계 및 예산 상 한계 등으로 교육기간을 즉각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제한된 인프라와 기간 내에서도 실습 중심의 교육과 OJT를 내실화하여 현장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하였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의 양적 확대에 앞서, 선발된 인원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이후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실무에 적합하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교육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15]

15) 유사직군인 일반순경의 경우 교육과정이 34주로 구성되어 있음.

4.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2유형(청년) 지원 목표인원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671억 2,100만원(19.8%) 증액된 1조 128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민취업지원제도	845,709	1,010,865	1,012,830	167,121	19.8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5년 제2회 추경) 1조 108억 6,500만원 → ('26년도 예산안) 1조 128억 3,000만원, (+19억 6,500만원)**
* (목표인원) ('25) 30.5만명 ('25추경) 36만명 → ('26) 35만명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25 추경) 8,531억원 → ('26) 8,736억 2,000만원 (+205억 2,000만원)
* Ⅰ유형 ('25 추경) 24.2만명 → ('26) 24.2만명(전년동)
↳ 요건심사형 11.7만명, 선발형(청년) 10.5만명, 선발형(비경활) 2만명
- 구직촉진수당 7,182억 4,800만원 (*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성공수당 822억 9,300만원
- 민간위탁비 709억 7,700만원
- 운영비 21억 200만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25 추경) 1,568억원 → ('26) 1,382억 4,500만원 (△185억 5,500만원)
* Ⅱ유형 ('25 추경) 11.8만명 → ('26) 10.8만명(△1만명)
↳ 특정계층 1.2만명, **청년 7.8만명**, 중장년 1.8만명(건설업퇴직자 △1.0만명)
- 참여자수당 389억 6,300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
- 취업성공수당 224억 7,500만원
- 민간위탁비 768억 7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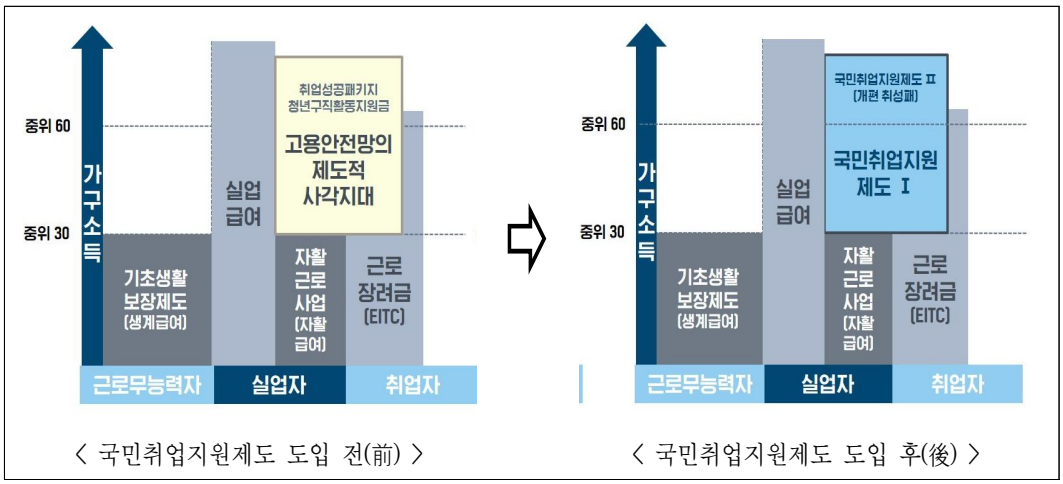
③ 전산망 강화: ('25 추경) 9억 6,500만원 → ('26) 9억 6,500만원, 전년동
· 출연금 9억 6,5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16) 일반회계 - 국민취업지원제도(1234-300)(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사는 있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 구직자 등(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이 종료된 실업자,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다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구직자 등)에게 소득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것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후 고용안전망 비교]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前) 〉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후(後) 〉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유형 내에서도 최근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요건심사형은 저소득층이면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선발형은 저소득층이지만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이러한 구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촉진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기 위함임. 요건심사형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자로 확정되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지만, 선발형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하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취업지원 서비스	소득지원	
								구직 촉진수당	취업활동 비용
1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2년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	○	×
	선발형	청년	15~34세	중위소득 120%↓	5억원↓	×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2년이내 100일 (800시간) 미만			
2 유형	특정계층		15~69세	×	×	×	○	×	○
	청년		15~34세	×	×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	×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단가를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1유형 24.2만명(요건심사형 11.7만명・선발형(청년) 10.5만명・선발형(비경활) 2만명), 2유형 10.8만명(특정계층 1.2만명・청년 7.8만명・중장년 1.8만명) 도합 35만명을 지원목표로 설정하였음.

나. 검토의견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의 경우 7만 8,000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2024년간 평균 약 3만 8,914명이 지원되었던 과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목표인원과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한 후 취업활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 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2021~2024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수급자격 인정인원 현황을 보면 1년 평균 3만 8,914명이 인정되었고, 2025년 1월부터 9월말까지는 목표인 7만 8,000명의 약 59.1% 수준인 4만 6,114명이 수급자격이 인정되었음.

[2021~2025년 9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수급자격 인정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1	1,650	6,407	4,342	3,342	3,163	3,493	3,289	2,803	2,583	2,457	2,312	2,044	37,885
2022	2,884	2,928	3,540	2,647	4,032	3,844	3,231	2,996	1,216	4,461	3,390	2,632	37,801
2023	2,666	2,866	3,403	3,082	4,526	4,086	3,571	3,197	2,917	3,294	3,512	2,589	39,709
2024	3,149	2,664	3,012	3,244	4,262	3,772	4,266	3,268	3,112	4,130	2,746	2,634	40,259
2025	2,875	3,120	3,287	4,486	3,943	3,625	9,923	7,822	7,033	사업 추진 중			46,114

주) 2유형 청년에 건설업 퇴직자 일부 포함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25년 9월 마감 자료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예산을 75억 3,200만원 증액하고, 2유형 청년 목표지원인원을 당초 6만 8,000명에서 7만 8,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였으며, 2026년도 예산에도 동일한 물량을 편성하였음.

과거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2026년에 2유형 청년 유형을 7만 8,000명분 편성한 것이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17]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4년에 비해 2025년 1유형 선발형 청년 목표인원을 줄이면서 해당 인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유형 청년 목표인원을 증가시켰으며,[18] 2025년 7월부터 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참여함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였음.

17) 참고로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참여 요건은 2025년 대비 변화가 없음.

18) 1유형 선발형 청년 목표인원: ('24) 14만명 →('25 추경) 10.5만명(△3.5만명) → ('26) 10.5만명(전년동)
2유형 청년 목표인원: ('24) 4만명 → ('25 추경) 7.8만명(+3.8만명) → ('26) 7.8만명(전년동)

그러나 2025년 7월부터 수급자격 인정인원이 증가한 것은 과거 실적을 고려할 때 상당히 예외적인 인원 증가일 수 있고, 과도한 사업인원의 증가는 한정적인 고용행정 자원을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보다 모집에 집중하도록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실제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의 경우 사업종료자의 30시간(1주일) 이상 일자리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목표지원인원의 확대보다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업의 질적 제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19)]

[2021~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사업종료자의 30시간(1주일) 이상 일자리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종료자	취창업자		취업률	종료자	취창업자		취업률	종료자	취창업자		취업률	종료자	취창업자		취업률
				취업	창업			취업	창업			취업	창업			취업	창업	
1유형	요건심사형		69,940	41,751	2,332	63.0	110,854	56,231	2,812	53.3	80,263	43,977	2,134	57.4	83,526	47,421	1,988	59.2
	선발형	청년	45,959	35,552	1,014	79.6	114,163	64,206	1,559	57.6	97,031	58,061	1,442	61.3	118,227	71,490	1,585	61.8
		비경활	25,538	7,982	879	34.7	45,945	9,951	954	23.7	28,407	7,373	788	28.7	26,850	7,530	748	30.8
2유형	특정계층		12,882	6,707	345	54.7	23,576	7,862	490	35.4	13,756	4,143	317	32.4	14,233	4,264	341	32.4
	청년		16,208	12,517	202	78.5	34,108	24,038	325	71.4	36,269	24,536	369	68.7	39,319	25,473	411	65.8
	중장년		3,669	1,874	103	53.9	10,911	5,019	235	48.2	13,849	6,371	361	48.6	13,804	6,296	313	47.9

주) 취업인원은 취업으로 종료된 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혹은 노무제공자의 월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자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19) 고용노동부는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과는 달리, 2유형은 취업활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유인이 부족하여 취업지원 효과 및 취업률 감소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으며,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청년들에 대한 취업지원 성과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함.

5.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사업(신규): 구직단념 청년의 고립·은둔 특성을 고려한 사업대상자 발굴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사업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중 권역별 거점 센터 10개소(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정하여 쉬었음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6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0)]

[2026년도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109,730	109,730	106,820	△2,910	△2.6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9,384	109,384	106,524	△2,860	△2.6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	-	6,000	6,000	순증

[2026년도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6억원×10개교 = 60억원 (1개소당 6억원으로 총 60억원 지원(100% 국비))
- **(사업비) 1,500명×30만원(지원단가)×10개소=45억원**
* 사업비는 프로그램비, 인건비, 운영경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운영경비는 전체 지원금의 20%(1.2억원) 이내 사용

자료: 고용노동부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선정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연간 쉬었음·구직단념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① 역량강화, ② 직무전환, ③ 일상회복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20) 일반회계-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303)(청년고용정책관)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사업 프로그램 예시]

❶ **(역량강화)** 특정 직무에 관심이 있으나 취업 준비가 두려운 청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예) 상담 →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 완화된 형태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 일경험 연계
❷ **(직무전환)** 이직·휴직 경력이 많은 청년 및 다른 직무로 이직하고 싶은 청년 대상으로 전환 가능한 직무를 탐색하는 프로그램 제공
* (예) 경력·이력 기반 직무탐색, 이직선배 멘토링, 이직실패 사례분석 프로그램
❸ **(일상회복)**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된 청년 대상으로 심리상담 제공
- 센터 내 심리상담사를 채용(인소싱), 심리상담 제공 +심리상담 앱/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예) 트로스트, 마인드카페 등 EAP 프로그램 활용(LG, 네이버 등 활용 중)
- 심리상담 후 습관 형성·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사업을 통해 청년의 심리상태 및 구직 준비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이나 대학일자리+센터와 같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사업의 기존 청년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공백 보완]

❶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의 규모 및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작고*, 취업자신감 회복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중
* 서비스 대상자 1.2만명, 86개 지자체 운영
❷ (대학일자리+센터) 지역청년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중이나, 아직 자교생 위주 서비스 제공 중*
* '25. 7월 기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중 지역청년 비율: 10.7%
⇛ 대학일자리+센터 10개소를 거점기관으로 선정하여 장기 미취업 청년·지역청년 지원 기능을 대폭 확대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2026년 각 센터 당 구직단념 청년 1,500명씩 1만 5,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장기 구직단념 청년의 고립·은둔 특성을 고려한 사업대상자 발굴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발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필요 시 구직단념청년 발굴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쉬었음'이란 비경제활동 인구 중 육아나 가사를 맡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지만,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뜻함.

최근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쉬었음' 청년은 지난 5년간 약 10만명 증가하여 청년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2005~2024년 평균 '쉬었음' 청년 인구]

2005~2009년 평균	2010~2014년 평균	2015~2019년 평균	2020~2024년 평균
27만명	30만명	31만명	42만명

자료: 고용노동부

취업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쉬었음'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 개인의 고용가능성이나 고용의 질 저하 뿐만 아니라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도 우려됨.

또한 생애주기 초기에 적절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쉬었음'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래에도 추가적인 복지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었음'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운용 관점에서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2026년 60억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개를 권역별로 선정하고 센터당 1,500명씩 총 1만 5,000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쉬었음' 청년의 경우 장기간 고립·은둔 상태에 놓여 구직을 단념한 특성이 있고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상당 수일 것으로 보임.

현재 사업 계획 상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에 등록된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지원 안내문자 발송과 취업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직단념청년의 고립·은둔 특성을 고려한 발굴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한, 구직단념청년을 지원하는 유사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경우 2025년부터 ‘또래지원단’을 운영하여 사업 참여 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청년이 친구·지인 동료를 발굴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2025년 9월말 기준 1,484명의 또래지원 홍보단이 위촉되었고, 465명의 청년이 또래지원단을 통해 신규로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이 사업에도 구직단념 청년 발굴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필요 시 차등 지원 기준 보완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와 해당 사업체에 근속하는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1,307억 7,800만원(16.8%) 증액된 9,079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77,181	802,597	907,959	130,778	16.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7,181	802,597	907,959	130,778	16.8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안 세부내역]

○ (소요 예산) (’25) 8,025억 9,700만원 → (’26) 9,079억 5,900만원, 1,053억 6,200만원 증액

① 기업지원금 : (’25) 7,596억 300만원 → (’26) 7,912억 2,500만원, 316억 2,200만원 증액

- 산출: 수도권 5.5만명, 비수도권 5만명

(유형1) 5,225억 8,300만원 <기존 채용자(’23~’25년) 계속 지원금 + ’26년 신규 지원금>

a. 기존 채용자 계속 기업지원금: 4,549억 500만원

b. (수도권) ’26년 신규 기업지원금 676억 7,800만원

↳ (55,000명/12개월) × 고용유지율* × 지원단가(월 60만원) × 근속기간(월) = 676억 7,800만원

*▲고용유지율(6개월: 0.83, 9개월: 0.75 등)

(유형2) 268,642백만원 <’25년 계속 지원금 + ’26년 신규 지원금>

a. ’25년 계속 기업지원금 2,071억 1,700만원

b. (비수도권) ’26년 신규 기업지원금 615억 2,500만원

↳ (50,000명/12개월) × 고용유지율* × 지원단가(월 60만원) × 근속기간(월) = 615억 2,500만원

*▲고용유지율(6개월: 0.83, 9개월: 0.75 등)

② 청년 근속 인센티브: (’25) 159억 8,600만원 → (’26) 894억 2,600만원, 734억 4,000만원 증액

- 산출: 비수도권 5만명(▲일반 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21) 일반회계-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청년고용정책관)

a. '25년 계속 지원 인센티브 725억 1,400만원

↳ (48,150명/12개월) × 고용유지율* × 120만원 = 725억 1,400만원

*▲고용유지율(6개월: 0.83, 12개월 0.67, 18개월 0.43) ▲24개월 근속 인센티브는 차년도 집행

b. (일반 비수도권) '26년 신규 계속 지원 인센티브 156억 400만원

↳ (47,000명/12개월) × 고용유지율* × 120만원 = 156억 400만원

*▲고용유지율(6개월: 0.83) ▲12개월 근속 인센티브부터는 차년도 집행

c. (우대지원지역) '26년 신규 계속 지원 인센티브 9억 3,400만원

↳ (2,250명/12개월) × 고용유지율* × 150만원 = 9억 3,400만원

*▲고용유지율(6개월: 0.83) ▲12개월 근속 인센티브부터는 차년도 집행

d. (특별지원지역) '26년 신규 계속 지원 인센티브 3억 7,400만원

↳ (750명/12개월) × 고용유지율* × 180만원 = 3억 7,400만원

*▲고용유지율(6개월: 0.83) ▲12개월 근속 인센티브부터는 차년도 집행

③ 민간위탁사업비: ('25) 256억 800만원 → ('26) 261억 800만원, 5억원 증액

- 산출: 수도권 20만원, 비수도권 30만원 지급

(유형1) 113억 8,500만원1(△70억원 감액)

a. '25년도 잔여 지원: 58억 8,500만원

↳ 58,850명 × 20만원 × 0.5 = 58억 8,500만원

b. (수도권) '26년도 신규 지원: 55억원

↳ 55,000명 × 20만원 × 0.5 = 55억원

(유형2) 147억 2,300만원(75억원 증액)

a. '25년도 잔여 지원: 72억 2,300만원

↳ 48,150명 × 30만원 × 0.5 = 72억 2,300만원

b. (비수도권) '26년도 신규 지원: 75억원

↳ 50,000명 × 30만원 × 0.5 = 75억원

④ 수용비 등 경상경비: ('25) 12억원 → ('26) 10억원, 2억원 감액

⑤ 사업출연금: ('25) 2억원 → ('26) 2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현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1’과 ‘유형2’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① ‘유형1’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22]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②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2026년부터는 ‘유형1’과 ‘유형2’가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임. ‘수도권’ 유형의 경우, 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유형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내용]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2025년</th><td rowspan="4">개편
➜</td><th colspan="2">2026년</th></tr>
<tr><td>유형</td><td>유형1</td><td>유형2</td><td>수도권</td><td>비수도권</td></tr>
<tr><td rowspan="2">대상</td><td rowspan="2">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td><td>청년을 채용한
빈일자리 업종
기업</td><td rowspan="2">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소재 기업</td><td>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td></tr>
<tr><td>해당 청년</td><td>해당 청년</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비수도권 유형은 지역 간 차등을 나누어 ①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②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③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2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상시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예: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이 이에 해당함.

나. 검토의견

비수도권을 지원하려는 사업개편의 취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경기도 소재 제조업과 같이 수도권 빈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경우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므로 사업내용 개편이 수도권 소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차등 지원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청년’에게 지급하던 유형2 근속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2026년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해당 기업에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해당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또한, 비수도권 유형을 지역 간 차등을 나누어 ①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②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③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설정하고, ②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을 우대지원 지역으로 설정하였음.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세부유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4개) ※ 광역시 자치구(5개) 제외		일반 비수도권 지역(83개)
	특별지원 지역(40개)	우대지원 지역(44개)	
서울			
부산			15개 자치구, 기장군
대구		군위군	7개 자치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광주			5개 자치구
대전			5개 자치구
울산			4개 자치구, 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양구군, 화천군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계룡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자료: 고용노동부

유형2 장려금의 경우 2025년 8월말 기준 수도권에 1만 543명의 지원 실적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업내용으로 개편되게 되면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과 같이 수도권 빈일자리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경우 2026년부터 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함.

[2022~2025년(8월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역별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합계	수도권	비수도권			
					일반 비수도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2022년		113,700 (100.0)	65,139 (57.3)	48,561 (42.7)	44,783 (39.4)	2,766 (2.4)	1,012 (0.9)
2023년		88,649 (100.0)	50,157 (56.6)	38,492 (43.4)	35,330 (39.9)	2,402 (2.7)	760 (0.9)
2024년		101,519 (100.0)	57,208 (56.4)	44,311 (43.6)	41,038 (40.4)	2,465 (2.4)	808 (0.8)
2025년 (8월말)	유형1	40,648 (100.0)	25,181 (61.9)	15,467 (38.1)	14,473 (35.6)	724 91.8)	270 (0.7)
	유형2	24,985 (100.0)	10,543 (42.2)	14,442 (57.8)	12,867 (51.5)	1,248 (5.0)	327 (1.3)

자료: 고용노동부

비수도권을 지원하려는 사업개편의 취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해 경기도 소재 제조업과 같이 수도권 빈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지원이 중단되어 수혜대상자가 과도하게 제외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23)]

또한 기계적인 지역분류 결과,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은 우대지원지역에 해당하여 해당 지자체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리적으로 가평군과 연천군 사이에 위치한 인구감소관심지역[24)]인 포천시에 소재한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

23) 특히 기존 2유형을 통해 지원받고 있던 주요 업종인 제조업의 경우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나, 인력부족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24)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 · 군 · 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

[경기도 북부 지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방소멸이 심각한 문제이므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2026년에는 비수도권 우대지원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 또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기업 지원금이 근로자 임금 상승, 사내 복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하였음.

향후 고용노동부는 사업내용 개편이 수도권 소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차등 지원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7.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사업: 자부담 신규 설정을 고려한 사업물량 조정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은 민간 훈련기관·선도기업·대학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실무인재를 양성하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431억 9,700만원(9.0%) 증액된 5,213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25)]

[2026년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내일배움카드(일반)	580,161	596,161	627,325	47,164	8.1
K-하이테크플러스사업	498,116	498,116	541,313	43,197	8.7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478,116	478,116	521,313	43,197	9.0

이 사업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2026년 계획에 따르면, ① 훈련비 중 10%를 자부담(AI과정 제외)하도록 하고, ② 훈련장려금을 11만 6,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③ AI 및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과정의 경우 특별훈련수당을 지역을 기준(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차등적으로 지급할 예정임.

25) 일반회계-내일배움카드(일반)(1131-300)(직업능력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2026년부터 훈련비 자부담률 10%를 설정하여 훈련 참여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이나, 2025년 대비 훈련 인원 4,375명(전년 대비 9.7% 증가) 증가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훈련 인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5년까지 훈련비 자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신중한 훈련과정 선택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부터 훈련비를 일부(10%) 자부담(상한액 60만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AI 중고급 훈련과정 참여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을 면제할 예정임.

2024년 기준 업종별 평균 훈련비를 고려할 때 2026년 자부담액은 대부분의 경우 60만원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과거 전액 무료로 사업이 추진된 경우에 비해 참여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업종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훈련참여인원 및 2024년 기준 평균 훈련비]

(단위: 명,원)

신기술분야	훈련참여인원					2024년 기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말)	평균 훈련비	평균 자부담	상한 적용 시
인공지능	3,952	4,447	4,839	5,126	3,697	11,197,289	1,119,729	600,000
클라우드	1,362	3,739	5,260	5,269	2,208	13,375,641	1,337,564	600,000
사물인터넷	817	658	395	475	312	11,159,087	1,115,909	600,000
메타버스	453	739	1,483	1,868	1,347	12,732,422	1,273,242	600,000
일반S/W	693	4,715	10,165	13,796	8,033	11,032,054	1,103,205	600,000
블록체인	514	603	717	453	75	11,919,776	1,191,978	600,000
빅데이터	3,477	6,303	6,697	7,002	3,118	11,047,316	1,104,732	600,000
사이버보안	12	254	498	840	428	12,428,748	1,242,875	600,000
이차전지	-	-	-	190	172	7,623,000	762,300	600,000
3D프린팅	12	19	38	70	90	10,036,943	1,003,694	600,000
반도체	-	612	917	1,216	608	13,107,042	1,310,704	600,000
로봇	437	310	800	902	707	10,430,333	1,043,033	600,000
드론	-	-	-	12	29	18,150,000	1,815,000	600,000
바이오헬스	-	-	-	160	282	12,053,070	1,205,307	600,000
에코업	-	-	123	112	48	8,691,320	869,132	600,000
신재생에너지	-	-	-	60	35	12,386,460	1,238,646	600,000
기타	-	-	-	96	80	15,064,500	1,506,450	600,000
합계	11,729	22,399	31,932	37,647	21,269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훈련 인원이 4,375명 증가(전년 대비 9.7%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훈련장려금이 2025년 월 11만 6,000원에서 2026년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훈련 수강을 포기하는 훈련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과거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여 월 11.6만원(특별훈련수당 20만원 추가 가능)을 받으면서 훈련에 참여하였다면, 2026년부터는 자부담 60만원을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으며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참여 유인의 정도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6개월의 훈련참여를 가정할 경우 2025년에는 69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실질적으로 60만원만 받게 되는 것임.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개편 전·후 사업참여자의 수령 금액 비교(6개월)]

구분	2025년(개편 전)		2026년(개편 후)	
	수입	지출	수입	지출
1개월	11.6만원	-	20만원	△60만원
2개월	11.6만원		20만원	
3개월	11.6만원		20만원	
4개월	11.6만원		20만원	
5개월	11.6만원		20만원	
6개월	11.6만원		20만원	
합계	69.6만원	-	120만원	△60만원
수지차	69.6만원		60만원	

따라서 자부담 신규 부과에 따른 훈련수요 감소를 고려하여 예산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2026년부터 AI과정과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과정에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특별훈련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첨단산업·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훈련기관 인프라가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훈련기관 발굴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인프라는 열악한 것으로 보임. 2025년 8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훈련기관 318곳 중 수도권에 245개 기관(77.0%)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참여인원 2만 8,682명 중 2만 6,652명(92.9%)이 수도권 소재 훈련기관에 참여하였음.

[2021~2025년(8월말) 기준 지역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훈련기관 및 훈련인원 현황]

(단위: 명, %)

지역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8월말)	
	훈련기관	참여인원	훈련기관	참여인원	훈련기관	참여인원	훈련기관	참여인원	훈련기관	참여인원
수도권	76 (71.0)	8,730 (85.0)	130 (70.3)	19,356 (86.4)	194 (73.8)	28,306 (88.6)	252 (75.7)	34,323 (91.2)	245 (77.0)	26,652 (92.9)
비수도권	30 (28.0)	1,430 (13.9)	52 (28.1)	2,948 (13.2)	65 (24.7)	3,513 (11.0)	75 (22.5)	3,230 (8.3	68 (21.4)	1,947 (6.8)
인구감소지역	1 (0.9)	106 (0.1)	3 (1.6)	96 (0.4)	4 (1.5)	113 (0.4)	6 (1.8)	94 (0.2)	5 (1.6)	83 (0.3)
합계	107 (100.0)	10,266 (100.0)	185 (100.0)	22,400 (100.0)	263 (100.0)	31,932 (100.0)	333 (100.0)	37,647 (100.0)	318 (100.0)	28,682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특별훈련수당을 더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2026년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특별훈련수당 차등 지급 계획]

- AI과정 (수도권 20만원, 비수도권 40만원, 인구감소지역 60만원)
- 선도기업 등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인구감소지역 3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현재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훈련기관은 훈련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훈련기관 유지도 곤란한 상황이므로, 특별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훈련기관이 비수도권에서도 지속적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특별훈련수당을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면 비수도권 지역의 훈련생이 지역 내 훈련기관에서 훈련에 참여할 유인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훈련기관도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비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비수도권에 기초적인 훈련 인프라와 훈련기관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훈련수요에 상응하는 훈련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고용노동부는 지역 대학·지역 소재 디지털 선도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비수도권의 훈련 인프라 구축 노력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음.

8.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은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200억원이 편성되었음.[26)]

[2026년도 첨단산업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내일배움카드(일반)	580,161	596,161	627,325	47,164	8.1
K-하이테크플러스사업	498,116	498,116	541,313	43,197	8.7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사업	20,000	20,000	20,000	-	-

이 사업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사용 가능한 50만원(1년 한도)를 추가로 지원(자부담 10% 결제 필요)하고 있으며, 100%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에 대해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하여 민간혁신 중심으로 훈련을 공급하고 있으며, 실시간 코드 리뷰・미니 프로젝트 수행 등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주도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원격훈련이지만 집체훈련에 준하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함.

26) 일반회계-내일배움카드(일반)(1131-300)(직업능력정책국)

나. 검토의견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은 20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에서 정량성과 미흡을 사유로 '감액' 등급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안에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는데,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부담률 인상 등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27]에 근거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 및 사업구조 개편방안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고 재정당국은 이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재정지원일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20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은 사업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량적 사업성과가 미흡하여 감액 등급을 부여 받았음.[28]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전 산업 부문에서 나타나는 AI 대전환 등 최근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AI 리터러시 등 AI 분야의 기초 훈련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요 대응을 위해 감액 없이 전년 수준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의 예산편성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훈련비 자부담액을 적절히 인상해 취업 또는 상위훈련 연계에 대한 고려없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훈련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중도탈락률과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부담률을 인상하는 등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이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자는 훈련비 10%를 자부담으로 결제해야하는데 2024년 결산 기준 훈련분야에 따라 평균적으로 최소 2만 9,560원에서 최대 4만 9,900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7)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28) 과거 평가결과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훈련생 중 약 43%가 K-DT, 국기훈련 등 상위훈련을 연계 수강하게 되는 사업의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중도탈락률이 11.5%로 구직자훈련 평균보다 높고 취업률은 구직자훈련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아 구직자훈련기준으로는 미흡한 사업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주요 근거임.

[2024년 결산 기준 첨단산업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 평균 훈련비 및 평균 자부담 금액]

(단위: 원)

신기술분야	평균훈련비	평균 자부담
인공지능	295,600	29,560
클라우드	400,000	40,000
사물인터넷	351,400	35,140
메타버스	390,400	39,040
일반S/W	385,200	38,520
블록체인	416,600	41,660
빅데이터	282,600	28,260
사이버보안	445,000	44,500
이차전지	406,600	40,660
3D프린팅	486,500	48,650
반도체	406,200	40,620
로봇	-	-
드론	499,000	49,900
바이오헬스	432,200	43,220
에코업	-	-
신재생에너지	-	-
첨단소재	465,000	46,500
디스플레이	490,000	49,000
기타	233,900	23,390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9.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신규): 사회적가치 평가 등급 요건 설정 필요

가. 개 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 방식(보조율 75%)으로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2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9)]

[202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사회적기업 육성	-	-	32,100	32,100	순증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321억원
= 5,088명 × 70만원 × 12개월 × 75% = 321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4년까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2026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 및 30인 이상 기업 중 SVI[30)] 평가 등급 탁월·우수 기업들이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경우 월 50~90만원(1년 600만원~1,080만원) 정도의 인건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2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사회적기업 육성(1037-312)(통합고용정책국)

30)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사회적성과(60%), 경제적 성과(30%), 혁신성과(10%)의 3개 평가 관점에 따라 5개 범주,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인건비 지원 수준]

구분	지원금액	6개월 고용유지	1년 고용유지
SVI 탁월기업	월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SVI 우수기업	월 70만원	420만원	840만원
일반기업	월 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 종료한 사업과는 ① 최저임금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것에서 참여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 ② 전문인력을 제외한 일반인력(취약계층)만 지원, ③ SVI 우수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1년 연장, ④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의 차이가 있음.

[2024년 및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예산 비교]

구분	2024년 종료사업	2026년 신규사업
지원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참여근로자 임금 일부
지원대상	일반인력(일반+취약계층) 및 전문인력	일반인력(취약계층)
지원금 산정방법	최저임금 일정비율	참여근로자 임금 일부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 3년	최대 3년 (기본 2년 + SVI 우수 이상 시 1년)
지원비율 (또는 지원금)	최저임금의 40~70% (月 82~144만원 수준)	月 최대 50~90만원 (SVI 우수 이상 기업 우대 지원)
지원조건	1. (예비) 사회적기업 2. 신규고용	1. (예비)사회적기업 2. 취약계층 신규 고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및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등급 탁월·우수 기업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2025년 8월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가치 평가(SVI) 탁월(3.8%)~우수(23.6%) 등급 기업이 27.4%정도에 불과하여 이들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영향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건비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지원에도 SVI 평가 등급 요건을 설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회적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여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31]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SVI 등급에 따른 참여 제한보다 우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2025년 8월말 기준 SVI 평가실적을 보면, 전체 2,811개의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등급 탁월 또는 우수 기업 수는 769개(전체 30인 미만 사회적기업의 27.4%)로 30인 미만 사회적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SVI 평가 등급 “양호” 또는 “미흡”에 해당함.

[2025년 8월말 기준 SVI 등급별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개소, %)

기업규모	탁월	우수	양호	미흡	취약	전체
30인 미만	107 (3.8)	662 (23.6)	822 (29.2)	1,213 (43.2)	7 (0.2)	2,811 (100.0)
30인 이상	48 (12.6)	186 (48.8)	87 (22.8)	59 (15.5)	1 (0.3)	381 (100.0)

자료: 고용노동부(연도별 SVI 평가 기업 누적)

31) 그러나 현재의 사업 요건 하에서는 초기 성장단계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건의 30인 미만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것으로 보임.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이 저조한 30인 미만 기업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요건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이 저조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해되고,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도 SVI 등급 요건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32)]

32)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① 2026년부터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SVI 연계 지원을 시행한다는 점, ② SVI 측정이 의무가 아닌 상황, ③ SVI 등급이 지원 제한 요건이 될 경우 SVI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 간 지원에 있어 불평등 요인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고용보험기금】

<지 출>

10. 구직급여 사업: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구직급여’ 사업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기여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이직자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6,205억 3,700만원(5.7%)이 증액된 11조 5,376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33)]

[2026년도 구직급여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구직급여	10,917,074	12,209,974	11,537,611	620,537	5.7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구직급여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가. (구직급여(순수)) 11조 5,340억 7,200만원
 · (근로자) 1,620,048명 × 63,142원 × 112일 = 11조 4,568억 2,400만원
 · (예술인) 5,872명 × 50,407원 × 99일= 293억 300만원
 · (노무제공자) 8,895명 × 50,848원 × 106일= 479억 4,300만원
나. (개별연장급여) 33억 7,000만원
 · 1,133명×56,120원×53일= 33억 7,000만원
다. (훈련연장급여) 168백만원
 · 23명×60,000원×122일= 1억 6,8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33) 고용보험기금 - 구직급여(1280-350)(고용서비스정책관)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와 재정당국은 이번 예산안 편성 시 구직급여 지출구조조정으로 △2,352억 7,4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확정되지 않은 60세 이상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전제한 것이므로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와 재정당국이 공개한 지출구조조정 문서에 따르면, 지출구조조정 전 구직급여 소요액은 11조 7,728억 8,500만원이지만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2,352억 7,4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설명함.

지출구조조정 사항은 60세 이상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를 강화하는 등 실업인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평균 수급일이 기존 114.3일에서 112일로 △2.3일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2026년도 구직급여 지출구조조정 내역]

	제도개선 전	제도개선(지출구조조정) 후
제도개선 전후 비교	○ 60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에서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취업특강, 자원봉사 횟수 제한 없음)으로 선택 가능	○ 60세 이상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실업인정 방식 개선 추진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강화
제도개선 전후 지출소요 추계 비교	〈 보험금(320-04): 11조 7,728억 8,500만원 〉 가. (구직급여(순수)) 11조 7,693억 4,700만원 · (근로자) 1,620,000명×63,142원×**114.3일 = 11조 6,921억 100만원** · (예술인) 5,872명 × 50,407원 × 99일 = 293억 300만원 · (노무제공자) 8,895명 × 50,848원 × 106일 = 479억 4,300만원 나. (개별연장급여) 33억 7,000만원 · 1,133명×56,120원×53일 = 33억 7,000만원 다. (훈련연장급여) 168백만원 · 23명×60,000원×122일 = 1억 6,800만원	〈 보험금(320-04): 11조 5,376억 1,100만원 〉 가. (구직급여(순수)) 11,534,072백만원 · (근로자) 1,620,048명× 63,142원×**112일 =11조 4,568억 2,400만원** · (예술인) 5,872명 × 50,407원 × 99일 = 293억 300만원 · (노무제공자) 8,895명 × 50,848원 × 106일 = 479억 4,300만원 나. (개별연장급여) 33억 7,000만원 · 1,133명×56,120원×53일 = 33억 7,000만원 다. (훈련연장급여) 1억 6,800만원 · 23명×60,000원×122일 = 1억 6,800만원
	제도개선 전 소요 합계: 11조 7,728억 8,500만원	제도개선(지출구조조정) 후 합계: 11조 5,376억 1,1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한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지출구조조정에서 수급기간을 2.3일 단축한 것은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수급기간 내 신속히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는데, 결국 지출구조조정으로 제시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정책 목표로 보임.

향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지출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 제도개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단기 육아휴직 도입 사업: 법률안 개정의 논의 경과를 고려한 지출계획 반영 여부 결정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단기 육아휴직 도입’** 사업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등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58억 2,000만원(△75.2%)이 감액된 184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34)]

[2026년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모성보호육아지원	4,022,454	4,022,454	4,072,832	50,378	1.3
육아휴직급여	3,402,970	3,402,970	3,393,598	△9,372	△0.28
단기 육아휴직 도입	74,256	74,256	18,436	△55,820	△75.2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단기육아휴직 도입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단기 육아휴직 도입 184억 3,600만원: 18,622명 × 198만원 × 0.5개월
(※ ’25년 법개정 및 ’26년 1월 제도 시행을 전제함)

a. (지원인원: 18,662명)

- (지원인원: 18,622명) ① 맞벌이 15,449명 + ② 외벌이 3,173명
  ① 맞벌이: (2,694,810명 × 2 × 55.4% × 77.0% × 2.4% × 54.9% × 51.0%)
  ② 외벌이: (2,694,810명 × 55.4% × 77.0% × 1.2% × 45.1% × 51.0%)
  - (2,694,810명) ’24년 0~8세(2,694,810명) 인구
  - (55.4%) ’25.2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
  - (77.0%)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보험가입자 비율
  - (맞벌이 2.4%, 외벌이 1.2%) 휴가 사용률 〈제도시행 초기임을 고려한 휴가사용률〉
  - (54.9%) 맞벌이 가구비율 / (45.1%) 외벌이 가구 비율
  - (51.0%) ’24년 육아휴직 12개월 미만 사용자 비율

b. (지원단가: 198만원) * 일반 육아휴직 급여 지원단가

c. (지원기간: 0.5개월) * 2주 사용

자료: 고용노동부

34) 고용보험기금 - 모성보호육아지원(1345-358)(통합고용정책국)

나. 검토의견

단기 육아휴직 도입 사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5년 연내 개정 및 2026년 1월 제도 시행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논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3회에 한정하여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녀의 학교·유치원 방학·감염병에 따른 등원 및 등교 중지·질병으로 입한 입원 발생 시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동자 개인의 여건에 맞게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단기 육아휴직임.

[단기육아휴직 제도개요]

ㅇ (사유) ①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②질병·사고로 입원, ③방학, ④긴급한 휴교·휴원 ㅇ (기간)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 육아휴직 기간(1년~1년6개월)에서 사용기간 차감 ㅇ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부여 시 지급하나,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 시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단기 육아휴직의 사용 근거 및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에 단기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35]

35) 또한 단기(연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야 함.

[2026년 단기 육아휴직 도입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안 현황]

발의의원 (의안번호)	제안일	상정일 (소위 회부일)	주요내용	시행시점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205936, 2205937)	2024.11.27.	2025.7.18. (2025.7.18.)	- 단기 육아휴직의 사용근거 및 사용기간 등 규정(고평법) -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육아휴직 사용 기간 축소(30일→7일)(고보법)	공포 후 6개월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2212677, 2212690)	2025.9.3.	미상정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 논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12. 업무분담 지원금 사업: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업무분담 지원금'** 사업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20~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00억 4,100만원(△28.5%) 감액된 251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36)]

[2026년도 업무분담 지원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당초 (A)	수정	계획안 (B)	(B-A)	(B-A)/A
고용안정장려금	390,894	390,894	439,394	48,500	12.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36,637	336,637	359,488	22,851	6.8
업무분담 지원금	35,235	35,235	25,194	△10,041	△28.5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업무분담 지원금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업무분담 지원금: 251억 9,400만원
[(4,000명×20%×40만원×9개월)+(4,000명×80%×60만원×9개월)] +(5,244명×12만원×8개월)

자료: 고용노동부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개요]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요건) 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업무를 분담할 동료 노동자를 특정(1명당 최대 5명)하고, ③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15~30시간 근무)이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은 15~35시간)
○ (지원내용)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 1인당 최대 월 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현행) 월 20만원 → **('26년 정부 예산안) 30인 이상 월 40만원, 30인 미만 월 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원('26년 동일)
○ (지원기간)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3년)

자료: 고용노동부

36) 고용보험기금 - 고용안정장려금(1345-350)(통합고용정책국)

나. 검토의견

2025년 8월말 기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계획액 251억 7,900만원 중 6억 400만원(2.4%)만 집행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계획액 100억 5,600만원 중 24억 5,700만원(24.4%)만 집행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는 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사유 중 '업무공백 부담'(25.6%)이 가장 큰 사유이며, 성별 중에서는 남성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중이 높았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자의 미사용 사유]

(단위: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자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	회사에 선례가 없어서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 감소 우려	불필요	기타
전체		25.6	24.5	15.9	11.1	10.7	9.2
성별	남성	29.1	25.0	7.3	19.7	10.9	6.2
	여성	23.5	24.3	20.7	6.1	10.5	10.8
직장규모	5~29인 이하	23.9	30.5	14.2	9.2	11.5	8.2
	30~99인 이하	27.4	23.5	16.3	8.8	10.7	9.8
	100~299인 이하	33.7	18.4	12.9	11.0	11.0	9.2
	300인 이상	23.1	12.4	22.3	19.5	8.0	11.2

주) 중복응답이 가능
자료: 「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영세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에게 사업주가 보상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업무공백 부담(동료눈치)을 완화하여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과거 집행실적을 보면, 2024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이 계획 23억 7,600만원 중 3억 2,300만원(13.6%)만 집행되었고, 2025년 8월말 기준으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계획 100억 5,600만원 중 24억 5,700만원(24.4%),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계획 251억 7,900만원 중 6억 400만원(2.4%)이 집행되었음.

[2024년 및 2025년(8월말) 업무분담 지원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명, %)

	2024년					
	계획(A)	집행(B)	집행률 (B/A)	목표인원 (C)	지원인원 (D)	달성률 (D/C)
육아휴직	-	-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376	323	13.6	5,940	910	15.3
	2025년(8월말)					
	계획(A)	집행(B)	집행률 (B/A)	목표인원 (C)	지원인원 (D)	달성률 (D/C)
육아휴직	25,179	604	2.4	18,651	1,465	7.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0,056	2,457	24.4	6,285	4,384	69.8

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24.7.1.,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25.1.1. 신설된 제도임
자료: 고용노동부

이 사업이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제도 초기에 예상보다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분담 지원금은 최근 신설된 제도로,[37]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 및 현장 안착에 시간이 소요되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단가 인상 외에도 제출서류 간소화[38]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단체 협업, 지방관서를 통한 개별기업 제도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향후 고용노동부는 계획한 제도개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업무분담 지원금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24.7.1.~),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25.1.1.~)

38) 업무분담 지원금 제출서류를 현행 2종(업무분담 내역, 업무분담 수당 지급 내역) → 1종(수당 지급 내역)으로 간소화('25.下 시행규칙 개정 예정)

【임금채권보장기금】

<지 출>

13. 대지급금 지급 사업: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한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 설정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171억 7,100만원(41.0%) 증액된 7,465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39)]

[2026년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대지급금 지급	529,346	680,180	746,517	217,171	41.0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6년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대지급금 지급: (’25 추경) 6,801억 8,000만원 → (’26 계획안) 7,465억 1,700만원 (663억 3,700만원 증액)
① 대지급금 지급: (’25 추경) 6,772억 3,700만원 → (’26 계획안) 7,420억 7,700만원, (648억 4,000만원 증액)
〈도산대지급금〉 (’25 당초 계획) 422억 6,700만원 → (’26 계획안) 1,372억 5,400만원, (949억 8,700만원 증액)

① ’26년 상반기 소요액 217억 7,500만원 (6,379명×682만 7,000원×50%)
⇨ 최근 3년(’22~’24년) 도산대지급금 평균 지원실적의 50%
② ’26년 하반기 공약이행 소요액 1,154억 7,900만원 (2,032억 4,400만원 × 1.066^2 × 50%)
⇨ ’24년 도산대지급금 지급사건의 체불액(최종 6개월분 체불임금 반영), 최근 5년 체불액 평균증감율(6.6%) 반영

〈간이대지급금〉 (’25 추경) 6,349억 7,000만원 → (’26 계획안) 6,048억 2,300만원 (301억 4,700만원 감액)
② 채권관리비용 : (’25 당초 계획) 29억 4,300만원 → (’26 계획안) 37억 3,800만원 (7억 9,500만원 증액)
③ 상습체불 사업주 회수관리 : (’25 당초 계획) 0백만원 → (2026 계획안) 7억 200만원,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39) 임금채권보장기금-대지급금 지급(3051-300)(근로기준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개정을 전제로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출계획액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므로, 법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6년 대지급금 지급 사업 지출계획액을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퇴직 근로자' 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도산 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에서 6개월 분으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하였음.

고용노동부는 2024년 체불 진정사건 중 체불기간이 180일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이 94% 이상인 점과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산사업장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체불임금'으로 우선 확대한다고 설명하였음.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2제1호에 따른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임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도산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법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4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6조 제2항[41] 및 고용노동부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 따라 상한액이 연령별로 차등이 되어 있는데, 도산 대지급금의 지금범위를 확대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대지급금의 규모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서 설정한 상한액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 따른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

(단위: 만원)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 기준임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개정 시 대지급금 지출 추이, 보수상승률,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산 대지급금의 상한액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40)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 · 고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고용노동부의 설명대로 상한액의 결정에는 임금이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특히 최근 5개년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1년~2026년(안)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지출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말)	2026년(안)
수입(A)	523,876	565,385	617,255	663,021	461,386	771,064
대지급금 회수액	156,875	158,880	152,402	162,587	113,824	170,716
공자기금예수금	-	-	-	-	-	57,000
지출(B)	627,414	600,342	792,305	836,242	556,680	850,615
사업비 지출	613,715	584,138	773,028	818,023	545,866	829,171
대지급금 지급액	546,571	536,864	686,905	724,207	471,421	742,077
수지차(A-B)	△103,538	△34,957	△175,050	△173,221	△95,294	△79,551
적립금	730,494	695,537	520,487	347,266	251,972	262,571
여유자금	626,307	590,558	416,886	292,690	235,073	257,900
공자기금 예탁금	100,000	100,000	100,000	50,000	-	-
한국은행 예치금	4,188	4,980	3,601	4,576	16,899	4,671

주) 대지급금 지급액은 사업비 기준임(채권관리비용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도산 대지급금 지급 후 누적 회수율이 40%대에서 정체 상태에 있어 회수 부담이 존재하는 사정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0~2024년 도산대지급금 누적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누적 대지급금 지급액(A)	3,903,476	3,982,836	4,019,412	4,059,047	4,113,875
누적 대지급금 환수액(B)	1,529,286	1,586,748	1,635,636	1,669,185	1,696,387
누적 회수율(B/A)	39.2	39.8	40.7	41.1	41.2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여력 및 지급 후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 출>

14.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사업: 산재예방 효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사업은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을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800억원(17.4%) 증액된 5,38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42)]

[2026년도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458,840	458,840	538,840	80,000	17.4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재정여력이 취약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으로 사망사고 고위험설비 교체 등 지속적인 예방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① 구입뿐만 아니라 장비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비용을 위해 융자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② 융자상한액 또한 10억에서 15억원으로 인상할 예정임.

[2026년도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융자금) 3,054개소×176.4백만원 = 5,386억 4,000만원
- (수행경비) 2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4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4151-351)(산업안전보건정책관)

나. 검토의견

산재예방시설융자 지원 사업장의 지원 전·후(1년) 산재 현황을 보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장의 사고재해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0~2023년간 1년을 단위로 하여 산재예방시설융자 지원사업장의 지원 전·후 실적을 비교하면 산재예방시설 도입을 위한 융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고재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20~2023년도 산재예방시설융자 지원 전·후(1년) 실적]

(단위: 명, %p)

	2020년 지원사업장의 지원 전후(1년) 증감	2021년 지원사업장의 지원 전후(1년) 증감	2022년 지원사업장의 지원 전후(1년) 증감	2023년 지원사업장의 지원 전후(1년) 증감
사고사망자 수	△1	1	1	△3
사고재해자 수	6	9	5	33
사고사망률	△0.0084	0.0027	0.0029	△0.0093
사고재해율	△0.03	△0.04	△0.07	0.03
사고사망만인율	△0.84	0.27	0.29	△0.93

주) 2024년 지원사업의 지원 전후(1년) 증감은 2025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 산출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기반이 취약한 영세소규모사업장이 대부분(30인 미만이 약 90%)이고, 융자지원 사업장의 근로자 수 자체가 최근 5년간 평균 2,802명 증가함에 따라 사고재해자 수가 다소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음.[43)]

이 사업 지원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2025년 8월말을 기준으로 총 2,541개소를 지원하였는데 이 중 약 12.4%인 314개소가 지게차 교체를 명목으로 융자를 받았음.

노후 지게차 등을 교체해서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여 산재가 예방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으나, 산재예방시설을 위한 융자가 아닌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저리 융자로 사용되는 측면도 일부 존재할 것으로 보임.[44)]

---

43) 또한,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 사업장의 지원 전후 재해감소율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모두 감소하였으며, '융자지원시설 설치공정'만으로 한정한 지원 전후 재해감소율은 매년 감소하는 등 직접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함.

44) 지게차 산업재해는 과속·과적·충돌, 경사면 작업이나 과속 중 추락 등으로 발생함.

[2021~2025년(8월말) 산재예방시설융자 품목별 지원 실적]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8월)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총계		2,525	319,051	2,691	356,327	2,540	356,328	2,795	458,640	2,541	346,313
안전인증 위험기계 기구	소계	391	85,431	574	89,152	562	99,367	773	141,562	591	107,952
	프레스	194	49,976	226	39,199	172	35,025	212	40,868	136	30,753
	크레인	41	4,820	35	5,382	47	6,656	60	10,143	28	3,857
	사출성형기	104	23,615	162	22,829	126	18,773	166	23,050	111	14,318
	전단기, 절곡기	42	6,054	151	21,742	168	22,464	119	16,496	99	13,680
	기타	10	966		-	49	16,449	216	51,005	217	45,345
자율안전 확인대상	소계	928	179,831	1,119	222,445	806	178,635	1,587	277,190	1,263	181,970
	공작기계	654	129,916	624	116,318	574	126,457	1,279	217,678	1037	147,310
	목재가공용 기계	127	11,789	153	17,298	119	14,250	132	13,268	138	12,462
	산업용로봇	17	4,834	19	4,181	24	5,068	37	10,248	21	2,706
	연삭기, 연마기	51	6,231	35	6,090	40	9,752	42	8,614	43	6,897
	기타	79	27,060	288	78,559	49	23,107	97	27,382	24	12,595
작업환경 개선	소계	77	18,323	67	14,628	256	45,833	158	29,067	370	43,745
	국소 배기장치	8	2,020	17	3,077	84	12,769	21	3,880	1	150
	기타	69	16,303	50	11,552	172	33,065	137	25,187	369	43,595
기타	소계	1,129	35,466	931	30,102	916	32,493	277	10,822	317	12,646
	지게차	1,122	34,422	930	30,002	916	32,493	277	10,822	314	12,256
	기타	7	1,044	1	100	-	-	-	-	3	39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융자지원 품목은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거나 위험기계·기구 및 시설 등을 신규로 추가 투자하는 비용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사고성 재해 다발 10대 위험설비(장비) 품목(지게차 포함)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향후 자동제어장치(안전속도) 탑재 설비 지게차 등 최근 기술변화 등을 반영한 스마트 안전 품목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등 산재예방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5.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신규): 향후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한 사업성과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출연금을 교부받아 일터 지킴이 1,000명을 채용하여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 계획안은 445억 7,8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음.[45)]

[2026년도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업종별재해예방	163,152	163,152	234,829	71,677	43.9
사고성재해집중관리	13,386	13,386	60,234	46,848	350.0
안전한 일터 지킴이	-	-	44,578	44,578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6년도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직접 채용 인건비) 800명 × 3,561만 4,000원
- (위촉수당) 200명 × 2,200만원
- (운영비) 1,000명×1,166만 7,000원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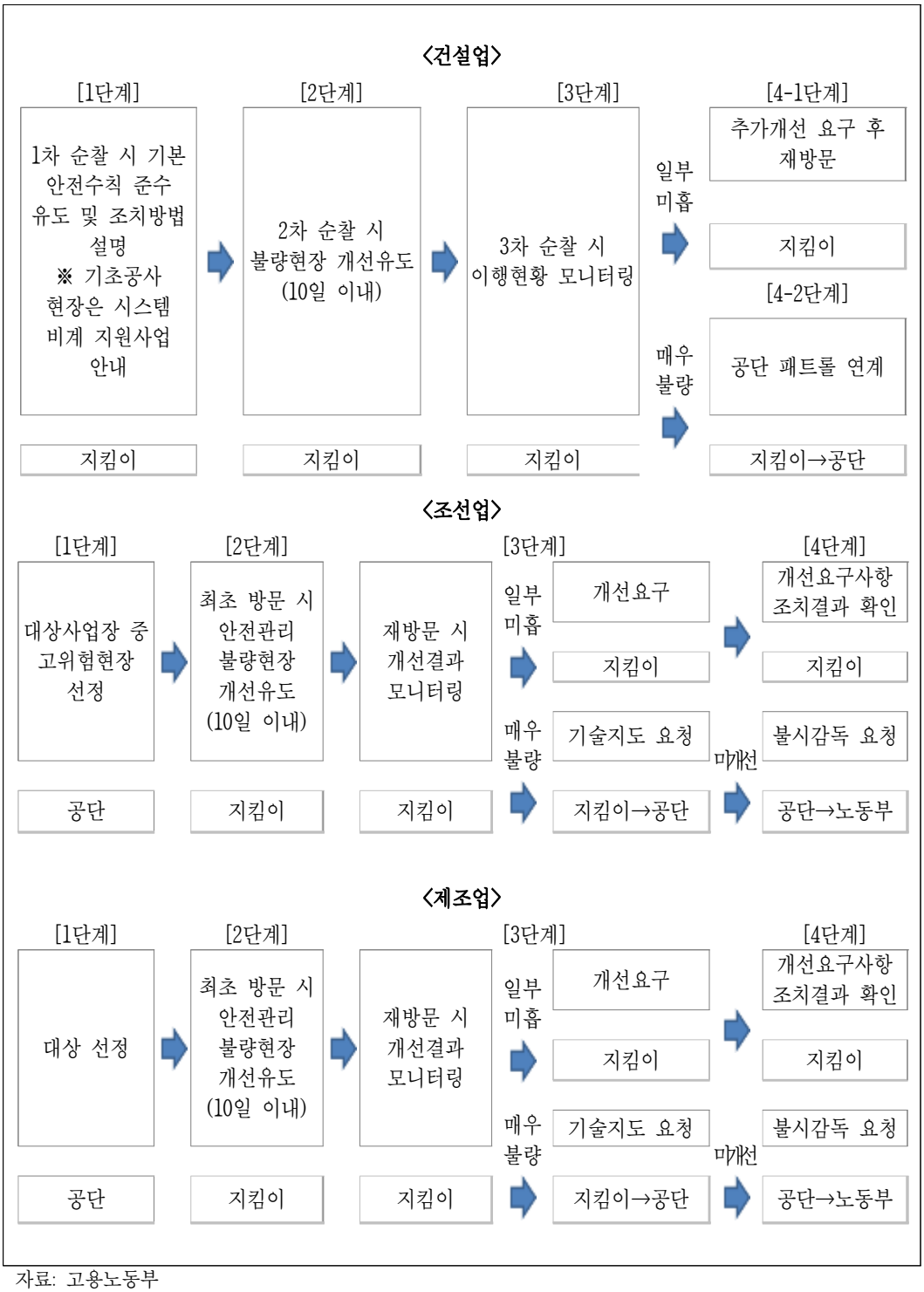
이 사업을 통해 채용된 안전일터 지킴이는 직접 채용(기간제 근로자) 800명, 위촉인원 200명으로 구성되며, 안전일터 지킴이는 건설업・조선업・제조업과 같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의 현장을 불시순찰 및 집중 점검할 예정임.[46)]

안전일터 지킴이는 순찰시 안전수칙 준수 유도 및 조치방법을 설명하고 개선을 유도하며, 미흡하거나 불량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불시감독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임.

4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업종별재해예방(4151-350)(산업안전보건정책관)

46) 고용노동부는 또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① 직무교육(1회) 및 능력향상교육(월 1회 이상), ② 청렴・윤리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③ 표준업무지침(SOP) 제작・배부, ④ 우수사례 발표대회 실시 및 포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추진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사고사망만인율('24년 0.39‰)의 OECD 평균(0.29‰) 수준 감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부족한 재해예방 인력을 안전 일터 지킴이로 보완(기간제 직접 채용 800명)하여 사망사고 취약 업종 및 취약 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임.

예를 들어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범위는 약 4.4%에 불과하나, 지킴이를 통해 산재예방 커버리지를 52.6%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조선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다발하지만 공단의 지도·점검이 부족한(약 1.6%) 완성배·블록업체의 협력업체를 전수(반복)지원 할 예정이며,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 사고사망의 약 82%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공단의 점검비율을 6.6%에서 21.8%로 확대할 계획임.

[안전한 일터 지킴이 순찰목표 및 점검비율 목표]

구분	사업장수 (A, 개소)	지킴이 (명)	순찰목표 (B, 개소·회)	점검비율(%) (점검사업장 수)	
				지킴이 도입 전 ('25년, C)	지킴이 도입 후 ('26년,(B+C)/A)
합 계	713,539	800	235,000	5.6 (39,853)	36.2 (257,989)
건설업	311,184	500	150,000	4.4 (13,769)	52.6 (163,769)
조선업	8,266	100	25,000 (8,136×3회≒25,000)	1.6 (130)	100.0 (8,266)
제조업	394,089	200	60,000	6.6 (25,954)	21.8 (85,954)

주) 점검비율 = (공단 점검 사업장수 + 순찰목표)/전체 사업장수)×100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첫째, 2026년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긴급히 편성되어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나, 향후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해 적절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실적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정식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정과제인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사업으로, 2026년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또한 2026년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방향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식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따라서 향후 정식사업 추진 여부 결정 시 적절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실적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획한 규모의 지킴이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연초 예정된 지킴이의 채용・위촉[47]을 위한 인지도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전한 일터 지킴이 채용·위촉 계획(안)]

□ (기간제 채용 지킴이) 연초에 일괄 채용을 진행하며, 사업 운영 중 중도 퇴사 등 결원에 대해서는 수시 채용으로 충원 예정

공고, 접수 (인원 800명)	⇒	서류심사	⇒	면접심사 대상자 통보	⇒	면접심사	⇒	면접결과 본부보고	⇒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보
1.19.(월)~ 2.4.(수)		2.5.(목)~2. 6.(금)		2.9.(월)		2.10.(화)~2. 11.(수)		2.12.(목)		2.13.(금)

※ 세부 추진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촉 지킴이) 산재 취약 시기에 반기별 모집 공고를 진행하여 위촉(모집 인원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예정)

* (1차 모집 공고) '26.1월 중 → 2~7월 활동
(2차 모집 공고) '26.7월 중 → 8~12월 활동

1차 공고 및 채용 (인원 200명)	⇒	2차 공고 및 채용 (인원 200명)
상반기(1월 중) - 2~7월 활동		하반기(7월 중) - 8~12월 활동

자료: 고용노동부

47) 노동단체(133개 본부・지부)와 경영자총연합회(15개)별 약 1명씩 위촉 예정임.

한편 이 사업의 경우 한시적 사업으로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가재정법」 제38조[48]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으나, 향후 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과거 유사사업인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도 제조·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짧은 기간 동안 수시로 작업 공정이 변경되어 불시 방문 효과가 큰 건설업·조선업과 달리 제조·서비스업은 작업 공정이 일정하여 안전보건지킴이의 역할이 크지 않았고 사업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지원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제조업 지원 시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과거 ‘만 55세 이상 퇴직자’ 중 해당 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또는 자격 소지자를 건설업 및 조선업의 안전보건지킴이로 채용하여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였음.

이후 2021년 제2회 추경(7월)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제조·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지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요건을 완화하여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 중 해당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22년에 건설업·조선업의 안전보건지킴이만 계속 지원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안전보건지킴이는 지원을 중단하였는데, 짧은 기간 동안 수시로 작업 공정이 변경되어 불시 방문 효과가 큰 건설업·조선업과 달리 제조·서비스업은 작업 공정이 일정하여 안전보건지킴이의 역할이 크지 않았고 채용이 부진하여 사업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임.[49]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과거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제조업에 지원예정인 200명의 일터 지킴이가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48)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49) 제조·서비스업은 위험한 작업공정 및 위험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지원 필요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작업 공정이 일정한 분야이므로 상대적으로 위험관리 활동의 필요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임.

16.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신규):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없는 지역 특화 산재예방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 계획안은 143억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0]

[2026년도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업종별재해예방	163,152	163,152	234,829	71,677	43.9
자율안전관리체계구축	95,823	95,823	120,702	24,879	26.0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	-	14,321	14,321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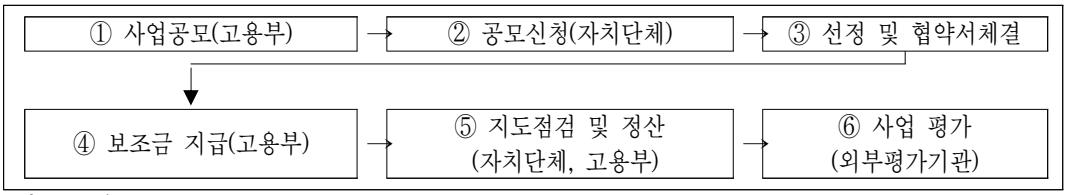
[2026년도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자치단체 보조금: 140억원(10개소×14억원)
○ 공단 출연금: 2억 2,100만원
○ 운영비: 1억원 (17개 시도 × 588만 2,000원 = 1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광역 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을 발굴·설계하여 신청하면 심사·선정 후 1개소 당 14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임.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추진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5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업종별재해예방(4151-350)(산업안전보건정책관)

나.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보조사업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다른 산재예방 사업과 유사·중복없이 효율적으로 지역에 특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광역 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을 발굴·설계하여 신청하면 심사·선정 후 비용을 지원할 예정임.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업 예시(안)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컨설팅·지역 안전문화 확산·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이 이미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로 보임.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예시(안)]

❖ 사업 예시(안)

① 지역 업종·산업 특화 산재예방 사업

*(예시) ❶중대재해 다발 또는 고위험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점검, 시설 개선, 교육·캠페인 등 산재예방 패키지 지원 ❷소규모 건설 인허가권, 착공신고, 상하수도 맨홀 작업 등 밀폐공간 작업 신고 연계 개별 현장 안전수칙 준수 점검 ❸농·임·어업 관련 안전보건 지도·점검 등

②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역량 강화(5인 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③ 지역 안전문화 확산 사업(찾아가는 산재 예방 교육, 세미나, 포럼, 캠페인 등)

④ 지역 업종별 안전 네트워크 구축 ⑤ 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예를들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은 업종별재해예방(4152-350)의 내내역사업인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를 통해 지원되고 있고,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 세부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 지원은 클린사업장조성지원(4151-350)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계획 심사 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제외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시 중복여부를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또한 공모신청에 대한 심사 시 유사·중복사업 제외 또는 사업변경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시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체크리스트]

점검 내용	점검 결과
1. 사업의 내용이 국가・자치단체 자체 사업과 유사・중복이 있는지	□ 예(1-2로 이동) □ 아니오 (종료)
1-2. 사업 내용의 유사・중복이 있다면, 기존 사업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2. 유사・중복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는지	□ 예 (2-1로 이동) □ 아니오 (2-2로 이동)
2-1. 사업의 지원대상이 중복된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 국비 □ 지방비 □ 국비+지방비
2-1-2. 사업의 지원대상이 중복된다면,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 기존 유사・중복사업 지원대상 :
	■ 시행하려는 사업 지원대상 :
2-2. 사업의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 기존 유사・중복사업 지원대상 :
	■ 시행하려는 사업 지원대상 :
3. 유사・지원 사업과 지원수단(방법)이 중복되는지	□ 예(3-1로 이동) □ 아니오(3-2로 이동)
3-1. 지원수단(방법)이 중복된다면, 사업의 지원수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기존 유사・중복사업 지원수단(방법) □ 지원금 □ 컨설팅・기술지도 □ 교육・훈련 □ 기타(지원수단 작성)
	■ 시행하려는 사업 지원수단(방법) □ 지원금 □ 컨설팅・기술지도 □ 교육・훈련 □ 기타(지원수단 작성)
3-2. 지원수단(방법)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지원수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기존 유사・중복사업 지원수단(방법) □ 지원금 □ 컨설팅・기술지도 □ 교육・훈련 □ 기타(지원수단 작성)
	■ 시행하려는 사업 지원수단(방법) □ 지원금 □ 컨설팅・기술지도 □ 교육・훈련 □ 기타(지원수단 작성)
4. 1~3번 모두 중복임에도,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보험이 성립한 이후에 현장을 인지하고, 운영 중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도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를 통해 사전에 유해위험요인 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능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지역에 특화된 산재예방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7.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사업(신규):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한 포상금 지급 방안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사업은 위험 상황 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 계획안은 111억 4,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1)]

[2026년도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	-	11,142	11,142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신고 대상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위반, 산재 은폐, 정부의 작업 중지·사용 중지 명령 위반 등이며,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의 경우 1건당 50만원, ② 고의적인 법 위반(산재은폐, 정부명령 미이행 등)의 경우 1건당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2026년도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일반수용비(210-01): 2,200만원**
○ **사업추진비(240-01): 2,000만원**
○ **포상금(310-03) : 111억원**
① (안전·보건조치) 30,000건[1)]×70%[2)]×50만원[3)] =105억원
1) 최근 3년간 신고 건수 평균 15,000건→ 포상금제도 도입 시 신고 건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전체의 약 70%로 추정
3) 1건당 500,000원 지급
② (고의적인 법 위반) 100건[4)]×500만원[5)] = 5억원
4) 고의적인 법 위반 신고 건수
5) 고의적인 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
③ (우수 기관) 5개[6)]×반기×1,000만원 = 1억원
6) 반기별 우수 자치단체 및 우수 지방노동관서 총 5개 선정

자료: 고용노동부

5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4154-357)(산재예방감독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의 경우 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심사 중인 상황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6년 신설 예정인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의 경우 타 포상금과 달리 포상금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신고포상금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하였고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52]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의 경우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의 경우 건당 50만원, ② 고의적인 법 위반의 경우 1건당 500만원으로 포상금 지급 단가를 설정하였으나,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포상금액은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의 경우 1건당 50만원, ② 산재은폐, 정부이행명령 미이행과 같은 고의적인 법 위반의 경우 1건당 500만원으로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단가를 규정하고 있음.[53]

그러나 유사입법례 및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지법」제52조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은 [별표4]에서 사안별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

52) 신고포상금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25.9.18. 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213114, '25.10.14. 이용우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213570)

53) 허위·가명 신고, 조사·처분 완료건, 근로감독관의 신고, 직무상 알게 된 관련인(안전지킴이 등)의 신고, 사전 공모·부정신고 등은 제외될 예정임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의 지급기준(건당)
1.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법 제52조제1호	10만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법 제52조제2호	30만원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법 제52조제3호	50만원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10만원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50만원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5호	30만원
7.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6호	10만원
8.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7호	30만원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는 법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제6항 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제4항 6의2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의 경우 50만원, 고의적인 법 위반은 그 중대성을 고려하여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설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은 대부분「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안전조치, 제39조 보건조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한 규칙에 대해 경중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위반 시 대부분 유사한 벌칙이 부과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안전·보건 조치 준수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조치도 사소한 사항으로 보기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부터 의무 준수를 강조하다 보면 당연한 문화로 정착되어 재래형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함.

고용노동부의 설명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의 경우 차등적인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고의적인 법 위반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규정 등에서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정된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한액을 500만원 등으로 설정 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 출>

18.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신규): 고용개선장려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의무고용 미달 중소기업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의무이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2026년 계획안은 18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4)]

[2026년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장애인고용장려금	377,377	377,377	403,220	25,843	6.8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	1,850	1,850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6년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16억 5,000만원 = (534명 × 38만 6,000원 × 8개월)
  ① 534명 = 786명('24년도 50인 이상 ~ 100인 미만 사업체 중증장애인 신규채용 인원 × 68.0%('24년 50인 이상 ~ 100인 미만 사업체 의무고용 미이행률)
  ② 38만 6,000원 = 평균 단가[(중증남성 35만원×64.0%)+(중증여성 45만원×36.0%)]
  * '24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 지급연인원 중 남성 비율 64.0%, 여성비율 36.0%
  ③ 8개월 = '26년 사업운영기간('26.4월 고용률 발표 후 '26년 5월부터 8개월간 운영)
- 2억원 (운영비: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자료: 고용노동부

5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장애인고용장려금(1452-303)(통합고용정책국)

고용노동부는 부담금 징수 위주의 규제 일변도 의무고용제도에서 벗어나 기업의 의무고용률 이행 등 점진적 고용 개선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을 신설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 사업의 대상은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의무고용 미달 사업체로,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있으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55]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납부 대상은 아님.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하며,(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최대 1년간 기존 장려금의 50%(중증 남성 35만원, 중증 여성 45만원)를 지원할 예정임.

[2026년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내용]

ㅇ (대상) 상시 50인 이상 ~ 100인 미만의 의무고용 미달 사업체 ㅇ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ㅇ (지원수준) 최대 1년간 기존 장려금의 50%* 지원 * 중증 남성 350천원, 중증 여성 450천원

자료: 고용노동부

5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첫째, 장애인고용개선 장려금은 장애인고용의무를 위반한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 받고, 오히려 의무를 준수한 기업들이 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구조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56]

다만, 동 법 제33조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하고 있음. 이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의 영세 사업장들의 과도한 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신규로 편성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5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인데, 해당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였더라도 추가적인 중증 장애인의 고용 증가가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을 1명만 추가 고용하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원이 이루어짐.

---

5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구조]

	50~10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의무고용 준수		장애인의무고용 위반	
	중증 장애인 고용 증가 시	중증 장애인 고용 불변 시	중증 장애인 고용 증가 시	중증 장애인 고용 불변 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지원 불가	지원 불가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불가	**지원 불가**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 60인 기업은 의무고용인원은 1명[57]이고,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은 2명인데,[58] 2명의 장애인을 채용하여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였으나, 추가적인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가 없는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도 받을 수 없고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한 명도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수 60인 기업이 중증 장애인 1명을 채용한 경우 해당 중증 장애인 채용에 대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지급됨.

2025년 기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1만 6,774개소 중 9,660개소(57.6%)이고, 이 기업들이 중증 장애인을 한 명만 더 고용할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임.

고용노동부는 사업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요건을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로 한정하였고, 지원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장 1년으로 제한하였으며, 지원금액도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50% 수준(중증남성 월 35만원, 중증여성 월 45만원)으로 책정하였다는 입장임.

새로운 장려금 제도의 신설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현재 요건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장려금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7) 5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근로자의 총수에 1000분의 31을 곱한(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인원임.(60×31/1,000=1.86)

58) 사업주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초과한 인원에 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인원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임.

둘째, 장애인고용개선 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사업주 지원 제도에 비해 요건이 완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타 국가들의 장애인고용의무 위반 시 제재 정도·사업주 지원 기준·규모 등을 제도 설계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기업을 결정하고 있음. 독일은 20인 이상 기업, 일본은 43.5명[59] 이상 기업, 한국은 50인 이상 기업, 프랑스는 모든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함.

또한 사업체에서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은 100인 이상 기업(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외), 독일과 프랑스는 20인 이상 기업(독일의 경우 1인 이상 20인 미만 제외), 일본은 101인 이상 기업(43.5명 이상 101인 미만 제외)이 부담금의 적용대상이 됨.

독일·프랑스는 20인 이상 기업들도 사업체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설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일본의 보장금[60] 제도도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61] 5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게 부담금을 면제하면서 기준고용률에 대한 조건 없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국의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지급 요건이 완화된 측면이 있음.

장려금을 지급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이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나, 고용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국가들의 장애인고용의무 위반 시 제재 정도, 사업주 지원 기준·규모 등을 제도 설계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62]

---

59)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하며, 중증 신체·지적장애인은 1명을 2명으로, 단시간 중증 신체·지적장애인은 1명으로 산정함.

60) 지급대상은 100명 이하의 사업주 중 장애인을 4% 또는 6명 중 많은 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지급단가는 장애인 1명당 2만 1천 엔임.

61) 「해외 주요국가 장애인고용현황 및 고용정책 비교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3

62)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해외 주요국가 장애인고용현황 및 고용정책 비교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고용률을 기준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괄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시설장비 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이 일률적이며 직업훈련- 고용- 고용유지 단계별로 촘촘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 사업주의 고용 유인책, 즉 고용 동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분석함.
반면, 비교국가인 일본, 독일, 프랑스는 장애인 특성과 사업주 여건에 따라 사업주 지원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고령장애인, 정신장애인, 청년장애인 등을 신규 고용하거나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이지만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금, 지원기간 등을 제도화 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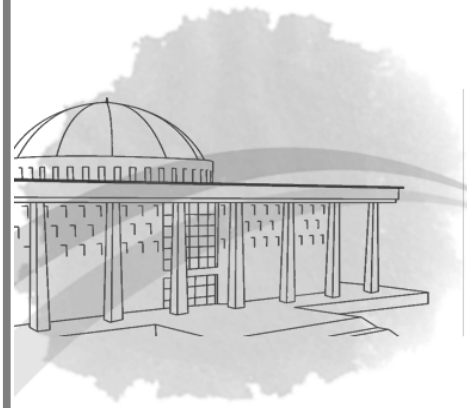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고용의무제도 국가별 비교(2023년 기준)]

<table>
<tr><th colspan="2">국가</th><th>한국</th><th>독일</th><th>프랑스</th><th>일본</th></tr>
<tr><td colspan="2">사업체 고용의무 적용대상</td><td>50인 이상</td><td>20인 이상</td><td>모든 기업</td><td>43.5명</td></tr>
<tr><td colspan="2">사업체 부담금 적용대상</td><td>100인 이상</td><td>20인 이상</td><td>20인 이상</td><td>101인 이상</td></tr>
<tr><td rowspan="2">고용의무 적용률</td><td>정부</td><td>·3.6%</td><td>·5.0~6.0%
(6.0%는 일부 연방 최고기관)</td><td>·6.0%</td><td>·(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2.6%
·(교육위원회) 2.5%</td></tr>
<tr><td>공공
민간</td><td>·(공공) 3.6%
·(민간) 3.1%</td><td>·5.0%</td><td>·6.0%</td><td>·(민간) 2.3%
·(특수법인) 2.6%</td></tr>
<tr><td colspan="2" rowspan="2">사업체 부담금 부과방법</td><td>고용률에 따른 정액부담금</td><td>고용률에 따른 정액 부담금</td><td>사업체 규모별 차등</td><td>고정액</td></tr>
<tr><td>정부 부과</td><td>정부 부과</td><td>정부 부과</td><td>정부 미부과</td></tr>
<tr><td colspan="2" rowspan="2">사업주 지원제도</td><td>고용의무대상 / 비의무고용대상 / 부담금부과대상</td><td rowspan="2">직업훈련-고용유지 등 단계별 지원</td><td rowspan="2">채용지원, 고용유지지원, 대체계약지원</td><td>고용의무대상 / 비의무고용대상 / 부담금부과대상</td></tr>
<tr><td>장려금</td><td>보장금 / 조정금</td></tr>
</table>

자료:「해외 주요국가 장애인고용현황 및 고용정책 비교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동 보고서는 이러한 비교국가의 제도들을 벤치마킹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취약한 상태에 놓인 장애인을 표적화하고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수입은 27조 8,85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43억원(0.9%) 증가함.

예산은 2조 9,7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825억원(75.8%) 증가하고, 기금은 24조 9,1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83억원(△4.0%) 감소함.[1)]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6,921	16,921	29,746	12,825	75.8
기 금	259,488	259,488	249,105	△10,383	△4.0
총수입	276,409	276,409	278,852	2,443	0.9

문의 : 윤희호 예산결산조사관 yoonhh@assembly.go.kr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은 62조 4,9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3,141억원(7.4%) 증가함.

예산은 24조 2,8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611억원(6.9%) 증가하고, 기금은 38조 2,042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7,530억원(7.8%) 증가함.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27,248	232,896	242,859	15,611	6.9
기 금	354,512	366,705	382,042	27,530	7.8
총지출	581,760	599,601	624,901	43,141	7.4

나. 예산안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세입예산안은 해당 5개 회계에서 15조 6,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9,073억원(6.1%) 증가함.

[2026년도 국토교통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2,010	2,010	2,440	430	21.4
교통시설특별회계	137,856	138,156	146,585	8,729	6.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	8	8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49	2,049	1,624	△425	△20.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837	5,837	6,176	339	5.8
합 계	147,760	148,059	156,833	9,073	6.1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개 회계(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4조 5,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595억원(12.8%) 증가함.

[2026년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234,213	242,222	275,760	41,547	17.7
교통시설특별회계	137,856	138,156	146,585	8,729	6.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7	137	88	△49	△35.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36	2,036	1,611	△425	△20.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380	20,610	21,172	792	3.9
합 계	394,621	403,160	445,216	50,595	12.8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2개 기금(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08조 3,045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6,539억원(4.5%) 증가함.

[2026년도 국토교통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592	2,592	2,533	△59	△2.3
주택도시기금	1,033,915	1,039,975	1,080,512	46,597	4.5
합 계	1,036,506	1,042,567	1,083,045	46,539	4.5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토교통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58개(2,675억 3,1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일반회계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12·29 여객기사고 피해구제’ 사업으로 13억 3,300만원,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을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460억원,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에 88억 2,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특별회계에서는 디지털도로 AI분야 제품 상용화 지원을 위한 ‘디지털도로 AI신기술 지원사업’으로 42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건설’ 사업에 409억 8,000만원, 김포공항 관제탑 신축을 위한 ‘김포공항 시설개선’ 사업에 23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토교통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12·29 여객기사고 피해구제	1,333
2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46,000
3	AI 시티조성확산	4,000
4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400
5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8,827
6	국토교통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R&D)	2,000
7	지역단위 재난위험도 AI시뮬레이션기반 재난안전관리기술개발(R&D)	2,000
8	스마트점검·진단 및 측량기술 성능평가체계개발(R&D)	1,500
9	스마트 지하안전관리기술개발(R&D)	1,000
10	액체수소 저장탱크 및 적하역시스템 기술개발(R&D)	4,000
11	초연결 지능도시 핵심기반기술개발(R&D)	4,000
12	디지털트윈국토정보보안기술개발(R&D)	2,000
13	공동주택 건설생산성 혁신을 위한 다용도-건설작업로봇 설계 및 통합관리기술개발(R&D)	2,009
14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R&D)	2,00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15	200m급 목구조 대공간건축물 건설기술개발(R&D)	1,700
16	운전자 페달오조작 방지 및 평가기술개발(R&D)	2,600
17	자율주행 글로벌혁신클러스터 연구개발사업(R&D)	3,400
18	워킹쓰루 교통결제시스템 표준 및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사업(R&D)	3,000
19	디지털트윈기반 GTX환승 안전 및 혁신기술개발사업(R&D)	4,000
20	지역특화형 자율주행서비스 모델 및 실증기술개발(R&D)	4,500
[교통시설특별회계]		
21	디지털도로 AI신기술 지원사업	42,000
22	천안목천-삼룡 국도건설	3,106
23	청주미원-괴산문광 국도건설	3,457
24	제천봉양-원주신림 국도건설	8,702
25	서천화양-기산 국도건설	1,082
26	고창상하-해리 국도건설	1,965
27	군위삼국유사-우보 국도건설	1,988
28	서해선-경부고속연결선 철도건설	2,000
29	거창거창송정-대평 국도건설	2,132
30	장흥유치-영암금정 국도건설	2,019
31	칠원-창원 고속도로건설	5,000
32	제천-영월 고속도로건설	40,980
33	도로인프라국가 성능시험장 운영	1,657
34	무안공항 차세대전력망 구축	3,035
35	인천공항 해안경계 보강사업비 대납금 상환	15,000
36	김포공항 시설개선	2,300
37	민간중소형 드론개발 및 군실증 협업사업	4,000
38	과적단속 효율화를 위한 화물차 중량정보 플랫폼구축 및 실증기술개발사업(R&D)	4,000
39	디지털도로기반 클라우드형 AI-ITS센터 플랫폼 운영관리기술개발사업(R&D)	1,275
40	고속철도 자갈궤도구간 사전제작형 급속개량 콘크리트궤도 및 시공장비개발(R&D)	2,000
41	스마트철도 물류혁신 기술개발(R&D)	2,000
42	철도차량 차륜 자동검사시스템 기술개발(R&D)	2,169
43	초고속 하이퍼튜브 아진공 핵심기술개발(R&D)	1,400
44	빅데이터기반 철도네트워크 설계 및 운영기술개발(R&D)	3,000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45	항공기이탈방지용 긴급제동 활주로 시스템(EMAS) 개발(R&D)	1,965
46	공항조류탐지 및 한국형 조류관리 핵심기술개발(R&D)	1,5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7	중산간도로(봉개동-와산리)	2,000
48	중산간도로(귀덕리-상가리)	1,300
49	천안수신 산단진입도로	300
50	아산리더스밸리 산단진입도로	50
51	음성생극 제2산단진입도로	200
52	삼성테크노밸리 산단진입도로	500
53	증평제3일반 산단진입도로	150
54	김제지평선 제2산단진입도로	400
55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사업	1,530
56	경산상림 산단진입도로	650
57	오창나노테크 산단진입도로	300
58	나주에너지 국가산단진입도로	150
총지출		267,531

한편,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주거급여지원’ 사업, ‘청년월세지원’ 사업, ‘전세사기피해방지및지원사업’ 등 총 202개임.[3)]

[2026년도 국토교통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주거급여지원	3,036,823	3,230,896	194,073	6.4
2	청년월세지원	77,737	129,953	52,216	67.2
3	전세사기피해방지및지원사업	5,350	7,180	1,830	34.2
4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	545,457	760,561	215,104	39.4
5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288,382	465,361	176,979	61.4
6	철도치안관리	10,234	13,599	3,365	32.9
7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	27,454	114,812	87,358	318.2
8	일반철도안전및시스템개량	561,934	595,552	33,618	6.0
9	철도기본계획수립	10,005	18,932	8,927	89.2
10	PSO보상	362,277	399,591	37,314	10.3
11	화물자동차안전운임제운영비	864	1,178	314	36.3
12	스마트공동물류센터건립지원	2,000	3,560	1,560	78.0
13	성과확산형국토교통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R&D)	3,501	5,399	1,898	54.2
14	TBM굴진향상을위한연속굴착 기술개발(R&D)	2,950	7,872	4,922	166.8
15	신소재기반부유식구조체기술개발 (R&D)	2,943	7,385	4,442	150.9
16	그린해상교량기술개발(R&D)	1,100	5,900	4,800	436.4
17	건설현장다목적고소작업을위한로봇플랫폼및XR기반인간-로봇협업기술개발 (R&D)	1,500	3,700	2,200	146.7
18	건축물화재확산방지및피난성능향상기술개발(R&D)	1,500	4,000	2,500	166.7
19	스마트+빌딩핵심기술개발(R&D)	2,100	5,048	2,948	140.4
20	고층형ZEB3등급공동주택핵심 기술개발(R&D)	2,100	7,087	4,987	237.5
21	지하공간활용도시기반복합플랜트 실증연구(R&D)	339	2,393	2,054	605.9
22	비전통오일생산플랜트건설핵심기술개발사업(R&D)	30,993	47,272	16,279	52.5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23	공간지식추론엔진기술개발(R&D)	2,128	3,807	1,679	78.9
24	빅데이터기반인공지능도시계획기술개발(R&D)	3,626	6,016	2,390	65.9
25	공동주택의고층・단지화및생산성제고를위한OSC고도화기술개발(R&D)	2,400	5,500	3,100	129.2
26	건축물해체기술고도화및건축폐기물자원화기술개발(R&D)	1,500	3,200	1,700	113.3
27	국토정보고도화를위한입체격자체계적용및활용기술개발(R&D)	2,400	6,900	4,500	187.5
28	사용후배터리안전관리및재제조유통순환기술개발사업(R&D)	2,400	6,000	3,600	150.0
29	건설산업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3,151	4,305	1,154	36.6
30	지상지하공간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정보화)	2,067	3,550	1,483	71.7
31	건설및지하안전관리	1,687	5,727	4,040	239.5
32	국가교통조사	4,658	6,138	1,480	31.8
33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	-	46,000	46,000	순증
34	UNESCAP분담금(ODA)	879	1,763	884	100.6
35	국토지형관리(정보화)	10,747	20,037	9,290	86.4
36	기후변화대응산단조성지원	230	975	745	323.9
[교통시설특별회계]					
37	고속도로조사	11,009	28,392	17,383	157.9
38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75,709	121,337	45,628	60.3
39	남양주-춘천1국도건설	6,372	22,827	16,455	258.2
40	남양주-춘천2국도건설	4,481	18,858	14,377	320.8
41	남양주-춘천3국도건설	9,721	30,489	20,768	213.6
42	남양주-춘천4국도건설	2,903	8,785	5,882	202.6
43	경부고속철도2단계	12,700	43,000	30,300	238.6
44	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	9,889	16,388	6,499	65.7
45	평창진부-강릉연곡국도건설	500	4,872	4,372	874.4
46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66,232	165,990	99,758	150.6
47	수소충전소구축	3,150	4,500	1,350	42.9
48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33,769	110,155	76,386	226.2
49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139,857	166,540	26,683	19.1
50	옥정-포천철도건설사업	25,600	74,224	48,624	189.9
51	대장-홍대광역철도	29,190	75,341	46,151	158.1
52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58,686	180,000	121,314	206.7
53	서산대산독곶-대로국도건설	2,409	14,774	12,365	513.3
54	서울지하철7호선청라연장	79,341	140,500	61,159	77.1
55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	26,700	46,013	19,313	72.3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56	이천-문경철도건설	1,500	34,800	33,300	2,220.0
57	장항선개량2단계	51,900	80,100	28,200	54.3
58	인제상남-기린국도건설	3,052	4,901	1,849	60.6
59	도담-영천복선전철	9,421	26,968	17,547	186.3
60	청송청송청운-부남감연국도건설	1,129	3,891	2,762	244.6
61	대구도시철도엑스코선건설	13,900	41,820	27,920	200.9
62	장항선(신창-대야)복선전철화	49,945	122,800	72,855	145.9
63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건설	10,000	37,000	27,000	270.0
64	강릉-제진철도건설	123,217	185,200	61,983	50.3
65	울산도시철도(트램)1호선건설	6,000	36,000	30,000	500.0
66	월곶-판교복선전철	171,983	205,000	33,017	19.2
67	공주신풍-유구국도건설	500	4,644	4,144	828.8
68	인천발KTX	35,000	114,298	79,298	226.6
69	천안-청주공항복선전철	23,383	72,600	49,217	210.5
70	수원발KTX	26,600	37,555	10,955	41.2
71	인덕원-동탄복선전철	212,064	456,300	244,236	115.2
72	수서-광주복선전철	27,700	98,600	70,900	256.0
73	대구산업선철도건설	120,952	191,800	70,848	58.6
74	석문산단인입철도	1,000	34,200	33,200	3,320.0
75	남부내륙철도	118,863	260,900	142,037	119.5
76	광주송정-순천전철화	19,092	167,200	148,108	775.8
77	문경-김천철도	6,000	14,700	8,700	145.0
78	충북선고속화	19,857	40,300	20,443	103.0
79	광주-강진고속도로	45,284	66,826	21,542	47.6
80	춘천사북오탄-오탄국도건설	1,347	6,540	5,193	385.5
81	호남선(가수원-논산)고속화	1,000	2,800	1,800	180.0
82	새만금신항인입철도	5,400	15,000	9,600	177.8
83	수색-광명고속철도건설	2,500	14,700	12,200	488.0
84	인천서구거점도-경기김포약암리광역도로	1,892	15,758	13,866	732.9
85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건설	72,832	109,954	37,122	51.0
86	신안비금-암태국도건설	7,777	10,263	2,486	32.0
87	계양-강화고속도로건설	148,031	313,080	165,049	111.5
88	제천-영월고속도로건설	-	40,980	40,980	순증
89	봉정-방문국대도건설	12,906	17,000	4,094	31.7
90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지원	1,443	2,805	1,362	94.4
91	도로안전및환경개선(총액)	720,710	734,983	14,273	2.0
92	디지털도로AI신기술지원사업	-	42,000	42,000	순증
93	편의시설조성	11,970	25,144	13,174	110.1
94	초장대K지하고속도로인프라안전및효율향상기술개발(R&D)	2,935	6,495	3,560	121.3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95	내연기관차전기차전환안전성검증기술개발및튜닝승인실증(R&D)	1,500	8,900	7,400	493.3
96	서해선복선전철	24,985	37,000	12,015	48.1
97	고성-통영국도건설	19,911	41,827	21,916	110.1
98	수송차량구입	77,872	197,891	120,019	154.1
99	김포도시철도전동차증차한시지원	4,590	6,120	1,530	33.3
100	초고속하이퍼튜브철도인프라핵심기술개발(R&D)	3,680	4,850	1,170	31.8
101	내구연한도래노후디젤기관차대체를위한친환경수소전기기관차기술개발(R&D)	4,585	11,603	7,018	153.1
102	철도종사자의인적오류분석・평가・예방기술개발(R&D)	6,920	9,752	2,832	40.9
103	수소전기동차실증(R&D)	1,000	11,718	10,718	1,071.8
104	데이터기반철도시스템안전평가·예측기술개발(R&D)	1,500	5,300	3,800	253.3
105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34,674	55,452	20,778	59.9
106	광역버스공공성강화지원	163,774	197,112	33,338	20.4
107	수소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4,700	9,400	4,700	100.0
108	대중교통비환급지원	237,460	527,440	289,980	122.1
109	제주공항시설개선	2,321	14,035	11,714	504.7
110	일반공항시설관리	314	117,653	117,339	37,369.1
111	울릉도소형공항건설	25,370	114,900	89,530	352.9
112	흑산도소형공항건설	2,955	4,845	1,890	64.0
113	새만금신공항건설	63,186	120,000	56,814	89.9
114	공항소음대책	12,909	19,904	6,995	54.2
115	항공기사고조사및장비유지	1,649	5,212	3,563	216.1
116	항공기안전인증및감독활동	724	1,184	460	63.5
117	국가항공안전정보수집분석	1,687	2,870	1,183	70.1
118	인천공항해안경계보강사업비대납금상환	-	15,000	15,000	순증
119	드론종합인프라구축및운영	10,185	19,477	9,292	91.2
120	AIXR기반비행장원격관제운용기술개발(R&D)	1,500	3,596	2,096	139.7
121	도심지드론운용위험도예측및안전성평가기술개발(R&D)	1,500	4,500	3,000	200.0
122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핵심기술개발사업(R&D)	21,155	30,684	9,529	45.0
123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운영	250	560	310	124.0
124	신장-복용국도건설	1,652	5,257	3,605	218.2
125	구미-군위IC국도건설	4,871	8,146	3,275	67.2
126	벌교-주암3국도건설	46,711	60,487	13,776	29.5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127	와룡-법전국도건설	10,001	30,000	19,999	200.0
128	남일고은-청주상당국도건설	3,823	11,336	7,513	196.5
129	남일-금산국도건설	4,517	8,978	4,461	98.8
130	부안-흥덕국도건설	1,507	7,939	6,432	426.8
131	안흥-방림국도건설	37,542	75,675	38,133	101.6
132	양구-원통국도건설	9,941	31,081	21,140	212.7
133	양남-감포국도건설	7,082	14,270	7,188	101.5
134	천안성환-평택소사국도건설	7,842	19,148	11,306	144.2
135	천안시계-연기소정국도건설	7,662	10,776	3,114	40.6
136	포천이동-철원서면국도건설	4,577	6,876	2,299	50.2
137	포항-안동1-1국도건설	34,137	50,550	16,413	48.1
138	화순동면-송광봉산국도건설	10,266	19,910	9,644	93.9
139	신안압해-화원국도건설	46,096	91,693	45,597	98.9
140	여수화태-백야국도건설	69,336	109,508	40,172	57.9
141	정선임계-동해신흥국도건설	12,968	22,277	9,309	71.8
142	산청신안-생비량국도건설	26,651	36,016	9,365	35.1
143	태안고남-창기국도건설	20,735	45,570	24,835	119.8
144	순창인계-쌍치국도건설	18,580	42,698	24,118	129.8
145	태백-미로2-2국도건설	4,486	9,765	5,279	117.7
146	용인처인이동-남동국도건설	500	85,564	85,064	17,012.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7	태화강-송정광역철도	3,312	10,908	7,596	229.3
148	충청권광역철도1단계	38,491	54,719	16,228	42.2
149	광주하남-장성삼계광역도로	5,000	8,040	3,040	60.8
150	혼잡도로건설	105,615	134,641	29,026	27.5
151	국가지원지방도건설	265,061	285,716	20,655	7.8
152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자율)	-	23,939	23,939	순증
153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자율)	-	68,308	68,308	순증
154	스마트시티확산사업(자율)	-	19,800	19,800	순증
155	도시재생사업(자율)	-	341,138	341,138	순증
156	노후공단재정비지원(자율)	-	16,436	16,436	순증
157	초정-화명광역도로건설	1,000	1,800	800	80.0
158	광역BRT구축	18,215	25,347	7,132	39.2
159	버스공영차고지지원(자율)	-	28,819	28,819	순증
160	스마트시티확산사업(지원)	-	19,400	19,400	순증
16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지원)	400	580	180	45.0
162	캠퍼스혁신파크조성	4,000	14,150	10,150	253.8
163	오창테크노산단진입도로	3,835	7,026	3,191	83.2
164	장현도시첨단산단진입도로	6,000	9,559	3,559	59.3
165	김해대동첨단산단진입도로	2,310	3,995	1,685	72.9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166	금호워터폴리스산단진입도로	4,140	6,700	2,560	61.8
167	사천항공산업대교건설	5,350	7,460	2,110	39.4
168	천안북부BIT산단진입도로	3,265	4,794	1,529	46.8
169	공주동현산단진입도로	500	710	210	42.0
170	청주북이산단진입도로	1,000	4,352	3,352	335.2
171	울산미포국가산단(주전-어물동)진입도로	4,060	6,175	2,115	52.1
172	서오창테크노밸리산단진입도로	1,000	5,000	4,000	400.0
173	음성용산산단진입도로	2,236	9,861	7,625	341.0
174	의령부림산단진입도로	3,780	5,312	1,532	40.5
175	청주하이테크산단진입도로	1,680	6,505	4,825	287.2
176	충주드림파크산단진입도로	806	1,800	994	123.3
177	첨단3지구산단진입도로	1,720	4,420	2,700	157.0
178	진천테크노폴리스산단진입도로	3,913	7,885	3,972	101.5
179	예산예당2산단진입도로	587	5,118	4,531	771.9
180	경주혁신원자력연구단지진입도로	510	6,190	5,680	1,113.7
181	강진제2산단진입도로	500	1,600	1,100	220.0
182	천안에코밸리산단진입도로	413	1,839	1,426	345.3
183	천안신사산단진입도로	484	2,000	1,516	313.2
184	청양일반산단진입도로	490	2,094	1,604	327.3
185	양촌용정산단진입도로	1,010	2,800	1,790	177.2
186	케이밸리산단진입도로	310	760	450	145.2
187	빛그린산단광주방면진입도로	2,320	5,220	2,900	125.0
188	도시형교통모델(세종)	5,428	7,500	2,072	38.2
189	도시재생사업(제주)	6,775	16,375	9,600	141.7
190	세종스마트그린산단진입도로(세종)	3,277	4,489	1,212	37.0
191	포항그린산단진입도로	471	1,129	658	139.7
192	아산신창일반산단진입도로	510	712	202	39.6
193	아산선장그린산단진입도로	300	710	410	136.7
194	대산그린컴플렉스산단진입도로	500	1,500	1,000	200.0
[주택도시기금]					
195	이차보전지원	1,839,836	1,972,008	132,172	7.2
196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044,394	6,378,752	3,334,358	109.5
197	전세임대(융자)	5,114,122	5,264,355	150,233	2.9
198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73,070	5,638,219	5,365,149	1964.8
199	전세・매입임대경상보조	160,043	260,856	100,813	63.0
200	임대주택리츠출자	450,000	720,000	270,000	60.0
2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37,000	441,006	104,006	30.9
202	이차보전지원	2,000	3,200	1,200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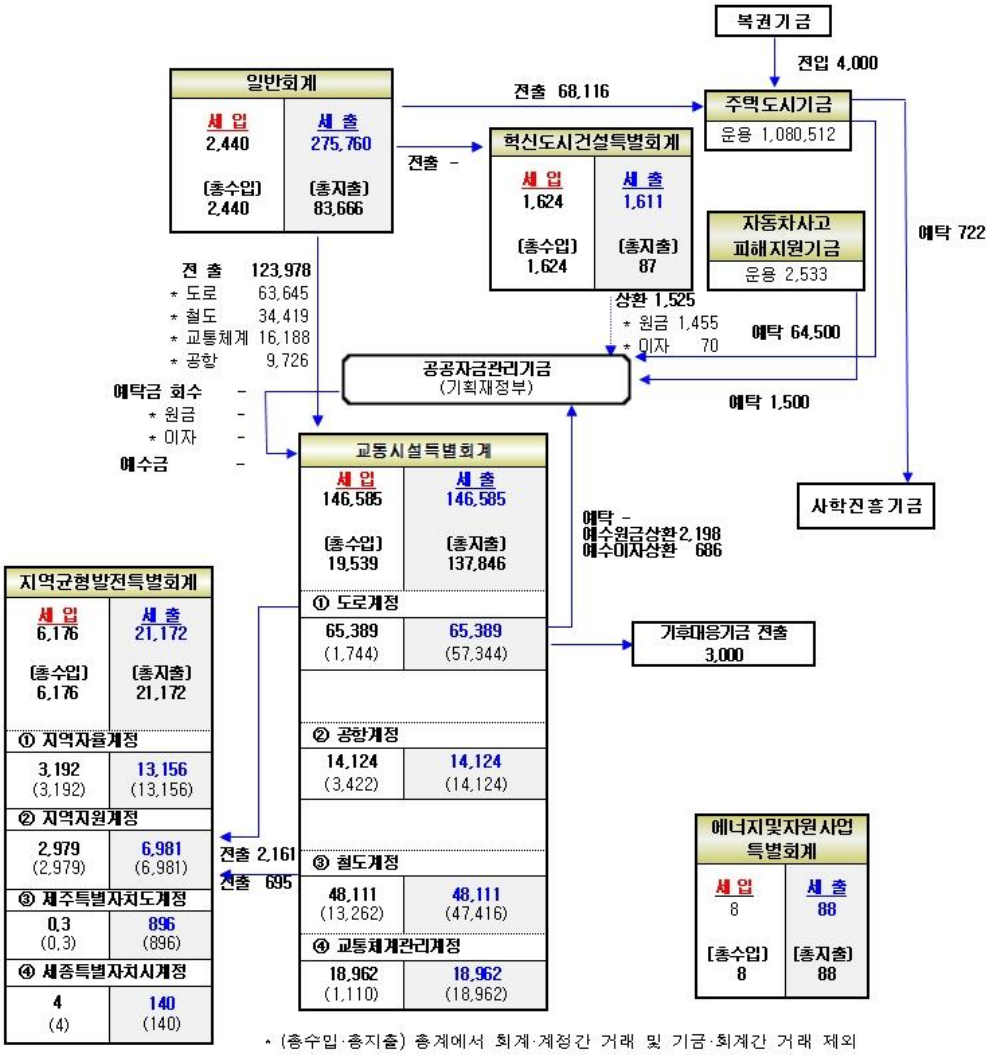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주택도시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2조 3,978억 1,400만원, 주택도시기금으로 6조 8,115억 6,100만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2,855억 4,300만원, 기후대응기금으로 3,000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500억원이 예탁되었음.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조 4,500억원이 예탁되고, 75억 4,300만원의 예수원금 및 이자가 상환되었음. 또한, 복권기금으로부터 4,000억원을 전입받는 한편, 사학진흥기금으로는 722억 700만원이 예탁되었음.

[국토교통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민안전 · 건설경기회복 · 민생안정 · 균형발전 및 미래성장 등 5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다는 점임.

특히 항공 · 철도 · 도로 등 SOC 전반에 걸쳐 선제적인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 철도 · 공항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8.5조원)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공적주택 19.4만호를 공급(22.8조원)하는 등 청년 · 신혼 ·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의 주거 안정과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등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하는 도로 · 철도 건설 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재차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SOC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집행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경과를 반영하여 2026년 예산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하는 지역공항 건설 사업에서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 요인들을 점검하고 수용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공항 건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 중 일부에서 집행 부진과 예산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정기적인 집행 점검 · 교부 시점 조정 등 집행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넷째,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실시하는 공적주택 공급(분양 · 임대)사업은 공적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주택공급계획과 실적의 판단 기준(시점)을 우선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토교통부 소관 신규 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기획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예산요구서 제출 시기에 맞추어 기획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 필요성과 규모가 충실히 검토되도록 하는 등 사업 준비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철도 건설 사업: 일부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국토교통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으로 진행하는 도로 · 철도 건설 사업으로서, ① 2023년 · 2024년 연속으로 집행률(실집행률[4])이 70% 미만으로 나타나 예산현액과 집행액의 격차가 현저하면서 통상적인 관급공사의 낙찰 하한율인 85 ~ 88%를 하회하는 등 수치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② 2025년 7월까지 실집행액이 전년도 이월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 지연이 현재 진행 중이며, ③ 2026년에도 사업 예산안이 재차 편성된 결과, 내년에도 미집행 이월액 또는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총 7개의 세부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1,410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추경기준) 483억원 대비 927억 7,500만원(192.1%)이 증가하였음.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2026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코드)	2025년도 7월 기준					2026년도 예산안
	본예산 (추경기준)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남양주-춘천1 국도건설 (1632-300)	6,372	45	△2,000	4,417	22	22,827
남양주-춘천2 국도건설 (1632-301)	4,481	45	△1,500	3,026	24	18,858
남양주-춘천4 국도건설 (1632-303)	2,903	36	0	2,939	16	8,785
부안-흥덕 국도건설 (1632-787)	1,507	4,011	△629	4,889	1,946	7,939

4) 국토교통부 교부금 기준이 아닌, 사업수행주체(피보조, 피출연기관) 기준 집행률(실집행률)을 의미함.

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코드)	2025년도 7월 기준					2026년도 예산안
	본예산 (추경기준)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오지-동송 국도건설 (1632-800)	9,137	△2,409	316	7,044	877	3,846
대구도시철도엑스코선건설 (3031-353)	13,900	0	0	13,900	0	41,820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건설 (3031-355)	10,000	0	0	10,000	1,200	37,000
계	48,300	1,728	△3,813	46,215	4,085	141,075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일부 사업에서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재차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SOC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집행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경과를 반영하여 2026년 예산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집행이 부진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도로 · 철도 건설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로는 사업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협의, 발주 과정에서의 사업 지연 등으로 나타났음.

[집행부진 사유]

사유	대상사업	건
설계 지연	부안-흥덕국도건설	1
총사업비 협의 (타당성 재조사)	남양주-춘천1 국도건설, 남양주-춘천2 국도건설, 남양주-춘천4 국도건설	3
발주 및 유찰, 시공사 재선정	오지-동송 국도건설, 대구도시철도엑스코선건설,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건설	3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당 사업들을 대상으로 집행 실적의 평균을 계산하면, 집행률은 2023년 35.4%에서 2024년 17.3%, 2025년 7월 기준 8.8%(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3.6%)로 나타나고 있어 수치적으로 집행 부진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도로 ·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공사는 사업 필수 절차가 존재[5]하고,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년도 사업이며, 각종 인허가 · 협의 및 시공 순서에 따른 공정 등 사업 단계별로 시간이 소요됨.

5) 모든 SOC 사업은 기본적으로 “계획 → 설계(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의 절차를 거침.

또한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사업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집행실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늘어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2023~2025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7월					
										전년도이월액 제외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남양주-춘천1 국도건설	3	0	0	70	25	36.4	4,417	22	0.5	4,372	7	0.2
남양주-춘천2 국도건설	3	0	0	70	25	35	3,026	24	0.8	2,981	9	0.3
남양주-춘천4 국도건설	4	2	50	70	34	48.6	2,939	16	0.5	2,903	10	0.3
부안-흥덕국도건설	125	10	8	7,112	3,101	43.6	4,889	1,946	39.8	878	2	0.2
오지-동송 국도건설	7,327	3,941	53.8	6,183	3,774	61	7,044	877	12.5	4,635	216	4.7
대구도시철도엑스코선건설	1,200	0	0.0	13,800	0	0.0	13,900	0	0.0	13,900	0	0.0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건설	2,500	0	0.0	12,983	0	0.0	10,000	1,200	12.0	10,000	1,200	12.0
계	11,162	3,953	35.4	40,288	6,959	17.3	46,215	4,085	8.8	39,669	1,444	3.6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물론 2025년 연말에 공사 발주를 마무리하거나 공사를 일부 착수하면 집행 실적의 일부 개선이 나타날 여지는 있음. 그러나 공사 등 제반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더라도 공정률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으며, 동절기 공사는 저온·결빙 등 외부환경으로 인하여 공사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 부진이 다음연도에도 재발할 수 있으므로, 예산 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연말 사업 집행 경과를 고려하여 2026년 예산액을 집행 가능한 규모만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6)]

6)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대구도시철도엑스코선·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등 2개의 철도공사 사업의 경우는 연말까지 집행부진 사유가 해소되어 2026년 예산안 전액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임.

구체적으로 대구 엑스코선 건설사업의 경우 2공구가 3회 유찰(2024.7.~9.)되어 설계 착수가 지연되었으나, 이후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2025년 12월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지연 사유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임.

부산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23.12.~2024.7.)와 턴키 발주 2회 유찰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입찰 방법을 변경(턴키→기타공사)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할 예정으로, 입찰방법이 변경되면서 시공사 부담(공사난이도, 공사비)이 줄어들어 2026년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2.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공항 건설 사업: 사업 경과를 고려한 현실적 추진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총 8개의 지역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8개 지역공항 건설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01억 2,300만원(△14.8%) 감액된 9,80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토교통부 공항건설 사업(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코드)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3538-301)	25,370	25,370	114,900	89,530	352.9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3538-302)	2,955	2,955	4,845	1,890	63.9
제주 제2공항 건설 (3538-304)	23,557	23,557	14,968	△8,589	△36.5
새만금 신공항 건설 (3538-305)	63,186	63,186	120,000	56,814	89.9
가덕도신공항 건설 (3538-308)	964,025	441,661	688,979	△275,046	△28.5
대구경북신공항건설 (3538-309)	66,653	66,653	31,763	△34,890	△52.3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3538-310)	3,095	3,095	3,875	780	25.2
서산공항 건설 (3538-311)	1,662	1,662	1,050	△612	△36.6
계	**1,150,503**	**628,139**	**980,380**	**△170,123**	**△14.8**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8개 지역공항 건설을 위해 총 23조 4,603억원의 사업비(국비 기준)가 투입될 예정이고, 이 중 2024년까지 전체의 3.2%인 7,607억원으로 투입되었음.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2.3%(5,292억원), 3.9%(9,231억원)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예정임. 향후 투입 예정 금액은 21조 2,472억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역공항 건설 사업

비의 대부분은 장래에 걸쳐 발생될 예정임.

그리고 사업절차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공항 건설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설계 또는 사업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공항 건설사업 현황(사업기간,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공항 건설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투자현황(국비 기준)					사업단계 (2025)
			2024년까지 결산액	2025 (예산)	2026 (예산액)	2026년 이후	계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2014~2027	8,792	3,768	254	1,149	1,450	6,621	공사 중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2012~2027	1,833	47	30	48	1,708	1,833	설계 중
제주 제2공항 건설	2017~ 착공후5년	54,532	11	236	150	54,135	54,532	설계 중
새만금 신공항 건설	2020~2028	8,268	57	632	1,200	3,741	5,630	설계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	2023~2035	137,011	3,724	3,425	6,316	123,546	137,011	설계 중
대구경북신공항건설	2024-2030	23,836	2	667	318	22,849	23,836	사업준비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2023-2029	2,018	0	31	39	1,948	2,018	사업준비
서산공항 건설	2024-2028	484	0	17	11	457	484	사업준비
계		236,774	7,607	5,292	9,231	212,472	234,603	-
			(3.2%)	(2.3%)	(3.9%)	(90.6%)	(100.0%)	

주 1) 울릉도 소형공항의 사업비는 국비 6,621억원과 한국공항공사 부담부분 등 2,171억원으로 구성됨
2) 새만금 신공항의 사업비는 국비 5,630억원과 한국공항공사 부담부분 등 2,638억원으로 구성됨
3) 가덕도신공항의 사업비는 추경, 건설부분 한정(접근철도 · 접근도로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7)]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 요인들을 점검하고 수용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공항 건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역공항 건설 사업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로서, 지역균형발전, 지역산업 촉진, 인

7) 아직 기본계획이 준비 또는 진행 중으로서, 설계가 착수되지 못한 대구경북신공항건설 사업,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및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2026년 예산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구유입 등 사회적 효과와 동시에 환경문제 · 재정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사업 지연 요인들을 점검하고 수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하에서 개별 지역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연도(2014년)로부터 6년이 지난 2020년에 착공을 시작하였으나, 최근까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사비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제기되는 항공안전 강화방안(활주로 확장, 항행안전 및 등화시설 설치 등)에 대한 논의[8]를 정리하고, 조속히 사업 방향을 확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9]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결산 및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4,000		114,000	5,374	-	-	119,374	90,350	**29,018**	6
2023	85,474		85,474	29,018	-	-	114,492	90,015	**24,476**	1
2024	90,000		90,000	24,476	△10	-	114,466	71,758	**42,709**	-
2025.8	25,370		25,370	42,709	△1,055	-	67,024	31,848	**12,800**	
2026(안)	114,900									

자료: 국토교통부

②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비(1,833억원)에서 환경 저감 대책과 설계 변경(취항 기종 상향, 공항등급 변경(2C→3C, 2023년 6월부터)에 따른 종단안전구역 확보, EMAS 설치 등)으로 총사업비가 6,411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25년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임.

---

8)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항공 운송사업의 국내선 운항 항공기 승객 좌석수 상한을 현행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주로 확장 논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9)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연장 등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대폭 증가되는 부분 등을 고려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개항 이후 운항 안전성 및 수요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의견임.

그러나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흑산공항의 2050년 기준 여객 수요는 기존 전망치보다 83% 낮아 사업 타당성 재검토나 시설 규모 조정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매년 공사비와 건설보상비가 불용되고 있음.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결산 및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100	-	8,100	-	△7,016	-	1,084	-	-	**1,084**
2023	7,100	-	7,100	-	-	-	7,100	756	344	**5,597**
2024	6,590	-	6,590	344	-	-	6,934	734	-	**6,189**
2025.8	2,955	-	2,955	-	△2,845	-	110	0.3	110	-
2026(안)	4,845									

자료: 국토교통부

③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2015년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제2공항 건설을 확정하고 입지를 결정한 이후, 지역 사회 내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찬·반 갈등으로 약 9년이 지나 기본계획을 고시(2024.9)하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음.

현재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2024.12) 및 기본설계(2025.3) 용역에 착수했는데, 추가 지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결산 및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2,500	-	42,500	-	-	-	42,500	463	**194**	**41,843**
2023	17,286	-	17,286	194	-	-	17,480	258	-	**17,222**
2024	17,286	-	17,286	-	-	-	17,286	1,149	**15,631**	**506**
2025.8	23,542	-	23,542	15,631	-	-	39,173	12,823	**4,414**	
2026(안)	14,968									

자료: 국토교통부

④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2022년 6월 확정한『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었으나, 올해 서울행정법원의『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음.[10)]

이에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22일에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훼손 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공익성을 강조하여 항소한 상황임.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 결산 및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000	-	20,000	-	-	-	20,000	1,184	**420**	**18,396**
2023	13,500	-	13,500	420	-	-	13,920	19	**5,708**	**8,193**
2024	32,651	-	32,651	5,708	-	-	38,359	1,351	**31,018**	**5,990**
2025.8	63,186	-	63,186	31,018	-	-	94,204	15,876	**27,407**	-
2026(안)	120,000									

자료: 국토교통부

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2025년 6월 16일에 사업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신공항건설 부지조성공사 착수를 위한 공사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되었음.

이에 따라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준비 기간과 적정 사업기간에 대한 검토 및 사업기간 연장시 필요한 총사업비 협의 등 사정변경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공사 지연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연내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후 재발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 정상화를 가정하여 예정한 우선시공분 착공 시기를 2026년 10월로 보고 있음.[11)]

---

10)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 고 판단하였음.

11) □ 우선시공분: 인·허가와 관련 없는 해상장비 제작, 자재 구입 등 실착공 사전준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사업지연 요인이 발생한 가덕도 공항건설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결산 및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13,000	-	13,000	-	-	-	13,000	10,210	78.5	78.5	1,986	804
2024	536,321	-	536,321	1,986	804	-	537,701	384,092	71.6	71.4	13,672	139,937
2025.8	964,025	△522,364	441,661	13,672	-	-	455,333	362,024	82.0	79.5	-	-
2026(안)	688,979											

자료: 국토교통부

□ 공사비 내역: 해상장비 제작(814억), F/D선 임대(112억), 철근 등 자재 구입(2,364억), 현장사무실 설치(90억), 폐기물처리(103억), 케이슨 거푸집 제작 등(405억), 전기인입(120억), 현장레미콘 제작장(64억), 발파용 화약 구입(466억), 벨트컨베이어(686억)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 지역자율계정 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을 위한 집행 관리 필요

가. 개 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12]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임.

지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13]하며, 계정과 편성 방식에 따라 8개의 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편성방식별 분류]

구분	지자체 자율편성		부처직접편성
	시·도	시·군·구	
지역자율계정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지역지원계정	-	-	⑥ 부처 직접편성사업
세종특별자치시계정	③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⑦ 부처 직접편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⑤ 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⑧ 부처 직접편성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2025 한눈에 보이는 국토교통예산」, p. 25.

여기에서 지역자율계정 사업으로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성장촉진지역 등 시·군·구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신규소요는 부처가 공모를 통해 선정).

즉, 지역자율계정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권한이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신청한도 내에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내용 등을 검토하되, 금액 조정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없이 검토의견만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함.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① 사업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고, ②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최대 2회계연도까지 이월 집행이 가능함.[14] 또한, ③ 2회계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되나,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 가능함.[15]

나. 검토의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 중 일부에서 집행 부진과 예산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정기적인 집행 점검·교부 시점 조정 등 집행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은 포괄보조사업 사업방식과 2회계연도까지 예산이월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편성·집행 자율성이 높음. 이러한 예산 편성·집행의 부담이 적은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자율계정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부진과 예산 이월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재원 배분시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를 반영하고, 성과부진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시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세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음. 즉 지특회계의

1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편성 · 집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집행 점검 및 관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역자율계정 사업의 연중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현황에 따라 교부 시점을 조정하거나 신규 공모과제 선정시 가산 · 감산점을 부여하는 등 집행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①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자율) 사업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자율)’ 사업은 버스공영차고지 신규 확충 · 개선 등으로 노선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운송사업자의 사업 여건 및 종사자의 근로 여건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0억 7,300만원(95.4%) 증액된 288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자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자율)	14,746	14,746	28,819	14,073	95.4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자율) 사업의 경우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2025.3) 결과 ‘실집행률을 반영한 재정수요 설정이 필요하며, 미집행률을 고려한 재정수요 설정이 필요’하다는 감축 의견을 받을 만큼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2026년은 수요조사를 통한 재정수요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2027년 이후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집행률이 71.9%, 68.1%, 75.4%이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6.7%임.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2025년 연말 실집행률을 전년보다 하락한 71.4%로 예상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까지 지역지원계정에 속했던 이 사업은 2026년 예산안부터 시 · 도 지역자율계정으로 전환되어 예산 편성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고, 감축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95.4% 증액된 288억 1,900만원이 편성된 것임.

1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자율)(4931-345)(교통물류실)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자율)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2	22,000	22,000	21,496	21,496	24,271	45,767	32,893	10,190	2,684	**71.9**
2023	20,330	20,330	20,330	20,330	10,190	30,520	20,802	6,914	2,804	**68.1**
2024	14,911	14,911	14,911	14,911	6,914	21,825	16,463	5,361	1	**75.4**
2025. 7.	14,746	14,746	14,504	14,504	5,361	19,865	5,301		242	**26.7**

자료: 국토교통부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자율) 사업의 지자체별 집행 현황 및 2026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2025.12.31일 예상 집행실적(지자체 취합)					비고 (집행부진사유)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2025년말 집행계획 (B)	실집행률 (B/A)		
서울	관악 신림	1,320	-	1,320	1,320	100		-
인천	계양	1,731	-	1,731	1,731	100		1,589
대구	달서구	716	-	716	716	100		2,284
대전	삼정동	417	36	453	380	83.9		1,600
	대전역	876	300	1,176	300	25.5	제영향평가 협의,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1,600
광주	첨단지구	1,722	100	1,822	1,822	100		694
울산	북구 명촌동	402	579	981	779	79.4		-
경기	성남 운중동	1,679	460	2,139	0	0	운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협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일시정지	-
	가평 설악	134	-	134	0	0	편입 사유지 협의 지연	-
	고양 원당	-	789	789	789	100		3,000
	수원시 동부	-	273	273	273	100		-
강원	정선군	-	68	68	68	100		-
충북	청주시	877	-	877	119	13.2	수용재결 지연	3,729
	보은군	242	-	242	0	0	사업계획변경으로 전액 불용	-

지방자치단체		2025.12.31일 예상 집행실적(지자체 취합)					비고 (집행부진사유)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2025년말 집행계획 (B)	실집행률 (B/A)		
충남	홍성군	385	515	900	900	100		-
	천안시	834	-	834	834	100		1,500
	보령군	-	240	240	240	100		
전북	순창군	-	560	560	560	100		-
전남	무안군	834	389	1,223	389	31.8	사업대상지 공공기여 협의 지연	900
	목포시	417	-	417	108	25.9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	168
경북	포항 북부권	959	-	959	959	100		1,250
경남	진주시	1,048	431	1,479	1,479	100		2,690
	양산시	153	-	153	153	100		-
계		**14,746**	**4,740**	**19,486**	**13,919**	**71.4**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편성 권한이 있는 시기에도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는데, 편성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집행 관리가 미흡하여 집행 실적이 더 낮아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집행수요를 고려한 집행 가능 수준의 예산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정기적 집행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②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지역[17]에 대해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1억 8,000만원(△4.5%) 감액된 1,947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2026년도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성장촉진지역개발	203,957	203,957	194,777	△9,180	△4.5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의 경우는 지방비 부담이 없는 전액 국고보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집행 부진이 2년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등 교부시점과 집행시점의 시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집행률이 58.2%, 52.7%, 48.5%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실집행률도 23.3%로 매우 저조함.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2	207,679	207,679	207,679	207,679	123,748	331,427	192,791	131,272	7,364	**58.2**
2023	222,402	222,402	222,402	222,402	131,272	353,674	186,499	156,667	10,508	**52.7**
2024	206,381	206,381	206,381	206,381	156,667	363,048	175,934	176,719	10,395	**48.5**
2025. 7월기준	203,957	203,957	203,957	203,957	176,719	380,676	88,849	-	-	**23.3**

자료: 국토교통부

1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現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2009년 이후 5년 단위로 전국 시·군 중(특수상황지역 제외) 낙후도가 높은 순으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추진(2009.6월 최초 지정, 2014.9월/ 2019.9월/ 2024.11월 재지정)

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성장촉진지역개발(5549-301)(국토도시실)

특히, 일부 내역사업에서는 2년에 걸쳐 전년도 이월액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재이월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2년 연속 실집행 부진 사업 예시]

(단위: 백만원)

지자체	사업명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7월			2026년 예산안
			국토부 교부액	지자체 예산	지자체 집행액	지자체 이월액	국토부 교부액	지자체 예산	지자체 집행액	
단양군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	35,700 (20,000)	0	3,295 (3,295)	**187**	3,108	2,979	6,087 (3,108)	**0**	3,181
곡성군	곡성 섬진강 동화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16,459	3,789	5,742 (1,953)	**462**	5,280	4,255	9,535 (5,280)	**908**	3,964
영암군	월출산 스테이션F 기반시설 조성사업	16,085	1,591	2,149 (558)	**514**	1,635	4,120	5,755 (1,635)	**0**	6,865
신안군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단지 투자선도지구	13,800	0	738 (738)	**134**	604	300	904 (604)	**0**	1,780
완도군	보길 청별 물양장 시설	900	270	270 (0)	**0**	270	200	470 (270)	**20**	230
신안군	압해읍 복룡 가룡간 도로개설	3,000	750	1,039 (289)	**273**	766	525	1,291 (766)	**11**	825
상주시	상주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	28,334	3,062	5,010 (1,948)	**429**	4,581	3,264	7,845 (4,581)	**5**	810
울릉군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개설사업	16,265	1,960	8,172 (6,212)	**1,540**	6,632	2,097	8,729 (6,632)	**35**	1,060

주 1) ① 2년에 걸쳐 전년도이월액이 해당연도 교부액의 50% 또는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는 사업 지연이 분명히 발생하고, ② 동시에 해당연도 집행액이 전년도이월액보다 적어 집행 부진이 발생하며,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2026년 예산액을 편성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함

2) 총사업비는 변경된 사업비를 의미함(괄호 안은 당초 총사업비)

3) 지자체 예산 중 괄호 안은 전년도이월액을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반납액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무리한 연말 집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 시점을 조정하거나, 목적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집행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③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내역사업인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억 3,900만원(28.6%) 증액된 199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19,500	19,500	23,939	4,439	22.8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15,500	15,500	19,939	4,439	28.6

2024년 신설된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의 경우 조성된 사업지구에서 1차년도부터 사업 지연과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2024년 예산편성 시 사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19]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실집행 개선을 위해 사업기간을 4년[20]으로 늘리고 1차년도 투입액은 설계용역 등을 고려하여 소액으로 조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사업기간이 경과한 대부분 사업에서 국토교통부가 조정한 1차년도 투입액(4억원) 미만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2025년까지 지역지원계정에 속했던 이 사업이 2026년 예산안부터 시·도 지역자율계정으로 전환되어 편성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음. 편성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집행 관리가 더욱 미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 점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19) 1년차 30%(15억원), 2년차 30%(15억원), 3년차 40%(20억원)

20) 1년차 8%(4억원), 2년차 30%(15억원), 3년차 30%(15억원), 4년차 22%(16억원)

[2024년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지정지구 집행 실적(사업기간: 2024~2026년, 3년)]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지방비)	1년차 (2024년)			2년차 (2025년)			3년차 (2026년)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A)	교부액 (B)	교부 현액 (A+B)	집행액 (7월 기준)	교부액 (안)
강원 평창군	계촌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	11,000	1,500	2	1,498	1,500	2,999	136	1,500
충북 단양군	스튜디오, 다리안W 건립 및 운영	10,776	1,500	62	1,438	1,500	2,938	287	2,000
충남 예산군	K-773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 조성사업	12,500	1,500	30	1,470	1,500	2,970	421	1,800
전북 장수군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11,770	1,500	-	1,500	1,500	3,000	86	2,000
전남 강진군	남도 맛1번지 강진 음식타운 조성	11,040	1,500	-	1,500	1,500	3,000	336	1,000
전남 진도군	진도군 로컬 K-먹거리 산업화 프로젝트	12,260	1,500	15	1,485	1,500	2,985	104	2,000
경북 영양군	발효감각 복합플랫폼 조성사업	15,731	1,500	-	1,500	1,500	3,000	20	500
경남 의령군	부자(父自) 의령 상생협약 프로젝트	10,701	1,500	1	1,499	1,500	2,999	221	1,000
부산 영도구	F&B+ 신산업 클러스터 “Young B.L.U.E. Valley”	11,061	1,500	-	1,500	1,500	3,000	39	1,789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④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내역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5,700만원(△5.1%) 감액된 365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도시 취약지역개조’** 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7억 9,500만원(△24.9%) 감액된 265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73,802	73,802	78,050	4,248	5.8
우리동네살리기	38,503	38,503	36,546	△1,957	△5.1
도시 취약지역개조	35,299	35,299	26,504	△8,795	△24.9

내역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과 ‘도시 취약지역개조’ 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에서는 2년에 걸쳐 전년도 이월액조차 집행하지 못하여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반복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2025년 예산액을 전액 교부하였음.

이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조금 교부시점 조정 등 집행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우리동네살리기, 도시 취약지역개조 사업 중 2년 연속 집행실적 부진예]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최신 총사업비 (사업기간)	국고 보조율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2024				2025				2026 예산안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우리동네 살리기	12,000 (23~26)	50%	부산(영도)	1,500	**983**	2,483	**533**	739	**1,951**	2,690	**823**	2,282
우리동네 살리기	10,000 (23~26)	50%	부산(해운대)	1,300	**832**	2,132	**704**	1,141	**1,429**	2,570	**1,189**	1,559
우리동네 살리기	10,000 (23~26)	60%	경북(울진)	1,500	**942**	2,442	**627**	1,310	**1,815**	3,125	**59**	2,190
도시 취약지역개조	2,185 (23~27)	70%	충북(제천)	150	**113**	263	**1**	350	**262**	612	**67**	611
도시 취약지역개조	4,190 (23~27)	70%	전남(목포)	600	**200**	800	**133**	889	**667**	1,556	**447**	924
도시 취약지역개조	4,003 (23~27)	70%	경남(통영)	635	**200**	835	**100**	378	**735**	1,113	**189**	792

주 1) ① 2년에 걸쳐 해당연도 집행액이 전년도이월액보다 적어 사업지연이 1년 가까이 발생하고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2026년 예산액을 편성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함

2) 총사업비는 변경된 사업비를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⑤ 도시재생사업

내역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은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노후 주거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3억 4,900만원(9.2%) 증액된 3,257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2026년도 도시재생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도시재생사업(자율)	303,772	303,772	341,138	37,366	12.3
도시재생사업	298,397	298,397	325,746	27,349	9.2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2년에 걸쳐 전년도 이월액조차 집행하지 못하여 1년 이상 사업지연이 반복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2025년 예산액을 전액 교부하였음.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은 복수연도(3~7년)에 걸쳐 추진하는 소규모 SOC사업으로 보상, 설계 용역, 착·준공 시기에 따라 이월이 발생되었고, 2026년 도시재생사업 예산안은 작년대비 예산 규모가 감축되어 지자체가 실집행여건을 반영해 자율 편성하였으므로 과다 이월 우려가 해소되었다는 의견임.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2026년 예산 교부 시 사업별 자금 소요 및 집행률 등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 회 나누어 교부하는 등 집행 점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도시재생사업(자율)(5643-301)(국토도시실)

[도시재생사업 중 2년 연속 집행실적 부진예]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국고 보조율 (%)	2024				2025				2026 예산안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7월기준)	
부산 영도구	근대 조선산업의 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다”	50,000 (20.1~26.12)	50%	2,080	1,330	3,410	1,117	1,500	2,293	3,793	170	4,604
대구 북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觀音)	26,000 (23.1~26.12)	50%	720	963	1,683	664	2,658	1,019	3,677	374	7,458
강원 동해시	동쪽바다 묵호 풍물화첩 4080	23,000 (20.1~26.12)	60%	4,107	643	4,750	612	1,520	4,131	5,651	636	1,007
전북 전주시	메타버스 중심 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 신경제거점 전주	37,813 (22.1~27.12)	60%	1,401	1,799	3,200	122	1,467	2,071	3,538	1,398	9,000
경북 구미시	행복한 상상(想像)으로 사람이 모이는 원평	25,000 (22.1~26.12)	60%	1,548	306	1,854	131	1,364	1,723	3,087	787	8,216
경남 진주시	상대와 함께하는 ’크로스컬처타운’ C.C.C(Contents,Cross, Culture)	17,500 (23.1~26.12)	60%	495	1,436	1,931	695	1,281	1,236	2,517	912	7,224

주 1) ① 2년에 걸쳐 해당연도 집행액이 전년도이월액보다 적어 사업지연이 1년 가까이 발생하고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2026년 예산액을 편성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함

2) 총사업비는 변경된 사업비를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주택도시기금 공적주택 공급(분양·임대)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주택공급 실적 집계방식 검토 필요

가. 개 요

“공적주택” 이란,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함. 세부적으로 임대와 분양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뉘어지며, 지원대상/임대기간/임대조건 등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으로 세분류할 수 있음.

[공적주택 유형별 개요]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개념</th><th>대상자</th><th>임대기간</th></tr>
<tr><td colspan="3">공적주택</td><td colspan="3">공공주택(임대 및 분양)+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td></tr>
<tr><td rowspan="7"></td><td colspan="2">공공임대주택</td><td colspan="3">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td></tr>
<tr><td rowspan="5">건설형</td><td>영구임대</td><td>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임대주택</td><td>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등</td><td>영구 또는 50년</td></tr>
<tr><td>국민임대</td><td>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임대주택</td><td>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등</td><td>30년</td></tr>
<tr><td>행복주택</td><td>주로 젊은층을 대상으로 도심내 잔여용지를 활용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td><td>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80%, 고령층 20%</td><td>젊은층 최대10년
(有자녀 14년),
고령층 20년</td></tr>
<tr><td>(분양전환)
공공임대</td><td>서민층 내집마련을 위해 5년 이상 임대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주택</td><td>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td><td>임대의무기간
5년 또는 10년</td></tr>
<tr><td>통합
공공임대</td><td>기존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임대주택</td><td>중위소득
150% 이하 등</td><td>30년</td></tr>
<tr><td>매입형</td><td>다가구
매입임대</td><td>사업시행자가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td><td rowspan="2">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70% 이하 등</td><td>최대 20년</td></tr>
<tr><td>임차형</td><td>전세임대</td><td>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주택</td><td>최대 30년</td></tr>
</table>

구분			개념	대상자	임대기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이 자기재원으로 조달하여 임대하되, 임대료·기간 등 규제를 전제로 국비를 지원받는 주택		
		리츠·펀드형	민간리츠·펀드를 통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	10년 이상 ('20.8.18. 전에는 8년 이상)
		소규모 정비사업	정비사업시행자와 연계하여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집주인 임대주택	주택소유자가 저리 융자를 지원받고 기존주택을 활용하거나 신규건설·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건설개량형, 매입형, 융자형)	무주택 청년·노인층 등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		
		일반형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받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무주택 서민	-
		나눔형	시세 70% 이하로 저렴하게 분양받고, 의무 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 환매 시 매각 시세차익 70%를 보장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무주택 서민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공적주택 공급사업은 ‘영구임대 출자’ 사업부터 ‘분양주택 융자’ 사업까지 총 14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14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22조 7,700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16조 5,169억 6,600만원 대비 6조 2,530억 9,400만원(37.9%)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공적주택 사업 계획안 및 계획공급물량]

(단위: 백만원, 호)

세부사업명	2024년(결산)		2025년(예산)		2026년(예산안)	
	금액	공급물량	금액	공급물량	금액	공급물량
영구임대 출자 (1440-407)	9,509	628(착공) 1,335(준공)	43,116	768(착공) 1,873(준공)	4,091	476(착공) 1,497(준공)
국민임대 출자 (1332-401)	71,610	1,031(착공) 3,594(준공)	73,157	1,432(매입) 875(착공) 1,413(준공)	33,271	787(매입) 100(착공) 1,904(준공)
국민임대 융자 (1333-401)	92,177		94,297		141,838	
행복주택 출자 (1440-408)	101,438	4,896(착공) 10,776(준공)	134,594	607(매입) 4,218(착공) 13,185(준공)	9,775	2,286(착공) 5,295(준공)
행복주택 융자 (1335-401)	280,835		314,009		189,078	
공공임대 융자 (1333-401)	697,791	21,584(승인) 12,115(착공) 2,088(준공)	603,970	29,885(승인) 5,598(착공) 1,062(준공)	160,855	5,519(승인) 7,828(착공) 2,609(준공)
통합공공임대 출자 (1440-411)	1,035,886	42,168(승인) 10,199(착공) 769(준공)	1,642,403	615(매입) 39,463(승인) 14,921(착공) -(준공)	1,479,278	28,781(승인) 33,784(착공) 3,164(준공)
통합공공임대 융자 (1338-406)	1,049,331		1,481,708		823,570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1440-402)	2,293,217	47,386 (가축 또는 산축)	488,380	66,500 (가축 또는 산축)	5,638,219	57,500 (가축 또는 산축)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1336-401)	4,371,172		3,319,894		6,378,752	
전세임대(융자) (1337-401)	4,878,890	44,609	5,434,872	45,000	5,264,355	45,000
임대리츠 출자 (1440-409)	450,000	7,140	600,000	20,000	720,000	12,000
민간임대 융자 (1333-404)	1,373,062	66,480	1,500,000	75,099	1,500,000	76,191
분양주택 융자 (1134-401)	1,589,519	65,725(승인) 23,954(착공) 14,179(준공)	1,471,639	69,829(승인) 33,684(착공) -(준공)	426,978	52,299(승인) 36,964(착공) 6,044(준공)

주 1)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급물량은 매입 및 전세계약 체결 기준

2) (임대리츠출자) 2026년 예산 편성시 공사비 인상 등 여건을 반영하여 출자호수당 지원단가를 현실화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공급물량 감소(기존 3억원→6억원, 기존 지원단가는 '15년 사업도입후 조정된 바 없어 현실화 필요)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공적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주택공급계획과 실적의 판단 기준(시점)을 우선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5년 9월에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62번 과제는 “공적주택 공급”과 관련이 있음.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 청년이 부담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 주택과 적은비용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 등 공적주택을 “5년 동안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임.

[123대 국정과제 中 일부]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 과제목표
- ㅇ 서민 · 실수요자 등을 위한 **공적주택 110만호 안정적 공급**

□ 주요내용
- ㅇ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5년간 110만호 공급
  - 신혼부부 · 청년도 부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
  -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 주택을 적극 확대

□ 기대효과
- ㅇ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및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자료: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적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주택 공급 계획과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공적주택 공급계획(목적)과 공급실적(결과)를 주기적으로 파악 ·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계획과 공급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함.

주택은 건설/매입 등 공급방식에 따라 사업개시부터 주택공급까지 시차가 다양하고,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주민 협의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함.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그 기간이 평균 9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주택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택 공급계획/실적의 판단 시점을 달리 정할 경우, 주택분양 또는 임차를 기다리는 수요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나의 주택이 각각의 시점마다 실적으로 계산되는 등 중복 계산의 우려도 있음. 이는 공적주택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기준 일원화가 무엇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그런데 현재 주택도시기금 세부사업에서는 주택공급 계획/실적의 판단 기준(시점)이 사업별로 일원화되지 못한 상황임.

예를 들면, '공공임대 융자'와 '통합공공임대 융자' 등 사업은 주택건설 사업이 승인되거나 착공되는 시점을 공급실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등 사업은 매입시기에 공급실적으로 산정하고 있음.

특히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 사업은 해당 연도 매입이 개시된 주택을 공급물량으로 잡고 있는데, 기축은 1년 내 구입·공급이 완료되는 반면, 신축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같은 세부사업에서 같은 시점에 공급실적으로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택이 임차인에게 인도되는 체감 시점은 상이함.

[주택공급 사업절차에 따른 세부사업별 공급실적 판단 시점]

사업절차(시점)	해당 시점을 공급실적으로 판단하는 세부사업
사업개시를 위한 출자	임대리츠 출자
사업승인, 착공 등	공공임대 융자, 통합공공임대 출자, 통합공공임대 융자, 분양주택 융자
매입 등 약정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전세임대(융자)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공적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각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공적주택 공급계획/실적 시점의 일원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국토교통부 소관 신규 연구개발 사업: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기획 기한 준수 필요

가. 개 요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의 신규 연구개발(R&D)사업은 24개 세부사업으로 590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5개 사업 397억 900만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9개 사업 193억 900만원이 각각 편성됨.

[2026년도 국토교통부 신규 연구개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5개	39,709
국토교통과학기술 신진연구자지원사업(R&D)	2,000
지역단위 재난위험도 AI시뮬레이션 기반 재난안전관리 기술개발(R&D)	2,000
스마트점검·진단 및 측량기술 성능평가체계개발(R&D)	1,500
스마트 지하안전관리 기술개발(R&D)	1,000
액체수소저장탱크 및 적하역시스템기술개발(R&D)	4,000
초연결 지능도시 핵심기반 기술개발(R&D)	4,000
디지털트윈 국토정보 보안기술개발(R&D)	2,000
공동주택건설 생산성 혁신을 위한 다용도-건설작업 로봇설계 및 통합관리기술개발(R&D)	2,009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R&D)	2,000
200m급 목구조대공간건축물 건설기술개발(R&D)	1,700
운전자폐달 오조작 방지 및 평가기술개발(R&D)	2,600
자율주행 글로벌혁신 클러스터연구개발사업(R&D)	3,400
워킹쓰루 교통결제시스템 표준 및 서비스실용화 기술개발사업(R&D)	3,000
디지털트윈기반 GTX환승 안전 및 혁신기술개발사업(R&D)	4,000
지역특화형 자율주행서비스 모델 및 실증기술개발(R&D)	4,500
[교통시설특별회계] 9개	19,309
과적단속 효율화를 위한 화물차 중량 정보플랫폼구축 및 실증기술개발사업(R&D)	4,000
디지털도로기반 클라우드형 AI-ITS센터 플랫폼운영관리기술개발사업(R&D)	1,275
고속철도 자갈궤도구간 사전제작형 급속개량콘크리트궤도 및 시공장비개발(R&D)	2,000
스마트철도 물류혁신기술개발(R&D)	2,000
철도차량 차륜자동 검사시스템 기술개발(R&D)	2,169
초고속 하이퍼튜브 아진공 핵심기술개발(R&D)	1,400
빅데이터기반 철도네트워크설계 및 운영기술개발(R&D)	3,000
항공기이탈방지용 긴급제동 활주로시스템(EMAS)개발(R&D)	1,965
공항조류탐지 및 한국형조류관리 핵심기술개발(R&D)	1,500
총계	**59,018**

자료: 국토교통부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규모는 전년도(281억 8,000만원) 대비 308억 3,800만원(109.4%) 증가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음.

[2025년도 국토교통부 신규 연구개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9개	
건설현장다목적고소작업을위한로봇플랫폼및XR기반인간-로봇협업기술개발(R&D)	1,500
건축물화재확산방지및피난성능향상기술개발(R&D)	1,500
스마트+빌딩핵심기술개발(R&D)	2,100
고층형ZEB3등급공동주택핵심기술개발(R&D)	2,100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R&D)	400
공동주택의고층・단지화및생산성제고를위한OSC고도화기술개발(R&D)	2,400
국토정보고도화를위한입체격자체계적용및활용기술개발(R&D)	2,400
사용후배터리안전관리및재제조유통순환기술개발사업(R&D)	2,400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2,700
[교통시설특별회계] 6개	
초고속하이퍼튜브철도인프라핵심기술개발(R&D)	3,680
수소전기동차실증사업(R&D)	1,000
데이터기반철도시스템안전평가・예측기술개발(R&D)	1,500
내연기관차-전기차전환안전성검증기술개발및튜닝승인실증(R&D)	1,500
AI-XR기반비행장원격관제운용기술개발(R&D)	1,500
도심지드론운용위험도예측및안전성평가기술개발(R&D)	1,500
총계	**28,180**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신규 연구개발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기획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예산요구서 제출 시기에 맞추어 기획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 필요성과 규모가 충실히 검토되도록 하는 등 사업준비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각 부처가 연구개발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기획보고서를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특히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는 사전기획의 충실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신규사업은 사전기획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한편 기획보고서의 제출 기한에 대하여는 별도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예산편성지침에서 ‘부처의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인 5월 31일[22]까지로 볼 수 있음.

즉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기획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출 기한인 5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2026년 국토교통부 소관 일부 연구개발사업에서 기한 준수를 위해 사전기획 연구 도중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전기획 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026년도 신규 R&D 사업 중 사전준비 미흡 우려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코드)	2026년도 예산안 (B)	사전기획 기간	비고
지역단위 재난위험도 AI 시뮬레이션 기반 재난안전관리 기술 개발(R&D) (일반회계 - 4141-330)	2,000	2024.12. ~2025.10. (10개월)	**사전기획 이전 보고서 제출**
공동주택건설 생산성혁신을 위한 다용도-건설작업로봇 설계 및 통합관리 기술개발(R&D) (일반회계 - 4156-376)	2,009	2024.12. ~2025.12. (12개월)	**사전기획 이전 보고서 제출**
항공기이탈방지용긴급제동활주로시스템(EMAS)개발(R&D) (교통시설특별회계 - 4161-357)	1,965	2025.1. ~2025.3. **(3개월)**	**사전기획 연구기간 촉박**
공항 조류 탐지 및 한국형 조류관리 핵심기술 개발 (R&D) (교통시설특별회계 - 4161-358)	1,500	2025.1. ~2025.2. **(3개월)**	**사전기획 연구기간 촉박**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적으로 신규 연구개발의 사전기획 과정에서는 연구개발의 달성 목표, 세부 추진내용, 추진 체계, 소요재원 · 인력, 평가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됨.

22)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적정 예산액을 자체 판단할 수 있으며, 기획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문적 검토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필요시)가 가능할 수 있음. 특히 사전기획 과정에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술의 활용과 민간재원의 조달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음.

즉 사전기획보고서 작성 · 제출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충실한 사전 준비를 위한 절차적 · 실체적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일부 사업에서 제출 기한 준수를 위해 연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구 도중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사전준비 과정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신규연구개발 사업이 사전준비 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준비가 미흡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신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요구서 제출 시기에 맞추어 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기획 기간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예산이 충실히 검토되도록 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 국토교통부 소관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신규, 2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가. 개 요

정부는 2026년도에 산학연 역량을 집결, 유망 AI 융합분야의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고자 10개 부처에서 AI 응용제품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산학연 역량을 집결, 유망 AI 융합분야의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
□ **(사업내용)** 1~2년 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 **(사업기간/성격)** 2026년 ~ 2027년 / 출연 또는 보조(민간 매칭 10~20%)
□ **(사업 참여부처)** 산업부,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과기부, 국방부, 식약처 등 10개 부처
□ **(총사업비)** 1조 1,570.83억원, 국비 9,340억원(1개 과제별 10~40억원)

부처	물량	총 사업비(억원)	국비(억원)	부처	물량	총 사업비(억원)	국비(억원)
산업부	65개	2,625	2,100	농림부	30개	1,125	900
복지부	31개	975	780	환경부	15개	750	600
해수부	25개	937.5	750	**국토부**	**29개**	**1,450**	**1,160**
중기부	45개	1,687.5	1,350	과기부	20개	1,000	800
국방부	30개	833.33	750	식약처	10개	187.5	150

자료: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5. 8.

이 중 국토교통부 소관으로는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과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등 2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먼저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은 국토교통분야에 대해 국내 기업의 AI 응용제품 사업화 기간을 단축시키고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6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3)]

23) 일반회계 -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7036-310)(기획조정실)

다음으로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은 디지털도로분야에 대해 AI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2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4)]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및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	-	46,000	46,000	순증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	-	42,000	42,000	순증

2026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단기간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서비스를 Type1과 Type2로 나누어 선정하되, ① 1년 안에 즉시 개발이 가능하고 시장에 빠르게 침투 가능한 품목은 Type1로 분류하고 1년 동안 최대 40억원까지 지원(단년도 사업), ② 국민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핵심 품목은 Type2로 분류하고 2년 동안 최대 40억까지 지원함.

또한, 사업비의 5% 수준을 전담기관 위탁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음.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및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국토교통분야 중소·중견기업 등 □ 사업방식 : 공모(자유공모) □ 산출근거 : 국토교통분야 AI 응용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정도 및 소요를 반영하여 Type1(8개), Type2(7개) 지원 예정 ① Type1: 8개사 × 40억원 = 320억원 ② Type2: 7개사 × 20억원 = 140억원	□ 지원대상 : 국토교통분야 중소·중견기업 등 - <u>디지털도로 AI 분야</u> □ 사업방식 : 공모(자유공모) □ 산출근거 : 디지털 도로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를 위한 Type1(7개), Type2(7개) 지원 예정 ① Type1: 7개사 × 40억원 = 280억원 ② Type2: 7개사 × 20억원 = 140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4) 교통시설특별회계 -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1744-301)(도로국)

나. 검토의견

첫째, 이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수요조사, 과제발굴 및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 중복지원 방지 방안, 지원대상 선정 기준, 사업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들에 대해 산하 공공기관 및 협·단체를 활용하여 과제 수요를 파악하고 과제 기획을 추진 중에 있음.

예를 들면,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보유한 기업 및 연구기관 풀을 대상으로 1차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254건을 접수하였고, 이후 2차 수요조사(10.13.~10.20.)를 거쳐 11월에 사업 지원분야 등을 선정할 계획임.

[2025년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 준비 계획(안)]

ㅇ 과제 수요조사(2회) 및 전문가위원회 통한 지원분야 선정
- (개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수요확인 및 지원분야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1차 수요조사 (완료, 9.8~10)	→	2차 수요조사 (진행중, 10.13~20)	→	지원분야 선정 (예정, 11월)
1~2년내 신속상용화가 가능한 AX 응용제품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수요 확인		세부분야별 지원수요 확인		수요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지원분야 선정

- (조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보유한 기업 및 연구기관 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국토교통기업지원허브(hub.kaia.re.kr) 게시

ㅇ 부처 및 전문기관 회의(9.10, 9.30)
- 과제 수요조사 현황 및 애로사항 공유, 협력사항 논의 등

ㅇ 사업 본격 시행(2026.1월~)
- 수요조사, 지원분야 선정(~11월초), 사업 관리지침 및 시행계획 수립(~12월), 사업공고(1월초), 신청접수 및 평가(2~3월), 사업수행(4월~)

자료: 국토교통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1차 수요조사 접수 결과]

○ (목적)「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세부분야 또는 품목의 지원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기초자료 활용
○ (대상) 국토교통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연구기관 등
○ (기간) 2025.9.8. ~ 9.10 (3일)
○ (방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보유한 기업 및 연구기관 풀 대상 서면조사, 국토교통기업지원허브(hub.kaia.re.kr) 게시
○ (내용) 국토교통 분야에서 1~2년 이내 신속 상용화 및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응용 제품 및 서비스
○ (지원분야) 국토교통 12대 기술 분야
- 자율협력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초고속하이퍼튜브, 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체계, 탄소중립도시, Net Zero건축, 액화수소 인프라,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초연결 스마트도시, 스마트 건설, 스마트 빌딩
○ 접수결과: 수요조사서 총 254건 접수

구분	Net Zero건축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물류체계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스마트 빌딩	스마트 건설	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자율협력주행	초고속 하이퍼튜브	초연결 스마트 도시	탄소중립도시	기타	계
접수	2	8	13	31	9	72	42	26	1	39	9	2	254

※ 2차 수요조사는 국토교통분야 협회, 학회, 공공기관 등 협조를 통해 수요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라 국토교통 세부산업별 구체적 수요를 확인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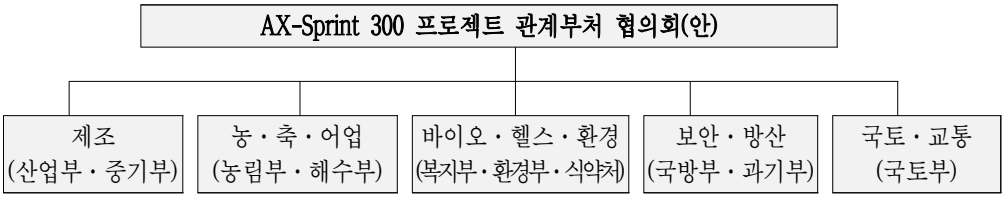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수요조사, 과제발굴 및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 중복지원 방지 방안, 구체적인 사업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은 각 부처의 소관 업무에 따라 개별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는바, 유사 과제에 대한 중복 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AX-Sprint 300 프로젝트」를 보면, 참여부처는 산업부,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과기부, 국방부, 식약처 등 10개 부처이며, 각각 제조, 농 · 축 · 어업, 바이오 · 헬스 · 환경, 보안 · 방산, 국토 · 교통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됨.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프로젝트 사업구조]



이러한 분류는 AI 기술의 성질과 무관히 정부 부처의 소관 업무를 기준으로 나뉘어진 것이므로 중복투자, AI 기술 사각지대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농림축산식품부”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에 따라 계획하고 있는 지원대상을 보면, 농촌서비스・식품산업 분야에서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부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존재함.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대상 예시]

단계	설명	예시		
		농산업	농촌서비스	식품산업
TRL6	실제 운용 환경 유사 수준의 시제품 시험 (파일럿 규모)	특정 지역 농가에 AI 병해충 탐지 카메라 설치・시험	군단위에서 농촌 **맞춤 교통 서비스** 파일럿 운영	대형마트 물류창고에서 스마트 포장 시스템 시험
TRL7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시스템 시연 (시범적용단계)	실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에 AI 제어 시스템 설치・시연	농촌 보건지소에서 AI 원격 진료 시스템 시범운영	실제 식품공장 생산라인에 AI 공정 제어 시스템 적용
TRL8	실제 시스템 완성 및 인증(실제 환경에서의 검증 완료)	농가에서 상용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 트랙터 인증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 교통 AI 서비스** 공식 채택	HACCP 인증을 받은 AI 기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은 기술 분야가 아닌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 분야의 중소기업은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지원대상에 동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사업 개요]

○ (목적) 중소·중견기업이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AI 응용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중소 제조업에 AX 제품을 빠르게 보급·확산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2026~2027년, 2년간 1,350억원(민간부담 별도), 45개 과제 - 2026년: 유형1 21개 과제×30억원, 유형2 24개 과제×15억원(1년차) = 990억원 - 2027년: 유형2 24개 과제×15억원(2년차) = 360억원 ○ (사업방식) 과제당 정부지원금 80%, 민간 자부담 20% ○ (지원분야) ①제조기반업종·공정혁신 분야, ②지역 주력산업 선도분야, ③제조업-공급기업 협업 분야 ○ (중점추진방향) ①산업재해 근절(안전·위험요소 해결), ②인력난·열악 환경 해소, ③수출경쟁력 확보(원가절감·글로벌시장 대응) 중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중복투자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공고 · 접수 · 선정평가 과정에서 부처간 중복지원 여부 확인, 다수 부처와 동시 사업공고, 부처 공동협의체 구성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토교통부 내에서 추진하는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과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의 통합 추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은 도로 분야 AI기술을 지원하는 것인데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에 포함되므로, 두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은 도로 분야(도로설계, 구축, 운영, 유지관리 등) 관련 AI 응용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은 그 외 국토·교통 분야(주택, 건축, 건설, 물류, 항공, 철도, 모빌리티 등)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그러나 도로 분야에 국한된 AI 기술보다는 철도 · 자동차 등 전반적인 교통 시스템을 총괄하는 AI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도로 분야만 별도 세부사업을 분리하는 대신 통합 추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7. 청년월세 지원 사업: 계속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 협의 실시 필요

가. 개 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중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2억 1,600만원(67.2%) 증액된 1,299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25)]

[2026년도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청년월세 지원	77,737	134,909	129,953	52,216	67.2

이 사업은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자 청년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실제임차료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24개월 동안 지원(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하는 사업임.

[청년월세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자

○ (소득요건) 청년가구(중위 60%) 및 원가구(중위 100%) 모두 고려

구 분	① 청년가구	② 원가구(부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1인가구 143.5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5년 3인가구 502.5만원)
재산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	4억 7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실제임차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24개월(회) 지원

□ **(사업방식)**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서울 30%, 그 외 5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5) 일반회계 - 청년월세 지원(1034-311)(주택토지실)

당초에는 코로나-19 시기에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지원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한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올해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26년 예산안에 확대 편성되었음.

[청년월세 지원 사업 경과 및 2026년 예산안 세부내역]

□ 사업 경과
- ㅇ '21. 8. 24: 국무회의에서 청년월세 사업 추진 결정(예타 면제)
- ㅇ '21. 8. 26: 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 발표
- ㅇ '22. 8.: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접수(1년 동안, '23.8월 마감)
  - 1차 사업 수혜자: 9.6만명
- ㅇ '24. 2.: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접수(1년 동안, '25.2월 마감)
  - 2차 사업 수혜자: 15.6만명(1,2차 중복수혜 3만명, 2차 신규수혜 12.6만명)
- ㅇ **'27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

□ 2026년 예산안
- ㅇ 1·2차 중복 수혜자 0.6만명, 2차 신규 수혜자 12.7만명: 857억 9,300만원
- ㅇ 2026년 신규 수혜자 6만명: 441억 6,000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한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논의와 기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 간 반복 수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필요가 있음.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주거복지사업의 일종으로서 사회보장제도 사업(사회서비스사업)에 해당하고, 한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사회보장사업의 변경에 해당함.

국토교통부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26]에 따라 4월 30일 전에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사업 필요성과 성과 등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만일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면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되,[27] 이 경우에도 정부예산안 제출 시기,

26)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처리 기한 등을 고려하여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28)]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출범('25.6월)의 특수성, 경기여건 악화로 인한 청년 지원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긴급한 사유'로서 기한이 도과하여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사회보장협의에 성실히 임하여 협의 결과가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29)]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월세 상승, 청년 고용률 하락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빠른 시일 내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임.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지역에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영향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음.

특히,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으로 설계된 사업으로 24개월간 지원을 받은 경우 더 이상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청년월세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나, 일부 유사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청년은 해당 지자체 사업을 통해 반복 수혜가 가능함.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 주거지원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지원한 것으로, 이는 소득과 연령기준 등을 국토부의 청년월세 사업보다 완화해서 시행하는 보충적인 성격이라는 의견임.

---

27)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161.

29)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한 사회보장협의 요청서와 법정기한 미준수 소명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였음(10.1).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월세 지원 유사사업 예시]

지자체명	사업명	대상 연령	소득 (중위소득 기준)	지원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19~39세	150%	월 20만원 /2년
인천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독립가구 60%, 원가구 100%	월 20만원 /2년
옥천군	청년 월세 지원	19~39세	180%	월 10만원 /4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19~39세	120%	월 20만원 /2년
제주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35~39세	60%	월 20만원 /1년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19~45세	120%	월 20만원 /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시비)	19~39세	120%	월 10만원 /5개월
울산시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19~39세	150%	월 15만원 /4년
세종시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19~39세	150%	월 20만원 /10개월
파주시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19~39세	120%	월 10만원 /1년
고성군	고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18~49세	150%	월 20만원 /1년

주) 인천시의 경우, 19~34세의 경우 국토부의 청년월세 사업을 통해 지원하며, 35~39세의 경우에만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자료: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2021년 청년월세 사업이 신설된 때를 포함하여 지원 요건을 변경할 때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는 등 총 4차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였는바,[30] 한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 간 반복 수혜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30) 국토교통부는 2021년 청년월세 사업 신설 협의 1회, 2024년 거주요건 완화(보증금 5천, 월세 60만→보증금 5천, 월세 70만), 거주요건 폐지, 사업기간 완화로 각각 변경 협의를 3회 진행하여 사회보장협의를 총 4차례 진행하였음.

8. 액체수소 저장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 기술개발(R&D) 사업(신규): 기술의 효과성과 독자적 활용성을 고려한 개발 필요

가. 개 요

‘액체수소 저장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 기술개발(R&D)’ 사업은 액체수소 인수기지 건설을 위해, 대용량에 적합한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와 적하역 시스템을 개발 및 실증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4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1][32]

[2026년도 액체수소 저장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액체수소저장탱크및적하역시스템기술개발(R&D)	-	-	4,000	4,000	순증

구체적으로 액체수소 인수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4,000㎥급 대용량에 적합한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와 적하역 시스템을 개발 및 실증하기에 앞서, 이 사업은 선행 과제 단계로서 200㎥급 저장탱크 기술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29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될 계획임.

[액체수소 저장탱크 및 적하역시스템 기술개발(R&D) 사업 계획]

□ (목적) 액체수소 인수기지 건설을 위해, 대용량에 적합한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와 적하역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사업내용) 200㎥급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 설계 및 건설 기술 개발, BOG(Boil off Gas) 비상제어·내장형 재액화 시스템 개발, 4,000㎥급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 설계 기술 개발, 6인치급 적하역 시스템 설계기술 및 로딩암 제작 기술 개발

□ (총사업비/기간) 해당없음 / 2026 ~ 2029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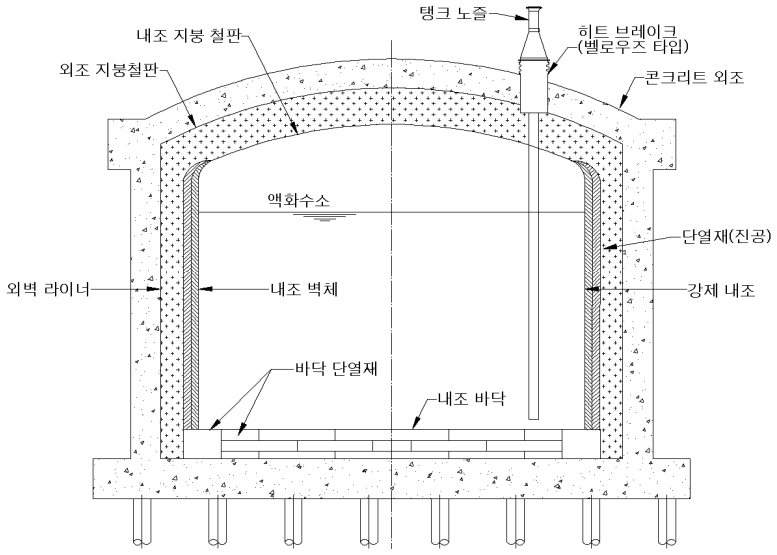
구분	총 정부출연금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사업비	29,000	4,000	8,000	9,000	8,00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1) 일반회계 - 액체수소 저장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 기술개발(R&D)(4155-339)(건설정책국)

32) * 적하역(積荷役): 화물을 운송수단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의미함.
* 평저형(平底型): 저장 탱크의 밑바닥이 평평한 형태를 의미함.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



나. 검토의견

R&D 사업의 효과성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200㎥ 저장탱크 기술의 독자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해외 액체수소 도입을 위한 인수기지 건설 기술개발을 위해 사전기획 「해외 액체수소 도입을 위한 인수기지 건설 기술개발 기획」(2023.5.26.~2024.11.25.)(이하 “사전기획”)을 추진하였음.

사전기획에서는 기술개발의 목적으로 “대용량 수소의 국가 간 이송을 위한 액체수소 공급인프라 건설 기술의 선제적 개발”을 위해 “일 5톤급 수소액화 플랜트와 4,000㎥급 대용량 액체수소 저장·공급이 가능한 액체수소 터미널 건설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5개의 과제를 설정하고,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총 3,812억원(국고 2,668억원)의 사업비 투자를 계획하였음.

그런데 액체수소 저장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 기술개발(R&D) 사업은 당초 4,000㎥급 저장탱크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전기획 연구과제 중 일부 연구과제를 발췌하여 추진하는 것임. 국토교통부는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평저형 탱크의 기술적 난이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R&D 리스크 저감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파일럿 규모(200㎥급)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임.

이 사업의 재정 규모는 국고 290억원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향후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평저형 200㎥급 저장탱크의 기술 확보가 가능하면, 경제성과 민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기획에서 목표하는 4,000㎥급 저장탱크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사전기획(4,000㎥급 저장탱크)과 신규사업(200㎥급 저장탱크)의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내역 1] 통합실증	합계	73.28	310.22	493.90	535.07	307.04	139.93	126.88	1,986.38
	국고	51.30	217.18	345.74	374.56	214.94	97.94	88.81	1,390.46
	민자	21.99	93.08	148.17	160.53	92.12	41.98	38.06	595.92
[내역 2] 수소(재)액화	합계	29.22	71.54	101.70	72.44	33.35	24.78	8.97	342.00
	국고	20.45	50.08	71.19	50.71	23.35	17.34	6.28	261.06
	민자	8.77	21.46	30.51	21.73	10.01	7.43	2.69	80.93
[내역 3] 적하역	합계	18.83	38.61	56.08	52.62	37.93	27.40	12.64	244.11
	국고	13.18	27.03	39.26	36.83	26.55	19.18	8.85	170.88
	민자	5.65	11.58	16.82	15.79	11.38	8.22	3.79	73.23
[내역 4] 저장	합계	22.95	55.98	135.81	193.76	284.63	155.00	15.76	863.90
	국고	16.06	39.19	95.07	135.63	199.24	108.50	11.03	604.73
	민자	6.88	16.80	40.74	58.13	85.39	46.50	4.73	259.17
[내역 5] 기화 · 송출	합계	16.07	31.69	54.77	80.76	82.82	68.06	41.39	375.55
	국고	11.25	22.19	38.34	56.53	57.97	47.64	28.97	262.89
	민자	4.82	9.51	16.43	24.23	24.85	20.42	12.42	112.67
전체	합계	160.35	508.08	842.28	934.67	745.79	415.15	205.63	3,811.94
	국고	1,112.24	355.66	589.59	654.27	522.05	290.61	143.94	2,668.36
	민자	48.10	152.43	252.68	280.40	223.74	124.55	61.69	1,143.58

주) 이번 신규사업은 기획보고서 내용 중 **적하역(내역3)** 부분에서는 적하역 통합 시스템 설계 및 로딩암 개발, **저장(내역 4)** 부분에서는 200㎥규모 평저형 저장탱크 개발, **통합실증(내역 1)** 부분에서는 저장탱크 및 로딩암 등 개발 기술에 대한 실증 일부를 우선 추진할 예정
(위 표의 ⌐¬ 표시 부분 중 일부 요소기술)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해외 액체수소 도입을 위한 인수기지 건설 기술개발 기획」, p.224.

다만, 이 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사전기획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시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왜냐하면, 이 사업은 사전기획의 로드맵에서 제시한 액체수소 생산-저장 · 운송-활용의 단위공정 중 부분 단계에 속하고, 각 공정은

수소기지 건설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면서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임.

그리고 사전기획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신규사업 분리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200㎥급 파일럿 제작을 거쳐 4,000㎥ 상용급으로 스케일업" 하는 방향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사전기획(4,000㎥급 저장탱크)의 사업 추진전략(일부)]

〈사업 추진전략 2〉 단계적 연구개발 및 실증을 통한 연구 효율성 및 성과 완성도 제고

□ 개발 기술·기자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 프로토타입 설계 및 제작 → 파일럿 테스트 등으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연구개발-실증 단계로 추진

□ 특히, 그간 시도된 바 없는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 핵심기술 확보와 성능검증을 위해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 기반 상용급 대용량 저장탱크로의 스케일업 지원**

○ **200㎥ 급 액체수소 저장탱크 설계 기술 개발을 통해 실물 규모의 파일럿 타입을 제작, 다양한 환경 조건 아래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용급(4,000)㎥ 대용량 저장탱크 설계 기술 완성도 제고**

자료: 「해외 액체수소 도입을 위한 인수기지 건설 기술개발 기획」, p.212

또한 이 사업의 마지막 연차에서 "4,000㎥급 평저형 저장탱크 기본설계"를 개발 내용에 포함시키는 등 3,800억원 규모의 사전기획 과제의 진행을 사실상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신규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주요내용	예산(억원)
1차년('26년)	■ 액체수소 저장탱크 설계를 위한 금속소재 물성 D/B구축 및 표준화 ■ BOG 비상제어· 내장형 재액화 시스템 설계 ■ QCDC(연결-분리 커넥터) 및 ERC(비상 분리) 시스템 설계	40
2차년('27년)	■ 200㎥급 평저형 저장탱크 설계 및 구조·유동·열전달 통합 시뮬레이터 개발 ■ BOG 비상제어·내장형 재액화 시스템 제작 ■ QCDC(연결-분리 커넥터) 및 ERC(비상 분리) 시스템 상세 설계	80
3차년('28년)	■ 200㎥급 평저형 저장탱크 상세설계, 실증탱크 검증을 통한 scale-up 설계 ■ 200㎥급 평저형 저장탱크 내외부 구조체 및 단열 시스템 건설 및 평가 ■ 액체수소 로딩암 시스템 제작 및 QCDC, ERC 최적화	90
4차년('29년)	■ **4,000㎥급 평저형 저장탱크 scale-up 기본설계** ■ 주요 장비 개발 및 통합 테스트/개량, KGS인증시험 ■ 적하역 시스템 실증 및 scale-up 기본설계	8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당초 사전기획 과제의 일부를 발췌하여 신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적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후속 과제가 예비타당성 조

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속적인 연구개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의 효과성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 과정에서 200㎥ 저장탱크 기술의 독자적 활용 방안[33]을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33) 독자적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액화수소 충전소를 지속 확충(2030년까지 280개소)하고 있고, 수소충전소에 설치된 구형 액체수소 저장탱크는 최대 4톤 규모(소요면적 51㎡)인 반면, 유사면적을 활용한 평저형 저장탱크(소요면적, 55㎡, 200㎥)는 약 14톤의 액체수소를 저장 가능하고 설치도 더 간편하여 연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후속과제와는 별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9. 초연결 지능도시 핵심 기반기술 개발(R&D) 사업(신규): 종전 스마트시티 R&D사업과의 연계방안 고려 필요

가. 개 요

‘초연결 지능도시 핵심 기반기술 개발(R&D)’ 사업은 AI를 활용한 고도화된 지능도시 구현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시데이터 표준화와 초연결 지능도시 플랫폼 핵심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4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4)]

[2026년도 초연결 지능도시 핵심 기반기술 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초연결 지능도시 핵심 기반기술 개발(R&D)	-	-	4,000	4,000	순증

구체적으로 AI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 인프라를 조성할 목적으로 도시데이터 표준,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5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될 계획임.

[초연결 지능도시 핵심기반 기술개발(R&D) 사업 계획]

□ (목적)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도화된 지능도시 구현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도시데이터 표준화 및 초연결 지능도시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과 지자체 실·검증

- (주요 개발 핵심기술) 초연결 지능도시 플랫폼, 도시데이터 표준 모델, 다종 다해상도 CCTV 영상분석·상황인지 AI 모듈, 이종·다종 초대규모 IoT 데이터 경량화 처리 AI Edge 시스템, LLM 기반 도시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생성형 AI, 우수 서비스·솔루션 표준 모델, 지능형 도시서비스·솔루션 등

□ (사업내용) (핵심기술①)초연결 지능도시 데이터 및 플랫폼 핵심 기반기술 개발, (핵심기술②)초연결 지능도시 플랫폼 기반 지능형 서비스·솔루션 기술 개발, (핵심기술③)초연결 지능도시 기술·서비스 확산 위한 리빙랩 및 실증(2개 유형)

□ (총사업비/기간) 해당없음 / 2026~2030

(단위: 백만원)

구분	총 정부출연금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초연결 지능도시 핵심 기반기술 개발	25,000	4,000	6,300	7,500	5,000	2,200

자료: 국토교통부

34) 일반회계 - 초연결 지능도시 핵심 기반기술 개발(R&D)(4156-364)(국토도시실)

나. 검토의견

스마트시티 기술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종전 R&D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등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초연결 지능도시 핵심 기반기술 개발(R&D)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의 고도화 단계(4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이전 단계의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성과를 확산 · 발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주요 R&D 흐름]

단계	1차R&D: U-City 기반 조성	2차 R&D: U-City기반 고도화	3차 R&D: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	4차 R&D: 스마트도시 고도화
세부 사업	U-Eco City R&D (2007~2014)	지능형도시정보 관리시스템 R&D (2014~2018)	혁신성장동력, 스마트시티 AIoT R&D (2018~2025)	초연결지능도시 R&D (2026~)
추진 배경	- ICT기술 활용 도시문제 해결 - 미래형 U-City 건설 - 통합플랫폼필요성 - 국정과제「U-IT강국 및 U-Korea」 등	- 시민 중심 서비스(생활 체감형) - 1차년 통합플랫폼 고도화 - 제2차 U-City종합계획 (국내확산 및 해외진출 등) - U-City 정책R&D등	-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도시디지털전환(DX) - 데이터 기반 도시 조성을 위한 데이터허브구축(국가전략 R&D)필요 등	- AI 기술활용 초고도화된 AI도시(AX) - 데이터허브활용 및 도시 운영 효율성 제고 (도시서비스의 고비용 저효율문제 해결 등) -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등
주요 특징	- 스마트시티 최초의 R&D - 요소 기반 중심(무선망, 센서, 플랫폼)	- 기술중심 R&D → 서비스 중심 R&D - 1차 R&D고도화 및 확산	- 데이터 기반 중심 도시 운영 - 도시데이터축적 기능 강화(데이터허브) - 현장 실시간 대응능력 강화	- AI 등 최첨단 디지털기술 융합 기반 조성 →도시데이터 표준화 - 다양한 서비스간 연결 · 연동기반 조성 → 초연결지능도시 플랫폼
주요 개발	- 통합플랫폼, U-디바이스, U-City 서비스 기반 구축 등 스마트도시 전 분야 연구개발 (플랫폼, 통신망, 센서등 원천기술 및 서비스 등)	- 1차 R&D통합플랫폼 보급용 컨텐츠(5대연계서비스) 개발 - 통합플랫폼 보급사업 확산(108개 지자체)	- 데이터허브구축(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 현장 실시간 대응 엣지 AIoT개발 - AIoT전용 무선망 인프라 개발	- 이종 · 다종 도시 데이터 및 서비스 연동 핵심기술 개발 등 (데이터표준화 및 초연결지능도시 통합플랫폼)
핵심 성과물	공공무선AP 등 핵심기술, U-스마트도시 서비스, 통합플랫폼	U-City 인증제도 및 U-City 설계기준 등의 정책과제, 통합플랫폼고도화	데이터허브 (대구,시흥 실증), Edge AIoT시스템, AIoT무선 네트워크 (성남 실증)	초연결지능도시데이터 및 플랫폼 (대도시,지방도시 실증), AI 에이전트 기반 AI시티 구축 · 운영기술

단계	1차R&D: U-City 기반 조성	2차 R&D: U-City기반 고도화	3차 R&D: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	4차 R&D: 스마트도시 고도화
주요 서비스	통합플랫폼, 환경생태정보분석 시스템, U-서비스(공간・도로・방범・교량안전)	통합플랫폼고도화, 재난・응급(112,119) 서비스, U-City 설계・진단 서비스	데이터허브, Massive IoT디바이스, 스마트모빌리티 외 4종	초연결지능도시플랫폼, 도시데이터 표준 및 인프라 구축 기술, 대도시 및 지방소멸도시 문제 대응 서비스 5종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R&D 사업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최신 IT기술을 도시공간 적용한다는 방법론을 공유하고 있으며, 다만 개별 사업마다 도입하고자 하는 IT기술의 성과물에서 차이가 있을 뿐임.

이 사업의 경우는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AI 기술을 도시공간에 적용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와 서비스간 연동을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 개발사업(R&D)”(2022~2026)과 비교할 때 ① AI 등을 활용하여 도시공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② ‘초연결’ · ‘IoT’ 등 센서, 기계, 공간, 사람의 끊김 없는 연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성과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Edge AIoT 개발을 통한 시스템 부하 가중 및 처리시간 지연 해결, 현장 즉시 조치 및 개인 정보보호인 반면, ‘초연결지능도시 핵심기반기술 개발’사업은 데이터표준화를 통한 AI융합・활용 제고 및 부가 서비스 창출이므로 목적이 다르다는 등 사업간 차이점을 강조하는 입장임.[35]

35) 국토교통부는 전자의 사업은 IoT 센서를 통해 수집된 단방향성 단순 데이터를 특정 지역(안심공원, 배수시설 등)의 실시간 현장 대응을 위한 기술로서 종합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후자의 사업은 공간정보(국가공간정보 플랫폼) 및 데이터허브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AI기반의 데이터로 매핑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 연동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지원하는 지능형 광역 통합플랫폼 개발사업이라는 입장임.
특히, 기 구축된 데이터허브는 수집 정보별 데이터 구조가 상이(비표준, 저품질)하여 고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한 인공지능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 적용 및 다양한 기능의 도시융합 서비스 창출 등에 한계가 있어 데이터표준화 개발 시급하다는 의견임.

[사업 목적에 따른 차이점]

구분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핵심기술 개발		초연결지능도시 핵심기반기술 개발	
핵심 기술	Edge AIoT	AIoT 무선네트워크	데이터표준화 컨버터*	지능형 통합플랫폼
개발 목적	부하 가중 및 처리시간 지연 해결, 현장 즉시 조치 및 개인 정보보호	초대규모·고밀도의 도시데이터 무선전송 지원	AI융합·활용 제고 및 부가 서비스 창출, 도시데이터 표준화 및 서비스 상호연결	도시서비스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
주요 특징	현장 실시간 처리를 위한 AI분석·추론, 데이터 분산처리 및 민감데이터 보호	망 운영비 절감, 데이터 처리능력 향상 및 초저전력	도시 데이터의 자동변환 및 저장	데이터 연계·분석 및 지능 서비스·솔류션 제공

자료: 국토교통부

그러나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핵심기술 개발’ 사업의 주요 인프라 중 하나는 IoT센서 등을 통해 수집된 도시데이터로서, Edge AIoT(온디바이스)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데이터표준화[36]는 필수적인 개발 사항임.

이 사업의 도시데이터 표준화(100종)를 통해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핵심기술 개발’ 서비스의 다양한 재난·안전 서비스가 응용·확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결과적으로 장기적·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R&D 사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새로운 스마트시티 R&D 사업은 이전 R&D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및 플랫폼 개발 등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개선·보완해 나가는 등 연계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임.

36) Edge AIoT용 데이터표준 8종: 하천 수위, 침수, 강수량, 화재, 이상 행동 등

10. 200m급 목구조 대공간 건축물 건설기술 개발사업(R&D)(신규): 기술의 상업화·상용화 등 활용 방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200m급 목구조 대공간 건축물 건설 기술 개발(R&D)’ 사업은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비정형 대형 지붕 구조물 건설 기술의 자립화, 목조 대공간 건축 기술 글로벌 선두화를 위해 200m급 규모의 대규모 목구조 건축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1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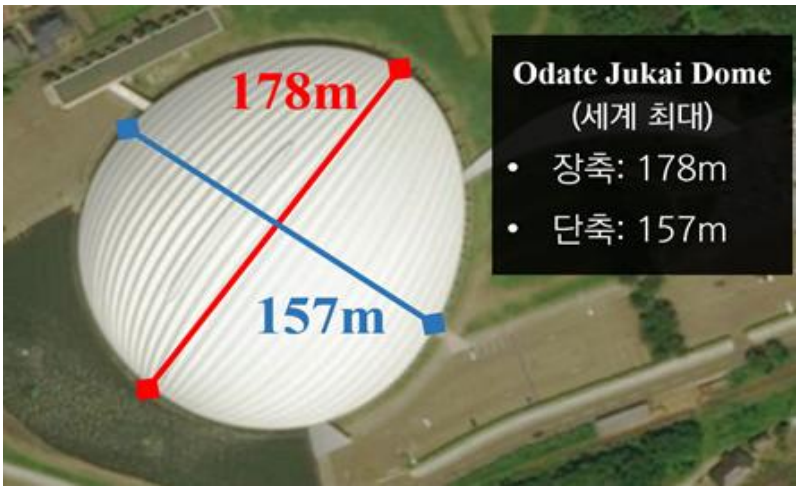
[2026년도 200m급 목구조 대공간 건축물 건설 기술 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200m급 목구조 대공간 건축물 건설 기술 개발(R&D)	-	-	1,700	1,700	순증

사업명의 200m는 대공간 건축물 장축의 길이(경간)를 의미. 현재 세계 최대 목구조 대공간 건축물은 일본의 “Odate Jukai Dome”으로 178m의 경간을 기록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업 최종 목표인 200m급 목구조 대공간 건축물은 세계 최대 규모임.

[그림] Odate Jukai Dome



37) 일반회계 - 200m급 목구조 대공간 건축물 건설 기술 개발(R&D)(4156-381)(국토도시실)

구체적으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 대공간 건축물의 재료・환경・설계・시공・유지관리 핵심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0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될 계획임.

[200m급 목구조 대공간 건축물 건설기술 개발사업(R&D) 사업 계획]

□ (목적)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비정형 대형 지붕 구조물 건설 기술의 자립화, 목조 대공간 건축 기술 글로벌 선두화를 통한 목조 대공간 건설 기술 자립화 및 해외시장 진출

□ (사업내용)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 대공간 건축물의 재료・환경・설계・시공・유지관리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 목조 대공간 건축물의 고성능 하이브리드 대단면 부재 기술개발
- 목조 대공간 건축물의 OSC 모듈화 및 탄소중립설계 기술개발
- 목조 대공간 건축물의 친환경 및 에너지 평가 기술개발
- 목조 대공간 건축물의 스마트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

□ (총사업비/기간) 해당없음 / 2026~2030

(단위: 백만원)

구분	총 정부출연금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0m급 목구조 대공간 건축물 건설 기술 개발	20,000	1,700	3,850	4,280	5,090	5,080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는 200m 목구조 기술의 성과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의 상업화·상용화 등 활용 방안을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200m 규모 목구조 건축물의 건설기술 확보를 통해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과 목조 대공간 건설기술 자립화 및 해외시장 진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 건축의 기술성숙도 향상, 국내 노후화된 오픈형 공공 체육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대공간 목구조 설계기술 정립 등을 의도하고 있음.

국토교통부가 기대하는 사업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신규사업을 통해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38] 6~8의 시제품·실용화 단계까지 기술을 상향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됨. 기술 실증을 거쳐 실용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표준화·인허가 취득 및 본격적인 양산과 사업화 단계를 거쳐 시장에 도입되므로, 결국 기술

38) 개발기술의 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또는 이행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화된 측정지표로서 연구개발환경(실험실, 유사환경, 실제환경), 연구개발결과물(시제품, 완제품), 기술수준(개념, 시현, 성능검증)에 따라 기술성숙도를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실용화, 양산의 R&D 5단계와 9개의 세부단계로 분류함.

성숙도를 상업화 직전 단계까지 완성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기술 실증 방법으로는 개별 요소기술의 경우는 실제 크기의 모형으로 추진하고, 건축물 전체의 내진기술 또는 내풍기술 등의 검증은 실제 구조물을 구현하기 곤란하므로 스케일 다운(축소)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할 계획임.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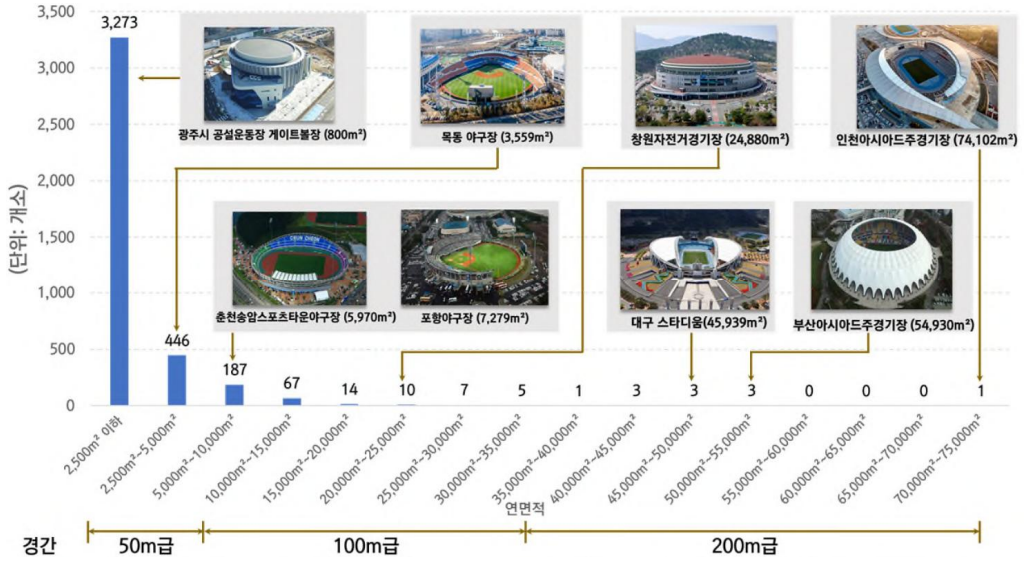
TRL 단계			단계별 정의
기초연구	1	【기초실험】 기본원리발견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개념정립】 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3	【기본성능검증】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개발하려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등
	4	【부품/시스템 성능검증】 연구실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는 단계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제품	5	【장치/시스템 시제품 제작】 유사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확정된 공법/재료/시스템의 실험실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제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6	【시제품 성능평가】 유사 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파일럿 규모(수개~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생산수율, 불량률 등 제시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실용화	7	【시제품 신뢰성평가】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장치 및 재료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제품을 현장평가 (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등
	8	【시제품 인증】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양산	9	【사업화】 상용제품생산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다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200m 규모 목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이나 수주 계획이 없는 상황임. 국토교통부는 국내 공공 체육시설의 경간 분포는 50~100m급 규모 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50-100m급 목구조 대공간 건축물 기술을 국내 지자체의 다양한 공공 체육시설에 적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현재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님.

200m급 목구조 건설은 대형 공공건축물(축구장) 이상의 규모이므로, 해당 기술의 성과가 일반 국민에게 체감되려면 기술개발 이후 수백~수천억 규모의 SOC사업 조성 또는 해외 수주 등 상업화가 나타나야 할 것임.

[그림] 국내 공공 체육시설의 연면적별 분류



상업화 · 상용화 직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어도 실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한다면, 목표대로 기술개발이 완료되었는지를 온전히 평가하기 어려우며 기술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도 불가능할 것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0m 목구조 기술의 성과가 온전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기술의 상업화 · 상용화 방안을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11. 리츠시장 건전성 강화 사업: 제경비성 경비인 회의비 예산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리츠시장 건전성 강화’** 사업은 프로젝트 리츠, 지역상생리츠 등의 도입과 리츠 산업의 성장에 따라 리츠 등에 대한 효율적인 인가, 검사·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금융상품 기획·컨설팅 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0만원(1.2%) 증액된 34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39)]

[2026년도 리츠시장 건전성 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3,515	3,515	3,555	40	1.1
리츠시장 건전성 강화	3,415	3,415	3,455	40	1.2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는 ‘리츠시장 건전성 강화’ 사업에 포함된 ‘부동산투자회사 감독지원’, ‘부동산금융상품 기획·컨설팅’ 업무들에 대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구체적으로 1인당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제경비는 120%, 기술료는 40%를 각각 적용하고 여비와 경비는 직접경비로 분류하여 별도로 계상하고 있음.

39) 일반회계 -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5632-302)(주택토지실)

[리츠시장 건전성 강화 예산안 중 '부동산투자회사 감독지원',
'부동산금융상품 기획·컨설팅'업무의 세부내역]

부동산투자회사 감독지원

□ 소요예산 : 490개사(리츠 421개 + 자산관리회사 69개) × 4,812,043원
≒ 23억 5,700만원

항목		세부 산출내역	세부단가(원)
인건비		• 인가등록심사, 사업계획검토, AMC인가, 자산가치검증, 상시모니터링, 현장검사, 운영위험평가, 투자보고서, 경영실태평가 등 전문인력	1,360,420
위탁업무 수행경비	여비	• 리츠인가 = 137,000원×2명×40건 • AMC인가 = 137,000원×2명×10건 • 현장검사 = 437,000원×2명×50건 ⇒ 총계 57,400,000원÷490개사	117,143
	경비	• **회의비 19,000,000원** • 자료수집비 7,000,000원 • 인쇄비 7,000,000원 ⇒ 총계 33,000,000원÷490개사	67,347
제경비		• (인건비+)×120%	1,632,504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40%	1,197,170
공급가액		• (인건비+여비+경비+제경비+기술료)	4,374,584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0%	4,37,458
합계			4,812,043

부동산금융상품 기획・컨설팅

항목		세부 산출내역	소요예산(원)
인건비		기술사 1명,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2명	86,593,220
위탁업무 수행경비	여비	• (137,000원x4명x8회) - 1박 시외(서울-대구 기준) 137,000원	4,384,000
	경비	• **회의비 3,000,000원** • 자료수집비 1,000,000원 • 인쇄비 1,500,000원	5,500,000
제경비		• (인건비+)×120%	103,911,864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40%	76,202,034
공급가액		• (인건비+여비+경비+일반관리비)	276,591,118
부가가치세		• (인건비+여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27,659,112
합계(백만원 이하 절사)			304,000,00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는 리츠시장 건전성 강화 사업 수행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감독지원, 부동산금융상품 기획·컨설팅 업무 예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비를 직접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제경비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감독지원’, ‘부동산금융상품 기획·컨설팅’ 업무의 여비, 회의비 등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경비이므로, 제경비와 별도로 분리하여 계상하였다는 의견임.

그러나 예산 산출의 근거가 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직접경비와 제경비 규정에서 회의비는 제9조의 ‘제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실무적으로도 인가등록 심사, 사업계획 검토 등을 위한 회의비는 자료수집비·인쇄비·여비와 달리 사업 추진에 따라 비용이 특정되거나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됨.

특히 해당 업무들의 예산 세부내역에서 책정한 제경비 120%와 기술료 40%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뿐만 아니라 유사 업종인 건축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측량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제경비 110~120%, 기술료 20~40%의 최대치로 정하고 있어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회의비를 직접경비로서 추가 계상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보임.

따라서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제경비에서 집행하도록 하며, 직접경비에 편성된 2,200만원(부동산투자회사 감독지원 1,900만원, 부동산금융상품 기획·컨설팅 300만원)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직접경비, 제경비에 관한 규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국내 출장여비 및 공사감리 등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하고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 · 서무 ·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 ·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임대비(별도의 현장사무실 제공비용 제외)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②계약시 당사자간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직접경비에 대하여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시스템 구축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한다.

제13조(기술료) 기술료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 ·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디지털 시각화 기술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12.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 사업(신규): 민간정비-공공정비 사업간 비용 차이에 대한 주민(조합) 인식 분석 필요 등

가. 개 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 사업은 주민들이 공공정비(공공재개발 · 재건축) 방식을 선택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정비(조합)방식보다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88억 2,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0)]

[2026년도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	-	8,827	8,827	순증

공공정비 방식의 정비사업이란, 조합 또는 토지 · 건축물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41)]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 · 신탁 · 공공방식)를 토지주택공사(이하 “LH”) 또는 지방공사로 선정하여 시행하거나 공동(조합+LH 등)으로 시행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구분 가능함.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 사업에서 “공공정비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민간정비 방식보다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란, LH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받는 사업시행자 수수료(총사업비의 약 3% 수준)를 의미하며, 이번 신규사업에서는 해당 수수료의 일부(최대 15%)를 국고로 보조하려는 것임.

보조방식은 사업절차에 따라 시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때 수수료의 1%, 사업시행인가 때 1.5%, 착공 때 2%, 준공 때 10.5%로 총

40) 일반회계 -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5632-321)(주택토지실)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 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 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5%를 지원함.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준공까지 8년의 기한을 초과하면, 준공수수료 부분(10.5%) 중 일부(5%)만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의도하고 있음.

[2026년도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주민들이 공공정비 방식(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선택하여 추진할 경우, 민간정비(조합) 방식보다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국비 보조)
○ **(지원내용)** 사업시행자 수수료*의 15%를 보조시기**에 따라 지원(나머지 85%는 주민부담)
- 사업시행자 수수료: 총 사업비 3% 수준(주민·공기업 협의로 결정)으로, **사업 완료 시 지급**(정산 항목에 포함)
○ **(보조방식)** 사업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준공까지 시기별로 분할** 지급
* 사업시행자 지정 후 수수료의 1%, 사업시행인가 1.5%, 착공 2%, 준공 10.5%
** 사업촉진 위해 시행자 지정 후 **8년**(정비사업 평균 9년) 내 준공 시 10.5% 지원(**기한 초과 시 5%만 지원**)
*** (사업절차) 정비계획 결정→사업시행자 지정→사업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예산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 도입(2021년) 이후,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개별 사업장의 사업비를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약 2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2026년도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적용대상)**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 도입(2021년) 이후,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장(2025년까지 기지정된 곳도 소급하여 지원)
- 총 45곳(재개발 40곳, 재건축 5곳)에서 공공정비 사업이 추진 중으로 2025년 6월 현재 22곳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상황(재개발 19곳, 재건축 3곳)
- 일반 공공정비사업도 공공재개발·재건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할 경우 지원
○ **(세부내역)** 2026년 88억원, 2026~2030년까지 268억원
- 계속사업으로서 2030년 이후에도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추이에 따라 지속 지원

(단위 : 억원)

소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68	88.2	41.6	57.1	31.4	49.3

* 추계기준: 시행자 지정(Y) 1%, 사업시행인가(Y+2) 1.5%, 착공(Y+5) 2%, 준공(Y+8) 10.5%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 사업에서 “공공정비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민간정비 방식보다 추가 발생하는 비용”의 의미에 대하여 주민(조합)의 인식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 사업에서 의도하는 “공공정비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민간정비 방식보다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란, 정비사업을 공공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정비(조합)방식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사업시행자 수수료(총 사업비의 3% 수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 수수료만으로 민간정비-공공정비방식의 비용 차이를 전부 설명할 수 없음. 주민들은 민간정비와 공공정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뿐만 아니라 용적율 완화, 공공기여분 증가 등 전반적인 사업성을 고려할 것임.

구체적으로 주민(조합)이 공공정비를 선택함에 따라 민간정비와 비교하여 예상하는 혜택(수익)과 부담(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주민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여 비용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공공정비-민간정비 방식 비교]

구분	민간정비	공공정비		주민(조합) 인식 (이익 또는 부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시행주체	민간(조합)	공공 단독(LH·지방공사) or 공공+조합 공동시행		□공기업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활용한 품질 관리, 사업기간 단축(이익) □조합의 사업주도권 약화, 조합원의 선호 최대 반영 어려움(대리인 문제)(부담) □공공정비 선택 이전 발생한 기성 관계의 청산(부담)
도시규제 완화	일반 법적상한 용적률 역세권 법적상한 1.2배	용적률 법적상한 120% 허용	용도지역 종 상향	□일반분양 증가로 사업성이 개선되면 주민분담금 감소(이익) □고밀화로 인한 거주환경 저하, 주택가격 부정적 영향(부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미적용	적용	□규제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 사업성 개선(이익)
사업비 지원	-	사업비 50% 이차보전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그간 민간(조합) 방식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시공사 분쟁, 인허가 지연 등의 한계가 노정되었으며, LH 등의 주택사업 전문성을 재개발·재건축에 접목하면서 공공성과 사업 특례를 대폭 강화한 공공재개발·재건축(공공정비)을 도입하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는 의견임.

그러나 2020년 공공정비 방식이 도입[42]되었음에도 여전히 조합 방식이 전체의 92.4%를 차지하고 공공정비 방식은 2.9%[43]에 그치고 있음을 보면, 공공 정비방식이 주민에게 아직까지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민간정비 방식에 따른 비용과 수익에 대한 주민(조합) 인식을 보다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더 많은 정비구역에서 공공정비를 선택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둘째, 현장의 사업시행자 수수료 지급 시기와 이 사업에 따른 수수료 지원 시기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정산, 반납 기준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공정비 방식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 수수료는 LH,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시공 품질 유지, 공사 기간 관리 등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사업이 완료(준공)될 때 정산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음.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수수료 일부(15%)를 사업시행자에 직접 지원하며, 구체적으로 사업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인가 1.5%, 착공 2%, 준공 10.5%로 각각 분할 지급됨.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착공까지 총 4.5%의 지원금은 정산 때 받을 사업시행자 수수료 일부를 선지급받는 효과가 발생함.

사업시행자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사업비는 공사기간, 자재가격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준공 시기에는 총사업비 변동으로 인한 수수료 가감이 일어나고,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정비사업 취소 등 사정변경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변동에 따른 수수료 지원금 정산,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라 기지급된 지원금의 반납 등 사업시행자 수수료 지급 시기와 이 사업에 따른 수수료 지원 시기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정산 · 반납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

42) 공공재개발은 2020년 5.6대책, 공공재건축은 2020년 8.4대책으로 도입되었고, 2021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

43) 정비사업 시행방식(2025.6, 구역지정 기준): 조합 92.4%, 신탁 4.7%, 공공 2.9%

요가 있음.

셋째,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무리한 사업기간 단축을 유발할 경우 시공 안전성 문제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시공 기간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 사업의 지원 시점을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준공까지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는데, 사업시행자 지정 후 8년(정비사업 평균 9년) 내 준공이 완료되면 10.5% 중 일부인 5%만 지원받을 수 있음.

즉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준공까지의 기간(이하 "정비사업 기간")이 8년 이내인 경우 주민은 수수료의 15% 지원 혜택을 받는 반면, 8년을 초과하면 9.5%만 지원받게 되며,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정비사업 기간에 따라 지원 혜택을 차등 설계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공공정비사업은 2021년도에 도입된 사업방식으로서, 현재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는 지구가 사업인가(25.3월) 단계에 있는 '서울신설1구역' 1곳에 불과함. 따라서 국토부가 제시한 정비사업 평균치(9년)는 예상치에 불과하고, 실제 정비사업 소요기간 통계를 정확히 집계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지원금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유도하는 이 사업이 주택물량의 조기공급에 이바지하는 측면은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과 정비사업 기간 단축으로 인한 안전성 이슈가 해소되어야 할 것임.

[공공정비사업(일부) 추진 현황]

시행자	구역명	총사업비 (백만원)	정비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	준공	정비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수수료(예상, 백만원)
LH	서울A	138,522	23.02월	21.07월	25.3월	26.09월 (예정)	27.03월 (예정)	30.02월 (예정)	103개월	4,017
LH	서울B	217,539	25.03월	21.08월	26.12월 (예정)	27.12월 (예정)	28.12월 (예정)	31.12월 (예정)	123개월	6,055
LH	서울C	307,905	25.03월	21.12월	26.12월 (예정)	27.12월 (예정)	28.12월 (예정)	31.12월 (예정)	120개월	6,158
LH	서울D	228,085	25.10 (예정)	22.02월	27.12월 (예정)	29.02월 (예정)	29.10월 (예정)	33.04월 (예정)	134개월	6,614
LH	서울E	730,979	26.6월 (예정)	22.02월	27.12월 (예정)	28.12월 (예정)	29.12월 (예정)	32.12월 (예정)	130개월	7,309

시행자	구역명	총사업비 (백만원)	정비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	준공	정비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수수료(예상, 백만원)
LH	서울F	846,284	23.12월	24.01월	26.11월 (예정)	28.01월 (예정)	28.09월 (예정)	32.03월 (예정)	98개월	24,542
LH	서울G	691,540	24.03월	24.06월	26.12월 (예정)	28.03월 (예정)	28.11월 (예정)	32.05월 (예정)	95개월	20,055
LH	서울H	989,468	24.10월	24.10월	28.05월 (예정)	29.07월 (예정)	30.03월 (예정)	33.09월 (예정)	92개월	28,695
LH	서울I	294,570	24.11월	24.12월	27.06월 (예정)	28.07월 (예정)	29.04월 (예정)	32.10월 (예정)	94개월	8,543
LH	서울J	647,438	24.12월	25.05월	27.10월 (예정)	28.11월 (예정)	29.08월 (예정)	33.02월 (예정)	93개월	18,776
LH	서울K	835,793	24.10월	25.12월 (예정)	27.06월 (예정)	28.08월 (예정)	29.04월 (예정)	32.10월 (예정)	95개월	24,238
GH	경기A	1,076,007	24.12월	25.1월	26.12월 (예정)	27.12월 (예정)	28.12월 (예정)	31.12월 (예정)	85개월	41,384
GH	경기B	1,636,334	266월(예정)	26.7월 (예정)	27.12월 (예정)	28.12월 (예정)	29.12월 (예정)	32.12월 (예정)	80개월	57,147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이 사업에서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수수료 차등 지원)는 주민에게 귀속되는 반면, 정비사업 시행자 · 시공자인 LH 등 공기업 · 건설사는 정비사업 기간에 따라 받는 수수료가 달라지지 않음. 이에 인센티브와 각종 금융비용 등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주민과 안전시공을 위해 적정 사업기간을 요구하는 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 과정에서 주민동의, 재건축 인허가 등 사업절차에서 일부 발생한 사업지연을 만회하고 늘어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시공 단계에서 무리하게 단축할 경우 시공 안전성이 우려될 수 있음. 인센티브를 위해 공기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발생되는 금융비용 절감, 수수료 지원혜택의 이익보다 주택 품질과 공사 중 안전사고 등 유무형적 손해가 더 막대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분쟁예방 등에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정비사업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시공기간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13. AI 시티 조성확산 사업(신규):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업 기본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AI 시티 조성확산’ 사업은 AI 서비스를 실증·경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인프라 등을 갖춘 AI 시티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 4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4)]

[2026년도 AI 시티 조성확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 시티 조성확산	-	-	4,000	4,000	순증

AI 시티는 공공이 AI 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고, 앵커기관 등 민간은 이를 활용하여 기술·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으로서, 그간 u-city,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AI 기술로 한단계 발전시키려는 것임.

[AI 시티 조성 사업계획]

□ **(추진방향)** ①공공주도 ②앵커시설 ③산·학·연 연계 ④규제프리 ⑤부처협업
① 신속한 사업을 위한 공공 주도 시행
② 과감한 투자로 기술 혁신을 선도할 앵커기관 유치
③ 산·학·연 연계를 통해 거주하며 개발·실증하는 리빙랩 도시
④ 기존의 기술, 도시·건축 규제를 최소화한 미래 도시
⑤ 범부처 협업 체계를 통해 AI+X의 각 분야 서비스 도입·발전
* 공공은 도시데이터 제공,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지원, 기술 개발·실증은 앵커기업 등 민간 자율적으로 계획 및 이행
* (국토부) 실증공간 + 국토교통 분야 / (각 부처) 소관 분야별 AI기술
□ **(대상지역)** 공약 사항, 앵커기업 연계, 부지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 1개소 이상의 후보지 선정(2026년 상반기)
- 모빌리티, 탄소중립, 생활편의(행정·안전) 등 특화 콘셉트로 검토

44) 일반회계 - AI 시티 조성확산(5637-311)(국토도시실)

□ **(사업내용)** 도시데이터 제공·관리를 위한 도시지능센터, 지능형 SOC 등 도시AI 기반시설, 리빙랩 구현을 위한 AI빌리지* 등 구축

* 산학연 거주지원을 통해 개발 주체와 실증 적용대상을 일치시켜 자유로운 실증 환경 조성

- AI혁신 서비스(민간·공공)의 실증, 우수기술 시민 체험 등 추진

자료: 국토교통부

[기술발전에 따른 단계별 도시변화 방향]

① U-City	➡	② 스마트시티	➡	③ AI 시티
정보통신망, CCTV (통합플랫폼)		데이터 취합·공유, 요소기술 (데이터허브)		도시인공지능, 운영·관리기술 (도시지능센터)
2000년대		2010년대 ~ 현재		현재 이후

2026년 예산안에는 AI 시티 3곳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비 4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1곳당 기본계획 수립비는 12억~14억 수준임.

[AI 시티 조성확산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0억원

· 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 12억원~14억원 × 3개소 = 40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AI 시티 조성 사업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가 민간위탁비목으로 편성한 기본계획 수립비는 AI 시티 조성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특화된 AI 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마련하려는 것임.

AI 시티 조성 사업계획에는 추진방향, 대상지역, 사업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므로, 총사업비와 국고지원 부분, 사업기간, 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확정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비는 AI 시티의 조성규모와 총사업비가 클수록 계획수립 난이도가 상승하므로 예산액이 증가하기 때문임.

그런데 현재 AI 시티 조성 계획 중 예상 사업비 등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사업비(기본계획 수립비)가 예산안에 먼저 편성되었음.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의 내용 · 규모 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면, 기본계획 수립비 규모만으로는 사업 기간, 예산액 규모의 적정성과 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사업 유형에 따른 분류]

유형	내용	대상지	사업규모	세부사업 (코드)
국가 시범도시	혁신기술이 집약된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	세종 5-1生 (모빌리티 특화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도시와 로봇 특화도시)	세종 약 3.1조원, 부산 약 5.6조원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5637-308)
강소형	① 기후위기 대응형: 친환경·탄소중립, 기후재해-zero ② 지역소멸 대응형: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지역산업 활력 지원 ③ 모빌리티 특화형: 새로운 모빌리티 공간 수요 반영, 지역교통 문제 해결	경기 평택, 전남 목포, 충남 아산, 충남 태안, 강원 태백, 경기 광명, 경북 경산, 경기 안산, 경북 김천, 경남 김해, 충북 제천, 경북 안동, 경남 순천	160억원 (3년간 최대 80억원 국비 지원) * 지방비 1:1 매칭	스마트시티확산사업(자율) (5633-301)
거점형	스마트 거점으로서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가 결합된 도시 조성	울산광역시, 경기 고양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320억원 (3년간 최대 160억원 국비 지원) * 지방비 1:1 매칭	스마트시티확산사업(지원) (5633-301)
특화단지	교통, 교육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혁신기업이 연구・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특화단지 조성	대구광역시	160억원 (3년간 최대 80억원 국비 지원) * 지방비 1:1 매칭	스마트시티확산사업(지원) (5633-301)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민관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도시 AI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컨소시엄, 사업기간: 2025.6월 ~ 2026.6월)에 AI 시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기술・서비스, 인프라, 테스트베드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담겨 있다는 의견임.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 기간과 충실한 AI 시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수행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2026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일정이 매우 촉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AI 시티 조성 사업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14. 청년인턴 운영 사업: 실제 채용실적과 청년인턴 실근무일수를 고려한 예산액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운영’** 사업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일용임금)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100만원(2.9%) 증액된 32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45)]

[2026년도 청년인턴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4,107	4,107	4,189	82	2.0
청년정책진흥	3,293	3,293	3,384	91	2.8
청년인턴 운영	3,126	3,126	3,217	91	2.9

청년인턴 제도는 유능한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청년에게 일 경험 및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자 4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인턴 제도 운영을 위한 2026년 예산안에는 청년인턴 233명(상반기 186명, 하반기 47명) 채용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45) 일반회계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7040-300)(기획조정실)

[청년인턴 운영 제도 개요]

□ (규모) 4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023년 2천명 → 2024년 5천명 → 2025년 5천명
- 국토교통부: 2023년 82명 → 2024년 233명 → 2025년 233명(목표)

□ (기간) 상·하반기 2차례로 나누어 운영(2025.3~8월, 9~12월)
- 상반기 결원, 하반기 면접 결시 및 합격 후 포기 등 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 확대 공고(150명)

□ (담당업무) 단순 사무보조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전공·관심 직종 등을 고려,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

기관명	주요업무(예시)
국토교통부 (본부 등)	• (행정) 국토·주택·건설·교통 등 행정지원 (정책지원, 통계·현황·자료조사, 행사·회의 지원 등) • (홍보) 정책홍보·디지털 소통 지원 • (외국어) 국제동향 등 해외자료 조사, 통·번역 지원
지방국토청	• (시설) 소관 건설현장 점검 및 시설물 관리 지원 • (기록관리) 계약·보상·기록물관리 등 행정지원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 (관제·정비) 관제·운항·정비 등 지원 및 모의훈련장비 운영 등 훈련 지원 • (기록관리) 계약·보상·기록물관리 등 행정지원
국토지리정보원	• (공간정보) 공간정보시스템 및 지도박물관 관리 지원

□ (인센티브) 우수인턴 표창, 공무원 채용 시 호봉 유사경력 반영

□ (급여) 월 2,096,270원(2025년 최저임금 적용)
-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근로소득·주민세, 건강·고용·국민연금보험료 중 인턴부담분 공제 지급

□ (근무시간) 주 40시간(주5일, 일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인턴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용임금(110-04): 청년인턴 인건비(2,726,000천원)
· **6개월 근무**: 186명×6월×2,168천원=2,339,000천원
· **3개월 근무**: 47명×3월×2,168천원=296,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청년인턴 4대보험(296,000천원)
· **6개월 근무**: 186명×6월×231천원=262,000천원
· **3개월 근무**: 47명×3월×231천원=3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청년인턴 출장비(140,000천원)
· 6개월 근무: 150명×6월×2회×69천원=124,200천원
· 3개월 근무: 38명×3월×2회×69천원=15,8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55,000천원
· 청년인턴 간담회, 정책현장 방문(46,900천원)
· 청년인턴 면접 위원 수당 등(8,100천원)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의 실제 청년인턴 운영 실적과 청년인턴의 실근무일수를 고려하여 2026년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결산 기준으로 계획 대비 실제 청년인턴의 채용 실적을 보면, 상반기는 계획 대비 과소 채용(계획 186명, 실적 153명), 하반기는 초과 채용(계획 47명, 실적 83명)이 발생하였음. 총 채용 규모는 236명으로 목표치(233명)에 근접하나 상반기 채용자의 평균 근무개월수(6개월)가 하반기(3개월)보다 많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였음.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년인턴이 중도 퇴사없이 계약된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고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청년들의 연중 구직활동(취업) 등으로 조기퇴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도 퇴사로 인한 계약근무일수 미달(2024년 상반기 84.1%, 2025년 상반기 90.3%)도 인건비 불용에 영향을 미쳤음.

[2024, 2025년 청년인턴 채용실적(인력, 근무일수)]

(단위: %)

연도	채용인력(명)								근무일수(일)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획	공고	실적	비율	계획	공고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2024	186	182	153	**82.3**	47	100	83	**176.6**	182.8	153.8	**84.1**	88.2	85.0	**96.4**
2025	186	120	105	**56.5**	47	150	130	**276.0**	158.0	142.7	**90.3**	-	-	-

주 1) '계획'은 예산상 계획된 채용인력 및 근무일수를 의미하고, '공고'는 실제 국토교통부가 채용 공고 때 계획한 인력, '실적'은 실제 채용인력을 의미

2) '비율'은 예산편성 계획치(채용인력, 근무일수) 대비 실제 지표(실채용인력, 실근무일수) 비율을 의미함

3) 채용자의 계약상 근무일수는 일, 중도 이탈 없이 계약상 기간(6개월)까지 근무할 경우를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청년인턴 인건비(일용임금+상용임금)의 집행률은 79.6% 수준으로 나타났음.

2025년에는 상반기 채용 실적이 105명으로 작년(153명)보다 더욱 줄어들었고 하반기 채용자는 130명으로 목표치(233명)는 달성되었으나, 하반기 근무개월수가 더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인건비 불용률은 전년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2024, 2025년 청년인턴 예산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일용임금			고용부담금			계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2024	2,591	2,086.8	80.5	291	207.8	71.4	2,882	2,294.6	**79.6**
2025.7	2,635	937.6	35.6	296	78.3	26.5	2,931	1,015.9	34.7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채용 후 취직 등 사유로 조기 퇴직하는 시점, 인원수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계약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인건비 편성이 필요하고,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일 경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의견이나, 2023년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도퇴사율 또는 실근무일수 비율 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됨.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 채용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 채용계획을 초과(2025년에는 계획 대비 2.7배)하는 인턴을 채용하였는데, 상 · 하반기 예산상 채용계획과 실제 채용실적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음.

또한 2026년 예산안에는 채용자가 취업 등으로 조기퇴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산출내역에 실근무일수 비율을 추가 반영하는 등 예산 조정[46]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6) 예를 들면, 실근무일수 비율을 95%를 가정할 경우 약 1억 6,100만원이 계산됨
* 32억 1,700만원 × (1 - 0.95) = 약 1억 6,100만원

【교통시설특별회계】

<세 출>

15. 김포공항 시설개선 사업(신규): 규정과 지침에 부합하는 감리비 산정 및 편성 필요

가. 개 요

‘김포공항 시설개선’ 사업은 1988년 구축되어 노후화된 김포국제공항 관제탑을 대신하여 관제탑 신축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2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7]

[2026년도 김포공항 시설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김포공항 시설개선	-	-	2,300	2,300	순증

종전 김포공항 관제탑은 1988년 1월 18일에 준공된 것으로서, 당시 설계의 한계로 관제 시야 일부를 건물 기둥이 방해(차폐)[48]하여 활주로를 온전히 주시하지 못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누수로 인한 누전 위험성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제시야 확보가 용이한 새로운 부지에 김포공항 관제탑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480억원 중 1차년도 설계비 일부(19억 3,200만원)와 감리비 일부(3억 3,000만원)가 각각 편성되었음.

이 중 감리비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해당 공사관리방식으로서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을 채택하고 감리비 산정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대가산출의 원칙)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58억 1,000만원을 산정하였음. 해당 금액

47) 교통시설특별회계 - 김포공항 시설개선(3532-302)(항공정책실)

48) 관제실 내 철골기둥과 창호 프레임에 의해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시 일부구역에서 항공기가 관제사 시야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함. 차폐로 인해 제1활주로(32R/14L, 총길이 3,600m)의 경우 철골기둥과 창호 프레임에 의해 항공기가 관제사 시야에서 사라지는 구간은 1,046m이고, 제2활주로(32L/14R, 총길이 3,200m)의 경우 항공기가 관제사 시야에서 사라지는 구간은 1,023m임.

은 공사비의 14.9% 수준임.

[총사업비 및 연차별 사업비 배분 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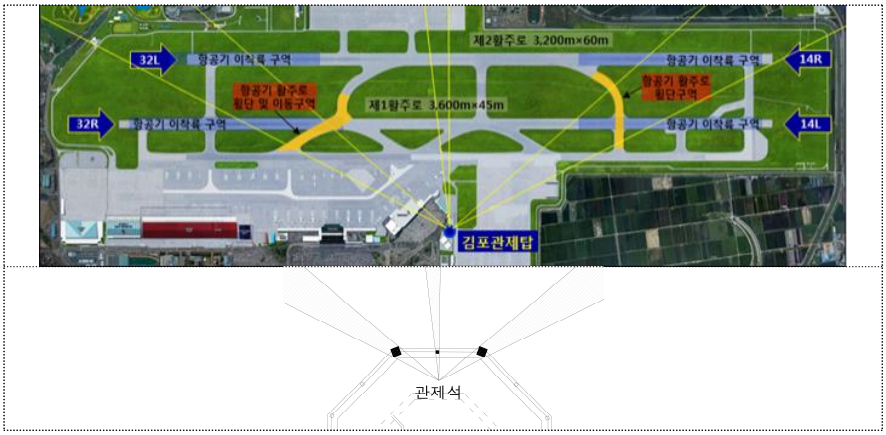
공사명	비목	코드	총사업비	1차 (2026년)	2차 (2027년)	3차 (2028년)	4차 (2029년)	공사비 대비 요율
김포공항 시설개선	보상비	410-00	-	-	-	-	-	-
	설계비	420-02	2,490	1,932	558	-	-	공사비 대비 6.4%
	공사비	420-03	39,000	-	11,700	15,600	11,700	
	감리비	420-04	**5,810**	330	1,413	2,324	1,743	**공사비 대비 14.9%**
	부대비	420-05	700	38	662	-	-	공사비 대비 1.8%
	소계		48,000	2,300	14,333	17,924	13,443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첫째,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 감리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별표 7[49]에 따라 공항



49)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설계 · 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건설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김포공항 관제탑은 책임감리 대상에 포함되는 공항시설임.

예산편성지침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사비 요율에 따라 예산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건축법」상 공항시설(운수시설, 복잡한 공종)인 관제탑의 감리비 요율은 공사비 355억원(390억원에서 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해 직선보간법을 적용하면 약 7.12%[50] 수준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표(일부)]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비 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300	6.24	6.92	**7.62**	
400	5.48	6.09	**6.70**	

주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함
2) 위 기준요율은 2026년 신규 발주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2025년도 이전 발주 사업은 각 해당 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름

자료: 2026년 예산편성지침, p. 308

산출된 감리비 요율 7.12%에 공사비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10%)를 추가하면 감리비 예산은 약 27억 8,000만원(355억원 × 7.12% × 1.1)이 도출되어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감리비 58억 1,000만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6조[51]에 따라 대가 산출 시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7. 1. 1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2. 공항 건설공사

50) 직선보간법: $7.62 + \frac{(6.70 - 7.62)}{(400 - 300)} \times (355 - 300) = 7.114$

5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 대한 인건비(제9, 10조), 공사 난이도와 공사기간을 반영한 직접경비(제11조), 제경비(제12조) 등을 고려한 실비정액에 따라 감리비가 산출된 것이라는 의견임.

그런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규정한 해당 기준에서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해당 방식은「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 사업의 감리비는 법 제39조제2항의 공사비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52)]

그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는 발주청의 임의규정(할 수 있다)인 반면, 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는 발주청의 의무규정(하여야 한다)이고, 관제탑 신축공사가 두 조항 모두에 해당된다면 의무규정이 임의규정보다 우선하기 때문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책임감리 적용]

구분	제39조제1항	제39조제2항
조문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감리비 산정	**실비정액가산방식**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범위) 및 제6조)	**공사비 요율**에 따른 산정 (예산편성지침)
관제탑 신축공사	시공 관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포함 가능	관제탑은 운수시설로서 공항 건설공사에 포함
적용	임의조항	의무조항(**우선적용**)

따라서 국토교통부는「건설기술 진흥법」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 감리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52)「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예정용역사업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3장 :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둘째, 2026년에 공사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감리비 예산 편성의 이유가 없어 전액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란,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모든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임.

요약하면 감리업무를 수행하려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2026년에는 주로 관제탑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고 공사비는 편성되어 있지 아니함.

물론, 건축설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면 공사비 없이도 별도 감리비를 편성할 여지가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김포국제공항 관제업무 및 관제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2025.8.)에서 관제탑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설계감리비는 사업관리비에 포함하지 않음' 을 명시하였고, 용역보고서의 연차별 사업비 내역에서도 감리비를 공사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27년부터 편성하고 있음.[53)]

[「김포국제공항 관제업무 및 관제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단계별 사업비 투입(일부)]

(단위: 천원)

사업비 항목	연도별 사업비				총사업비
	2026년	2027	2028	2029	
공사비	0	11,700,000	15,600,000	11,700,000	39,000,000
설계용역비	1,804,500	685,500	-	-	2,490,000
시공감리	0	1,743,000	2,324,000	1,743,000	5,810,000
시설부대비(법정경비 등)	685,500	14,500	-	-	700,000
사업비 계	2,490,000	14,143,000	17,924,000	13,443,000	48,000,000

자료: 국토교통부, 「김포국제공항 관제업무 및 관제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 2025. 8, p. 90.

따라서 공사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2026년에 감리비를 편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예산 3억 3,0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고, 공사가 개시되는 2027년부터 편성할 필요가 있음.

5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16. 일반공항시설관리 사업: 연내 조류탐지 레이더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종료를 위한 사업일정 관리 필요

가. 개 요

‘일반공항시설관리’ 사업은 공항 시설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73억 3,900만원(37,369%) 증액된 1,176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54)]

[2026년도 일반공항시설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공항시설관리	314	22,704	117,653	117,339	37,369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①조류탐지 레이더와 ②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는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음. 2026년에는 해당 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하기 위한 2차년도 사업비 및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나머지 공항에 대한 1차년도 사업비가 각각 편성된 것임.

국토교통부의 연차별 예산 계획을 보면, 전국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2028년까지, EMAS를 2027년까지 설치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임.

구체적으로 ① 조류탐지 레이더의 경우 민간공항 6곳(김포, 제주, 무안, 양양, 울산, 여수 공항)은 2025년 추경 예산안에 설계비를 편성하였고, 2026년에는 공사비까지 편성하여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임.

민·군 겸용공항 8곳(김해, 청주, 대구, 광주, 사천, 포항경주, 원주, 군산 공항)의 경우는 군 등 관계기관과 기술적 고려사항(전파간섭, 주파수 배정 등), 추진일정 등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 이후인 2026년부터 설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②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의 경우 모든 공항에 EMAS를 설치하지는 않고, 전국 15개 공항 중『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240m에 미달되는 김해, 무안, 원주, 여수, 울산, 포항경주, 사천 등 7개 공항을 대상으로 함.

이 중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가능한 공항은 기존공항부지를 활용하여 시설연장(부지

54) 교통시설특별회계 - 일반공항시설관리(3532-312)(항공정책실)

확장 또는 활주로 시단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곤란한 3개공항(울산, 사천, 포항·경주)을 대상으로 EMAS를 설치할 예정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EMAS는 국내 공항 설치사례가 없는 만큼 민간공항인 울산공항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우선 설치하고 민·군공항인 사천과 포항·경주공항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임.[55]

[지역공항별 조류탐지 레이더 및 EMAS 집행 현황 및 연차별 예산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25년 예산(추경)			25년 실집행 (2025.10. 기준)			26년 예산안			27년 예산(계획)			28년 예산 (계획)	총액
	조류	EMAS	공항시설개선	조류	EMAS	공항시설개선	조류	EMAS	공항시설개선	조류	EMAS	공항시설개선	조류	
■ 일반공항 시설관리	3,600	15,056	3,734	2,940	733	2,045	33,767	54,545	29,027	24,700	30,603	-	12,000	212,750
(김포공항)	500	-	26	385	-	19	7,200	-	270	-	-	-	-	8,400
(김해공항)	-	-	298	-	-	198	863	-	220	7,200	-	-	-	8,779
(제주공항)	500	3,664	83	385	-	55	7,263	-	1,857	-	-	-	-	13,807
(대구공항)	-	-	10	-	-	7	500	-	227	4,000	-	-	-	4,744
(청주공항)	-	-	20	-	-	13	500	-	272	4,000	-	-	-	4,805
(무안공항)	1,700	-	1,556	1592.5	-	594	4,063	-	55	-	-	-	-	9,560.5
(양양공항)	300	-	259	192.5	-	173	4,063	-	205	-	-	-	-	5,192.5
(광주공항)	-	-	12	-	-	8	500	-	275	4,000	-	-	-	4,795
(울산공항)	300	4,949	256	192.5	387	171	4,063	23,696	130	-	13,295	-	-	47,439.5
(여수공항)	300	-	8	192.5	-	4	4,063	-	1,423	-	-	-	-	5,990.5
(포항경주공항)	-	3,257	880	-	173	586	63	15,594	-	500	8,749	-	4,000	33,802
(사천공항)	-	3,186	249	-	173	166	563	15,255	-	4,000	8,559	-		32,151
(군산공항)	-	-	-	-	-	-	-	-	-	500	-	-	4,000	4,500
(원주공항)	-	-	77	-	-	51	63	-	24,093	500	-	-	4,000	28,784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2026년에 조류탐지 레이더(6개 공항)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종료를 위한 사업 일정 관리가 필요함.

55) (종단안전구역 확보) 김해, 무안, 원주, 여수공항 : 김해, 무안공항은 우선 연장하고, 원주, 여수공항은 공항 부지확장 및 연장 가능성 추가 검토 후 추진 방안 확정('25.下).
(EMAS 대상) 울산, 포항경주, 사천 공항 : 하천·도로 등이 인접하여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 EMAS 도입을 통해 활주로 안전확보.

조류탐지 레이더와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이하 “EMAS”)은 공항시설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필요가 있음.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조류탐지 레이더와 EMAS 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장치 설치를 위해 연구용역(필요시)을 우선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거쳐 공사(설치)를 진행함.

조류탐지 레이더의 경우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2025년 10월 30일에 설계용역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음.

EMAS의 경우는 설계에 우선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025. 9. 3. ~ 12. 22.)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설계용역이 추진될 예정임.

이에 따라 2025년 9월 이후 2026년 · 2027년 예산으로 추진될 사업 일정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 사업 2025~2026년 예상 일정]

공정	착수시점	소요기간	종료시점	비고
설계용역 준비	2025년 9월	2개월	2025년 11월	제안서 작성, 공고, 사업수행자 선정, 계약 등 준비기간 약 2개월 고려
설계용역 착수	2025년 12월	5개월	2026년 5월	용역 소요기간은 “인천국제공항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 설계용역”(2025년 4월)에서 정한 과제수행기간(5개월)을 참고하였음
공사 준비	2026년 5월	2개월	2026년 6월	제안서 작성, 공고, 사업수행자 선정, 계약 등 준비기간 약 2개월 고려
설치공사	2026년 7월	5개월	**2026년 12월**	2026년 연내 마무리를 가정하고 소요기간을 산정함.

자료: 조달청 ·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MAS 설치 사업 2025~2027년 예상 일정]

공정	착수시점	소요기간	종료시점	비고
기본계획	2025년 9월	3개월	2025년 12월	12월 22일 완료 예정
설계용역 준비	2025년 11월	2개월	2025년 12월	제안서 작성, 공고, 사업수행자 선정, 계약 등 준비기간 약 2개월 고려
실시설계	2026년 1월	5개월	2026년6월	공사비 및 기간, 설계도서 작성, 관련인허가 등
공사 준비 제작 및 시공	2026년 6월	1년 6개월	2027년 12월	울산공항 26년 완료, 사천·포항경주 공항 27년 완료 * 공사 소요기간은 EMAS 제품(EMASMAX, greenEMAS, LANZU-1)의 설치기간의 평균값으로 추정하였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국 용역과 공사 계약의 유찰 없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2026년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업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며, 국토교통부도 조류탐지레이더와 EMAS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것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비 일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류탐지 레이더와 EMAS 설치를 위해 공사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일정을 검토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17. 드론 산업 성장 기반 조성 사업(신규): 설립 취지에 맞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드론 산업 성장 기반 조성’** 사업은 민관협의체인 ‘드론산업 얼라이언스’의 운영과 ‘K-Drone to World Festival’ 행사 개최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1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6)]

[2026년도 드론 산업 성장 기반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22,330	32,330	24,731	2,401	10.7
드론 산업 성장 기반 조성	-	-	1,400	1,400	순증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란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을 연계한 총체적 협력기반을 조성하고자 2025년 5월 출범한 민·관 협의조직임.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개요]

□ **(개요)**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흩어졌던 역량을 결집하여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학·연·관을 연계해 총체적 협력기반을 조성하고자 출범(2025. 5. 14)

□ **(조직)** 주관기관(국토부), 얼라이언스 총괄협의회, 운영기관, 분과(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자문단, 관계기관(과기부·국방부·방사청 등)으로 구성
* 정부 10개, 기업 263개, 지자체 23개, 공공기관 22개, 학회 등 10개, 대학교 16개, 개인회원 95명 등으로 이루어진 총 347개 기관으로 구성(2025.5월 가입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및 보도자료(드론 산업의 새로운 도약, 얼라이언스(DIA) 출범 ‘드론 5대 완성체 프로젝트’ 공개)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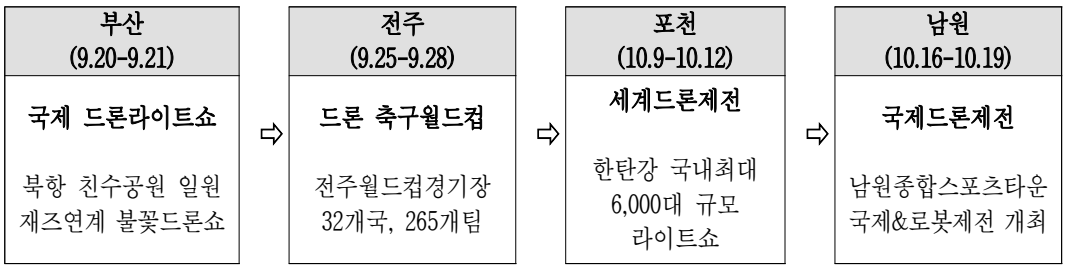
‘K-Drone to World Festival’은 지역 특색과 융합된 다양한 드론 행사를 전국 단위로 릴레이식으로 개최함으로써, 드론 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 증대와 활성화를 촉진하

56) 교통시설특별회계 -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3637-324)(항공정책실)

려는 것임.

동 행사는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가 수행하게 될 주요 사업으로서 2025년에는 9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드론 축구월드컵(전주)부터 드론 라이트쇼(부산), 세계 드론페스타(포천), 국제 드론레이싱(남원)까지 릴레이로 개최된 바 있음.

[2025년 케이드론 투 월드페스티벌 (K-Drone to World Festival)]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드론 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 첫 개최)

2026년 예산안에는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경비(분과 운영비, 행사 개최비 등) 4억원과 K-Drone to World Festival을 국가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행사비용 10억원(4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14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드론산업 얼라이언스’의 설립 취지에 맞게 조직의 구성·업무처리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드론산업 얼라이언스(이하 “DIA”)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263개, 지자체 23개, 공공기관 22개, 학회 등 10개, 대학교 16개, 개인회원 95명 등 총 347개 기관의 민·관 합동 협의기구로서 공공조직과 달리 조직 구성의 유연성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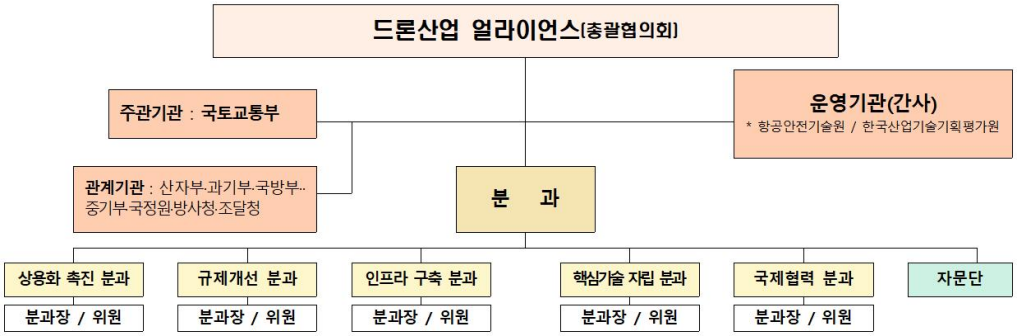
그러나 주관기관(국토교통부), 관계기관(산자부·과기부 등 7개 부처), 운영기관(항공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모두 정부조직 또는 공공기관이고, DIA의 창립총회는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전담하였음.

또한 DIA 의결내용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법령개정 또는 인프라 지원을 검토하게 되며, 5월에 발표한『드론 완성체 5대 프로젝트』에는 국토교통부 업무추진방향과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IA는 사실상 공공부문에 근접한 조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의 운영・성과]

□ **(조직・운영)** 총괄협의회는 분과장・관계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분과별 연구과제 선정・배분, 성과물 검토・**정책반영 여부 의결**

- **운영기관(항공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얼라이언스 관리・운영하고, 정기・수시회의를 개최하며, 기관간 의견조율, 5개 분과별 안건 배분・진도관리 등 수행
- **관계기관(산자부・과기부 등) : 총괄협의회 의결정책에 대한 법령 개정, 첨단기술 지정, 상용화 및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주요성과)** 드론 산업 혁신 정책 방향으로서 농업, 소방, 건설・시설 관리, 물류, 항공 드론을 **국산 기술로 개발하기 위한 '드론 완성체 5대 프로젝트*' 를 공개**

* 드론의 외산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극복하고, 기술 자립도를 높여 글로벌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5대 주요 임무 드론의 기술 개발부터 실증・수출까지 지원**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및 보도자료(드론 산업의 새로운 도약, 얼라이언스(DIA) 출범 '드론 5대 완성체 프로젝트' 공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DIA의 설립 근거로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정부가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및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2023~2032)」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DIA를 민간 주도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DIA가 향후 민간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의 운영 방향 및 분과별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K-Drone to World Festival 행사예산 신설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매칭 비율을 설정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K-Drone to World Festival은 개별 지자체·민간의 행사를 단순 지원하는 성격이 아닌, 하나의 국가적인 브랜드(Brand Identity)를 마련하여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측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행사로서, 드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임.

이에 따라 범국가적인 브랜드 및 지원체계 하에서 일관된 계획과 지원으로 드론산업 성장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임.

다만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범정부적인 행사 또는 국가대행·위탁행사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고 지원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 하며, '중앙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이외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사는 최대한 억제' 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행사 예산 신설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있음.

이는 행사 개최를 통한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낭비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예산편성지침 중 행사 관련 내용]

□ 지방자치단체·민간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 금지
- ㅇ 다만, **범정부적인 행사 또는 국가대행·위탁행사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고 지원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
  * 지자체 주관 행사는 원칙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되 범국가적인 행사로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행사(예 : 올림픽, 엑스포 등)는 별도 검토 가능

□ 행사계획서는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소가 없도록 행사개최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한 후 작성
- ㅇ **다른 행사와의 유사중복 및 경합 여부**, 개최시기·개최주기의 적정성, 잔존시설물의 사후활용계획 등을 사전 검토
- ㅇ **중앙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이외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사는 최대한 억제**

최근 드론산업이 주목받으면서 중앙 부처(우주항공청)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방식의 드론축제 ·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설되는 행사의 유사 · 중복 및 경합 여부를 재검토하고, 전국단위 릴레이 행사를 추진하더라도 지자체 자부담 비율을 설정하는 등 행사 계획과 예산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5년에 개최 또는 개최 예정된 정부・지자체 드론 관련 행사 예시]

일시	지역	행사명
4월~6월 (5회)	서울(뚝섬한강공원)	상반기 드론 라이트 쇼 (서울스프링페스타, 서울달 서커스, 라인프렌즈 등)
9월, 10월 (5회)	서울(뚝섬한강공원)	하반기 드론 라이트 쇼 (케이팝데몬헌터스 Special, 한강버스, 카카오프렌즈 등)
연중(매주 토요일 2회)	부산(광안리)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9월~11월 (매주 토요일 1회)	충남 당진	당진 삽교호 드론 라이트쇼
9월 5일	제주(신화월드)	2025 제주 드론라이트쇼
4월~10월 (매주 토요일 1회)	전남 고흥	2025 고흥 녹동항 드론쇼
11월(예정)	경기도 고양	2025 드론 · 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 (Drone · UAM EXPO 2025)
2026년 2월(예정)	우주항공청	DSK 2025(드론쇼코리아)

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드론 행사를 대상으로 함

18. 초고속하이퍼튜브아진공핵심기술개발(R&D) 사업(신규): 기존 하이퍼튜브 R&D 사업과 연계를 고려한 사업이관 검토 필요

가. 개 요

‘초고속하이퍼튜브아진공핵심기술개발(R&D)’ 사업은 0.001기압급 경제적(기존대비 30%이상) 아진공 주행환경 구현을 위한 하이퍼튜브 인프라 건설을 위한 신재료·설계·시공·품질관리 핵심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1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7]

[2026년도 초고속하이퍼튜브아진공핵심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초고속하이퍼튜브아진공핵심기술개발(R&D)	-	-	1,400	1,400	순증

‘아진공 하이퍼튜브’란, 진공에 가까운 튜브 안에서 차량이 부상·주행하는 방식으로, 1200㎞/h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세대 철도시스템을 의미함.

이번 신규 연구개발사업은 초고속 차량이 운행될 하이퍼튜브 인프라의 핵심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86억 4,500만원의 정부출연금이 전담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투입될 계획임.

57) 교통시설특별회계 - 초고속하이퍼튜브아진공핵심기술개발(R&D)(4159-361)(철도국)

[초고속하이퍼튜브아진공핵심기술개발(R&D) 사업 계획]

□ **(목적)** 0.001기압급 경제적(기존대비 30%이상) 아진공 주행환경 구현을 위한 하이퍼튜브 인프라 건설 신재료・설계・시공・품질관리 핵심기술 확보

□ **(사업목표)**

① 기밀성(일반 콘크리트 대비 10배), 경제성(강재 대비 30%저렴) 및 안전성(0.001기압 1시간 유지)을 가진 초고밀도 콘크리트 제조・시공 기술 개발・검증

② 초고속대역(1,200km/h) 주행안전성, 곡선각(반경 3,000/8,000m)에 대한 밀폐성을 가지는 신축이음장치, 펌프모듈, 개폐장치 및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검증

항목	튜브 진공도 수준	튜브 진공 유지시간	콘크리트 재료 기밀성	밀폐성능 유지 가능 곡선반경 / 꺾임각	건설 경제성
목표 성능	0.001~0.01기압	1시간 이상	일반 콘크리트 대비 10배	반경 3,000m / 0.47°	강재튜브 대비 30% 저렴

□ **(총사업비/기간)** 해당없음 / 2026~2028

(단위: 백만원)

구분	총 정부출연금	2026년	2027년	2028년
초고속하이퍼튜브아진공핵심기술개발	8,645	1,400	5,090	2,155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목적과 내용을 공유하는 기존 R&D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 세부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초고속하이퍼튜브아진공핵심기술개발(R&D) 사업의 연혁을 살펴보면, 2022년 하이퍼튜브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였으며, 당시 추정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산정한 총사업비는 3,377억원(국고 3,314억원, 민자 54억원, 지방비 10억원)임.

세부적으로는 차량, 튜브 인프라 등 4개 과제에 포함된 26개의 구성기술을 개발하려는 방대한 규모로 추진하였음.

[당초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2022)의 중점분야별 사업비]

(단위: 억원)

중점분야	정부	민간	지자체	소계
1. 초고속 추진 및 부상시스템 기술	1,044.0	44.7	-	1,088.7
2. 아진공 차량 및 무선시스템 기술	783.5	8.9	-	792.4
3. 아진공 튜브 인프라 건설 및 안전 기술	204.1	-	-	204.1
4. 하이퍼튜브 시스템 통합·운영 기술	1,282.0	-	10.0	1,292.0
총계	3,313.6	53.6	10.0	3,377.2

자료:「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기획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당시 국토교통부는「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기획에 따른 전체 사업비(3,377억원)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2023년 10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되었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모든 요소기술을 동시에 개발·검증하는 대형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적고, 그 밖에 핵심기술 분석, 컨트롤타워의 운영 계획과 민간 참여자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미시행'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짐.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 조사 종합분석 및 결론 요지]

○ 주관부처가 제시한 '하이퍼튜브의 도입 필요성'을 전제할 때 기술 부재의 문제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일부 설명할 수 있으나, **모든 요소기술을 동시에 개발·검증하는 대형 사업 추진에 대한 시급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함**

○ 하이퍼튜브 기술체계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식별, 기술준비도 분석, 요구조건 분석 등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아** 동 사업 계획(과제 구성)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지, 사업 결과로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이 성공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움

○ 기술개발 및 통합, 검증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운영 계획이 적절하지 않으며**, 다부처 공동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 연계·협력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 목표(효과) 달성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고정효과 접근법에 의거할 때, 동 사업은 **비용-효과적이라 보기 어려워, 동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을 우선 확보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먼저 추진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도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연구기획을 다시 실시하였음.

새로운 연구기획 「초고속 하이퍼튜브 철도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 기획」(2024. 2.)에서는 ①초고속 부상 시스템 기술, ②아진공 튜브 인프라 기술 등 2개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였음.

이에 따라, ①초고속 부상 시스템 기술은 ‘초고속 하이퍼튜브 철도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사업(R&D)(4159-325)’으로 2025년에 기추진하였고, ②아진공 튜브 인프라 기술은 이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초고속 하이퍼튜브 철도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 기획(2024)의 중점분야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핵심기술	구성기술	총사업비	국고	민자
[핵심 1] 초고속 추진 및 부상 시스템 기술 → **초고속 하이퍼튜브 철도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사업(R&D) (2025년 신규사업)**	1-1. 선형 전자기 추진 가이드웨이 기술	5,558	5,558	미정
	1-2. 추진/부상용 고온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기술	4,767	4,767	
	1-3. 초고속 선형 추진 제어 기술 개발	4,046	4,046	
	1-4. 초전도 유도반발 자기부상 주행체 기술	3,779	3,779	
	소계	18,150	18,150	
[핵심 2] 아진공 튜브 인프라 설계 및 시공 기술 → **초고속 하이퍼튜브아진공핵심기술개발 (R&D) 사업 (2026년 신규사업)**	2-1. 아진공 튜브용 다기능 초고밀도 콘크리트 재료 기술	700	700	
	2-2. 아진공 튜브 구조시스템 설계기준 및 최적설계 기술	1,000	1,000	
	2-3. 아진공 튜브 제작시공 및 품질관리 기술	5,825	5,825	
	소계	7,525	7,525	
합계		25,675	25,675	

자료: 국토교통부, 초고속 하이퍼튜브 철도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 기획(2024), p.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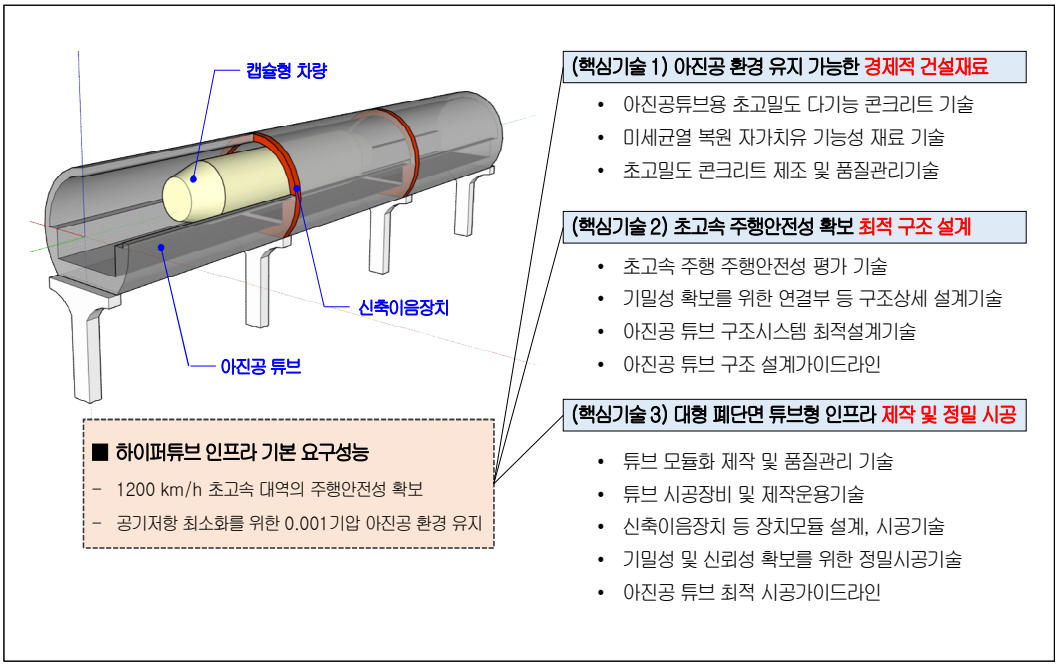
그렇다면, 2025년 시작된 ‘초고속 하이퍼튜브 철도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사업(R&D)(4159-325)’과 이 사업은 추진 시기를 달리하는 점 외에 사업 목적과 기획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세부사업으로서 관리될 필요가 있음.

2025년에 추진된 연구개발사업은 캡슐형 차량(열차)을, 2026년 신규 연구개발사업은 아진공튜브(선로)를 각각 개발하는 것으로서 두 기술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상위 과제인 하이퍼튜브 시스템 개발의 내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별개 사업으로 볼 이유가 없기 때문임.

또한 예산 편성과 총사업비의 측면에서 관리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58], 동일한 세부사업 안에서 사업성과 · 집행 관리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초고속 하이퍼튜브 아진공 핵심기술 개발 구성기술]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무엇보다 선행 기획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중 정책제언 부분에서는 "체계 기술"을 언급하면서 핵심기술의 연계 · 호환 · 조합을 강조하였고, 각 기술개발 과제 추진 시 긴밀한 협업을 보장하는 체계의 보완을 요구한 바 있음.

58)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④ 관리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구조체계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총사업비 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의 '내역사업'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목적이 동일한 경우 그 사업의 재원이 2개 이상의 회계 · 기금 또는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관리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제언(일부)]

□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기술요소의 식별 및 기술준비도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세부활동의 도출과 구성이 요구됨

□ 구체적인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앞서, ‘하이퍼튜브’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개념설계, 그리고 기술개발 로드맵의 합리화가 필요함

○ ‘하이퍼튜브’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재정의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의 수립이 필요함

□ 하이퍼튜브 개발은 **핵심기술의 연계·호환 시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술의 확보를 전제로, 시스템 차원에서 각 기술의 조합·검증**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하이퍼튜브’라는 체계를 구성하는 하위 체계로서 핵심기술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즉,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인 추진·부상(아음속) 및 아진공 환경을 구현한 후, 조합 검증에 집중하여 체계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기획 초기에 ‘체계’로서 작동하기 위한 연계·호환 관점에서 위험요인이나 기술적 문제(challenges)를 식별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 하이퍼튜브 개발 과정에서 시작품 구축 등을 통한 검증은 각 **하위 시스템 간 연계·호환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서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각 기술개발 과제 추진 시 긴밀한 협업을 보장하는 체계의 보완이 요구**됨

○ 특히, 개별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연계·호환) 및 조합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계획의 보완** 등이 필요함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따라서 이 사업은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목적과 내용을 공유하는 기존 R&D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 세부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19.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예산 추계 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99억 8,000만원(122.1%) 증액된 5,27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59)]

[2026년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237,460	237,460	527,440	289,980	122.1

2026년에는 K-패스에서 어르신 환급율(30%)을 신설하고, 정액패스를 추가 도입함에 따라 가입자 수와 1인당 지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소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K-패스 사업 개요 및 제도변화 요약]

1 기존 K-패스 사업 확대

○ (제도개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1회~60회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이용자에게 지출금액 중 일부를 환급(2024.5~)

- (종전) 일반 국민 20%, 청년・2자녀 30%, 3자녀・저소득층 53.3% 환급
- (변경)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환급유형 신설(30%)

구분	일반	청년	2자녀	3자녀	저소득	**어르신**
환급률	20%	30%	30%	50%	53.3%	**30%**

2 정액패스 추가 도입

○ (개요) 교통비 지출이 높은 이용자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금액을 100% 환급하는 정액패스 도입

- (유형) 1) 버스·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일반 정액패스
  2) 광역버스·GTX까지 이용 가능한 통합 정액패스 2종 출시

구분	일반	청년, 어르신, 다자녀, 저소득
①기본 정액패스 (지하철,버스)	6.2만원	5.5만원
②통합 정액패스 (1단계+광역버스+GTX)	10만원	9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9) 교통시설특별회계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4931-35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6년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table>
<tr><th>2025년 본예산</th><th>2026년 예산안</th></tr>
<tr><td>□ 총계: 2,374억 6,000만원
○ 환급비용 지원: 2,359억 3,600만원
- 가입자수: 303.9만명
*24.12월 가입자수 246.3만명과 25.12월 가입자수(예상) 361.5만명의 평균
- 실가입자수(전체 이용자 중 월 15회 이상 이용자) 비율: 76%
- K-패스 가입자 대중교통비 1회 사용 시 평균 지출금액: 1,640원/회
- K-패스 평균 환급비율: 28.6%
- 월평균 15회 이상 사용자들의 평균 적립 횟수(1일 최대 2회): 37회
- 평균 국고보조율: 46.55%
- 실가입자 중 2자녀 양육 가구 비율: 9.7%
- 실가입자 중 3자녀 이상 양육 가구 비율: 1.9%

○ 시스템 운영비: 15억 2,400만원</td><td>□ 총계: 5,274억 4,000만원
○ 환급비용 지원: 5,251억 1,700만원
① 기존 환급 지원 사업: 2,099억 1,000만원
- 가입자수: 536.6만명
*25.12월 가입자수(예상) 448.5만명과 26.12월 가입자수(예상) 624.7만명의 평균
- 기존 환급사업이 유리한 이용자의 비율: <u>80.83%</u>
- 기존 환급사업이 유리한 이용자(80.83%) 중 유형에 따른 지원
<table><tr><th>유형</th><th>실가입자 비율</th><th>1회 평균 지출금액</th><th>환급율</th><th>월별 평균 적립 횟수</th></tr><tr><td>일반·노인층</td><td>24.5%</td><td>1,591원/회</td><td>20%</td><td>32.1회</td></tr><tr><td>2자녀</td><td>2.6%</td><td>1,618원/회</td><td>30%</td><td>32.5회</td></tr><tr><td>다자녀</td><td>0.9%</td><td>1,645원/회</td><td>50%</td><td>33.4회</td></tr><tr><td>저소득</td><td>3.4%</td><td>1,574원/회</td><td>53.3%</td><td>35.6회</td></tr><tr><td>청년</td><td>29.7%</td><td>1,630원/회</td><td>30%</td><td>29.7회</td></tr></table>- 평균 국고보조율: 47.51%
② 어르신패스(환급유형 30%) 신설: 24억 1,400만원
- 2,099억 1,000만원(기존 환급지원 사업) x 2.3%(일반층 노인 비중) x 50%(1.5배분)
③ 정액패스: 3,127억 9,300만원
- <u>예상 연평균 이용자수: 177만명</u>
- 일반 유형 비중: 34%
- 나머지 유형 비중: 66%
- 일반 유형 환급액: 24,984원
- 나머지 유형 환급액: 34,122원

○ 시스템 운영비: 23억 2,300만원</td></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정액패스 제도 도입으로 기존 K-패스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서 정액패스로 이동하는 가입자 수 추계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액패스가 추가 도입되는 경우 월 이용횟수에 따라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를 계산하면, 2026년 수치를 기준으로 일반과 청년 모두 월 49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

액패스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계산됨.

[기존 K-패스 vs 정액패스 이용혜택 비교]

구분	유형	회당 요금 (원/회)	할인율 (K-pass, %)	이용횟수 (회)	할인규모 (원)	결론
일반	K-패스	1,591	20	49	15,592	49회 이상 사용시 정액패스 구입이 유리함
	정액	62,000원 이상 이용시 할인율 100%			15,959	
청년	K-패스	1,630	30	48	23,472	
	정액	55,000 이상 이용시 할인율 100%			23,240	

주) 회당 요금은 2026년 정부 예산안 단가를 참조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재 K-패스 가입자 실적을 보면, 월 49회 이상 사용하는 가입자 수는 2025년 1월 26.2만명에서 2025년 7월 66.3만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월 9.27%에서 7월 17.66%로 증가하였음.

[K-패스(정액패스) 가입자 수 추정]

(단위: 명, %)

시기	15회 미만	49회 이상 (A)	실가입자	전체 가입자수 (B)	정액패스 사용자 비중 (A/B)
2025.1	952,293	**262,068**	1,875,823	2,828,116	**9.27**
2025.7	1,375,715	**663,382**	2,379,733	3,755,448	**17.66**
2025.12(추정)	1,728,567	**833,975**	2,799,658	4,528,225	**18.42**
2026.7(추정)	-	**1,028,662**	-	5,366,000	**19.17**
2026.12(추정)	-	**1,244,573**	-	6,247,000	**19.92**

주 1) 2025년 12월 가입자수 추정치는 2025년 가입실적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2026년 7월과 12월 가입자수 추정치는 2026년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가정한 수치를 사용하였음
2) 정액패스 사용자 비중에 대하여는 2025년 7월 실적(17.66%)과 2026년 예산안의 추정치(19.17%)를 바탕으로 직선보간법을 적용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2026년 예산안을 산출하면서 K-패스 이용자 중 기존 환급사업이 유리한 이용자의 비율이 연평균 80.83%로 가정하였음. 이는 가입자 중 19.17%(100% - 80.83%)의 이용자는 정액패스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함.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정액패스 사용자 비중(19.17%)을 고려하여 정액패스 가입자 수를 추정하면 2026년에 약 83.4만명에서 124.4만명으로 추계할 수 있으며 평균치는 약 103만명임. 이는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정액패스 연평균 가입자 수 177만명보다 적은 수치임.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K-패스에서 정액패스로 이동하려는 이용자의 이용패턴, 기후동행카드(서울시) 등 유사 제도로부터 이동하는 이용자, K-패스 이용 이후 대중교통 이용 증가 이용자 등을 감안하여 정액패스 이용자를 추정하였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2026년 예산안에 따른 가입자수 평균치에서 추가 70만명을 합산하였음.

비록 2026년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로부터 이동하는 가입자 수 등 추정치를 상향 조정할 요인이 존재하나,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가입자 수 177만명은 2025년 7월 기준 월 49회 이상 사용하는 가입자 수 66만명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가입자 수 83만명을 모두 흡수한 숫자보다 15% 이상 높은 수치이고, 정액패스 사용자 예상 비중을 기초로 추정한 103만명과 비교할 때 41% 차이가 발생하므로 과다 추계 소지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정액패스 제도 도입에 따른 패스별 이용자 수, 유사제도 이용자 등을 감안하여 예산 추계 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20.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주요기반시설인 진입도로의 건설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4억 4,900만원(△12.6%) 감액된 1,845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60)]

[2026년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195,988	210,988	184,539	△11,449	△12.6
지역지원계정	186,784	205,784	176,249	△10,535	△5.6
세종계정	7,204	7,204	6,489	△715	△9.9
제주계정	2,000	2,000	1,801	△199	△10.0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인근의 주요 간선도로, 연결 진입도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국가산단과 30만㎡ 이상 규모의 일반산단의 경우는 전액 지원함(국비 100%).

6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6040-301~902)(국토도시실)
※검토대상: 공주동현산단진입도로(6040-605), 청주북이산단진입도로(6040-609),
서오창테크노밸리산단진입도로(6040-616), 첨단3지구산단진입도로(6040-632),
세종복합산단진입도로(6040-540), 광주남부산단진입도로(6040-572),
대산그린컴플렉스산단진입도로(6040-65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산단진입도로(6040-301)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주요내용]

ㅇ (내용) 산업단지 인근의 주요 간선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주요 지방도 등)와 연관 산단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사업비 지원

ㅇ (대상) 국가산단, 일반산단·도시첨단산단(30만㎡ 이상, 수도권 제외)

- 지원방식 : 국가직접사업(100% 국비, 지원기준 초과분은 지자체 분담)
- 사업시행 : 국토관리청(국가산단), 일반산단·도첨산단(지자체)

지원기준	100만㎡미만	100~200만㎡	200~330만㎡	330만㎡이상
도로 연장, 차로수	2km, 2차로 이하	3km, 2~4차로 이하	4km, 2~4차로 이하	5km, 4~6차로 이하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별로 총 65개의 세부사업(2026년 준공예정 사업 10개, 계속사업 46개, 신규사업 9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2조 1,159억 5,400만원 중 7,874억 6,900만원이 2025년까지 투입되었으며, 1조 3,284억 8,500만원이 2026년을 포함하여 장래에 투입될 예정임.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집행액 (~'25년까지)	잔여 사업비	사업 기간	2026년 예산안
준공사업 (10개)	407,013	351,767	55,246		63,919
계속사업 (46개)	1,499,779	435,702	1,064,077		117,920
- 공주동현산단진입도로	8,506	779	7,727	'20-'28	710
- 청주북이산단진입도로	44,079	15,517	28,562	'20-'27	4,352
- 서오창테크노밸리산단진입도로	12,759	4,845	7,914	'22-'27	5,000
- 첨단3지구산단진입도로	47,468	11,259	36,209	'21-'28	4,420
- 세종복합산단진입도로	18,370	2,206	16,164	'22-'29	2,000
- 광주남부산단진입도로	27,142	10,597	16,545	'18-'27	365
- 대산그린컴플렉스산단진입도로	26,548	1,675	24,873	'24-'27	1,500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산단진입도로	19,390	2,617	16,773	'24-'27	1,801
신규사업 (9개)	209,162	-	209,162		2,700
합 계(65개)	2,115,954	787,469	1,328,485		184,539

주) 검토대상 사업은 계속사업 중 8개 세부사업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일부 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 타당성 재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말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5개 전체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집행 실적을 보면, 집행률(예산현액 대비)은 2022년 77.4%에서 2024년 84.5%로 개선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이 과다하고 전체예산의 10% 이상을 이 · 전용하는 등 당초 예산과 실제 집행의 차이가 존재함.

2025년의 경우에도 상반기에만 공사발주 지연과 잔여 보상금 발생 등으로 54건의 자체전용과 내역변경을 실시하여 총 77억 1,000만원이 조정된 바 있음.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42,018	-	342,018	37,974	±50,009	-	379,992	294,125	77.4	68,422	17,446
2023	227,934	-	227,934	68,422	±23,854	-	296,356	242,332	81.8	44,971	9,053
2024	203,723	-	203,723	44,971	±26,263	-	248,694	210,143	84.5	32,554	6,000
2025	186,784	15,000	201,784	32,554	±7,710	-	234,337	124,113	53.0	-	-

자료: 국토교통부

특히 다음 8개 세부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 민원 발생으로 인한 노선 재검토 등으로 집행 부진이 뚜렷이 나타나는 상황임.

[일부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의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명 (코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 기준)	이월·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전년도이월액 제외		
											예산현액	집행액	
공주동현 (6040-605)	1,000	34	3.4	24	0	0.0	500	0	500	0	500	0	710
청주북이 (6040-609)	1,577	1,018	64.6	401	96	23.9	1,000	56	1,056	0	1,000	0	4,352
서오창테크노밸리 (6040-616)	202	0	0.0	375	0	0.0	1,000	200	1,200	0	1,000	0	5,000
첨단3지구 (6040-632)	1,516	1,316		1,910	93		1,720	363	2,083	290	1,720	0	4,420
세종복합 (6040-540)	209	137	65.6	107	52	48.6	116	0	116	8	116	8	2,000
광주남부 (6040-572)	1,700	0	0.0	400	0	0.0	1,700	0	1,700	0	1,700	0	365
대산그린컴플렉스 (6040-652)	-	-	-	1,625	674		500	501	601	0	100	0	1,50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 (6040-301)	-	-		1,500	350		2,000	267	2,267	0	2,000	0	1,801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부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별 지연상황]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명	지연 상황
공주동현	□ 사업 추진 지연으로 공사 순연 지속 발생 - 2023년 예산현액 10억원 중 3,400만원 집행, 9억 6,600만원 불용 - 2024년 당초예산 10억원 중 9억 7,600만원 전용(감), 잔여사업비 2,400만원은 전액 불용
청주북이	□ 실시설계 이후 노선계획 변경 · 총사업비 협의로 공사 지연 (현재 총사업비 협의 완료, 공사 발주 준비 중) - 2024년 당초예산 10억원 중 8억 5,000만원 전용(감), 9,600만원 집행
서오창 테크노밸리	□ 실시설계 이후 노선계획 변경 · 총사업비 협의로 공사 지연 (현재 총사업비 협의 완료, 공사 발주 준비중) - 2024년 당초예산 10억원 중 8억원 전용(감), 집행액 없음
첨단3지구	□ 실시설계 중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 건설과 관련하여 관계기간 협의 지연으로 불용(2025년 8월 공사 착공) - 2024년 당초예산 31억 1,000만원 중 14억원 전용(감), 9,300만원 집행, 14억 5,400만원 불용
세종복합	□ 지장물(가스관로) 이설 협의로 공사 지연 - 2024년 당초예산 5억 5,000만원 중 5억원 전용(감), 5,200만원 집행 - 2025년 당초예산 16억 5,000만원 중 15억 3,400만원 전용(감)
광주남부	□ (2024) 실시설계 중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 건설과 관련하여 관계기간 협의 지연으로 불용(13억원 감액 조정) □ (2025)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초과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실시 예정
대산그린 컴플렉스	□ 진입도로 설계 중 인접 공장, 철탑, 주택 등 저촉에 따른 민원으로 새로운 노선 검토 - 2024년 당초예산 17억원 중 6억 7,400만원 집행, 4억 5,000만원 불용 - 2025년 당초예산 5억원 중 4억원 전용(감)
제주첨단 과학기술단지2	□ 실시설계 지연으로 불용 발생(연내 완료 예정) - 2024년 당초예산 15억원 중 3억 5,000만원 집행, 8억 8,300만원 불용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세부사업별로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택도시기금】

<지 출>

21.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사업,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사업: 추계 정확성 제고를 통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운용 재원인 청약저축으로부터 유입된 자금 중 청약저축 해지에 따라 상환하는 원금 지출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4조 3,339억 500만원(△26.3%)이 감액된 12조 1,26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61]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사업은 청약저축 해지에 따라 원금을 상환할 때 가입기간동안 누적된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181억 5,000만원(△7.7%)이 감액된 7,276억원이 편성되었음.[62]

즉 두 사업은 청약저축을 해지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해당 계좌를 사용하는 시점에 함께 지급되므로, 지출액 추계방식과 산출근거를 공유하게 됨.

[2026년도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사업,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16,460,100	16,460,100	12,126,195	△4,333,905	△26.3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738,000	738,000	727,600	△18,150	△7.7

두 사업의 산출근거를 같이 보면, 청약통장 해지에 따른 상환원금(추정)과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데, 2025년 계획안과 비교할 때 상환원금과 이자율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61) 주택도시기금-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9850-980)(주택토지실)

62) 주택도시기금-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1071-798)(주택토지실)

계획하였음. 이는 국토교통부가 청약통장의 해지 추세가 둔화되고, 발생이자도 적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한 것임.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사업,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16조 4,601억원 - 2024년말 추정잔액(103조 3,993억원) × 15.9% * 과거 상환비율 평균(15.9%)을 적용	□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12조 1,261억 9,500만원 - 2025년말 추정잔액(99조 8,082억원) × 12.2% * 해지 가입자수 완화(12.2%) 추정
□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7,380억원 - 상환추정원금(16조 4,601억원) × 이자상환비율(4.5%)	□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7,276억원 - 상환추정원금(12조 1,261억 9,500만원) × 이자상환비율(6.0%)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는 이자상환비율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기금운용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사업의 계획액을 추계하려면, 먼저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사업 계획액과 이자상환비율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두 사업의 결산액(집행액)을 토대로 이자상환비율을 추정하면 2021년 5.56%에서 2024년 10.20%까지 증가하였으며, 아직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2025년의 경우 7월까지 9.56%로 집계되었음.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이자상환 사업의 이자상환비율 추정]

(단위: 백만원, %)

연도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A)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B)	이자상환비율 (B/A)
2021	10,256,178	569,934	5.56
2022	19,037,001	1,240,969	6.52
2023	15,209,857	1,101,771	7.24
2024	12,626,388	1,287,545	10.20
2025.7	6,873,332	657,113	9.56
2026(안)	12,126,195	727,600	6.00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자상환비율이 증가한 이유로 ① 이자율이 높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2024.2)와 ②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허용(2024.10)으로 전환가입자에게 종전 누적이자를 정산하면서 이자비용이 증가한 점을 들 수 있음.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현황]

청약저축 가입기간 (2025년 10월 기준)	1개월이내	1개월초과~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
청약저축	무이자	연 2.3%	연 2.8%	연 3.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이자	연 3.7%	연 4.2%	연 4.5%

자료: 시중은행 홈페이지

또한 청약통장 해지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청약 금리를 상향 조정하였는데, 2022년 11월까지 연 1.8% 수준이던 금리를 현재 3.1%까지 상향하면서 정산이자도 동반 상향한 점을 들 수 있음(2년 이상 금리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변동 내역]

청약저축 가입기간	1개월이내	1개월초과~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
2003.03.03~2006.02.23	무이자	연 2.5%	연 5.0%	연 6.0%
2006.02.24~2012.12.20	무이자	연 2.5%	연 3.5%	연 4.5%
2012.12.21~2013.07.21	무이자	연 2.0%	연 3.0%	연 4.0%
2013.07.22~2014.09.30	무이자	연 2.0%	연 2.5%	연 3.3%
2014.10.01~2015.02.28	무이자	연 2.0%	연 2.5%	연 3.0%
2015.03.01~2015.06.21	무이자	연 1.8%	연 2.3%	연 2.8%
2015.06.22~2015.10.11	무이자	연 1.5%	연 2.0%	연 2.5%
2015.10.12~2016.01.03	무이자	연 1.2%	연 1.7%	연 2.2%
2016.01.04~2016.08.11	무이자	연 1.0%	연 1.5%	연 2.0%
2016.08.12~2022.11.22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2022.11.23~2023.08.29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2023.08.30~2024.09.22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2024.09.23~현재	무이자	연 2.3%	연 2.8%	연 3.1%

주 1) 금리변경 전일까지의 이자는 변경전 금리, 변경일부터 이후의 이자는 변경후 금리로 구분 적용
2) 금리변경 전에 신규된 기존계좌도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금리로 구분 계산함
자료: 시중은행 홈페이지

결국 2022년부터 인상된 청약저축 금리 추이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도입을 감안하면, 2026년 예상되는 이자상환비율은 계획안에서 가정한 6.00%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실제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사업에서는 연례적으로 이자상환비율을 과소 추계한 결과로 인한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집행추이를 보면 기금운용계획이 불가피한 상환임.

[청약저축 이자상환비율의 계획액 대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결산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상환(A)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B)	이자상환비율 (B/A)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상환(A)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B)	이자상환비율 (B/A)
2022	15,011,900	606,200	**4.04**	19,037,001	1,240,969	**6.52**
2023	12,545,300	642,300	**5.12**	15,209,857	1,101,771	**7.24**
2024	13,647,300	684,843	**5.02**	12,626,388	1,287,545	**10.2**
2025.7	16,460,100	738,000	**4.48**	6,873,332	657,113	**9.56**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06,200	**744,017**	1,350,217	-	1,350,217	1,240,969	91.9	91.9	-	109,248
2023	642,300	**464,924**	1,107,224	-	1,107,224	1,101,771	99.5	99.5		5,453
2024	684,843	**611,093**	1,295,936	-	1,295,936	1,287,545	99.4	99.4		8,391
2025.7	738,000	-	738,000	-	738,000	657,113	89.0	89.0		

자료: 국토교통부

해당 사업금액은 국토교통부가 재량으로 사업규모를 축소·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바, 이자상환비율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기금운용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2.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공실률 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과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으로, 두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8조 6,995억 700만원(262.2%) 증액된 12조 169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63]

[2026년도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044,394	3,319,894	6,378,752	3,334,358	109.5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73,070	488,380	5,638,219	5,365,149	1,964.8
합계	3,317,464	3,808,274	12,016,971	8,699,507	262.2

2026년도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을 통한 계획공급물량은 57,500호로 2025년 계획공급물량 67,500호의 85% 수준임에도 계획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① 2025년 계획공급물량의 확대 등으로 늘어난 신축매입주택의 2차·3차년도 사업비 연부액 66%가 2026년 반영되었고, ② 2026년부터는 신축매입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급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1차년도 사업비 연부액이 34%에서 40%로 인상되었으며, ③ 2025년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 계획액은 토지주택공사에 유보된 출자금 2조 4,638억 6,800만원을 상계 처리한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과소 측정된 점을 들 수 있음.

한편 2026년 계획안에는 신규 매입물량으로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물량 해소를 위하여 지방 미분양주택 5,000호를 매입하여 분양전환형 든든전세[64]로 활용할 계획임.

---

63)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401)(주택토지실)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주택토지실)

64) 6년 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분양전환 미 선택 시 추가 2년(최대 8년) 거주가 가능함.

[2025・2026년도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비교]

2025년	2026년 계획안
□ **임대주택 67,500호 공급: 3조 3,174억 6,400만원** - 2025년 1차년도 사업비 34% : 5조 7,813억 3,200만원 - LH 유보금 사용: △2조 4,638억 6,800만원 * 든든전세(신규) 14,000호 공급	□ **임대주택 57,500호 공급: 12조 169억 7,100만원** - 2026년 1차년도 사업비 40% : 5조 7,352억 3,700만원 - 2025년 2차 · 3차년도 사업비 66%(추경 포함) : 6조 3,337억 8,200만원 - LH 유보금 사용: △520억 5,100만원 ※ 지방 미분양 매입(신규): 5,000호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2026년도 다가구매입임대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호)

유형	단가(2026년) (신・기축 동일)	출자율 (%)	융자율 (%)	2025년 (추경)	2026년 (계획)
①일반	180	45	50	12,500	7,500
②청년역세권	180			9,000	14,000
③다자녀 리모델링	230			500	500
④일반 리모델링	200			500	500
⑤고령자 및 고령자리모델링	160			3,000	2,000
⑥리모델링 I	105			1,200	1,200
⑦리모델링 II	200			2,800	2,800
⑧신혼・신생아 I	235			10,500	10,500
⑨신혼・신생아 II	320			2,000	2,000
⑩다자녀	205			1,000	1,000
⑪기숙사	160			1,000	1,000
⑫취약계층	170			2,000	2,000
⑬전세피해	170			7,500	7,500
⑭든든전세	320	22.5	22.5	14,000	0
⑮미분양 매입(2026년 신규)	220			0	5,000
계				67,500	57,500

주 1) 신축매입은 2025년까지는 3년에 걸쳐(2025년 34% : 2026년 33% : 2027년 33%), 2026년에는 2년에 걸쳐 매입함(2026년 40% : 2027년 60%)
2) 기축매입은 1차년도에 100% 편성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출자·융자금 투입 규모 대비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하므로, 계획공급물량 실적 저조의 원인을 파악하고 과다 추계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출자금 또는 융자금으로 투입한 규모를 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3년 64.7%가 제일 낮고 대부분 당초 계획 대비 90% 이상 집행하거나 초과 집행하였음.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집행률은 101.2%임.

[2021~2025년도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계획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당초			수정			집행			당초대비 (C/A)	수정액 대비(B/A)
	융자	출자	계(A)	융자	출자	계(B)	융자	출자	계(C)		
2021	31,279	32,810	64,089	32,629	56,556	89,185	32,462	56,259	88,721	**138.4**	99.5
2022	58,093	33,467	91,560	54,599	29,711	84,310	54,403	29,467	83,870	**91.6**	99.5
2023	32,370	28,393	60,763	15,331	26,988	42,319	14,617	24,712	39,329	**64.7**	92.9
2024	36,120	24,343	60,463	46,370	24,343	70,713	43,712	22,932	66,644	**110.2**	94.2
2025.7	30,444	2,731	33,175	33,199	4,884	38,083	20,218	3,305	23,523	70.9	61.8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다가구매입임대 공급 실적을 보면 2021년 63.2%, 2022년 41.1%, 2023년 30.5%, 2024년 76.4%로 나타나 평균집행률은 52.8%로 나타남. 국가재정(주택도시기금)의 집행 실적(101.2%) 대비 주택 공급물량 성과(52.8%)를 보면 재정투입이 이루어진 것보다 성과는 미흡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21~2025년도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계획공급물량 및 실적 현황]

(단위: 호, %)

연도	계획(A)	실적(B)	달성률(B/A)
2020	29,366	28,626	97.5
2021	55,000	34,778	**63.2**
2022	47,323	19,453	**41.1**
2023	35,000	10,673	**30.5**
2024	62,000	47,398	**76.4**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당 기간 동안 유형별로 보더라도, 일부 유형에서 계획 대비 공급 실적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유형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0~2024년도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계획공급물량 및 실적 현황]

(단위: 호)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일반	9,700	9,723	12,000	9,068	9,000	5,140	9,500	2,634	10,500	5,370
청년역세권	3,650	3,848	9,200	7,801	8,965	4,092	9,000	3,281	11,000	20,258
다자녀 리모델링	15	15	200	26	26	186	500	4	500	164
일반리모델링	-	-	1,000	53	53	-	500	48	500	48
고령자 및 고령자 리모델링	1,000	736	2,000	549	1,544	221	2,000	87	2,000	513
리모델링 I	2,330	1,695	1,000	1,037	535	210	1,200	43	1,400	579
리모델링 II	670	857	5,000	2,427	6,000	1,962	2,800	819	2,600	2,375
신혼부부 I	6,105	6,131	8,335	4,870	6,000	1,771	5,500	1,710	14,300	9,813
신혼부부 II	4,375	4,342	4,465	3,484	3,500	1,520	2,000	1,885	8,800	2,919
신혼부부리츠	36	25	-	-	-	-	-	-	-	-
다자녀	485	486	1,300	476	1,700	395	1,000	162	1,000	700
기숙사	1,000	768	1,500	472	1,000	-	1,000	-	1,000	230
공공전세	-	-	9,000	4,515	9,000	3,956	-	-	-	-
든든전세-신규	-	-	-		-	-	-	-	8,400	4,429
합계	29,366	28,626	55,000	34,778	47,323	19,453	35,000	10,673	62,000	47,398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사업의 재정투입과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같은 기간 동안의 투입과 성과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러나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의 경우 신축매입은 2~3년, 기축매입은 1년이 소요되므로 일반 정비사업보다 시차가 크지 않음. 또한 정부가 공급가의 대부분(95%, 융자 50%+출자 45%)을 부담하므로 재원조달 문제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도 적은 편임.

그럼에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동안 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은 계획공급

물량 추계가 부정확하거나 과다 산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출자 · 융자금 투입 규모 대비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계획물량이 과다 산출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토교통부가 신규로 매입하려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공실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재고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권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65](매입 공고일 이전 준공(사용검사)하였고, 전용면적 50~85㎡) 5,000호를 매입하여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제공할 계획임.

다만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제공하더라도 미분양 물건임을 고려할 때, 6년 거주 후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특히 든든전세 유형은 임대료가 시세의 80~90%이고, 최장 임대기간이 8년으로 제한되는 등 다른 임대주택보다 임대조건이 유리하지 않아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다가구매입임대 주택 유형별 조건]

유형(일부)	자격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일반	무주택	시세 30%	20년
청년역세권	무주택+대학생, 졸업 2년 이내 취준생, 19~39세	시세 40%	10년 (혼인시 20년)
다자녀	무주택+소득70%이하+2명이상자녀 (미성년자,태아)	시세 30~40%	20년
고령자	무주택+65세이상	시세 40%	제한없음
신혼·신생아Ⅱ	무주택+소득70%(맞벌이90%)이하+(예비)신혼부부,한부모·혼인가구 (6세이하자녀)	시세 60~80%	10년 (유자녀 14년)
든든전세	무주택	시세 80~90%	8년

주) 입주자 선정기준은 든든전세를 제외하고 소득 · 자산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자료: 국토교통부

65) 「주택법」 제15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하였으나, 계약이 되지 않아 선착순 계약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를 의미함.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계획 및 실적(2024.12월 기준, 토지주택공사)]

구분	공실률(%)	재고(호)	공가호수(호)
일반	1.90%	108,860	2,065
청년	3.94%	25,037	987
기숙사	2.85%	2,175	62
신혼1	3.70%	22,036	815
신혼2	4.39%	13,933	611
고령자	7.72%	2,913	225
다자녀	5.05%	1,605	81
든든전세	**5.73%**	5,379	308
합계	**2.83%**	**181,938**	**5,154**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더하여 지방 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이 수도권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사정을 고려하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공실률이 더 증가할 여지가 있을 것임.

[다가구매입임대 주택 지자체별 미임대(공실률) 현황(2024.12월 기준, 토지주택공사)]

(단위: 호, %)

구분	전체 재고량	6개월 이상 미임대	미임대율(공실률)
강원	5,097	288	5.65%
경기	49,416	699	1.41%
경남	9,780	196	2.00%
경북	6,418	309	4.81%
광주	9,489	191	2.01%
대구	10,124	506	5.00%
대전	9,354	235	2.51%
부산	11,101	408	3.68%
서울	29,604	595	2.01%
세종	155	4	2.58%
울산	4,434	107	2.41%
인천	18,499	327	1.77%
전남	1,577	49	3.11%
전북	7,063	346	4.90%
제주	1,578	27	1.71%
충남	3,193	601	18.82%
충북	5,056	266	5.26%
계	181,938	5,154	2.83%

자료: 국토교통부

종합하면 신규로 매입하려는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지방)와 임대조건(든든전세)을 고려할 때 공실률이 높게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재고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3. 주택정비사업(융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 검토 필요

가. 개 요

‘주택정비사업(융자)’ 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조합의 기본설계비 등 사업인허가,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22억 5,000만원(5.3%)이 증액된 4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66]

[2026년도 주택정비사업(융자)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주택정비사업(융자)	40,000	40,000	42,250	2,250	5.3

주택정비사업(융자)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서 조합의 용역비, 운영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3%대의 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임.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을 추진위까지 포함시켰으며, 융자한도도 60억원까지 증액하였음. 다만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에 속하는 정비사업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026년 계획안에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9곳의 추진위와 9곳의 조합에서 융자를 신청할 것으로 가정하고 계획액을 산출하였으며, 지원대상 지역에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이 포함됨.

[주택정비사업(융자) 계획안 세부내역]

□ 9개 추진위 112.5억 + 9개 조합 310억 = 422.5억원
① [추진위원회 자금소요] (9개 × 평균 12.5억원) = 112.5억원
* 전국 92곳(**서울 30곳 포함**)의 10% 수준으로 검토
② [조합 자금소요] (7개 × 30억원) + (2개조합 × 50억원) = 310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66)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주택정비사업(융자)(1520-305)(주택토지실)

[주택정비사업(융자) 개요]

□ (대상) 2025년 조합 → 2026년 추진위 및 조합(**단,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제외**)
□ (자금용도) 용역비, 조합운영비, 총회개최비용, 보증부대출금 이자비용, 그밖에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사용 가능
□ (융자한도) 구역별 사업연면적에 따른 한도 내에서 지원

사업연면적		~20만㎡	~30만㎡	~40만㎡	~50만㎡	50만㎡~
현행	조합	18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2026년 (안)	조합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추진위	10억원	12억원	13억원	14억원	15억원

□ (융자조건(이자)) 2.2% (HUG 보증료 별도(조합 1%, 추진위 산정 중))
□ (담보) HUG 보증서 (단, 조합장 및 감사 전원의 연대보증 필요)
□ (만기) 사업계획승인 후 1년 내 일시상환(단, 최대 5년)
□ (기한이익상실) 명백한 사업중단 사유* 발생 시 원리금 회수
* 정비구역 해제, 조합설립인가 취소, 3개월 이상 이자연체(월별납부 선택시)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2025년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융자사업 지원 대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대상지역 등 사업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택정비사업(융자)에 따라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국토교통부가 2025년 융자를 승인한 4개 조합 중 1개 조합이 서울시 소재임. 추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구에 한정되었음.

[2025년 융자신청 및 승인 현황]

(단위: 백만원 / 2025년 8월말 기준)

구역명	융자대상	신청 접수일	승인일	승인금액	집행일	집행금액	비 고
A구역	조합	25.05.27	25.07.10	4,000	25.09.09	집행예정	
B구역	조합	25.07.02	25.08.01	2,000	25.08.05	2,000	
C구역	조합	25.07.28	25.08.07	650	25.08.21	650	서울시
D구역	조합	25.08.29	25.09.10	1,800	-	집행예정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서울시 4개 자치구 뿐만 아니라,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종전	2025년 10월 15일 이후
✓(서울) 4개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주택정비사업(융자)은 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위 및 조합에 초기 사업비를 융자지원하는 것임.

그러나,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에 따라 사업지원 대상이 변동되므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지원 정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역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67]

[주택정비사업(융자)의 수혜 대상지역 - 재개발+재건축 단계별 구역 현황]

(단위: 구역 수)

지역 (2025년 3월 기준)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전국	**92**	**281**	185	216	195
수도권	36	163	109	127	138
- 서울	30	121	80	65	74
- 경기	6	33	20	48	43
- 인천	0	9	9	14	21
비수도권	**56**	**118**	76	89	57

자료: 국토교통부

67)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제6차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대상 제외지역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10.27).

기존	변경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 **2025.1월 기준**「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24. 이차보전지원 사업: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차보전율 조정 및 계획액 감액 검토 필요

가. 개 요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공공재개발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비와 이주비 조달 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12억원(60.0%)이 증액된 32억원이 편성되었음.[68]

[2026년도 이차보전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이차보전지원	2,000	2,000	3,200	1,200	60

구체적으로 사업비의 50%를 공사 절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이차보전율은 조달금리와 지원금리의 차이로 산정하되 2%p 이내로 지원함.

[이차보전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총사업비 50% 지원: 시행자지정 1%, 사업시행인가 1%, 이주 10%, 착공 38%
  * 이주, 착공에 따른 이차보전은 2년간 안분하여 지원(1년차 40%, 2년차 60%)
- 이주비 지원: 한도 3억 전액 신청 가정

□ 지원기간: 사업시행자 지정으로부터 준공까지(7년간) 이차보전 지원
  * 시행자지정(D), 사업시행인가(D+2), 이주(D+3), 착공(D+5), 준공(D+7)

□이차보전율 : 조달금리 - 지원금리(1.8%) (단, 최대 2%p)
- 조달금리: LH, SH 채권금리 3.5~4.0%(‘22년 5~7월)/한은 주담대금리 3.8~3.9%(‘22년 3~5월)

자료: 국토교통부

2026년 계획안은 공공재개발사업지 약 14,000호를 대상으로 이차보전율 2%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음.

68)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이차보전지원(1520-302)(주택토지실)

[이차보전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이차보전금(320-05): 32억원
: 7,000호(사업시행자지정) × 3억 9,700만원(호당사업비) × **2%(이차보전율)** × 1%(절차에 따른 지원율)
+ 7,000호(사업시행인가) x 3억 9,700만원(호당사업비) × **2%(이차보전율)** × 1%(절차에 따른 지원율)
+ 20억원(2025년 지원금액)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조달금리(2.5~2.84%)와 지원금리(1.8%) 차이가 2%p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차보전율을 재산정하고 이차보전금 계획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차보전율 산정에 기초가 되는 한은 기준금리 또는 LH/SH 채권금리를 보면, 2025년 1월 3.0% ~ 3.09%에서 2025년 7월 2.5% ~ 2.84%로 내려가는 추세에 있으며, 지원금리(1.8%)와의 차이도 최대 1.2%에서 최소 0.7%로 2%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이차보전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10월	1월	4월	7월	10월	1월	4월	7월
한은 기준금리	3.5	3.5	3.5	3.5	3.5	3.25	3.0	2.75	2.5
LH 채권금리	3.82	4.28	3.85	3.64	3.42	3.17	3.07	2.87	2.81
SH 채권금리	3.86	4.31	3.86	3.66	3.44	3.20	3.09	2.90	2.84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계획안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저금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p의 이차보전율을 적용한 결과, 전반적인 과다 추계의 여지가 있다고 보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수입은 44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함.[1)]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44	44	44	-	-
총수입	44	44	44	-	-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지출은 2,872억원으로 전년 대비 682억원(31.1%) 증가함.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190	2,190	2,872	682	31.1
총지출	2,190	2,190	2,872	682	31.1

문의 : 윤희호 예산결산조사관 yoonhh@assembly.go.kr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888억원으로 전년 대비 683억원(31.0%) 증가함.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2,205	2,205	2,888	683	31.0
합 계	2,205	2,205	2,888	683	31.0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5,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8억원(32.6%) 증가함.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2,118	2,118	2,844	725	3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2,205	2,205	2,888	683	31.0
합 계	4,323	4,323	5,732	1,408	32.6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2개(60억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국지도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업은 세종시내 굴곡진 국지도96호선을 선형개선(직선화)하기 위한 지하차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 3억원은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전 조사 연구비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교통수요 예측, 선형·구조 검토, 안전성 검토,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하는 사전조사를 거쳐 향후 총사업비와 추진시기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은 2021년부터 진행된 기존사업이며, 2025년 예산 당시에는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의 추진 경과 등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편성되지 않은 것임.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	국지도96호선 지하차도 신설	300
2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5,700
총지출		6,000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 등 총 10개임.[3)] 대통령세종집무실 등 국가시설 건립 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설계비 · 공사비가 편성되기 시작하면서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가하였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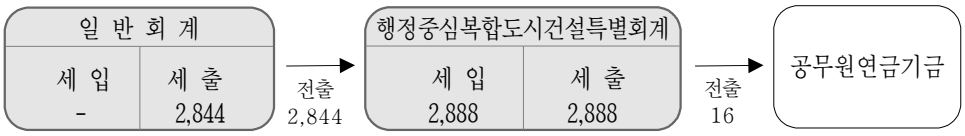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158	657	499	315.8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4,520	24,000	19,480	431.0
3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2,975	5,741	2,766	93.0
4	회덕IC 연결도로	4,968	9,350	4,382	88.2
5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5,000	95,640	60,640	173.3
6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427	19,770	19,343	4,530.0
7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714	2,560	1,846	258.5
8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1,670	15,514	3,844	32.9
9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295	18,328	17,033	1,315.3
10	정책연구비	197	468	271	137.6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2,844억원이 전출될 예정임.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6억원이 전출될 예정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점임.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보조, 출연, 위탁 방식이 아닌 직접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도시기능시설을 운영하는 예산이 91.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행정수도 세종추진 국민소통 및 홍보 사업’은 홍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시기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임.

둘째,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설계 등 사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 완료함으로써, 실시설계가 2026년에 원활히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을 고려하여, 감리비 예산 일부를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 출>

1.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사업: 국가상징구역 조성 진행 상황을 고려한 사업추진 검토 필요

가. 개 요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세종시에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복합기능이 유치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9,900만원(315.8%) 증액된 6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158	158	657	499	315.8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관련 자료 제작, 홍보비, 활동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6년에는 신규 항목으로 ‘행정수도 세종추진 국민소통 및 홍보’ 예산 5억원, UN대학교 유치 용역비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이 중 ‘행정수도 세종추진 국민소통 및 홍보’ 항목은 2026년에 신규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 이행>을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으로 구성되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홍보 비용을 반영한 것임.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1032-320)(도시계획국)

[행정수도 세종추진 국민소통 및 홍보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① 국가상징구역 국민참여단 운영: 1억 2,100만원
- 국민참여단 참석수당: 9,600만원 (120명×4회×200,000)
- 국민참여단 소통그룹 원고료: 1,000만원 (25명×4회×100,000)
- 국민참여단 발대식 행사: 1,500만원

② 행정수도 세종 홍보 실행 및 모니터링: 2억 5,900만원
- 공식 홍보영상 제작 1억원, 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 2,400만원
- 디지털콘텐츠 기획 및 제작 2,000만원(12회×160만원)
- 온라인 인플루언서 협업 홍보 5,000만원
- 언론, 오프라인 홍보 6,000만원(옥외광고, 교통수단 광고 등)
- 홍보 이미지, 슬로건 제작 500만원

③ 인건비 및 제경비 등 : 1억 2,000만원

* **<유사사례> 용산공원 국민소통 종합관리 용역**
- ㅇ 계약금액: 6억 500만원 / 계약기간: 2020.9~2021.2 (6개월)
- ㅇ 과업내용: 국민참여단 운영, 공모전, 슬로건 제작, 방송・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등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행정수도 세종추진 국민소통 및 홍보 사업은 홍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시기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임.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사업으로 핵심 국가시설인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내에 행정부와 입법부 핵심 기구가 조성되는 것을 대외에 홍보함으로써 국격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행정수도 기능이 보다 확장되면서 유관 산업과 기능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행정수도 세종추진 국민소통 및 홍보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세부사업인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사업의 목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이며,[5] 사업 성과지표로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유치 건수를 설정하고 있음.[6)]

일반적으로 국가시설의 이전은 투자 유치로 보기 어렵고,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세종시에 건립되는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이므로 사업 수행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성과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임.

또한 사업 시기와 관련하여,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준공시기가 2030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홍보시기와 준공시기의 시차를 고려할 때 단계별 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홍보 대상과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사업 효과와 관련하여, 국민참여단으로부터 수렴받은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상징구역에 반영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민참여단 구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홍보영상, 슬로건 제작 등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외에 국민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렴된 의견을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1.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自足都市)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정보도시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6.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6)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족기능 유치성과 (단위: 건수)	목표	신규	5	3	3	최근 유치실적 및 차년도 유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유치건수
	실적	-	6	-	-		
	달성도	-	120.0	-	-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실시설계 조속 착수를 위한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정운영 효율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4억 8,000만원(431.0%) 증액된 240억원이 편성되었음.[7][8]

[2026년도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4,520	4,520	24,000	19,480	431.0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의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2030년으로 변경 예정), 총사업비는 3,846억원이며, 2026년 예산안에는 실시설계비 전액(153억 600만원)과 건설보상비 86억 8,400만원(계약금, 총 부지매입비의 5% 수준)이 편성되어 있음.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 총계: 45억 2,000만원 -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 10억원**(일반연구비, 260-01) - **기본설계비 33억원**(기본조사설계비, 420-01) - 설계적정성검토 등 조달수수료 지출을 위한 비용 2억원(시설부대비, 420-05) - 관계기관 협의 비용 등 2,000만원(사업추진비, 240-01)	□ 총계: 240억원 - 부지매매계약 비용 86억 8,400만원(건설보상비, 410-00) - **실시설계비 153억 600만원**(실시설계비, 420-02) - 관계기관 협의 비용 등 1,000만원(사업추진비, 240-01)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2031-307)(시설사업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설계 등 사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 완료함으로써, 실시설계가 2026년에 원활히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가, 2026년에는 실시설계가 각각 마무리되고 2027년 이후부터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에는 마스터플랜 용역비 10억원과 기본설계비 33억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에는 실시설계비 15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 10월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마스터플랜 용역 수행자를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공모를 위한 관리 용역[9]을 추진 중이며, 마스터플랜 공모 지침서에서 용역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마스터플랜 용역은 2026년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보임.

이후 절차인 기본설계 일정과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구체적 추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나,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실시설계비 집행을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신속히 준비 · 완료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이 사업은 공사비가 2,057억원으로 사업규모가 과소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격을 상징하는 주요 행정부 업무시설이므로, 최적의 설계품질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기본설계가 최적의 설계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되어 실시설계가 2026년에 원활히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9) [마스터플랜 공모를 위한 관리용역 개요]

□ (용역명)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
□ (용역금액) 2억 2,400만원(예산액 3억원, 일반연구비목, 260-01)
□ (용역기간) 2024년 6월 ~ 2025년 12월
□ (수행업체) 한국건축가협회
□ (계약형태) 일반경쟁입찰
□ (주요과업)
- 공모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및 운영계획 수립
- 공모를 위한 지침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준비
- 공모 진행을 위한 조직 구성·운영 지원
- 공모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 공모 실시, 보고서 및 작품집 등 성과품 제출, 계약체결 관련 지원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출 자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 과업지시서」(2024. 6)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사업: 낙찰차액을 반영한 감리비 감액 조정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사업은 세종시에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시 경찰청의 업무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3억 4,300만원(4,530%) 증액된 19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427	427	19,770	19,343	4,530.0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의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는 876억 2,500만원이며, 2026년 예산안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진율 30%를 상정하여 공사비 179억 8,900만원과 감리비 16억 8,1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음.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 총계: 4억 2,700만원 * 2025년 하반기 착공 최소 소요 ○ 공사비(420-03): 4억원 ○ 감리비(420-04): 2,500만원 ○ 시설부대비(420-05): 200만원	□ 총계: 197억 7,000만원 * 2026년 연차별 소요 30% 반영 ○ 공사비(420-03): 179억 8,900만원 ○ **감리비(420-04): 16억 8,100만원** ○ 시설부대비(420-05): 1억원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감리비의 경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공사 기간에 걸쳐 총 56억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공사비 603억 6,200만원 대비 감리비 비중은 9.3% 수준임.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세종경찰청 청사 건립(2033-320)(시설사업국)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총사업비 및 연차별 사업비 배분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액 기준)

비목	코드	총사업비 (국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건설보상비	410-00	18,172	0	15,563	0	0	0	0	0
기본조사설계비	420-01	1,285	100	1,212	0	0	0	0	0
실시설계비	420-02	1,969	0	969	1,000	0	0	0	0
공사비	420-03	60,362	0	0	0	400	17,989	23,985	17,989
감리비	420-04	**5,629**	**0**	**0**	**0**	**25**	**1,681**	**2,242**	**1,681**
부대비	420-05	208	0	16	0	2	100	11	0
소계		87,625	100	17,760	1,000	427	19,770	26,238	19,670

주) **감리비 요율: 5,629 ÷ 60,362 = 9.3%**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검토의견

첫째,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을 고려하여, 감리비 예산 일부를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을 채택, 감리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함.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총사업비에서 감리비 예산을 56억 2,900만원(2026년 예산안에는 30% 수준인 16억 8,100만원)을 편성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2025년 9월에 낙찰가 40억 5,863만원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음.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 예산액 49억 1,400만원 중 낙찰금액(40억 5,863만원)을 제외한 낙찰차액 8억 5,537만원은 집행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11]

따라서 이 사업 총사업비 중 감리비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는 감리비 연부액 비율(30%) 만큼인 약 2억 5,700만원의 감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감리비 예산을 56억 2,900만원 중 미발주예산 7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전기감리용역 수행에 집행할 계획임.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사업의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개요]

□ (용역명) 세종경찰청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금액) 40억 5,863만원(예산액 49억 1,400만원, 낙찰차액 8억 5,537만원)**
□ (용역기간) 2025년 11월부터 약 34개월(공사 33개월, 시공 후 1개월)
□ (수행업체) ㈜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65%),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35%) 공동이행
□ (계약형태) 공개경쟁입찰
□ (주요과업)
-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공정관리, 실시설계도서 검토, 시운전 및 인수·인계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사업참여자의 업무를 감독·보완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추진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총사업비로 책정된 감리비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비추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감리비 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별표7[12]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면적 19,506㎡의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사업은 이에 포함되는 사업임.

예산편성지침에서 책임감리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사비 요율에 따라 예산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건축법상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보통의 공종)인 청사의 감리비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면 약 5.36%[13]임. 이 사업 공사비 54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604억원)에 감리비 요율 5.36%를 적용하면 감리비 예산은 32억 3,700만원이 도출됨.

---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7. 1. 1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13) $5.52 + \frac{(4.87 - 5.52)}{(700 - 500)} \times (549 - 500) = 5.36$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표(일부)]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비 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0	4.96	**5.52**	6.07	
700	4.38	**4.87**	5.35	

주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함
2) 위 기준요율은 2025년 신규 발주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2024년도 이전 발주 사업은 각 해당 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름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편성지침, p.308

실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사업의 당초 예산 편성 당시 감리비를 28억 8,500만원으로 하여 예산편성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로 산출한 바 있음.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5년 총사업비 5차 변경 과정에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물가변동, 전기차 충전설비, 신재생에너지 설계 등 공사비 추가 소요분을 인상[14]하면서 감리비도 인상하였는데, 당초 28억 8,500만원에서 거의 2배인 27억 4,400만원이 인상된 56억 2,900만원으로 변경하였음(증가율 95.1%).

14) [실시설계 적성성 검토에 따른 공사비 증액소요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검토	비고
공사비 (백만원)	물가변동	786	·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이후 변동된 물가지수(0.0132) 반영
	인허가	549	· 교통영향평가 반영 전기차 충전설비 2대 증(800만원) · 신재생에너지 설계 내역반영(6,400만원) · 쓰레기 이송설비 공사비 반영(4억 7,600만원)
	법정경비	126	· 상수도, 가스, 전기 등 공사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계		1,461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후 총사업비 협의 조정결과]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현행(A)	순 증		조정후 (A+B)
		요구	조정(B)	
<총사업비>	84,090	4,210	3,535	87,625
□ 공사비	59,573	**1,461**	**789**	60,362
□ 보상비	18,172	-	-	18,172
□ 시설부대경비	6,345	2,749	2,746	9,091
ㅇ설계비	3,254	-	-	-
ㅇ감리비	**2,885**	**2,744**	**2,744**	**5,629**
ㅇ시설부대비	206	5	2	208
<연면적>	19,444	62	62	19,506
<사업기간>	2022~2026	+2년	+2년	2022~2028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실시설계 총사업비 협의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조달청 감리비 조정 검토를 진행하였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배치 및 대가 기준을 반영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임.

특히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0조제9항에 따라 “발주과정에서 감리비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검토를 거쳐 보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함.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감리비 조정결과]

구 분	내용	감리비
최초 (2022.01.)	최초공사비 559억 3,900만원 × 4.92% * 전면책임감리비 요율(보통), 508억 5,300만원(부가세 제외)에 직선보간법 적용	27억 5,200만원 (현행 이전 금액)
총사업비 협의조정 (2025.0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배치·대가 반영	56억 2,900만원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시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가 발생될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가 건축 · 건설사업에서 종종 일어나며, 물가상승과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 인상에 대응하고 국가청사가 적기에 건립되기 위해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측면은 있음.

또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적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의 품질 보장을 위한 적정 감리비 편성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총사업비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소요 이상의 감리비를 당초 대비 2배 인상한 점은 관련 기준과 지침에 비추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총사업비 관리지침」제70조제9항을 감리비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①해당 지침 제70조제1항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요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②같은 조 제6항에서 감리비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우선 감리비 계약금액 내에서 최대한 적정 기술인의 우선 투입에 노력하며, ③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공사비 증가 외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는 감리비 인상을 허용하지 않고 감리비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더라도 계약금액 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리비 예산의 2배 증액은 기준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15)]

무엇보다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에 편성된 공사비 대비 감리비 요율 9.3%(56억 2,900만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비슷한 시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 중인 국가시설인 대통령세종집무실에 편성된 감리비 요율 3.5%(감리비 73억원, 공사비 2,057억원),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8.7%(감리비 17억원, 공사비 193억원)[16)]와 비교해도 과다

---

15)「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 ① 건설사업의 감리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⑥ 감리비 계약이후 법령 제 · 개정으로 인한 감리비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감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감리비 계약금액내에서 최대한 적정 기술인의 우선 투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조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조정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을 제외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 인원 · 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의 추가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리원의 투입 인원 · 등급 조정 등으로도 감리비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고 기간연장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 공사는 사업 규모 또는 사업 특성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설과 기타 내역으로 구분한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전면 책임 감리비의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과정에서 감리비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검토를 거쳐 보정할 수 있다.

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로 책정된 감리비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비추어 과다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적정 감리비 산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낮을수록 감리비 비율이 높게 산정됨. 세종경찰청 청사는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보다 공사비(604억)가 높음에도 감리비 비율도 높은 상황임.

4.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 사업일정을 고려한 공사비 편성 여부 검토 필요

가. 개 요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은 국무회의 증가,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대테러 발생 위험에 대응하여 2020년 창설된 세종경찰특공대의 업무·훈련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4,600만원(258.5%) 증액된 2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17)]

[2026년도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714	714	2,560	1,846	258.5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의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총사업비 협의 기준)까지, 총사업비는 403억 3,900만원이며, 2026년 예산안에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계획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비 잔액 2억 8,300만원, 공사비 1억원, 건설보상비 20억 9,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음.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 총계: 7억 1,400만원 ○ 기본조사설계비(420-01): 2억 8,400만원 ○ 실시설계비(420-02): 4억원 ○ 시설부대비(420-05): 3,000만원	□ 총계: 25억 6,000만원 ○ **건설보상비(410-00): 20억 9,000만원** - 부지매입계약금 12% 반영 ○ **실시설계비(420-02): 2억 8,300만원** - 설계완료를 위한 잔여 사업비 전액 ○ **공사비(420-03): 1억원** - 공사발주를 위한 최소 소요 ○ 감리비(420-04): 5,000만원 ○ 시설부대비(420-05): 3,700만원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2033-321)(시설사업국)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총사업비 및 연차별 사업비 배분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준)

비목	코드	총사업비 (국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 고
건설보상비	410-00	18,172	0	0	2,090	16,082	0	
기본조사설계비	420-01	384	100	284	0	0	0	공사비 대비 1.9%
실시설계비	420-02	683	0	400	283	0	0	공사비 대비 3.5%
공사비	420-03	19,337	0	0	100	9,669	9,668	
감리비	420-04	1,696	0	0	50	823	823	공사비 대비 8.7%
부대비	420-05	67	0	30	37	40	0	공사비 대비 0.3%
소계		40,339	100	714	2,560	26,574	10,491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검토의견

실시설계 소요기간, 총사업비 조정 일정 및 예산편성지침을 고려하여 사업 일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 공사비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0월 기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를 종료한 후 사업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총사업비 조정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연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임.

실제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2027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협의된 반면, 연부액이 2028년까지 편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기간의 조정부터 필요한 상황임.

또한, 세종경찰특공대 청사의 공사비 단가는 2,590,817원/㎡로, 같은 시기에 추진 중인 유사 국가시설인 세종경찰청의 3,094,000원/㎡과 비교할 때 83% 수준에 불과하여 물가지수 반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소요가 예견되는 상황임.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안)]

시기	2025				2026				2027			
	3	6	9	12	3	6	9	12	3	6	9	12
구분	기본설계		총사업비 조정		실시설계		총사업비 조정		공사발주 및 착공		공사시행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에 따라 실시설계는 2025년 연말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시설계의 품질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용역수행기간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별표 1] 에 비추어 약 7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별표 1]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건축	4.5	7	9.5	7	7.5	8

비고 1.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관계기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2. 단순, 보통, 복잡 등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에 ±10%의 범위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계획하고 있으며(용역비 1,500만원), 검토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비용, 법정분담금 등이 발생한다면 총사업비 조정 절차로 추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이럴 경우 실시설계 종료 이후 총사업비 협의, 착공을 위한 준비(사업공고, 계약 등)와 토지수용절차는 2026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정상 촉박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계상을 지양’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사신축 등 소규모 건축사업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초년도에 건설보상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계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는 연면적 5,000㎡를 초과하는 건설사업관리 대상이므로 소규모 건축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하게 완성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한 해에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공사비 3개 비목을 동시에 계상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보임.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실시설계 소요기간, 총사업비 조정 일정 및 예산편성지침을 고려하여 사업 일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 공사비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사업의 조속 추진 필요 등

가. 개 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업무 효율성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의 상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6억 4,000만원(173.3%) 증액된 95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18][19]

[2026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5,000	35,000	95,640	60,640	173.3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2026년 예산안에는 기본설계비 일부(227억 7,800만원)과 건설보상비 728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 총계: 350억원 - 건설보상비(410-00) : 350억원 ·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한 건설보상비 ※ 건설보상비 중 15억원을 전용하여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추진 중	□ 총계: 956억 4,000만원 - 건설보상비(410-00) : 728억 6,200만원 ·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건설보상비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27억 7,800만원** · 건축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설계비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국회세종의사당 건립(2033-315)(시설사업국)

19)「국회법」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나. 검토의견

첫째, 설계공모 일정, 기본설계용역 규모 및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사설계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0월 현재 국회사무처는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할 과업대상자를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설계공모를 위한 관리용역이 진행되고 있음.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관리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따른 국제설계공모 일정을 보면, 2025년 12월에 설계공모가 개시되고, 2026년 4월까지 작품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지며, 2026년 5월에 당선자가 선정될 예정임. 이에 따라 당선자 선정과 계약 과정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본설계는 2026년 6월에 착수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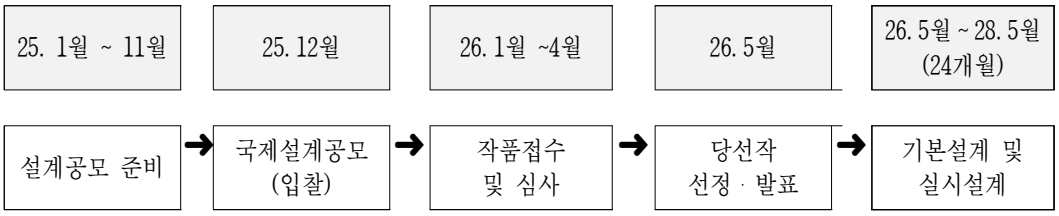
[국회세종의사당 국제설계공모를 위한 관리용역 개요]

□ (용역명)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관리용역
□ (용역금액) 11억 1,800만원(예산액 11억 8,000원, 일반연구비목, 260-01)
□ (용역기간) 2025년 8월 7일 ~ 2026년 10월 31일
□ (수행업체) 한국건축가협회
□ (계약형태) 일반경쟁
□ (주요과업)
- 공모 추진계획 수립 및 제반사항 사전준비
- 공모를 위한 지침서 등 관련 자료 일체 작성・제공
- 공모 진행을 위한 조직 구성·운영 지원
- 공모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 공모 실시
- 작품 전시회, 작품집, 종합보고서 발간 및 아카이빙 디지털 콘텐츠 기획·제작 등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관리용역 과업지시서(국회사무처, 2025.6)」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사무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기간을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설정하고, 2026년에는 기본설계 용역비 일부인 22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음.

[국회세종의사당 국제설계공모부터 기본설계까지 추진일정(안)]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제설계공모 절차 등을 고려하면, 기본설계의 착수는 당선작 선정 이후인 2026년 5월 이후로 예상됨.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회사무처는 설계공모 일정, 기본설계용역 규모 및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사설계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계획에서 수립한 이전 대상기관 및 부서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과 함께 국회규칙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규칙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따르며, 규칙 제4조에서는 이전 대상기관 및 부서를 열거하고 있음.[20][21]

규칙에 따라 이전되는 대상기관과 부서는 ①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일부, ②국회도

---

20) 「국회법」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21)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 ① 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
1. ~ 12. (생 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다만, 본회의 또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른 겸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1. 제1항 각 호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등 「국회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총장(이하 “국회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2. 「국회도서관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회도서관 분관(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입법조사처

서관 분관, ③국회예산정책처, ④국회입법조사처로 정하고 있음.

국회사무처는 규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이전 대상 계획을 정하고 있으나, 계획 중인 이전대상 기관 중 일부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시설 계획(기관 및 기능)]

구 분			내용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시설물	1	위원회	위원회, 국회사무처 등 업무공간
	2	의원회관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업무공간
	3	도서관	국회도서관 업무공간 및 대민개방공간
	4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입법지원기관 업무공간
	5	공보+기자실	입법·정책 보도 기자 업무공간
	6	방송국	의회 전문 방송국 시설
	7	종합안내센터	국회 방문자 안내센터
	8	경비대, 초소	경비·보안 시설
	9	어린이집	돌봄 시설
	10	온실	국회 내 수목 및 실내화분관리 시설
	11	옥외시설	옥외 화장실 등
	12	정비고	경내 차량 관리를 위한 정비고
	13	비상대피시설	재난·전시상황 등을 위한 대피시설
	14	**국회기록원**	국회 기록물 영구보존·관리
타당성 재조사 대상 시설물	1	홍보관	국회 홍보 전시 및 관람공간
	2	게스트하우스	업무 및 숙소 공간
	3	교육시설	의정연수원 업무공간 및 강의실 등
	4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등 전시 공간
	5	국제문화관	국제회의실 및 전시장 등
	6	실내체육관	대민개방 운동시설

자료: 국회사무처

예를 들면, 최근 제정된 「국회기록원법」에 따른 국회기록원은 국회의장 소속[22]이기 때문에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의 이전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은 독립된 법인[23]으로서 이전을 위한 자체 정관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의 계획(이전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수립한 이전 대상기관 및 부서가 적시에 이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규칙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국회기록원법」
제2조(지위) 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② 기록원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23)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새만금개발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수입은 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11.2%) 감소함.[1)]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91	91	81	△10	△11.2
총수입	91	91	81	△10	△11.2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지출은 2,012억원으로 전년 대비 885억원(78.5%) 증가함.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128	1,128	2,012	885	78.5
총지출	1,128	1,128	2,012	885	78.5

문의 : 윤희호 예산결산조사관 yoonhh@assembly.go.kr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11.1%) 감소함.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91	91	81	△10	△1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58	0.58	0.59	0.01	1.7
합 계	92	92	82	△10	△11.1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2,012억원으로 전년 대비 885억원(78.5%) 증가함.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128	1,128	2,012	885	78.5
합 계	1,128	1,128	2,012	885	78.5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없음.[2)]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새만금개발정책연구’ 사업 등 총 3개임.[3)]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에서는 실시설계 완료 후 2026년에 착공이 예정되면서 공사비가 편성되어 예산액이 증가하였음.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에서는 2025년도에 미편성한 사업출연금을 2026년 예산안에 편성함에 따라 예산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나타남.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40,165	162,979	122,814	305.8
2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3,224	5,410	2,186	67.8
3	새만금개발정책연구	312	910	598	191.7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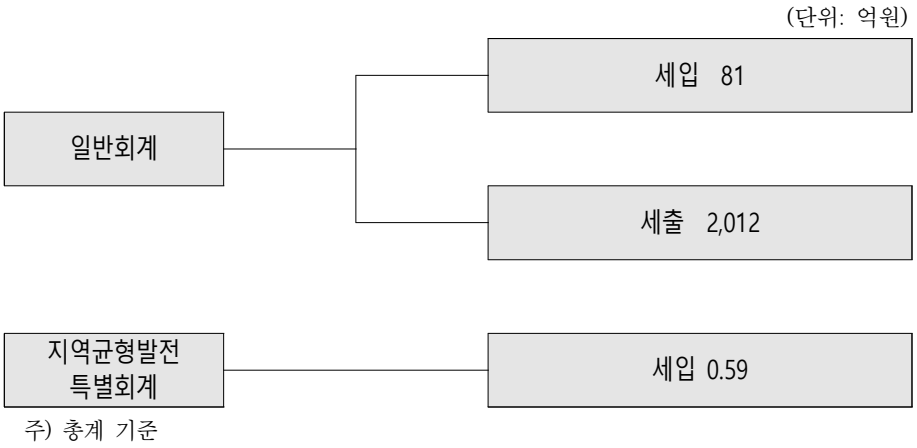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회계는 세입 81억원, 세출 2,012억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입 0.59억원, 세출은 없음. 또한 회계간 전입·전출은 없는 구조임.

[새만금개발청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서 새만금개발청은 핵심 SOC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 확대 지원과 광역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소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새만금 2~3권역 개발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 예정이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 취지에 맞게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변전소 신규 개소 건설을 위한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였음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면허료 및 수수료’ 비목의 경우 최근 지가 추세를 고려하여 점용료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2026년 관련 세입 예산안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새만금 도로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에서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 사후환경 영향조사비 수행을 위한 비목을 기본조사설계비(420-01)에서 공사비(420-03)로 변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셋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짧은 실시설계 기간, 설계 도중 기본계획(환경 · 교통영향평가) 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면허료 및 수수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세입 증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면허료 및 수수료’는 새만금개발청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수납액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3,400만원(△9.9%) 감소한 57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면허료 및 수수료	6,415	6,415	5,781	△634	△9.9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이하 “점용료”)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 ·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굴착 · 채취 등을 하기 위해 점용 ·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점용면적, 토지공시지가, 적용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됨.

4) 일반회계-면허료 및 수수료(65-651)(운영지원과)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 세부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64억 1,500만원	■ (부과기준) 점·사용면적 × 인접토지공시지가 × 적용률(3% 또는 0.5%) × 감면율(50%) = 133(CNPV) + 330(새만금해상풍력) + 2,697(육상태양광1~3구역) + 3,231(한국수력원자력) + 24(기타업체) = 6,415백만원
2026예산안	57억 8,100만원	■ **(부과기준) 점·사용면적 × 인접토지공시지가 × 적용률(3% 또는 0.5%) × 감면율(50%)** = 119(CNPV) + 330(새만금해상풍력) + 2,396(육상태양광1~3구역) + **2,915(한국수력원자력)** + 21(기타업체) = 5,781백만원

자료: 새만금개발청

점용료 납부자는 CNPV(중국 태양광 업체), 새만금해상풍력(주),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민간업체로서 납부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납부 부담능력이 있는 관계로 장기체납 또는 불납결손 우려는 적은 것으로 보임.

나. 검토의견

첫째, 최근 지가 추세를 고려하여 점용료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2026년 관련 세입 예산안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점용료의 부과기준을 보면, 점용한 공유수면 면적에 인접토지 공시지가를 곱하고, 여기에 적용률(3% 또는 0.5%)과 감면율(신·재생에너지 설비인 경우 50%)을 적용하여 계산됨.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면적의 변동은 매년 크지 않으므로, 점용료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시지가”라고 볼 수 있음. 새만금개발청은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공시지가 예상치를 고려하여 2026년 점용료 수입액을 추계하였음.

그런데 다음 표와 같이 새만금개발청의 2026년 공시지가 예상치는 2024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2025년 수납 당시 결정된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임. 일례로 CNPV이 점용한 공유수면에 대한 2026년 추정한 인접토지공시지가 50,300원은 2025년 실제 공시지가 51,200원보다 900원 적은 금액임.

그러나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산정 대상 인접토지 공시지가가 인상되었고,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 지역의 지가 추세와 2025년 연중 지가변동률을 보면, 전국보다 낮기

는 하나 음(△)의 상승률을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2025년 7월 기준, 0.009%).

[지역별 지가변동률]



주) 2025년 7월 기준, 전국 0.191%, 지방 0.059%, 전북 0.009%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따라서 최근 지가 추세를 고려하여 점용료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 2026년 수입 예상액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4~2026회계연도 점용료 산정 기준 및 수입액 현황]

(공시지가 단위는 원, 산출액 단위는 천원)

업체명		점사용면적(천㎡)		적용률(%)	감면율(%)	2024		2025		2026(안)		(B-A)
		2025	2026			공시지가	결정액	공시지가(A)	결정액	공시지가(B)	예산	
CNPV		158	158	3	50	50,300	119,159	51,200	121,291	50,300	119,211	-900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기	250	250	3	50	110,726	415,844	111,057	417,088	110,726	327,272	-331
	케이블	23	13	0.5	50	106,501	3,409	106,803	3,418	106,501	2,728	-302
육상 태양광 1구역	태양광 발전시설	1,149	1,149	3	50	50,300	866,867	51,200	882,377	50,300	866,921	-900
	케이블	5	5	0.5	50	47,094	602	47,225	603	47,094	589	-131
2구역		1,205	1,205	3	50	50,300	909,337	51,200	925,607	50,300	909,173	-900
3구역		1,180	1,180	3	50	34,969	619,055	35,193	623,019	34,969	618,951	-224
한수원 2-4구역		1,078	1,078	3	50	15,552	251,597	15,659	253,320	15,552	224,375	-107
2-5구역		1,078	1,078	3	50	11,100	179,568	11,200	181,186	11,100	160,144	-100
2-6구역		1,078	1,078	3	50	11,100	179,568	11,200	181,186	11,100	160,144	-100
2-7구역		1,087	1,087	3	50	11,100	181,110	11,200	182,742	11,100	161,481	-100
2-10 구역	태양광 설비	3,201	3,201	3	50	35,720	1,715,174	35,867	1,722,219	35,720	1,530,264	-147
	송전설비	77	77	3	50	11,100	12,796	11,200	12,911	11,100	11,439	-100
	케이블	3	3	0.5	50	11,100	91	11,200	91	11,100	74	-100
	외곽시설	464	464	3	50	74,169	516,726	74,375	518,161	74,169	460,585	-206
	노출부지	1,390	1,390	3	50	11,100	231,500	11,200	233,585	11,100	206,494	-100
KTL	태양광 발전시설	19	19	3	50	73,500	21,051	73,700	21,108	73,500	20,948	-200
	케이블	0.2	2	0.5	50	73,500	38	73,700	38	73,500	37	-200
계							6,223,492		6,279,950		5,780,830	

주) 해저케이블 설치는 적용률 0.5%로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으면 50% 감면받음

자료: 새만금개발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일부 기관에서 징수결정시점을 도과한 다음 회계연도에 점용료를 납부함에 따라 미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 법령 및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연내 징수결정과 납부를 완료하여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징수시점과 납부 방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점용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점용료를 징수 ·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방식은 1회납부 또는 분할납부로 선택할 수 있음.[5)]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납부방식 비교]

구분	1회납부(일시납)	분할납부
내용	연 1회 납부	연 4회 이내에서 납부 - 점용료 30만원/年 초과시
추가조건	-	보증금 예치 등 필요 - 조건: 점용료 1,000만원/年 이상 - 예치금: 점용료 10% 이내
징수결정 시점	매년 6월 1일	분할 횟수에 따른 매 회분 개시 시점
징수기간	3개월	1개월
납입시기	납입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납입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납	점용료의 3% 가산금 징수	

주) 점용 ·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가정
자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이 과목의 세입예산안 결산에서 연례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의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함. 즉,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만금개발청이 징수결정한 점용료를 해당 연도에 납부하지 않고 익년 2월 말, 4월 말에 분할 납부하고 있음.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2~2024회계연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2	6,048	**9,819**	6,722	111.1	68.5	**3,097**	-
2023	6,102	**8,885**	6,020	98.7	67.8	**2,865**	-
2024	6,102	**8,736**	5,820	93.1	66.6	**2,915**	-

자료: 새만금개발청

예를 들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024년에 징수 결정되어 고지받은 점용료 29억 1,500만원을 다음 연도인 2025년 2월 또는 4월에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연내 수납처리되지 않았으므로 결산상 미수납액으로 집계되는 것임.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에서는 2025년 고지액과 2024년 미수납액을 더한 2년치 점용료 61억 4,700만원이 징수결정액으로 잡히게 됨.

[2024·2025회계연도 업체별 면허료 및 수수료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업체명	2024			2025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CNPV	119	119	-	121	121	-
새만금해상풍력	330	330	-	369	369	-
육상태양광1구역	867	867	-	883	883	-
2구역	909	909	-	926	926	-
3구역	619	619	-	623	623	-
한수원	5,867	2,952	**2,915**	**6,147**	2,178	3,969
KTL	21	21	-	21	21	-

자료: 새만금개발청

점용료 납부방식(분할 또는 일시)과 구체적 징수·납부시점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자(업체)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징수권자(새만금개발청)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공공기관 납부의무자가 점용료를 장기간 연체할 가능성은 희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불필요한 미수납이 초래되지 않도록 징수결정과 수납처리가 모두 연내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있음.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법률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된 부분에 대해 3%의 가산금을 부담[6]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점용료 납부를 다음연도에서 처리하는 것은 점용료 징수·납부시기를 규정한 공유수면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고, 한 회계연도의 세입은 그 연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

특히 가산금을 징수하더라도 특정 업체의 납부 시기 지연을 연례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다른 공공·민간업체로부터 형평성 시비를 제기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공비용 납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예산 기준을 더욱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불필요한 미수납 발생을 해소하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수납 처리할 필요가 있음.

[참고: 2025년·2026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점용료·사용료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업체명		점·사용면적(천㎡)	적용률(%)	감면율(%)	2025년(징수결정)		2026년(안)	
					토지공시지가(원)	징수액	토지공시지가(원)	예산
한수원 2-4구역		1,078	3	50	15,659	253	15,552	224
2-5구역		1,078	3	50	11,200	181	11,100	160
2-6구역		1,078	3	50	11,200	181	11,100	160
2-7구역		1,087	3	50	11,200	183	11,100	161
2-10 구역	태양광설비	3,201	3	50	35,867	1,722	35,720	1,530
	송전설비	77	3	50	11,200	12.9	11,100	11.4
	케이블	3	0.5	50	11,200	0.09	11,100	0.74
	외곽시설	464	3	50	74,375	518	74,169	461
	노출부지	1,390	3	50	11,200	234	11,100	206
계					-	3,285	-	2,914

자료: 새만금개발청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가산금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제13조제5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세 출>

2. 새만금 도로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비 비목 변경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새만금 도로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은 새만금 남북도로 준공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4,900만원(△59.3%) 감액된 1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6년도 새만금 도로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1,630	1,630	1,496	△134	△8.2
새만금 도로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420	420	171	△249	△59.3

2025년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준공된 새만금 남북도로(1단계 2022.12월, 2단계 2023.8월)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하는 중임.[8)]

---

7) 일반회계-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5557-337)(개발사업국)

8)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 ·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대상사업		조사기간
5. 도로의 건설사업	영 별표 3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남북도로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 개요]

□ (용역명) 남북도로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 (용역금액) 1,269,610,000원(**기본조사설계비목, 420-01**)
□ (용역기간) 2023년 6월 9일 ~ 2027년 1월 18일
□ (수행업체) ㈜서영엔지니어링(70%)·㈜나누미테크(30%)
□ (계약형태) 일반경쟁
□ (과업내용)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도로 건설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 생활환경을 조사 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비교 분석을 통해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과 환경보전대책 수립, 대안 제시 등
- 종합평가 후 보고서 작성 · 제출 등

자료: 새만금개발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 사후환경 영향조사비 수행을 위한 비목을 기본조사설계비(420-01)에서 공사비(420-03)로 변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개발청은 사후환경 영향조사비를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아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하였다는 의견임.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본조사설계비는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공사 이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음. 즉, 실시설계 이전 단계인 계획설계 · 중간설계,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의미함.

남북도로 사후환경 영향조사는 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것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추가적인 공사 또는 조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만큼, 기본조사설계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무엇보다 예산편성지침에서 기타부대비 중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착공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는 공사비로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지침에 따라 비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사업 공정 관리 필요

가. 개 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새만금 간선도로(국도12 · 30호선)망과 내부 개발용지(복합개발·농생명·관광레저)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28억 1,400만원(305.8%) 증액된 1,629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6년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40,165	40,165	162,979	122,814	305.8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의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는 1조 1,330억원이며, 2026년 예산안에는 2년차 공사비(1,583억 4,200만원)와 감리비 45억 6,7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음.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 총계: 401억 6,500만원 ○ 기본조사설계비(420-01): 10억 2,300만원 - 실시설계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 공사비(420-03): 390억 700만원 - 낙찰자 설계비 370억 200만원 - 1년차 공사비 20억 500만원 ○ 감리비(420-04): 7,900만원 - 1년차, 건설사업관리(CM) 용역비 ○ 시설부대비(420-05): 5,600만원 - 조달수수료 등	□ 총계: 1,629억 7,900만원 ○ **공사비(420-03): 1,583억 4,200만원** - **2년차 공사비** ○ **감리비(420-04): 45억 6,700만원** - **2년차 감리비** ○ 시설부대비(420-05): 7,000만원 - 조달수수료 등

자료: 새만금개발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 일반회계-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5557-387)(개발전략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총사업비 및 연차별 사업비 배분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준)

구 분		23년 (결산)	24년 (결산)	25년 (본예산)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 계
건설보상비 (410-00)		-	-	-	-	840	-	2,590	5,202	8,632
기본조사설계비 (420-01)		1,019	2,480	1,023	-	-	-	-	179	4,701
공사비 (420-03)	1공구	-	-	10,329	45,919	76,532	91,838	61,226	30,624	316,468
	2공구	-	-	18,551	91,838	153,064	183,677	122,451	61,249	630,830
	3공구	-	-	10,127	20,585	34,307	41,169	27,446	13,728	147,362
감리비 (420-04)	1공구	-	-	22	1,512	1,512	1,512	1,512	1,490	7,560
	2공구	-	-	30	2,105	2,121	2,121	2,121	2,798	11,296
	3공구	-	-	27	950	950	950	950	764	4,591
시설부대비(420-05)		11	46	56	70	437	516	358	89	1,583
합계		1,030	2,526	40,165	162,979	269,763	321,783	218,654	116,123	1,133,023

주 1)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25년 설계비 예산 중 실시설계비 부분(420-02)은 공사비 비목으로 편성되었음

2) 설계비 요율의 경우「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제13조에 따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5배를 적용. 이에 (1공구) 3.41%, (2공구) 3.02%, (3공구) 3.93% 로 적용함

3) 감리비, 시설부대비 요율은 예산편성지침 요율 등에 따라 각각 2.237%, 0.15%로 적용

자료: 새만금개발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노선도]



나. 검토의견

새만금개발청은 짧은 실시설계 기간, 설계 도중 기본계획(환경 · 교통영향평가) 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추진 연혁을 보면, 2023년에 설계 · 시공 일괄입찰(턴키)로 공사 방식을 결정하고 2024년 5월에 입찰공고를 시작하였으나, 1 · 2공구가 3차례 유찰됨에 따라 경쟁방식을 변경하고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다소 지연되었음.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기본 ·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평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였으나, 2025년말 착공을 달성하기 위한 감리용역 업체선정 등 잔여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경과(2023년부터)]

일정	내용
2023.7.17.	□ 공사방식 결정: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는 심의를 거쳐 1·2·3공구 모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결정**
2024.5	□ (전 공구) 1차 입찰공고 - **(1 · 2공구) 유찰(단독응찰)** - (3공구) 계룡건설, 금광건설에서 기본설계 실시(6월~11월, 6개월)
2024.6	□ (1 · 2공구) 2차 입찰공고 → **유찰**
2024.7	□ (1 · 2공구) 3차 입찰공고 → **유찰**
2024.9.4.	□ (1 · 2공구) 턴키계약 경쟁방식 변경(경쟁→수의) 및 **수의절차** 개시 - 기본설계 실시(24.9월~25.2월, 6개월)
2024.12.30	□ (3공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금광건설
2025.1	□ (3공구) 실시설계 착수(25.1월~6월, 6개월)
2025.4.30	□ (1 · 2공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1공구) 롯데건설 / (2공구) 포스코건설
2025.6.	□ (1 · 2공구) 실시설계 착수(25.6월~8월, 3개월)
2025.6.	□ (3공구) 실시설계 완료, 설계적격 심사 완료
2025.6.18	□ 환경영향평가 완료
2025.7	□ (3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발주
2025.8.25	□ 교통영향평가 완료
2025.9.1	□ (1 · 2공구) 실시설계 완료
2025.9.22	□ (1 · 2공구) 실시설계 설계적격 심사 완료
2025.11(예정)	□ (3공구) 착공
2025년말(예정)	□ (1 · 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발주, 착공 준비

자료: 새만금개발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과정에서 1·2공구 실시설계의 용역 수행기간이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어 다소 시급히 진행된 측면이 있음.

이 사업과 같은 일괄입찰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기간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입찰안내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나,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보면 입찰안내서에서는 6~8개월이 적정 실시설계 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일괄 입찰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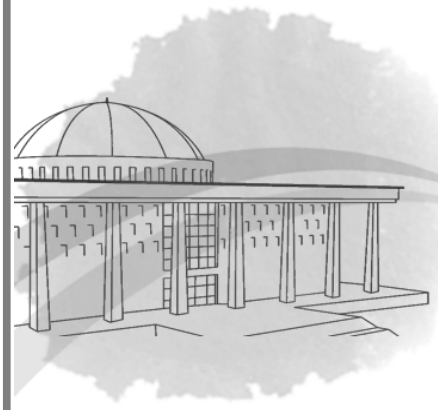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과업명	발주처	공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	해양수산부	2023.04	5개월	3개월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	LH	2023.01	5개월	6개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7공구	한국도로공사	2024	5개월	5개월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설(지하화) 공사	LH	2024	5개월	8개월
국도2호선 신안 비금-암태 도로건설공사	익산청	2022.09	5개월	6개월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부산청	2022.08	5개월	6개월
고창해리-부안변산 도로건설공사	익산청	2022.05	4개월	6개월
행정중심복합도시 들목교 및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LH	2021.04	5개월	5개월
엄궁대교 건설공사	부산광역시	2020.03	5개월	12개월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제1, 2공구)	익산청	2020.07	4개월	8개월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간 건설공사 제2공구	한국도로공사	2018.12	5개월	5개월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1, 2공구)	새만금개발청	2017.12	75일	5개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0 ~ 14공구	한국도로공사	2016	90일	4개월

자료: 새만금개발청

또한, 환경·교통영향평가가 실시설계 종료 이후 또는 실시설계 중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평가 결과가 충분히 반영될 시간도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됨. 일반적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는 기본조사설계비(420-01)에 편성되고, 실시설계 이전에 착수·완료하며,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및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공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설계하여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짧은 실시설계 기간, 설계 도중 기본계획(환경·교통영향평가) 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1)]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수입은 8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원(27.5%) 증가함.

예산은 3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6.7%) 증가하고, 기금은 4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억원(50.7%) 증가함.[2)]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333	333	356	22	6.7
기 금	298	298	448	151	50.7
총수입	631	631	804	173	27.5

문의 : 박민혜 예산결산조사관 pmh1117@assembly.go.kr (02-6788-5702)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정부안 제출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이관사업 현황은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참조

2)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지출은 1조 9,46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79억원(12.0%) 증가함.

예산은 1조 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9억원(25.5%) 증가하고, 기금은 9,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0.2%) 증가함.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8,059	8,070	10,118	2,059	25.5
기 금	9,324	9,324	9,344	20	0.2
총지출	17,383	17,394	19,462	2,079	12.0

주) 2025년도 본예산 총지출 금액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체 완료(2025.10.1.)된 예산 6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나. 예산안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6.7%) 증가함.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329	329	326	△3	△1.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	4	29	26	673.2
합 계	333	333	356	22	6.7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9억원(25.5%) 증가함.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7,142	7,153	8,820	1,678	23.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917	917	1,298	381	41.5
합 계	8,059	8,070	10,118	2,059	25.5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본예산 금액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체 완료(2025.10.1.)된 예산 6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2개 기금(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조 2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원(1.2%) 증가함.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청소년육성기금	1,714	1,714	1,494	△220	△12.8
양성평등기금	8,410	8,410	8,748	338	4.0
합 계	10,124	10,124	10,242	118	1.2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성평등가족부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2개(55억 3,5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3)]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사업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 활동 지원(일반회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양성평등기금)’ 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제주·세종)로 이관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8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1,69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제주·세종계정)]		
2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3,845
총지출		5,535

3)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아이돌봄지원’ 사업,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등 총 14개임.[4)]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318	732	414	130.2
2	양성평등문화확산	671	1,239	568	84.6
3	여성사전시관	2,411	9,317	6,906	286.4
4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606	1,006	400	66.0
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2,427	4,171	1,744	71.9
6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5,706	8,873	3,167	55.5
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9,354	12,918	3,564	38.1
8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2,518	3,617	1,099	43.6
9	아이돌봄지원	475,028	600,305	125,277	26.4
10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30	46,128	17,398	60.6
11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401	533	132	32.9
12	정책연구개발사업	125	954	829	663.2
13	행정능률향상및민원서비스개선사업	475	1,105	630	132.6
[양성평등기금]					
1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52,833	572,246	19,41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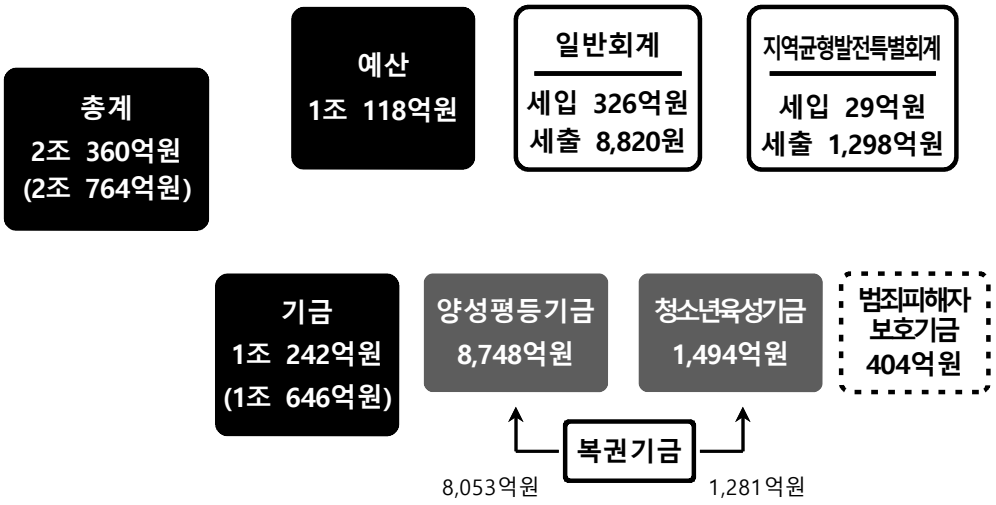
4)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청소년육성기금·양성평등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된 사업 404억원을 성평등가족부에서 집행하고 있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복권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8,053억원, 청소년육성기금으로 1,281억원이 전입되었음.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1) 주) 정부안 제출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
2) 총계 기준이며, 괄호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포함한 규모임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중 일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성평등가족부 예산규모에 포함되지 않아 점선으로 표시함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돌봄지원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보강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돌봄수당’ 사업은 2026년도 정부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추가 지원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서비스 대기 현상이 심화되지 않고 돌봄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이전에 충분한 아이 돌보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제도의 개시 이후 계획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가 적시에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사업실적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관련 절차 이행 등으로 연례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2026년 3월 중 공사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건축허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 주요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고용노동부 1개 부처로부터 총 4개 세부사업을 이관받았고, 해당 사업들의 2026년도 예산안은 129억 5,100만원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으로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의 총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총지출은 1조 9,592억원[5]으로 1조 9,462억원에서 130억원이 증가하였음.

주요 이관사업은 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 117억 3,100만원,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9억 200만원, ‘본부인건비’ 사업 2억 5,700만원임.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이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성평등가족부	일반회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11,731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성평등가족부	일반회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902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본부인건비	성평등가족부	일반회계	인건비	257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	성평등가족부	일반회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61
합계						12,951

5) 성평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은 미포함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기타경상이전수입: 전년도 국고보조금 규모 등을 고려한 세입 예산안 증액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국가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3억 3,500만원(△1.1%)이 감액된 296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의 경우 7억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의 경우 전년 대비 16억 7,700만원(441.3%) 증액된 20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6)]

[2026년도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회계명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0	30,000	29,665	△335	△1.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	-	-	729	729	순증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	380	380	2,057	1,677	441.3

6)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 지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 지원과)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은 최근 3개년(2022년~2024년)의 평균 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최근 국고보조 사업 규모 및 집행 잔액 증가 등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일반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 현황에 따르면, 징수결정액이 2023년 190억 4,900만원, 2024년 574억 6,000만원, 2025년 1,081억 9,1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수납액에 있어서도 2024년의 경우 374억 7,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10.6%로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 되었음.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12,425	12,425	12,425	32,665	29,820	240.0	91.3	2,845	-
2023	24,511	24,511	24,511	19,049	10,695	43.6	56.1	8,354	-
2024	33,873	33,873	33,873	57,460	37,476	110.6	65.2	19,984	-
2025.7.	30,000	30,000	30,000	108,191	14,934	49.8	13.8	수납중	-
2026(안)	29,665	29,665	-	-	-	-	-	-	-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도 이후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그 잔액이 반납되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으로 인하여 수납액이 저조하나 담당자 교육 등으로 수납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기타경상이전수입의 2026년 예산안 편성근거를 살펴보면, 최근 3개년(2022년~2024년)의 '평균 수납액'을 기준으로만 편성되어있어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등이 반영될 수 없고, 실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증가하더라도 세입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구조적으로 시차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2026년 예산안 추계 근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일반회계	29,665	ㅇ **최근 3년(2022년~2024년) 수납액 평균** - (29,820백만원+10,696백만원+37,476백만원)/3 = 25,997백만원 ※ 예산심의조정 29,665백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729	ㅇ **최근 3년(2022년~2024년) 수납액 평균** - (361백만원+1,026백만원+800백만원)/3 = 729백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2,057	ㅇ **최근 3년(2022년~2024년) 수납액 평균** - (1,141백만원+0백만원+5,030백만원)/3 = 2,057백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편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도 최근 3년 간의 수납액 평균으로 산출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2026년이 되어서야 예산안에 신규로 7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	-	-	1,387	361	순증	26.1	1,026	-
2023	-	-	-	1,026	1,026	순증	100.0	-	-
2024	-	-	-	800	800	순증	100.0	-	-
2025.7.	-	-	-	74	73	순증	98.7	수납중	-
2026(안)	729	729	-	-	-	-	-	-	-

자료: 성평등가족부

또한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의 경우 2024년에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400%를 초과하였고 2025년의 경우에도 7월말 기준 이미 500%를 초과하는 등 추계가 부정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	-	-	1,141	1,141	순증	100.0	-	-
2023	-	-	-	1,500	-	-	-	1,500	-
2024	1,255	1,255	1,255	6,203	5,030	400.8	81.1	1,173	-
2025.7.	380	380	380	7,407	2,191	576.6	29.6	수납중	-
2026(안)	2,057	2,057	-	-	-	-	-	-	-

자료: 성평등가족부

따라서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예산 편성 시, 과년도 수납액 규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국고보조 사업 규모 및 수납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산식[7] 등을 활용하여 예산안을 조정하는 등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7)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전년도 국고보조금과 3년간 수납실적을 고려한 산식을 적용하고 있음.

구 분	2026년 예산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기타경상이전수입 (일반회계)	1,240,534	■ 2025년 국고보조금 총액 × {3년(2022~2024년) 결산평균액* / 3년(2021~2023년) 국고보조금 평균액} + 111,002백만원** = {54,294,176 × (997,664/47,955,548)} +111,002백만원 = 1,240,534백만원 * 승소비용 및 소송 송달료 환급액 등 포함 ** 최근 3년간 예산대비결산율 고려하여 전년수준으로 상향(+약10%)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2026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 조정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예산안 (A)	조정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조정안 (B)	증감액 (B-A)
일반회계	29,665	2025년 국고보조금 총액 × [3년(2022~2024년) 수납액 평균 / 3년(2021~2023년) 국고보조금 평균] = 533,373 × [25,973/436,327] = 31,750백만원	31,750	2,08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786	(지역자율계정 + 지역지원계정)	3,734	948
지역자율계정	729	2025년 국고보조금 총액 × [3년(2022~2024년) 수납액 평균 / 3년(2021~2023년) 국고보조금 평균] = 3,950 × [729/4,887] = 590백만원	590	△139
지역지원계정	2,057	2025년 국고보조금 총액 × [3년(2022~2024년) 수납액 평균 / 3년(2021~2023년) 국고보조금 평균] = 85,292 × [2,057/55,802] = 3,144백만원	3,144	1,087
합 계	32,451		35,484	3,033

자료: 성평등가족부

【일반회계】

<세 출>

2. 서비스 지원 사업: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아이돌보미 확보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서비스 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료, 아이돌보미 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53억 6,700만원(26.8%) 증액된 5,93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6년도 서비스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아이돌봄 지원	475,028	475,028	600,305	125,277	26.4
서비스 지원	467,987	467,987	593,354	125,367	26.8
돌봄수당	384,637	384,637	504,892	120,255	31.3
아이돌보미 관리	61,318	61,318	64,349	3,031	4.9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2,032	22,032	24,113	2,081	9.4

내내역사업인 **‘돌봄수당’** 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료를 가구의 소득유형별로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02억 5,500만원(31.3%) 증액된 5,048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내역사업인 **‘아이돌보미 관리’** 사업은 아이돌보미 전문성 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활동비, 배상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억 3,100만원(4.9%) 증액된 643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8) 일반회계-아이돌봄 지원(2334-341)(가족정책관)

내내역사업인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자와 돌보미를 직접 연계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인건비 및 행정부대경비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억 8,100만원(9.4%) 증액된 241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안)]

○ (목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 및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양육부담 경감
○ (사업내용) 영아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0~2세 자녀 대상, 월 최소 80시간 이상 이용, 월 200시간 한도
- (시간제) 취학 전·후 구분 지원, 1회 2시간 이상 이용, 연 960시간 한도
○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 유형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를 차등 지원

*2026년(안) 기준, 시간당 이용요금 12,790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872원(85%)	1,918원(15%)	10,232원(80%)	2,558원(20%)	본인 부담금의 10% 할인
나형	75%~120%	7,674원(60%)	5,116원(40%)	6,395원(50%)	6,395원(50%)	
다형	120%~150%	3,837원(30%)	8,953원(70%)	3,198원(25%)	9,592원(75%)	
라형	150%~250%	1,919원(15%)	10,872원(85%)	1,279원(10%)	11,511원(90%)	
마형	250%초과	-	12,790원(100%)	-	12,790원(100%)	-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검토의견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돌봄수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2026년 지원대상 가구 및 추가지원 확대에 상응하도록 사업 추진 전 아이돌보미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돌봄수당 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 사용 시 사용하는 이용료 중 일부 금액을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대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9] 2024년의 경우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71.6%에 그쳤음.[10]

9) 2025년 6월말 기준 9,475가구가 대기 중에 있으며 평균적으로 27.3일 동안 대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단위: 가구, %, 일)

구분	연계 현황			대기 현황	
	신청가구	매칭가구	연계율	대기가구	대기일수
2023	122,729	86,100	70.2	13,031	33.0
2024	139,508	118,126	84.7	9,519	32.8
2025.6.	106,963	95,865	89.6	9,475	27.3

주 1) 영아종일제, 시간제 서비스 및 단기, 기관연계 포함
2) 대기가구 수는 해당 연도말 기준 대기 상태에 있는 가구 수
자료: 성평등가족부

[돌봄수당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성평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A)	추경								
2021	180,158	180,158	184,338	184,338	-	184,338	182,451	-	1,887	101.3
2022	202,031	202,031	204,912	204,912	-	204,912	195,935	-	8,977	97.0
2023	281,874	281,874	281,874	281,874	-	281,874	231,883	-	49,991	82.3
2024	384,222	384,222	384,117	384,117	-	384,117	275,212	-	108,905	71.6
2025.8.	384,637	384,637	294,140	294,140	-	294,140	223,190	-	-	58.1
2026	504,892	-	-	-	-	-	-	-	-	-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편, 돌봄수당 지원 가구 수는 저출생 대응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 11만 가구, 2025년 12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2026년의 경우 12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전년 대비 6,000가구가 증가되었음. 또한 2026년에는 야간·긴급돌봄 요금지원, 취약가정 정부지원시간 확대,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등 항목이 신설되었음.

이 사업은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수당(아이돌보미) 및 추가지원금(이용자)을 지급하는데, 추가 수당의 경우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의 성격을 가지나, 추가 지원금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2026년에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됨. 따라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10)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8월말 기준 전체 사업예산은 전년 동기 대비 실집행률이 제고되었고(10.4%p), 돌봄수당 또한 동일 추세로 집행시 연말 기준 실집행률이 약 91%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2026년도 예산안 추가 지원·수당 현황]

(단위: 가구, 백만원)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가구 수	예산액	가구 수	예산액	증감액
취약가정 **추가지원**	가형 취약가정 5% 추가지원	14,052	3,449	14,749	3,433	△16
	청소년(한)부모(0~1세) 추가지원	248	780	260	501	△279
	한부모(조손),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정부지원시간 확대(+120h)	-	-	25,124	19,300	19,300
	가형가구 야간긴급돌봄 할증요금 지원	-	-	2,958	460	460
	합 계	14,300	4,229	43,091	23,694	19,465
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	-	9,000	1,179	1,179
영아돌봄수당		2,500	2,925	51,080	40,507	37,582
유아돌봄수당		-	-	38,443	13,993	13,993
야간긴급돌봄수당		-	-	5,547	2,163	2,163
합 계		16,800	7,154	147,161	81,536	74,382

주) 가구 수: 국비 지원대상인 소득 유형(가~라형)에 속하는 가구 수만을 포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확충을 위해 양성교육기관 확대, 단축교육과정 신설 및 돌보미 처우개선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 인력은 2025년 9월말 기준 30,631명에 그치고 있는 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가구 확대(6,000가구)와 추가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인력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돌봄 공백과 서비스 대기가 심화될 우려가 큼.[11)]

[아이돌보미 계획 및 충원 현황]

(단위: 명)

2022		2023		2024		2025.6.		2026
계획	충원	계획	충원	계획	충원	계획	충원	계획
33,000	26,675	29,000	28,071	35,000	29,635	36,000	30,631	36,000

주) 2025년, 2026년의 경우 계획인원을 별도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돌보미 보험료 등 산정 기준으로 36,000명을 추계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11)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인력은 2025년 6월말 기준 29,409명으로 전년동기(2024년 6월말 26,781명) 대비 9.8% 확대되었으며, 매달 9~10%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어 연말에는 2024년말 기준(29,635명) 대비 약 10% 증가한 33,000명까지 돌보미가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임.

따라서 2026년 확대 지원금의 원활한 집행과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이돌보미의 양성 기간을 고려하여 연초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신규 유입을 유도하고, 잦은 퇴사 등 인력 감소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2026년 사업준비 단계에서 아이돌보미 활동 인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지원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 사업과 지원 대상이 일부 중첩되고 중복 수급이 제한되어 정책 수요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과거 실적 및 부모급여 등 관련 정책 영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요에 기반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영아종일제) 중 영아종일제 서비스(이하 "영아종일제")는 영아(생후 3~36개월)를 대상으로 시간제 서비스(이하 "시간제")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함. 서비스 대상자는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중 하나의 종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중복 지원은 불가함.

[영아종일제 및 관련 사업 현황]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영아종일제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 (대상)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지원)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연 2,400시간 이내) - 시간당 12,180원 사용료 중 일부를 소득 유형별 차등 지원	○ (대상) 3개월 ~ 12세 이하 ○ (지원) - 연 960시간 이내 - 시간당 12,180원 사용료 중 일부를 소득 유형별 차등 지원	○ (대상) 만 0세 ~ 2세 미만 ○ (지원) -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주) 부모급여: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업으로 2023년 신설되었음

최근 영아종일제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2023년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전년 대비 예산이 55.9% 수준으로 감액되었음에도 2025년 8월말 기준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34.4%에 그치고 있음.[12)]

12) 2025년 8월말 기준 지원실적과 동일 추세로 집행될 경우, 2025년 말 기준 실집행률은 67.5% 수준임.

[최근 5년간 영아종일제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성평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실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A)	추경							
2022	24,948	24,948	24,948	24,948	-	24,948	21,900	3,048	87.8
2023	23,059	23,059	23,059	23,059	-	23,059	15,781	7,278	68.4
2024	28,033	28,033	28,033	28,033	-	28,033	12,982	15,051	46.3
2025.8.	15,677	15,677	11.989	11.989	-	11,989	5,394	6,595	34.4
2026(안)	17,884	17,884	-	-	-	-	-	-	-

자료: 성평등가족부

영아종일제의 지원가구를 살펴보면, 2022년 2,543가구에서 2023년 1,707가구로 급감하였고 2024년의 경우 국비지원 계획가구(3,981가구) 대비 실제 지원가구(1,025가구) 비율은 25.7%에 그쳤음. 이는 2023년부터 도입된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 사업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용 수요가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13)]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만 0세~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영아종일제 지원시 부모급여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14)] 반면 시간제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급여 지원을 받는 경우 시간제를 선택할 유인이 높음.[15)]

13) 최근 영아종일제 계획 대비 지원가구 현황

(단위: 가구, %)

구 분	2022	2023	2024
계획 가구(A)	3,588	3,508	3,981
지원 가구(B)	2,543	1,707	1,025
비율(B/A)	70.9	48.7	25.7

주) 국비 지원대상인 소득 유형에 속하는 지원 가구만을 포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14) 아이돌봄서비스 중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서비스)의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아이돌봄서비스 중 영아종일제를 이용할 경우 영아종일제 지원금만큼 부모급여 지원금이 차감되어 지급됨.

15) 2024년 기준 만 0세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 235,337명 중 214,870명(91.3%)이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507명(0.2%)이 영아종일제를 이용하였으며, 만 1세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 234,405명 중 241,566명(103.1%)이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573명(0.2%)이 영아종일제를 이용하였음. (주민등록 인구의 경우 연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민등록인구보다 부모급여 사업의 월평균 지원인원이 많을 수 있음)

이와 같이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 실적이 계획대비 저조함에도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계획가구를 2024년 지원가구(1,025)의 243.9%에 해당하는 2,500가구로 계획하였음.

따라서 영아종일제의 수요 감소 추세와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등 유사 정책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6년도 계획가구 및 예산 규모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16]

셋째, 서비스 지원 사업(내역사업) 내의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총 3개의 내내역사업은 각 사업의 성격 및 운영 구조를 고려하여 내역사업으로 분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내내역사업인 ①돌봄수당 사업은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국비 지원, ②아이돌보미 관리사업은 아이돌보미의 교육비 및 보험료 등 지원, ③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은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자 간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의 인건비 등을 위한 것임.

돌봄수당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일부 등을 지원하는 성격이며, 아이돌보미 관리 사업과,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은 서비스제공기관에 교부되어 서비스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성격이므로 서로 분리하여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17]

[영아종일제 연령별 이용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4			2025.6.		
	영아종일제		부모급여 지원인원	영아종일제		부모급여 지원인원
		국비 지원			국비 지원	
0개월~12개월	507	443	214,870	309	285	218,944
13개월~24개월	573	525	241,566	299	273	156,979
25개월~36개월	299	272	-	216	202	-
합 계	1,379	1,240	456,436	824	760	375,923

주) 부모급여의 경우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지원인원은 월평균 지원인원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16) 한편 보건복지부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만 0세 246,000명, 만 1세 243,000명)를 그대로 반영하여 2026년도 부모급여 예산을 편성하여, 별도로 영아종일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7)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돌봄수당과 아이돌보미 관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의 지원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서비스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돌봄수당 사업의 미집행액을 아이돌보미 관리사업과,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사업으로 조정하여 연례적으로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돌봄수당 인상에 따른 4대보험 등 법정 부담금 증액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임.[18]

[서비스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성평등가족부				사업시행주체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 (C/A)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교부현액 (B)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B)	불용액	
2022	□ 서비스 지원	271,122	4,660	275,782	275,782	275,782	271,806	98.6	3,976	98.6
	■ 돌봄수당	202,031	2,881	204,912	204,912	204,912	195,935	95.6	8,977	95.6
	■ 아이돌보미 관리	50,053	947	51,000	51,000	51,000	52,115	102.2	△1,115	102.2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19,038	832	19,870	19,870	19,870	23,756	119.6	△3,886	119.6
2023	□ 서비스 지원	348,210	-	348,210	348,210	348,210	314,069	90.2	34,141	90.2
	■ 돌봄수당	281,874	-	281,874	281,874	281,874	231,883	82.3	49,991	82.3
	■ 아이돌보미 관리	46,969	-	46,969	46,969	46,969	57,430	122.3	△10,461	122.3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19,367	-	19,367	19,367	19,367	24,756	127.8	△5,389	127.8
2024	□ 서비스 지원	461,821	△105	461,716	461,716	461,716	364,417	78.9	97,299	78.9
	■ 돌봄수당	384,222	△105	384,117	384,117	384,117	275,212	71.6	108,905	71.6
	■ 아이돌보미 관리	57,299	-	57,299	57,299	57,299	63,746	111.3	△6,447	111.3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0,300	-	20,300	20,300	20,300	25,459	125.4	△5,159	125.4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8) 2024년 아이돌보미 관리 및 양성 사업(64억 4,700만원),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51억 5,900만원) 총 116억 600만원이 초과 집행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4대보험 지급,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소요임.

구분		예산액	실집행액	초과집행액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57,299	63,746	6,447
	- 보수교육	3,861	3,405	△456
	-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52,687	59,670	6,983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0,300	25,459	5,159
	- 인건비	19,157	22,480	3,323
	- 행정운영경비	1,143	2,979	1,836
합 계		77,599	89,205	**11,606**

자료: 성평등가족부

따라서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돌봄수당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거나,[19] 불가피하게 예산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보조사업 내용 변경 검토 및 승인이 면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20] 예산안 심사 당시의 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

구분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의 연례적 초과집행 개선 및 보조금 내역사업별 관리 강화 필요
지적사항	ㅇ 별개의 내역사업인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및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어 당초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액 대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를 초과집행하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ㅇ 여성가족부는 예산편성 시 내역사업별 예산수요 등을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연례적으로 돌봄수당 집행잔액을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으로 충당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내역사업별로 관리할 것
조치결과	ㅇ 서비스 이용가구 증가 등 사업 규모 확대에 비해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은 그간 증가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음 ㅇ 연례적 초과집행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확대 노력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예산집행한도 준수 등 지속 관리감독 예정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상황 ('25.4.30.)	조치중

19)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경우 내역사업 단위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음.

20) 이 사업의 2024년 보조사업자(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변경요청 검토 자료에 따르면, 내내역사업별이 아닌 사업비, 운영비(인건비), 운영비(경비)로 나누어 작성되어 내내역사업별 예산 집행액 및 추가 소요액 등을 명확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의 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주체로 하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지원금, 법률상담 및 소송,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73억 9,800만원(60.6%) 증액된 461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2026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30	28,730	46,128	17,398	60.6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연사업 중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현재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사업임. 2025년 6월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로 운영되었으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24. 10.)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제도로 전환되었음.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및 양육비 선지급제 사업 비교]

구 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2025년 6월 종료)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 (2025년 7월 개시)
지원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질병・장애・주거환경 위태 등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기간	최대 1년(9개월+3개월)	18세까지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21) 일반회계-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2335-352)(청소년가족정책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관운영출연금 95억 6,700만원
- 인건비 63억 5,200만원 + 운영비 32억 1,500만원
○ 사업출연금 345억 6,100만원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20만원 × 13,500명 × 12개월 = 324억원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제도 운영: 3억 8,500만원
- 양육비이행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 18억 5,400만원
- 법률지원서비스 18억 200만원
- 양육비이행촉진서비스 1,200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2025년 7월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제도로 전환된 후 계획대비 지원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나 2026년에도 2025년과 동일한 규모의 월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성평등가족부는 지원 대상자가 적시에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신청 유도와 홍보 강화 등 사업실적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제도로 전환(2025.7.)된 이후 지원 실적을 보면, 월평균 약 9,300가구(미성년 자녀 13,500명)의 지원을 계획하였으나,[22] 실제 월평균 지원 가구수는 약 746가구(계획 대비 약 8.0%)로 실적이 저조함.

22) 월평균 지원 인원 수(계획): 13,500명 = 9,300가구(계획 가구수) × 1.45명(가구당 평균 자녀수)

[2025년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등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가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6월 종료)	지원 현황						예산액 대비 지원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지원 가구수	312	347	395	342	309	295	43.2%
지원액	107	120	137	118	106	103	

양육비 이행지원금 (선지급)	지원 현황									예산액 대비 지원액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균			
							계획	실적	비율	
지원 가구수	188	630	1,421	(예정)			9,300	746	8.0%	8.4%
지원액	62	346	960				2,700	456	16.9%	

주) 2025년 7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도로 변환
자료: 성평등가족부

월평균 지원 가구수 및 지원인원(9,300가구, 13,500명)의 산출 근거는 18세 이하 유자녀 이혼·미혼 한부모가구 수에 양육비 채권 보유율, 양육비 채무 불이행률, 가구당 평균 자녀 수 및 소득기준·신청률 등을 고려한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나, 실제 지원 실적은 제도 설계 당시의 추정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월평균 지원 자녀 수 산출 근거]

(단위: 가구, %, 명)

구 분	18세 이하 유자녀 이혼·미혼 한부모가구*	양육비 채권 보유율**	양육비 채무 불이행률***	소득기준, 신청률 등을 고려한 조정	월 평균 지원가구수	가구 당 평균 자녀 수	월평균 지원 자녀수
2025	301,307	21.3	25.9	56	9,300	1.45	13,500
2026	300,405	31.0	20.0	50	9,300	1.45	13,500

주 1) *18세 이하 유자녀 이혼·미혼 한부모가구: 장래가구 추계를 토대로 추정
2) **양육비 채권 보유율, ***양육비 채무 불이행률 :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25년 예산),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26년 예산)
자료: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의 신청현황에 의하면 2025년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7,007가구로 예측되고, 신청일로부터 지급 여부 결정까지 최대 60일 가량 소요되어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신청인원]

(단위: 가구)

구 분	2025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신청 가구수	3,521	836	700(예정)			1,950(예정)	7,007

주) 잠정수치로 변동될 수 있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제도의 지원 대상자가 적시에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신청 유도와 홍보 강화 등 사업실적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생리용품 지원 사업: 바우처 실제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여성청소년(만 9세~24세)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60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23)]

[2026년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6,425	16,425	16,575	150	0.9
생리용품 지원	16,046	16,046	16,046	-	-

[생리용품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생리용품 지원 16,046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서울 30%, 지방 50%, 평택 70%)

- (9~10세) 688백만원

  =19천명(지원대상)×50%(초경비율)×88%(예상신청률)×168천원(지원액)×보조율30~70%

- (11~24세) 15,358백만원

  =213천명(지원대상)×88%(예상신청률)×168천원(지원액)×보조율 30~70%

자료: 성평등가족부

23) 일반회계-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청소년가족정책실)

나. 검토의견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신청률 대비 실제 이용률이 낮아 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바우처 신청 이후 실제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카드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운영 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최근 집행 현황은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77.8%에 그치고 있음.

[생리용품 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성평등가족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A)	추경								
2021	6,796	6,796	6,796	6,796	-	6,796	5,715	-	1,081	84.1
2022	12,232	12,232	12,232	12,232	-	12,232	7,848	-	4,384	64.2
2023	13,188	13,188	12,488	12,488	-	12,488	10,514	-	1,974	79.9
2024	14,448	14,448	14,448	14,448	-	14,448	11,247	-	3,201	77.8
2025.7.	16,046	16,046	13,397	13,397	-	13,397	5,413	-	-	33.7

자료: 성평등가족부

최근 이 사업의 신청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인원 대비 약 87% 내외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실제 이용률을 살펴보면 80%대에 머물고 있음.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률 및 이용률]

(단위: 명, %)

구 분	대상인원(A)	신청인원(B)	신청률(B/A)	이용인원(C)	이용률(C/B)
2023	237,818	190,603	80.1	162,811	85.4
2024	233,358	204,002	87.4	170,767	83.7
2025.7.	234,015	203,510	87.0	129,838	63.8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바우처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지자체 등 타기관에서 지원받음’ 등 다양한 사유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바우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임.

2026년 예산안 산출 근거에 따르면 예상 신청률은 88%로 설정되어 과거 신청률 수준(2024년 기준 87.45%, 2025년 7월말 기준 87.0%)으로 적용되어 있으나, 별도로 이용률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생리용품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생리용품 지원 16,046백만원**
- (9~10세) 688백만원
= 19천명(지원대상)×50%(초경비율)×**88%(예상신청률)**×168천원(지원액)×보조율30~70%
- (11~24세) 15,358백만원
= 213천명(지원대상)×**88%(예상신청률)**×168천원(지원액)×보조율 30~70%

자료: 성평등가족부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원이 필요한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우처의 실제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카드 발급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 별도 지원에 대한 수요 고려 등 제도 운영 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양성평등기본법」제50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 및 재조명하고 다양한 역사 인식의 확산을 위한 복합 전시·교육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4억 2,800만원(351.6%) 증액된 82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24)]

[2026년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여성사전시관	2,411	2,411	9,317	6,906	286.5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1,828	1,828	8,256	6,428	351.6

[국립여성사 박물관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82억 5,600만원**

- 공사비 7,606백만원 (* 총 공사비 27,346백만원 대비 약 28% 반영)
- 감리비 633백만원 (* 총 감리비 2,274백만원 대비 약 28% 반영)
- 시설부대비 17백만원 (* 총 시설부대비 62백만원 대비 약 28% 반영)

자료: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은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내에 위치한 기존의 여성사전시관을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일대로 이전 및 확대하는 건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8년(2021년~2028년)이며 총사업비는 311억원임.

24) 일반회계-여성사전시관(1232-332)(여성정책국)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여성사전시관(경기 고양시)의 협소한 면적, 낮은 접근성으로 확대・이전을 위한 박물관 건립 ◦ 부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일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생활관 부지) ◦ 총사업비: 311억원(국비 100%) (당초: 267억 7,700만원) ◦ 규모: 부지면적 2,000㎡, 건축연면적 6,392㎡ ◦ 공간구성: 전시실, 수장고, 세미나실, 스튜디오, 사무실, 카페테리아 등 ◦ 사업기간: 2021~2028년 (당초: 2021~2023년)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검토의견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증액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2025년도 예산도 일부만 집행될 예정임. 2026년에는 3월 중 공사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건축허가와 총사업비 조정협의 등 주요 절차가 남아 있어 추가 지연 우려가 존재하므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 최근 결산 내역에 따르면 총사업비 조정협의 절차,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중단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5년의 경우에도 연내 공사착공을 계획하여 공사비(17억 100만원), 감리비(1억 2,300만원), 시설부대비(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은평구 건축심의 등으로 7월 기준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25)]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	296	296	-	-	296	252	85.14	44	-
2022	1,289	1,289	44	-	1,333	415	31.13	866	8
2023	3,778	3,778	866	-	4,644	2	0.04	-	4,642
2024	3,778	3,778	-	-	3,778	-	-	-	3,778
2025.7.	1,828	1,828	-	-	1,828	-	-	-	-

자료: 성평등가족부

25)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공사비로 편성된 예산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공사비 등 예산을 실시설계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예정이고, 그에 따른 2025년 연내 집행 예정액은 약 6억 3,000만원(건축 실시설계 기성금 약 4억 8,800만원, 지하안전영향평가 4,500만원, 전시공사비 중 설계분 일부 9,000만원, 측량수수료 및 적정성검토 심사비 600만원)이라는 설명임.

건립 일정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26] 대비 사업이 상당 지연되어, 2025년 9월 기준 실시설계 단계를 수행 중이며, 2026년 3월경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4월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 일정]

사업 일정	
2021	• 설계공모 • 설계용역 계약체결
2022	• 기본설계 (계획설계 및 적정성 검토) • 기본설계 (중간설계) 착수
2023	• 기본설계 (중간설계 및 적정성 검토) • 총사업비 조정협의
2024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중단) • 총사업비 조정협의
2025.9.~	**• 실시설계 (실시설계 및 적정성 검토)**
2025.11.	• 건축허가(은평구)
2025.12.	• 총사업비 조정협의(기재부)
2026.1~3.	• 공사계약 발주의뢰 · 계약체결(조달청)
2026.4.	• 건축공사 착공
2028.11.	• 준공(사용승인)
2028.12.	• 박물관 등록 및 개관

자료: 성평등가족부

26) 최초 계획상의 사업 일정

2021	2022	2023	2024
• 설계공모 • 설계용역 계약체결 • 기본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 건설공사 • 준공	• 개관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6년 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액 중 일괄적으로 28%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음. 이는 2025년 건립예산의 일부만 설계비 등으로 집행되고 2026년 4월 중 건축공사가 착공될 것을 전제로, 전체 공사기간(30개월) 대비 약 28%(8.5/30개월)의 비율을 적용한 것임.

그러나 만약 예정된 건축허가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 계약 공고 및 체결이 늦어질 경우, 사업 추진이 재차 지연되어 2028년 내에도 개관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원활히 이행하고, 절차 이행시 즉시 계약 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6. 새일센터지정·운영 사업: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시 취업률 등 사업 성과 제고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등을 통하여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4,900만원(1.6%) 증액된 866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27)]

[2026년도 새일센터지정·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87,713	87,713	88,411	698	0.8
새일센터지정·운영	85,292	85,292	86,641	1,349	1.6
직업교육훈련	27,943	27,943	25,586	△2,357	△8.4
새일여성인턴	28,619	28,619	28,619	-	-

내내역사업인 **‘직업교육훈련’** 사업은 새일센터를 통하여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을 활용한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억 5,700만원(△8.4%) 감액된 255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내역사업인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턴채용 지원금(기업) 및 고용유지 장려금(기업, 개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86억 1,900만원이 편성됨.

2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여성정책국)

[직업교육훈련 사업 및 새일여성인턴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직업교육훈련 사업 25,086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70%)
- 964과정×37.2백만원×70%
○ **새일여성인턴 28,619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80%)
- 7,777명×4.6백만원×80%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검토의견

첫째, 직업교육훈련 사업은 유관기관 취업률이 50% 내외로 저조하므로 2026년도 203개 과정의 추가 신설이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신규 과정 선정 시 취업 연계성과 현장 수요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실제 성과가 높은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직업교육훈련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과정, 전문기술과정, 기업맞춤형과정, 고부가가치 직종과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28] 분야별 취업역량 제고 및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최근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높은 유관기관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50% 내외로 저조한 수준으로, 실제 훈련과정의 효과성과 취업 연계성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28)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과정 내용

구 분	내 용
일반과정	사무관리, 서비스, 재무·회계 및 교육분야 등의 교육과정
전문기술과정	IT, 건설, 기계 제조 등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이 필요한 훈련과정
기업맞춤형 과정	직종·산업별 협회와 연계하여 현장맞춤형 교육 실시 후 우선 채용토록 하는 과정
고부가가치 직종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IT, 콘텐츠, 디자인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과정

자료: 성평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료 및 취업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23			2024			2025.8.		
	과정수	취업률	유관 취업률	과정수	취업률	유관 취업률	과정수	취업률	유관 취업률
일반과정	419	71.3	45.7	422	71.0	46.2	297	39.3	28.5
전문기술과정	71	70.1	44.7	82	71.7	50.9	64	44.1	34.6
기업맞춤형과정	151	77.0	55.3	140	79.7	59.5	100	43.6	36.1
고부가가치직종	74	77.3	61.7	79	70.0	53.2	62	39.8	33.8
합 계	715	73.0	49.1	723	72.7	50.0	523	40.8	31.3

주 1) 2025년의 경우 8월말 기준이며 총 761과정이 계획되었음(현재 훈련 진행 중으로 변동 예정)
2) 취업률: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 유관취업률: 수료인원 대비 유관취업인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총 964개로, 전년 대비 203개(26.7%)가 확대될 계획이며,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2025년 말 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하여 확정될 예정임.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단순한 과정 수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이 사업의 취업률 등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신규과제 신규 과정 선정 시 취업 연계율이 높은 기업맞춤형·고부가가치 직종에 가점을 부여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며, 유관기관 취업률이 낮은 과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과정의 성과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둘째,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경우 인턴채용지원금과 고용유지 장려금이 분리 편성되지 않아 고용유지율 제고 노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향후 고용유지 실적에 따른 지원액 조정 등 환류 과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턴채용지원금과 고용유지 장려금을 분리하여 추계·편성할 필요가 있음.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1인당 460만원 한도로, 인턴 연계 기업에 3개월 동안 월 80만원의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6개월이 경과되면 기업(80만원) 및 개인(60만원)에게 고용유지장려금을 지급하며, 12개월 경과시 기업에게 80만원의 고용유지장려금을 2차로 지급함.[29)]

29) 2025년 기준 지원금 현황

2026년 예산안 편성은 전체 계획 인원인 7,777명에 1인당 지원한도를 적용하여 286억 1,900만원(7,777명×46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연계인턴의 경우 계획인원보다 많은 10,000명 내외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인턴 종료 후 고용유지 인원은 5,000명 내외에 그침에 따라 인턴채용지원금의 부족액을 고용유지장려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구조임.[30]

[새일여성인턴 사업 연계·취업 및 고용유지 현황]

(단위: 명)

연도	새일여성인턴 연계현황					인턴종료 후 취업현황				고용유지 현황	
	계획	연계	종료	연계 중	중도탈락	소계 (a)	취업 (b)	미취업	취업률 (b/a)	6개월 (비율)	12개월 (비율)
2022	7,777	10,145 (100%)	8,298	1,085	762	8,298	8,027	271	96.7%	6,068 (75.6%)	4,527 (56.4%)
2023	7,777	9,253 (100%)	7,202	1,438	613	7,202	6,984	218	97.0%	5,280 (75.6%)	4,030 (57.7%)
2024	7,777	9,825 (100%)	7,823	1,363	639	7,823	7,581	242	96.9%	5,906 (77.9%)	4,822 (63.6%)

주) 2024년 새일여성인턴의 고용유지 현황의 경우 2025년 8월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인턴채용지원금은 직접적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고용유지장려금은 기업과 개인의 고용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두 항목의 성격이 상이함에도 예산이 통합 편성되어 있어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새일여성인턴의 취업률은 90%대 중반으로 높지만, 6개월 고용유지율은 70%대, 12개월 유지율은 50~60% 수준에 그쳐 단기적 일자리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용유지장려금을 인턴채용지원금과 구분하여 편성·집행하고, 고용유지 실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구분	인턴채용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			고용유지 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시)		인턴 1인당 총 460만원 지원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시점	12개월 시점	
기업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400만원
개인	-	-	-	60만원		60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30) 2024년 기준으로 7,777명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인턴채용지원금은 49억 1,520만원이 초과 집행된 반면, 고용유지장려금은 26억 1,940만원이 과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7. 가족센터 건립 사업: 사전행정절차 및 이월액 규모를 고려한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가족상담·부모교육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의 지역중심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4,500만원(29.0%) 증액된 50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31)]

[2026년도 가족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가족센터 건립	3,950	3,950	5,095	1,145	29.0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여, 기본형(508㎡)의 경우 10억원 이하, 확장형(759㎡)의 경우 15억원 이하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을 지원함.

[가족센터 건립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신청 후 가족센터 건립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

◦ 지원내용: 공간 유형별로 기본형(10억원 이하), 확장형(15억원 이하) 차등 정액지급
(단, 리모델링 건립시 신축의 80%)

세부구분	기본형(509㎡)	확장형(759㎡)
가족상담	ㅇ상담실(집단, 개인, 전화)	ㅇ상담실(집단, 개인, 전화)
가족교육	ㅇ일반교육실, 언어발달교실	ㅇ일반교육실, 언어발달교실
가족돌봄	ㅇ공동육아나눔터	ㅇ공동육아나눔터
가족소통	-	ㅇ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사무공간	ㅇ가족센터	ㅇ가족센터

자료: 성평등가족부

3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가족센터 건립(2333-334)(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센터 건립지로 선정되면 차년도부터 총 3년 간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2026년 예산안에는 1차 연도(2025년 선정) 3개소, 2차 연도(2024년 선정) 4개소, 3차 연도(2023년 선정) 2개소에 대하여 총 50억 9,5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임.

[가족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가족센터 건립 9개소 지원: 5,095백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정액)
- 1차연도 3개소 1,660백만원
- 2차연도 4개소 2,700백만원
- 3차연도 2개소 735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검토의견

일부 가족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바, 심사절차 경과 및 이월액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지방비 미확보 등을 사유로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 7월 기준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10.3%에 그치고 있음.[32)]

32) [2024년 건립 지연 센터의 지연사유별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지연 사유	센터 수	2024년 관련사항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지방비 미확보	7	1,990	4,537	6,527	2,991	2,944
그 외 사유	8	4,050	4,781	8,831	3,718	5,113
합 계	15	6,040	9,318	15,358	6,709	8,057

주 1) 건립지연 센터 15개소: 서울 3, 부산 4, 대전 2, 경기 2, 강원 1, 충청 1, 전북 1, 경북 1 (개소)
2) 그 외 사유: 기자재 수급 지연, 현장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 변경 등
자료: 성평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8,166	48,166	51,857	51,857	44,704	96,561	50,355	43,979	2,227	52.1
2023	14,660	14,660	14,660	14,660	43,979	58,639	31,098	23,962	3,579	53.0
2024	9,050	9,050	8,750	8,750	23,962	32,712	23,508	8,057	1,147	71.9
2025.7.	3,950	3,950	3,950	3,950	8,057	12,007	1,239	-	-	10.3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33] 원칙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신청이 불가하나, 2025년 중 절차를 완료하여 집행 가능성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함.

과거에도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집행 지연 사례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과다한 예산 편성 및 이월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2026년 사업 추진 대상지 중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고, 해당 지역은 2024년에 선정된 곳으로 2차연도에 해당함에도 2025년 9월 기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025년 내 완료 가능성 또한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

[2026년 건립 대상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전절차 이행여부			예결산 내역			
	부지매입	투자심사	사전평가	2025.9.			2026
				현액	집행	이월 예상	예산안
○○군	○	X (2025. 하반기 예정)	해당없음	300	-	167	300

자료: 성평등가족부

33)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44p. 예산안 편성 시 유의사항
2 사전 행정절차 이행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다만, '25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신청 가능

또한 해당 지역의 경우 2025년도 예산 교부액(3억원) 전액이 2025년 9월말 기준 집행되지 않아 이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예상 이월액 규모 및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육성기금】

<지 출>

8.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청소년기 이후의 지원 강화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은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립·은둔 청소년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2억 7,600만원(20.8%)이 증액된 16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34)]

[2026년도 고립 ·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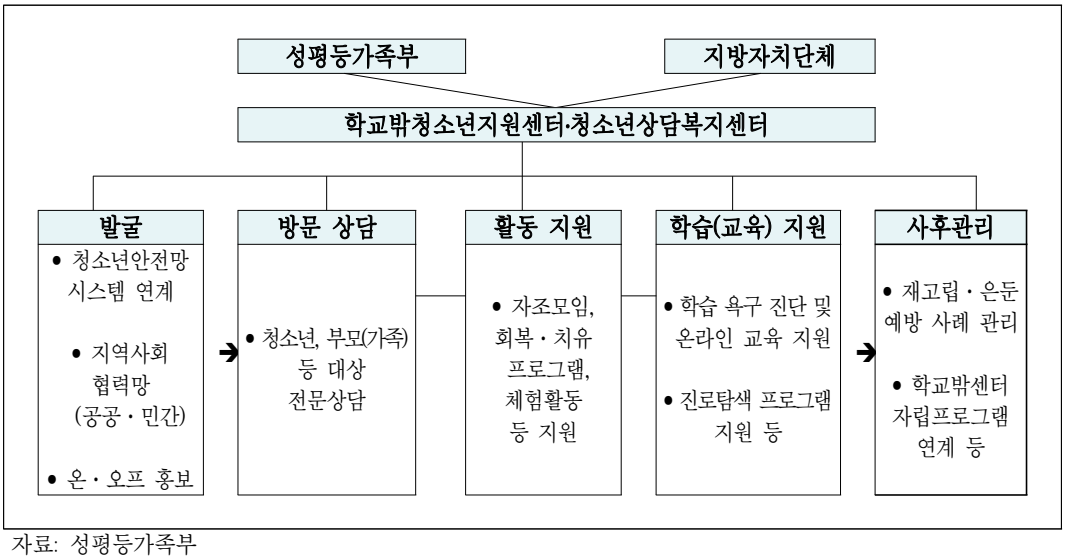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당초 (A)	2025년도 수정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B-A)/A
청소년사회 안전망구축		71,820	71,820	73,859	2,039	2.8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1,329	1,329	1,605	276	20.8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청소년 원스톱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방문상담·활동지원·학습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례관리와 자립지원 연계 단계까지 지원하는 포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음.

34)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사회 안전망구축(2254-431)(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 원스톱 지원사업 개요]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 사업은 2024년 3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5년에는 2개 시・도, 10개 시・군・구 총 12개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운영 중임. 2026년도 계획안에 따르면 2개 시・도가 추가되어 총 14개소 센터로 사업이 확대될 예정임.[35]

[청소년 원스톱 지원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ㅇ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25) 1,329백만원 → ('26) 1,605백만원 (+276)**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서울 50% 그 외 70%) - 인건비 1,175백만원 ('25) 964백만원 (12개소) → ('26) 1,175백만원 (14개소) - 프로그램 운영 430백만원 ('25) 365백만원 (12개소) → ('26) 430백만원 (14개소)

자료: 성평등가족부

35) 2025년 사업의 경우 아래의 12개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도 계획안상 추가 2개소에 대하여는 향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 지역을 선정할 예정임.
〈시・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25. 신규)
〈시・군・구〉 서울 노원구·도봉구·성북구·송파구, 대구 달서구·달성군·동구, 경기 수원시·성남시, 경북 포항시

나. 검토의견

청소년 원스톱 지원사업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보건복지부)과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연령별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의 연속적 지원 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6년 신규센터 설치시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지원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고립·은둔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음. 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며, 이 중 학령기(9세~19세)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함.

한편,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36](이하 "청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동 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평등가족부 사업과 연령대가 일부(만 19세~24세) 중복됨.

[청소년 원스톱 지원사업 및 청년 지원사업 비교]

구 분	청소년 원스톱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청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주요 내용	• 조기발굴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지역사회협력망, 온라인 아웃리치) •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문상담, 활동 및 학습 지원,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등 사후관리)	• 조기발굴 (온라인자가진단·상담, 방문상담 등) • 맞춤형 서비스 지원 (초기상담, 일상회복, 일경험 등)
대상	**• 고립·은둔 청소년 및 보호자 등 가족** *청소년(만 9세~24세) *학령기(만 9세~19세) 우선지원	**• 4개 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그 가족 • 자가진단 결과 고립 은둔 상태**
사업지역 및 수행기관	• 2개 시·도, 10개 시·군·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4개 시·도의 청년미래센터 (인천, 울산, 전북, 충북)

주) 청소년 원스톱 지원사업의 경우 2026년 계획안은 2개소 추가하여 총 14개소 계획
자료: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6) 일반회계-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2537-303)(인구정책실)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에 해당함.

두 사업 모두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5년 기준으로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원스톱 지원사업은 총 12개소, 보건복지부의 청년 지원사업은 총 4개소에서 운영 중인데, 청소년 원스톱 지원사업이 운영되는 지역에는 청년 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지 않아, 지역 및 연령대별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지원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청소년 원스톱 지원사업 및 청년 지원사업 지역별 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소년 원스톱 지원	4	-	3	-	1	-	-	-	2	-	-	-	-	-	1	1	-
청년 지원	-	-	-	1	-	-	1	-	-	-	1	-	1	-	-	-	-

주) 2025년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또한 두 사업 모두 온라인 자가진단이나 상담 신청을 통해 온라인 중심의 발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은둔자의 특성상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상담 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면대면 상담, 지속적 사례관리 등을 위한 지역 내 오프라인 센터의 접근 가능성이 중요할 것임.

그리고 청소년(만 9세~24세)과 청년(만 19세~39세)이 각각 별도의 센터에서 분리 지원을 받고 있어, 만 19세~24세 전후의 경계 연령층의 경우 지원이 단절되거나 제외될 우려가 있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만 24세 상한 기준에 따라, 기존에 지원을 받던 청소년이 연령 초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타 기관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37]

따라서 청소년기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대상자가 청년기 지원 체계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청년기 지원이 가능한 관내의 유관기관 안내 등 지역 단위의 연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고립·은둔 사례관리 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공백을 보완하고, 사업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7)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 중 과거에 고립 혹은 은둔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은 은둔 56.4%, 고립 51.9%로 나타나, 약 절반 정도의 청년이 고립과 은둔의 경험을 반복하고 있어 단기·일회적 지원으로는 탈고립 및 탈은둔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장기적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가 필요함.

특히 2026년 신규 사업 지역(2개소) 중 보건복지부 사업 지역과 중복될 경우를 고려하여 연령대별 역할 분담과 지원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센터 및 지원 대상자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